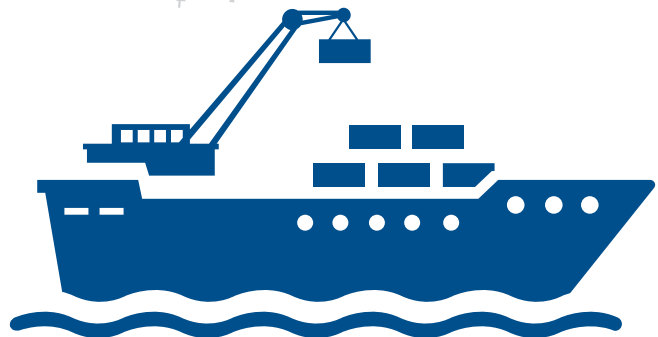


FTA 가산세 징송 사례집



발 / 간 / 사



이 책은 FTA의 다양한 분야 중에서도 무역 상품의 FTA 특혜 적용과 관련하여 세관의 원산지 검증 분야의 쟁송 사례를 초점으로 작성하였으며, 수출입기업 또는 세관에 가산세 면제 여부에 대한 사례를 제공하고자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FTA 특혜 원산지규정을 잘 활용하면 수출입기업에게는 시장 개척, 원가절감 등 새로운 활로가 열릴 수 있지만, 복잡한 FTA 규정을 잘못 이해하고 적용할 경우 무역 상대국 세관 또는 아국의 세관으로부터의 원산지검증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FTA 협정관세 적용한 수입 물품에 대해 아국 세관의 원산지 조사 후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협정관세를 적용배제시 본세 이외에 수입자의 정당한 사유 유무를 다투는 가산세 관련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면, 가산세 면제 관련 현행 법령이나 지침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라, 이 기준으로는 개별 사안에서 명확한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령의 해석과 집행에 있어 중요한 지침이 되는 쟁송 사례를 연구하게 되었고, 최근 5년여간 FTA 가산세 면제와 관련된 쟁점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 판결, 결정 되었는지 살펴

봄으로써, 세관은 처분의 합리성·공정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에게는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예측 가능성을 제공할 필요가 제기되었습니다.

본 사례집은 최근 FTA 관련 가산세 면제와 관련된 쟁송 사례 총 69건을 분석하여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등을 19개로 유형화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례집이 널리 활용되기를 바라며, 이 사례집을 편집하는데 수고를 아끼지 않은 서울세관 심사총괄과 쟁송팀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12월
서울세관장

김성호

PART 01. 서설



01. 가산세의 내용

- 가. 가산세의 의의 8
- 나. 가산세의 성질 8

02. 가산세의 면제

- 가. 총설 10
- 나.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 10

03. FTA 관련된 가산세 쟁송 사례 분석 및 유형화 목적

- 가. FTA와 관련된 가산세 12
- 나. 쟁송 사례 분석 및 유형화 목적 13

PART 02. 가산세 쟁송 사례 유형화



01. 개요

02.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례(가산세 면제)

- 가. 원산지검증 요청에 대한 수출국의 회신 기한 경과 17
- 나. 수출국 기관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 적용 19
- 다. 수출자로부터 제출된 유효한 형식의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 적용 20
- 라. 수출자의 영업비밀인 원산지 정보를 파악하기 곤란 21
- 마. 수출자에게 사전에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인증수출자 여부 확인 22
- 바. 원산지증빙서류의 인정 범위에 대한 양 당사국의 해석 차이 23
- 사. 수출국 법령상 서류 보관기관 도과로 원산지검증 불가능 24
- 아. 물품에 부착된 원산지 표시를 FTA 원산지로 오인 24
- 자. 직접운송 입증 필수서류인 통과선하증권 미제출 25
- 차. 기타 25

03.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는 사례(가산세 부과)

- 가. 인증수출자 자격(권한) 여부에 대한 확인 의무 소홀 27
- 나. 원산지신고서 유효성 확인 소홀 29

나-①.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31
나-②. 비당사국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신고서)를 작성한 경우	31
나-③. 기타 원산지신고서 유효성 확인 소홀	32
다. 수출자와 수입자가 특수관계임에도 원산지, 인증수출자 등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33
라. 수입자가 원산지 확인 주의 의무 소홀	34
라-①. 원산지 불충족에 의심이 있거나 인지하고 있는 경우	34
라-②. 기타 수입자가 원산지 확인 주의 의무 소홀	35
마. 수출자가 제공한 원산지증명서를 만연히 신뢰하고 추가 확인하지 않은 경우	36
바. 수입자가 스스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했음에도 원산지를 입증하지 못함	37
사. 수출국에서 원산지검증 회신기한을 경과하였고,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8
아. 직접운송 입증 필수서류인 통과선하증권 미제출	38
자. 기타	39
04. 유형화 결과 분석	
가.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례(가산세 면제)에 대한 분석	40
나.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는 사례(가산세 부과)에 대한 분석	42

PART 03. 가산세 유형별 쟁송 사례 소개



목차의 PART 02. 가산세 쟁송사례 유형화 순번으로 소개	46
-----------------------------------	----

부록.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에 관한 지침

PART 01

서설

01. 가산세의 내용
02. 가산세의 면제
03. FTA 관련된 가산세 쟁송 사례 분석 및 유형화 목적

01 가산세의 내용

가. 가산세의 의의

조세법은 원활한 조세행정과 조세의 공평부담을 실현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본래적 의미의 납세의무 이외에 과세표준 신고의무, 성실납부의무, 원천징수의무, 과세자료 제출의무 등의 여러 가지 협력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47조는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1항).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2항).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3항)」고 규정하여 가산세가 조세의 한 종목으로서 과징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우리 세법상 가산세는 국세기본법에서 그 기본적인 내용을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 법 체계는 기본적으로 세법상의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가산세를 차등하여 부과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나. 가산세의 성질

1) 법적 성질

가산세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라는 견해, 행정상의 제재라는 견해, 행정질서벌과 별개의 조세행정상의 특별과벌이라는 견해 등이 있다.

가산세와 행정질서벌은 모두 국가의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통해 행정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의무 이행을 확보하려는 점에서 공통되며, 다만, 그 제재의 형식만을 달리할 뿐이다. 결국, 가산세는 행정질서벌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징수절차상의 편의를 위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행정상 제재의 일종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2 판결 등).

2) 가산세의 부과·징수

가산세는 독립된 세목이 아니라 개별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관세, 부가가치세 등 본세에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전체 세액으로 징수한다. 즉,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징수절차와 관계없이 가산세와 본세는 별개의 조세로서 그 성질을 달리한다.

가산세 납세의무는 가산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성립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가산세는 거래금액·산출세액·미납금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부수(負數)로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만이 부과·징수될 수 있으며, 본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는 감면되지 아니한다.

3) 가산세에 대한 불복

본세와 가산세는 별개의 부과처분이므로 본세에 대한 불복은 가산세까지 포함하지 않고 가산세는 독립된 불복대상이 되며, 본세와 독립하여 가산세 부과처분 그 자체만을 구하는 경우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산세와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 본세의 경정처분이 소송 등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그에 수반한 가산세의 부과처분도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

02 가산세의 면제

가. 총설

우리 국세기본법은 “정당한 사유”를 기본 요건으로 하는 가산세 면제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과 개별적인 감면 규정들을 두고 있다. “정당한 사유”란 일반적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즉, 책임을 물을 만한 기대가능성이 없을 때를 의미하나, 구체적으로는 가산세 제도의 취지를 중심으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익형량적 각도에서 개별적 판단을 필요로 한다.

나.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

납세자의 의무위반이 부득이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세법상의 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하려는 가산세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납세자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세법상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의 이행을 알지 못한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의 게을름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판례는 그 의미를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해석하고 있다.

대법원은 가산세 부과요건에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 여부 및 법령의 부지·착오가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어 그것이 가산세를 면제받을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가산세의 부과요건 및 납세의무자가 법령을 부지 또는 오인하거나 과세관청 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신고·납부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 가산세의 면제 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그것이 가산세를 면제받을 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가산세는 과세당국의 과세권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위해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령상의 신고·납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라고 아니었고 그를 정당 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생각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그 의무의 게으름을 탓할 수 없는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일관적인 입장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현재 판례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함에 있어서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03 FTA 관련된 가산세 쟁송 사례 분석 및 유형화 목적

가. FTA와 관련된 가산세

FTA 협정 상대국의 원산지 물품을 수입하였을 때 협정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낮은 세율로 부과하는 관세를 협정관세라고 한다.

과세관청은 사후 원산지 조사를 통하여 FTA 협정상 직접운송의 원칙을 위배하거나 원산지증명서의 오기재 등 하자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실행관세와의 차액에 대해 추징한다. 이에 행정적 제재 성격을 가지고 있는 가산세도 함께 추징하게 된다.

원산지 조사란 국내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이미 체결되어 있는 FTA 협정의 원산지규정 및 FTA관세특례법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하여 적용의 적정성 여부와 수입 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모든 수입 절차상 관련이 있는 자들인 매도인, 매수인, 생산자 및 발급기관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조사 방식은 국내조사 또는 국외조사의 방법으로 수행하며 서면조사를 통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원산지 조사 결과 협정관세 적용이 올바르지 않으므로 적용을 배제하여야 하는 결과가 나온 경우에는 관세 및 가산세를 추징한다는 뜻을 담은 과세전통지서를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FTA 가산세 부과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협정문에는 가산세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FTA 협정관세 사후추징시 발생하는 가산세는 관세법의 특별법격인 FTA관세특례법의 규정을 적용받게 되었는데, 2016년 이전에 국내 수입자에 의해 수입신고되어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해서 가산세 부과에 대해선 FTA관세특례법을, 가산세 면제에 대해선 관세법을 적용하여 가산세 운용 시 적용 법령이 상이하였으나, 2017년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산세 면제기준을 도입함으로써 개정 이후 수입 물품부터는 가산세의 부과, 면제를 공통적으로 FTA관세특례법의 규정을 적용받게 되었다.

FTA관세특례법 개정을 통하여 협정관세 적용물품에 대한 가산세 감면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동법에 따르면 수입자가 협정관세 적용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시행령에서는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요건으로 ①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원

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후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않은 경우 ③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 조사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원산지 관련 자료를 자료제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사실과 달리 제출한 경우 등으로서 부족 세액의 징수와 관련하여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관세청에서는 FTA관세특례법령상 가산세 부과 및 면제사유에 관하여 관세청 운영지침으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FTA 관련된 가산세 쟁송 사례 수집 및 유형화 목적

FTA 협정 체결이 늘어나면서 수출거래는 물론 협정관세를 적용받는 수입거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이러한 FTA 협정관세는 수입시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관세행정상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 적용하게 된다.

FTA의 활용을 통한 협정관세율을 적용 받는 수출입 기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원산지증명서를 기관이 발급하는 경우에도 관세당국을 통한 사후 원산지검증 과정에서 체약상대국의 자유무역협정 미준수 책임을 수입자에게 전가시켜 본 세인 협정관세가 배제되고 불합리하게 가산세가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납세의 무자는 개별 사안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 가산세가 부과가 되고, 면제가 되는지는 그 기준이 모호하여 관세행정에 대해 불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FTA 무역거래는 일반무역거래와는 다르게 수출자가 구비한 서류를 수입자가 전달받아 세관에 제출하는 경우가 다수이고, FTA 협정의무위반자가 수출자, 운송인, 수출국세관 등임에도 위반에 따른 책임은 수입자가 부담하는 특징이 있다.

원산지 조사 결과에 의한 FTA 협정관세 추징 시 가산세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FTA관세특례법에 근거하고 있으나, 사안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 가산세가 부과가 되고, 면제가 되는지는 법 규정은 그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기 때문에 수입자가 가산세 부담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최근 5년간 FTA 가산세 쟁송사례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 판결, 결정 되었는지 살펴봄으로써, 세관은 처분의 합리성·공정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에게는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예측가능성을 제공할 필요가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FTA와 관련된 가산세 쟁송사례를 수집하고 수입자의 정당한 사유 등을 유형화하게 되었다.

PART 02

가산세 쟁송 사례 유형화

- 01. 개요
- 02.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례(가산세 면제)
- 03.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는 사례(가산세 부과)
- 04. 유형화 결과 분석

01 개요

1. 개요

FTA 협정관세 적용과 관련된 가산세가 쟁점이 된 사례를 유형화하기 위해, 우선 최근 5년여간 FTA 관련된 조세 심판원의 심판결정, 법원의 판례 전체를 확보하고 그 내용을 일일이 확인한 후, 동 사례 중에서 가산세가 쟁점이 된 사례만을 추출하였다. 그 결과 총 69건(심판결정 59건, 판결 10건)의 사례를 확인하였다.

위와 같이 추출된 사례를 다시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산세 면제)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가산세 부과)를 구분하고 정당한 사유 유무 판단시 고려한 내용을 확인하여 동일·유사한 내용을 묶는 방법으로 유형화하였다. 그 결과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례는 10개 유형이,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는 사례는 9개 유형이 나타났다.

이에 각 유형별로 심판결정, 법원 판례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고, 이후 유형화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02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례 (가산세 면제)

가. 원산지검증 요청에 대한 수출국의 회신기한 경과

1) 조심 2015관20(2015. 5. 8.)

[한-EU] 원산지 검증결과 회신 지연을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허관세 미추천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발생한 부족 세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의 의무해태를 다탈기 어려워 보이므로 협정관세 적용배제에 따른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는 취소

2) 조심 2015관128(2015. 11. 24.)

[한-아세안] 이 건은 베트남 관세당국의 원산지 검증결과가 회신기간을 경과하여 도착하였으나 쟁점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회신기한 경과 책임은 청구법인의 과실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는 바,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음

3) 조심 2015관195(2016. 2. 26.)

[한-EU] 이태리 관세당국이 회신기한을 경과하여 회신하는 등 특혜 배제는 타당하나, 원산지기준 충족으로 회신된 점으로 보아 회신 지연에 대한 책임이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족 세액 발생에 대해 청구인에게 의무해태를 다탈 수 없는 정당한 사유 존재

4) 조심 2015관277(2016. 5. 17.)

[한-EU] 회신기간 경과에 대한 책임의 상당 부분은 수출국 관세당국에 있는 점, 쟁점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 회신된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법인의 납세의무해태를 다탈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가산세 부과 처분은 부당

5) 조심 2015관296(2016. 6. 21.)

[한-EU] 독일 관세당국의 원산지 검증결과가 회신기간을 경과하여 도착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원산지가 독일임이 확인된 점, 회신기간 경과 책임이 전적으로 청구법인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 부과 처분은 부당

6) 조심 2015관316(2016. 10. 28.)

[한-EU] 일부물품의 경우 기한경과 회신하였으나 원산지 기준을 충족 회신한 점, 회신기한 경과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청구인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 부과는 부당

7) 조심 2015관319(2016. 6. 21.)

[한-EU] 독일 관세당국의 원산지 검증결과가 회신기간을 경과하여 도착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원산지가 독일임이 확인된 점, 회신기간 경과의 책임이 전적으로 청구법인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

8) 조심 2015관331(2016. 6. 24.)

[한-EU] 독일 관세당국의 원산지 검증결과가 회신기간을 경과하여 도착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원산지가 독일임이 확인된 점, 회신기간 경과의 책임이 전적으로 청구법인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

9) 조심 2015관335(2016. 4. 1.)

[한-아세안] 필리핀 관세당국이 6개월로 연장된 회신기한(2015. 3. 19.)까지도 원산지검증 결과를 회신하지 않았던 하나, 2차 검증요청 결과에 첨부된 의견서에는 쟁점물품의 RVC는 65%로서 한·아세안 FTA에서 정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처분청이 2차 검증결과 회신에 따라 2차 조사대상 257건 뿐만 아니라 1차 조사대상 402건 중 검증요청을 하지 않은 374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종결한 점 등에 비추어 원산지검증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의무해태만을 탓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

10) 조심 2015관137(2015. 12. 2.)

[한-EU] 영국 관세당국이 당초 회신을 반복하여 재회신일자가 회신기한을 5개월을 경과하고, 회신기한 경과사유가 생산자나 수출자의 불가항력 등의 예외적인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특혜 배제는 정당하나, 인증수출자 및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회신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

11) 조심 2015관144(2016. 1. 7.)

[한-EU] 영국 관세당국이 회신기한을 경과하여 재회신하는 등 특혜 배제는 정당하나, 원산지기준 충족으로 회신된 점으로 보아 회신 지연에 대한 책임이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족 세액 발생에 대해 청구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존재

12) 서울행정법원 2014. 11. 4. 선고 2014구합59047 판결**서울고등법원 2015. 7. 23. 선고 2014누73106판결****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5두50399 판결**

[한-아세안] 피고는 이 사건 검증결과 회신이 한-아세안 FTA 협정 부속서 3의 부록 1 제14조에서 정한 검증결과 회신기한과 검증절차 종료기한을 초과함으로써 위 부록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록 제17조가 정한 특혜관세 배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검증결과 회신이 지연된 것은 MITI의 인사이동으로 인한 담당자가 부재로 인한 것이었으므로, 원고에게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다텈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처분사유가 위와 같은 이상 이 사건 원산지증명서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정은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에 관한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수 있는 요소가 되지 못한다),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

※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1심에서 피고가 패소하여 항소를 포기, 이후 본세에 대해서 2심·3심 진행

나. 수출국 기관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 적용**1) 조심 2016관172·190·191(2017. 5. 22.)**

[한-아세안] 쟁점원재료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없으나 2008년에는 쟁점원재료와 동일한 원재료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 등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원재료를 한국산으로 인식할 수도 있어 보이는 점, 베트남 통상부는 수입신고시 쟁점원재료를 HS 제39류로 분류하고 있고, 이를 조립·가공한 쟁점물품은 HS 제90류에 분류하여 쟁점물품이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어 이후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베트남 통상부에서 원산지 부합사실을 다시 확인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함에 있어 청구법인에게 의무해태를 다텈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임

다. 수출자로부터 제출된 유효한 형식의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 적용**1) 조심2020관61(2020. 6. 30.)**

[한-EU] 여러 차례의 간접검증 과정을 통하여 쟁점물품이 EU 역내인 루마니아 공장에서 제조되어 직접 우리나라로 수입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쟁점원산지신고서에 기재된 인증번호는 위 간접검증을 전후로 하여 여전히 쟁점수출자의 유효한 인증번호로 확인되는 점, 비록 쟁점원산지신고서는 000 또는 0000가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처분청의 조사 결과 이는 스위스 본사의 최고 경영책임자이자 쟁점수출자의 대표자인 000의 지시에 따라 작성·발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수입자인 청구법인으로서는 인증번호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을 000 또는 0000가 쟁점수출자의 소속직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과 같이 쟁점원산지신고서의 구체적인 발

행 경위까지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는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결국 이 건 처분 중 일부인 가산세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2) 서울행정법원 2016. 12. 23. 선고 2016구합5038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0. 19. 선고 2017누33031 판결

【한-EU】【1심】① 원고는 한-EU FTA 협정상 ‘인증수출자’의 지위에 있는 수출자가 발행하고 형식상 유효한 이 사건 물품의 ‘원산지증명서’상 이탈리아 제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믿고 피고에게 한-EU FTA 협정관세를 신청한 점, ② 원고는 또한 이 사건 물품을 직접 조사하여 위 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의류 라벨에 ‘Made In Italy’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원산지가 이탈리아라고 믿고 위 협정관세를 신청한 점, ③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을 요청하게 된 계기는 한-EU FTA 의류와 그 부속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제조(절단을 포함한다)를 동반하는 직조’임에도 이 사건 물품을 판매하고 있는 국내 인터넷쇼핑몰에 이 사건 물품이 터키산 원단으로 제작 된 사실이 게시되어 있고 수출자가 개설한 홈페이지에 “데님(denim)은 100% 유기농 면(organic cotton)으로 제작 되었고, 이탈리아와 터키에 있는 공급자로부터 받은 것입니다.”라고 게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인데 이러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은 공신력 있는 방법이 아니고 위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이 원고가 수입한 이 사건 특정 물품에 대한 것인지도 불명확한 점, ④ 수출자의 홈페이지는 신상품 출시, 기존 상품의 변경, 이벤트 등 수출자의 영업·홍보 필요성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위 홈페이지에 소개된 제품 혹은 제품 원단의 원산지를 특정 시점의 수입 물품의 원산지와 일치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고, 위 홈페이지 게시 내용이 이 사건 물품의 수입 당시 게시되었는지도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물품과 관련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임

【2심】 원고는 수출자의 국내 대리점이 아닌 단순 수입자로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신고서 외에 해당 물품에 대한 수출자 측의 영업기밀에 속하는 원산지 정보 등을 알 수도 없었다고 보이는 점, 원고는 관세사에게 한-EU FTA 활용하기 위한 설명 및 자료제공받는 등 사전 준비하였던 점을 추가하여 제1심 판결은 정당함

라. 수출자의 영업비밀인 원산지 정보를 파악하기 곤란

1) 조심 2017관110(2018. 1. 4.)

[한-아세안]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최초로 수입하기 이전에 쟁점수출자에게 원재료의 가격정보와 필리핀 세관에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줄 것을 요구한 점, 당시 필리핀 세관이 수출자에게 질의 물품이 CTH 및 RVC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회신한 점, 필리핀 세관의 회신문에 쟁점물품이 충분히 CTH 및 RVC 기준을 충족한다고 신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요구에도 수출자가 영업기밀을 이유로 각 원재료의 가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인 쟁점수출자의 영업기밀에 속하는 원산지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여 RVC 기준 충족 여부 확인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산세까지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2) 조심 2019관93(2019. 12. 12.)

[한-중] 자율점검 요청 이전인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와 주고받은 이메일에서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PSR 임을 서로 확인하였는데 이는 원산지의 실질적 요건 확인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CTH이므로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재 명세 등의 자료가 필수적이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수출자(제조사)가 영업 비밀로 관리하는 이러한 자료를 특수 관계없는 수입자가 수출자로부터 제공받는 것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에게 이러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임

3) 서울행정법원 2016. 12. 23. 선고 2016구합5038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0. 19. 선고 2017누33031 판결

[한-EU] 【1심】 ① 원고는 한-EU FTA 협정상 ‘인증수출자’의 지위에 있는 수출자가 발행하고 형식상 유효한 이 사건 물품의 ‘원산지증명서’상 이탈리아 제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믿고 피고에게 한-EU FTA 협정관세를 신청한 점, ② 원고는 또한 이 사건 물품을 직접 조사하여 위 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의류 라벨에 ‘Made In Italy’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원산지가 이탈리아라고 믿고 위 협정관세를 신청한 점, ③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을 요청하게 된 계기는 한-EU FTA 의류와 그 부속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제조(절단을 포함한다)를 동반하는 직조’임에도 이 사건 물품을 판매하고 있는 국내 인터넷쇼핑몰에 이 사건 물품이 터키산 원단으로 제작 된 사실이 게시되어 있고 수출자가 개설한 홈페이지에 “데님(denim)은 100% 유기농 면(organic cotton)으로 제작 되었고, 이탈리아와 터키에 있는 공급자로부터 받은 것입니다.”라고 게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인데 이러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은 공신력 있는 방법이 아니

고 위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이 원고가 수입한 이 사건 특정 물품에 대한 것인지도 불명확한 점, ④ 수출자의 홈페이지는 신상품 출시, 기존상품의 변경, 이벤트 등 수출자의 영업·홍보 필요성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위 홈페이지에 소개된 제품 혹은 제품 원단의 원산지를 특정 시점의 수입 물품의 원산지와 일치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고, 위 홈페이지 게시 내용이 이 사건 물품의 수입 당시 게시되었는지도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물품과 관련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임

【2심】 원고는 수출자의 국내 대리점이 아닌 단순 수입자로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신고서 외에 해당 물품에 대한 수출자 측의 영업기밀에 속하는 원산지 정보 등을 알 수도 없었다고 보이는 점, 원고는 관세사에게 한-EU FTA 활용하기 위한 설명 및 자료제공받는 등 사전 준비하였던 점을 추가하여 제1심 판결은 정당함

마. 수출자에게 사전에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인증수출자 여부 확인

1) 조심 2017관110(2018. 1. 4.)

[한-아세안]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최초로 수입하기 이전에 쟁점수출자에게 원재료의 가격정보와 필리핀 세관에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줄 것을 요구한 점, 당시 필리핀 세관이 수출자에게 질의 물품이 CTH 및 RVC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회신한 점, 필리핀 세관의 회신문에 쟁점물품이 충분히 CTH 및 RVC 기준을 충족한다고 신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요구에도 수출자가 영업기밀을 이유로 각 원재료의 가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인 쟁점수출자의 영업기밀에 속하는 원산지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여 RVC 기준 충족 여부 확인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산세까지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2) 조심 2019관93(2019. 12. 12.)

[한-중] 자율점검 요청 이전인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와 주고받은 이메일에서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PSR임을 서로 확인하였는데 이는 원산지의 실질적 요건 확인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CTH이므로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재명세 등의 자료가 필수적이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수출자(제조사)가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이러한 자료를 특수관계 없는 수입자가 수출자로부터 제공받는 것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에게 이러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임

3) 조심 2018관84(2019. 1. 31.)

[한-EU] ① 청구법인이 수출자와 맺은 Purchase order에 수출자가 반드시 인증수출자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수출자에게 문서로 인증수출자의 지위를 요구한 점, ② 수출자는 스페인 수출물품에 대해서도 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영국 관세당국에 인증을 신청하였고, 스페인에서 수출되는 거래가 인증서에서 누락되어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지속적으로 발급하였으며, 영국 관세당국이 자신의 실수로 인증서를 잘못 발급하였다는 사실 및 쟁점물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적용할 수 있다고 검증을 통해 확신한 점, ③ 영국은 영국의 수출자가 다른 EU회원국에서 수출한 물품에 대해서도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할 수 있는 포괄인증수출자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영국 외에 허용되는 수출장소를 인증서에 열거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한-EU FTA 중에서도 예외적인 형태로 보여 청구법인이 수출자의 인증수출자 자격뿐 아니라 허용되는 수출장소까지 확인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점에 비추어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바. 원산지증빙서류의 인정 범위에 대한 양 당사국의 해석 차이**1) 조심 2019관38(2019. 10. 16.)**

[한-아세안] 원산지증빙서류의 인정 범위에 대해 양 당사국 간 해석의 차이가 존재하였던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임

2) 조심 2019관42(2019. 8. 21.)

[한-아세안] 원산지증빙서류의 인정 범위에 대해 양 당사국 간 해석의 차이가 존재하였던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임

3) 조심 2019관43(2019. 7. 17.)

[한-아세안] 원산지증빙서류의 인정 범위에 대해 양 당사국 간 해석의 차이가 존재하였던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임

4) 조심 2019관52(2019. 9. 18.)

[한-아세안] 원산지증빙서류의 인정 범위에 대해 양 당사국 간 해석의 차이가 존재하였던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임

5) 조심 2019관89(2019. 12. 19.)

[한-아세안] 원산지증빙서류의 인정 범위에 대해 양 당사국 간 해석의 차이가 존재하였던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임

1) 조심 2013관60(2013. 11. 4.)

[한-EFTA] 쟁점물품 수출국인 000 관세당국은「한·EFTA FTA 협정」상의 5년간의 서류보관 규정과 달리 3년이라는 원산지신고서류 보관 규정의 국내입법으로 인해 쟁점물품 수출자와 생산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5년간의 수입신고건 중 3년간의 수입신고분에 대해서만 원산지 검증결과를 회신하면서 나머지 3년경과 원산지신고서도 000 특혜원산지를 위반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회신한 점, 이후 나머지 3년 경과 원산지신고서에 대하여 추가로 원산지검증을 실시하여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000산이 맞다고 회신한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협정세율 배제에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한 가산세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2) 서울행정법원 2014. 9. 25. 선고 2014구합54424

[한-EFTA] ① 대한민국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 요청에 대한 스위스 관세당국의 회신이 어떠한 방식으로 어느 범위 및 정도까지 검증을 할 것인지의 문제는 원고의 통제 범위 밖의 문제이며, ② 원고로서는 스위스 관세당국이 자국 국내법상 서류 보관기관(3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검증을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쉽게 예상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③ 이 사건 처분의 원인과 관련하여 원고가 달리 한-EFTA 협정 및 그 외 대한민국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의무해태를 닦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부분은 취소

※ 2심(서울고등법원 2014누66474) 진행 중 원고의 소취하로 종결

1) 서울행정법원 2016. 12. 23. 선고 2016구합5038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0. 19. 선고 2017누33031 판결

[한-EU]【1심】① 원고는 한-EU FTA 협정상 '인증수출자'의 지위에 있는 수출자가 발행하고 형식상 유효한 이 사건 물품의 '원산지증명서'상 이탈리아 제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믿고 피고에게 한-EU FTA 협정관세를 신청한 점, ② 원고는 또한 이 사건 물품을 직접 조사하여 위 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의류 라벨에 'Made In Italy'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원산지가 이탈리아라고 믿고 위 협정관세를 신청한 점, ③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을 요청하게 된 계기는 한-EU FTA 의류와 그 부속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제조(절단을 포함한다)를 동반하는 직조'임에도 이 사건 물품을 판매하고 있는 국내 인터넷쇼핑몰에 이 사건 물품이

터키산 원단으로 제직 된 사실이 게시되어 있고 수출자가 개설한 홈페이지에 "데님(denim)은 100% 유기농 면 (organic cotton)으로 제직 되었고, 이탈리아와 터키에 있는 공급자로부터 받은 것입니다."라고 게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인데 이러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은 공신력 있는 방법이 아니고 위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이 원고가 수입한 이 사건 특정 물품에 대한 것인지도 불명확한 점, ④ 수출자의 홈페이지는 신상품 출시, 기존상품의 변경, 이벤트 등 수출자의 영업·홍보 필요성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위 홈페이지에 소개된 제품 혹은 제품 원단의 원산지를 특정 시점의 수입 물품의 원산지와 일치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고, 위 홈페이지 게시 내용이 이 사건 물품의 수입 당시 게시되었는지도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물품과 관련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임

【2심】 원고는 수출자의 국내 대리점이 아닌 단순 수입자로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신고서 외에 해당 물품에 대한 수출자 측의 영업기밀에 속하는 원산지 정보 등을 알 수도 없었다고 보이는 점, 원고는 관세사에게 한-EU FTA 활용하기 위한 설명 및 자료제공받는 등 사전 준비하였던 점을 추가하여 제1심 판결은 정당함

차. 직접운송 입증 필수서류인 통과선하증권 미제출

1) 조심 2015관65(2015. 7. 13.)

[한-아세안] 일부 수입건의 경우, 통관지세관장이 추가 운송서류(T/M, Truck Manifest)를 제출하자 협정관세 적용신청과 관련 수입신고수리하였고, 수입자가 T/M 외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가산세 부과는 취소

2) 조심 2016관43(2016. 5. 23.)

[한-아세안] 한-아세안 FTA 부속서3 부록1 제19조에서 수출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을 직접운송 간주요건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라고 명시하고 있어 이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혜관세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법인의 납세의무해태를 탓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차. 기타

1) 조심 2015관203(2016. 6. 14.)

[한-EU] 000 관세당국에서 처분청의 원산지검증요청에 대하여 원산지가 다른 것으로 회신한 것이 아니라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고, 이는 기간의 경과(2004년에 제조·신고됨)가 원인이었던 점, 수출자 또한 000 관세당국의 검증에 대하여 원산지 지위를 증명하기 위해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쟁점물품 가격의 000 이하인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나, 수출자 및 제조자 간의 경쟁관계로 인해 수출자가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

한 측면 등이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한·EU FTA가 발효되기 전인 2004년에 제조·판매된 쟁점물품의 원산지 증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이 있으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과세전통지 이후 제조자에게 요청하여 쟁점물품이 원산지 요건을 충족한다는 내용의 제조자증명서를 제출하였고, 쟁점물품과 같은 000는 제조자의 000 공장에서만 제조된 것으로 보여 비록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확인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쟁점물품이 사실상 원산지 지위를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것에 그 의무해태를 탓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어 보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

2) 조심 2015관23(2016. 6. 14.)

[한-아세안] C/O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쟁점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외하여 C/O의 유효기간을 계산하여야 하는 점(조심 2014관214, 2015.12.31., 같은 뜻임), 그 기간을 제외할 경우 처분청 의견과 달리 쟁점 C/O는 유효기간이 연장되어 유효한 C/O로 인정될 수도 있는 점,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인데 쟁점 C/O가 유효하다면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이 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

03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는 사례 (가산세 부과)

가. 인증수출자 자격(권한) 여부에 대한 확인 의무 소홀

1) 조심 2015관183(2015. 12. 23.)

[한-EU] 인증수출자가 아닌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어 특혜 배제는 타당하며, 협정관세의 수혜자로서 청구법인은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함에 있어 쟁점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한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소홀히 하여 주의의무를 위반

2) 조심 2015관316(2016. 10. 28.)

[한-EU] 일부물품의 경우 사전에 수출자에게 인증수출자 인증일자를 확인하거나 인증서 사본을 요구하여 요건 충족여부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영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 기준 불충족으로 회신된 점, 협정관세 적용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수입자인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 부과는 정당

3) 조심 2015관68(2015. 7. 27.)

[한-EU] 인증수출자 권한은 쟁점물품이 수출자에 의해 만들어지고 영국에서 수출되는 경우에만 유효하므로 쟁점물품은 협정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영국 관세당국으로부터 부여받은 인증수출자번호를 사용하여 독일 수출자가 독일산 쟁점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한 것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정당

4) 조심 2016관3(2016. 5. 16.)

[한-EU] 인증수출자 지위는 영국 관세당국이 부여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인증수출자 인증서상 일자가 수입 신고 당시 수출자의 인증수출자 지위의 진위 여부에 대해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납세의무태에 정당한 사유가 없음

5) 조심 2016관17(2016. 6. 21.)

[한-EU]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인증수출자 인증서를 요구하여 수출자의 인증연도를 확인하는 등의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나타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6) 조심 2017관38·172(2017. 12. 19.)

[한-EU] 쟁점 C/O는 쟁점 판매자의 송품장에 작성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 C/O의 유효성 여부 및 쟁점 판매자의 인증수출자 해당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하는 점, 2001년부터 쟁점판매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온 청구법인이 이를 확인하려고 노력을 기울였다는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가산세 부과 처분은 타당

7) 조심 2017관151(2017. 9. 26.)

[한-EU] 청구법인이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면서 수출자의 인증번호와 인증번호체계의 대조를 통하여 그 인증번호가 한-EU FTA가 발효되기 5년 전에 부여된 것을 알 수 있었던 점, 쟁점물품의 수출 당시 수출자가 유효한 인증수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000 관세당국에 의하여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은 수출자가 유효한 인증수출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

8) 조심 2017관206(2018. 1. 31.)

[한-EU] 쟁점수출자가 쟁점원산지증명서 발급 당시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지 못한 점, 특혜관세를 신청하는 경우 인증수출자 여부 및 인증수출자번호 유효성은 수입자가 기본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는 형식적인 요건에 해당 하는 것인 점, 달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9) 조심 2018관138(2018. 11. 21.)

[한-EU] 관세청장이 공지한 인증수출자번호 체계에 따르면 쟁점 C/O에 기재된 인증수출자번호는 한-EU FTA 발효 이전인 2006년에 부여받은 것으로 보여,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신청 당시 수출자가 유효한 인증수출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산세 부과 적법

10) 조심 2018관205(2019. 1. 4.)

[한-EU]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출자가 인증수출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한 것은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을 실시한 이후인 것으로 보이는 점, 수출자로부터 커미션을 지급받는 판매대리인을 통해 수출자가 인증수출자임을 확인하였고, 판매대리인도 수출자가 인증수출자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수출자가 인증수출자인지의 여부를 미리 확인하지 아니한 책임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11) 조심 2018관206(2019. 1. 4.)

[한-EU] 판매대리인이 수출자와 주고받은 메일들이 쟁점물품의 수출자가 인증수출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출자가 인증수출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한 것은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을 실시한 이후인 것으로 보이는 점, 수출자로부터 커미션을 지급받는 판매대리인이 수출자가 인증수출자임을 확인하여 청구법인에게 알려주었다고 하였으나, 판매대리인 스스로도 수출자가 인증수출자인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수출자가 인증수출자인지의 여부를 미리 확인하지 아니한 책임이 청구법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12) 조심 2019관124(2019. 12. 26.)

[한-EU] 청구법인은 수출자에 해당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인증수출자도 아니고, 쟁점수출자가 인증수출자에 해당한다는 입증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등 쟁점원산지신고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13) 인천지방법원 2015. 11. 5. 선고 2015구합5134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5. 18. 선고 2015누67924 판결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6두41606 판결

[한-EU]【1심】원고들이 수입한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각 수출자들의 인증수출자번호가 유효하지 않음에 따라 한-EU FTA에 의한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는 없으며 이 사건 물품의 수입 당시 시장접근물량이 남아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들이 WTO 양허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관련기관의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않아 WTO 양허관세 중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물품에 대한 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인증수출자번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한-EU FTA에 따른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는 없지만, 원고들은 수출자들의 인증수출자번호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만약 원고들이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사실을 알았다더라면 WTO 양허관세의 추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원고들에게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2심】① 원고들은 수출자들에게 인증수출자번호의 구성 체계를 설명하며 유효한 인증수출자번호를 요구하는 등 인증수출자번호의 구성 체계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이전에 이 사건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을 적용받은 적도 있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물품을 수입신고하기 전부터 수출자들이 알려준 인증수출자번호가 수출자들이 알려준 인증수출자번호가 구성 체계에 맞지 않는 번호라거나 인증수출자번호가 아닌 EORI 번호라

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알 수 있었던 점, ② 피고가 원고들에게 수입 물품 원산지 검증을 위한 서면조사 실시를 통지한 후 약 한 달 이내에 각 인증수출자번호에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알려온 것으로 볼 때, 수출국의 세관 등에 연락하여 인증수출자번호가 유효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워 보이지는 않는 점, ③ 신고납세방식 아래에서는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납세신고를 함에 있어서 수입 신고서에 물품의 세율 등을 기재하여 신고함과 아울러 세관장은 수입신고 수리한 후에 비로소 심사할 수 있는 것이며 수입 당시 인증수출자번호에 오류가 있음에도 관세 공무원이 수입신고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검증과정에서 인증수출자번호의 오류를 발견한 이상, 이러한 사정만으로 인증수출자번호의 오류가 관세 공무원조차 알 수 없는 것이어서 원고들에게 그 오류를 파악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들은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인증수출자번호가 유효하지 않아 이 사건 물품의 수입에 협정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면 WTO 양허관세 미추천 세율 50.6%가 적용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신고 납세의 의무를 해태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3심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됨

14) 서울행정법원 2018. 5. 31. 선고 2017구합8304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0. 16. 선고 2018누52138 판결

대법원 2019. 2. 18. 선고 2018두61345 판결

[한-EU][2심]관세법은 원칙적으로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고(관세법 제38조 등 참조), 신고납세방식 아래에서는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납세신고를 함에 있어서 수입신고서에 관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따라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세율·세액 등을 기재하여 신고함과 아울러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또한, 자유무역협정 관세법 제10조 제1항, 제7항에 따르면, 수입자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때에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은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비로소 심사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관련 법령의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인증수출자번호에 오류가 있음에도 관세 공무원이 원고의 수입신고를 그대로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유효하지 아니한 인증수출자번호에 의하여 수입신고한 것이 정당시 된다거나 원고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보기 어려움

※ 원고는 1심에서 가산세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다가 2심에서 가산세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고, 3심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됨

나. 원산지신고서 유효성 확인 소홀

나-①.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1) 조심 2016관227(2017. 3. 16.)

[한-EFTA] 청구법인은 한-EFTA에 규정된 기재요령에 부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재발행된 인도증서를 제출한 점,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 등에 의한 원산지신고서를 스위스 수출자가 작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법인은 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한지 여부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유효하지 아니한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2) 조심 2019관124(2019. 12. 26.)

[한-EU] 청구법인은 수출자에 해당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인증수출자도 아니고, 쟁점수출자가 인증수출자에 해당한다는 입증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등 쟁점원산지신고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나-②. 비당사국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신고서)를 작성한 경우

1) 조심 2016관4(2016. 6. 30.)

[한-미] 비당사국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점, 추가자료 제출기한을 경과하여 생산자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납부세액의 부족에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2) 조심 2016관233(2017. 11. 2.)

[한-EU]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원산지신고서류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작성자 서명까지 문제삼아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신고서가 비당사국 판매자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도 적법

3) 조심 2017관1(2017. 4. 5.)

[한-EU]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신고서가 비당사국 판매자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관세청장의 수정수

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에도 원산지신고서의 형식적 요건(발급권자, 서명 등)을 위반하여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예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 부과는 적법

4) 조심 2017관57(2017. 7. 3.)

[한-캐나다] 한-캐나다 FTA 제4.1조 및 제4.21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는 당사국 수출자가 발급한 것이어야 함에도 비당사국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도 유효한 것으로 오인한 것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조심 2018관142(2018. 11. 19.)

[한-캐나다] 쟁점물품의 거래는 제3국 송장방식 거래이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캐나다로 인지하게 된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의 2015.12.16.자 원산지증명서에도 송하인이 OO로 기재되어 있으며, 한-캐나다 FTA에 원산지증명서는 수출당사국의 수출자가 작성하고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출자가 비당사국의 판매자로 기재된 쟁점원산지증명서의 작성자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임에도 청구법인에게 쟁점원산지증명서가 비당사국 판매자에 의해 발급되었음을 사전에 확인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가산세 면제 정당한 사유 없음

나-③. 기타 원산지신고서 유효성 확인 소홀

1) 조심 2017관71(2017. 6. 30.)

[한-EFTA]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제3국 판매 물품임을 감안하여 직접 운송원칙준수 여부 및 협정 당사국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 발급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수입자로서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협정관세 적용신청 시 소지한 원산지신고서는 수입신고건별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에 복수로 작성되었고 각 원산지신고서 하단에는 홍콩 판매자의 상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며 유효기한이 경과된 원산지신고서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정확한 확인 없이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였을 뿐 아니라, 원산지 서면조사 이전 자율점검단계에서 이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확인을 소홀히 한 것은 의무태를 닦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2) 조심 2018관25(2018. 4. 19.)

[한-인도] 청구법인은 협정관세 적용신청시 유효하지 아니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점, 쟁점원산지신고서의 하자는 청구법인이 확인할 수 있었고 인도 수출검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그 진위여부 및 내

용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법인이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은 FTA 특례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다. 수출자와 수입자가 특수관계임에도 원산지, 인증수출자 등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1) 조심 2015관224·2016관64(2016. 12. 19.)

[한-아세안] 청구법인과 수출자는 특수관계로 청구법인이 수출자를 통제하고 있으며 비원산지재료를 청구법인이 구매하여 수출자에게 제공하고 있어, 쟁점물품이 부가가치기준을 불충족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인해 청구법인의 통제를 받는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부가가치기준이 아닌 “CC+SP”로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협정관세 적용물품의 원산지 증빙의무는 원칙적으로 수입자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 부과는 적법

2) 조심 2015관290·291(2016. 6. 20.)

[한-EU] 영국 관세당국이 한 [EU FTA가 발효된 영국내 수출자들에게 우리나라를 수출상대국으로 추가하도록 안내하였음에도 쟁점수출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청구법인과 수출자는 특수관계에 있어 청구법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수출자의 인증자격에 대해 쉽게 파악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3) 조심 2017관142·2018관53(2018. 7. 9.)

[한-아세안] FTA에 따른 협정관세는 수입자 자신의 책임 하에 적용받는 것이어서 수입자가 원산지의 유효성 확인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것인 점(조심 2015관82, 2016. 6. 7. 같은 취지),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는 특수관계에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원재료에 대한 자료를 쉽게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초 싱가포르 관세당국이 쟁점수출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라 쟁점물품이 CTH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1차 검증회신하였던 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및 쟁점원재료에 대하여 사전심사 등을 신청하여 정확한 품목번호를 확인하였다거나 쟁점물품의 CTH기준 충족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확인하려고 노력하였다는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라-①. 원산지 불충족에 의심이 있거나 인지하고 있는 경우

1) 조심 2015관224·2016관64(2016. 12. 19.)

[한-아세안] 청구법인과 수출자는 특수관계로 청구법인이 수출자를 통제하고 있으며 비원산지재료를 청구법인이 구매하여 수출자에게 제공하고 있어, 쟁점물품이 부가가치기준을 불충족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인해 청구법인의 통제를 받는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부가가치기준이 아닌 “CC+SP”로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협정관세 적용물품의 원산지 증빙의무는 원칙적으로 수입자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 부과는 적법

2) 조심 2017관122(2017. 11. 16.)

[한-캐나다] 원산지증명서에서 원산지결정기준이 완전생산기준인 A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물품의 제조에 사용된 직물의 원산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임에도, 수출자에게 확인을 요구하거나 문제 제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검증 자율점검표에서 청구법인 스스로도 완전생산기준은 쟁점물품인 의류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 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3) 조심 2017관179(2017. 12. 19.)

[한-EFTA] 계약서상 쟁점물품 원산지가 스위스 또는 스페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사전에 의심의 여지가 충분하여 수입자가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

4) 조심 2016관209(2017. 7. 3.)

[한-아세안] 청구법인은 장기간에 걸쳐 말레이시아 및 다른 국가로부터 쟁점물품 및 동일물품을 수입하고 있어 아세안지역에서 해바라기씨가 수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쟁점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CTH, WO, WO-AK 100%, RVC 100% 원산지기준이 달성될 수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협정관세 적용물품에 대한 원산지의 입증책임은 협정관세율 적용신청자인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하고 원산지증명서를 수출국 관세당국이 발급한다고 하여 그러한 책임이 모두 면책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납세의무자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라-②. 기타 수입자가 원산지 확인 주의 의무 소홀

1) 조심 2015관292(2016. 6. 8.)

[한-EU] 스페인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기준 불충족을 회신받은 점, 인증수출자 자격은 수입 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점, 청구법인은 사전에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였다고 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는 제시되지 않은 점 그리고 달리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볼 수 없는바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정함

2) 조심 2015관82(2016. 6. 7.)

[한-아세안]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검증이 수출자의 행위에 영향을 받는 측면이 있긴 하나, FTA에 따른 협정관세는 수입자 자신의 책임하에 적용받는 것이므로 수입자는 원산지의 유효성 확인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점, 청구법인에게 달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3) 조심 2015관257(2016. 6. 7.)

[한-아세안]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검증이 수출자의 행위에 영향을 받는 측면이 있긴 하나, FTA에 따른 협정관세는 수입자 자신의 책임하에 적용받는 것이므로 수입자는 원산지의 유효성 확인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점, 청구법인에게 달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4) 조심 2017관142·2018관53(2018. 7. 9.)

[한-아세안] FTA에 따른 협정관세는 수입자 자신의 책임하에 적용받는 것이어서 수입자가 원산지의 유효성 확인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것인 점(조심 2015관82, 2016. 6. 7. 같은 취지),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는 특수관계에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원재료에 대한 자료를 쉽게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초 싱가포르 관세당국이 쟁점수출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라 쟁점물품이 CTH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1차 검증회신 하였던 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및 쟁점원재료에 대하여 사전심사 등을 신청하여 정확한 품목번호를 확인하였다거나 쟁점물품의 CTH기준 충족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확인하려고 노력하였다는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5) 부산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6구합23470 판결

[한-아세안]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은 수입자의 책임하에 적용받은 것으로 수입자가 원산지의 유효성 확인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수출자가 품명을 실제 품명과 다르게 기재하게 된 것은 단순 착오가 아닌 판매자 내지 원고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며, 원고로서는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품명과 실제 수입하는 물품이 다른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 부과는 적정함

마. 수출자가 제공한 원산지증명서를 만연히 신뢰하고 추가 확인하지 않은 경우

1) 조심 2016관209(2017. 7. 3.)

[한-아세안] 청구법인은 장기간에 걸쳐 말레이시아 및 다른 국가로부터 쟁점물품 및 동일물품을 수입하고 있어 아세안지역에서 해바라기씨가 수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쟁점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CTH, WO, WO-AK 100%, RVC 100% 원산지기준이 달성될 수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협정관세 적용물품에 대한 원산지의 입증책임은 협정관세율 적용신청자인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하고 원산지증명서를 수출국 관세당국이 발급한다고 하여 그러한 책임이 모두 면책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납세의무자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2) 서울행정법원 2018. 3. 30. 선고 2017구합67278 판결

[한-미] ① 이 사건 증명서에는 OOOO가 이 사건 물품의 생산자이자 발급자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물품은 호 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여야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증명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생산자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과정을 거쳤다면 정유회사가 아닌 OOOO는 이 사건 물품의 생산자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고, 이 사건 협정은 원산지에 대한 자율증명 제도를 채택하면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그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과하고 사후검증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OOOO에 대한 피고의 검증절차에서 원산지 증명이 문제될 것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더욱이 이 사건 증명서는 이 사건 협정에 따른 권고서식을 따르면서도 원산지협정기준에는 권고서식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의미도 불분명한 표기가 되어 있었고, 이를 FTA 관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단순 착오기재라 하기도 어려워 보여 기재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하여 의심을 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원고는 피고가 원산지 조사를 개시할 때까지 이 사건 증명서만을 만연히 신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기본세율을 적용한 관세 등의 신고·납부 의무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3) 인천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구합5011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0. 16. 선고 2018누38705 판결

대법원 2019. 2. 18. 선고 2018두62225 판결

[한-EU] 【1심】 ① 이 사건 제2 처분은 당초 한-EU FTA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이 아닌 이 사건 제1 물품에 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소 신고·납부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것이지, 영국 관세청의 이 사건 회신이 지연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제1 물품에 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과소하게 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만을 판단하면 족하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관세 및 부가가치세는 납세자의 신고를 전제로 하는 세목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제1 물품에 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받고자 하였다면 사전에 한-EU FTA 및 이 사건 의정서, 구 자유무역협정관세법 등 관계 법령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협정관세율 적용에 필요한 제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스스로 검토하여야 하는 점, ③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수출자에게 한-EU FTA가 발효된 사실 및 인증수출자번호의 기재 방법 등을 단편적으로 고지하였을 뿐, 이 사건 수출자의 기존 인증수출자번호가 한-EU FTA 발효 이전에 부여된 것이어서 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협정관세율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거나 새로운 인증수출자번호로 갱신하여야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않은 점(이에 대하여 원고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실조차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④ 갱신 전 인증수출자인증서에는 인증수출자번호 부여일(1999. 8. 10.)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이를 알기 어려웠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수출자가 제공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만연히 신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위 원산지증명서만으로도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리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인 사유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물품에 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의 이행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1심 판결 내용이 2심, 3심에서 그대로 인정됨

바. 수입자가 스스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했음에도 원산지를 입증하지 못함

1) 조심 2017관42(2017. 9. 14.)

[한-미] 한-미 FTA 제6.19조에 수입자의 증명에 협정적용신청의 기초를 이루고 있을 때에는 수입자가 원산지상품임을 증명할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FTA관세특례법 제8조 및 제10조에 협정적용신청시 수입자의 원산지 증명 의무를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수입자 발행 C/O로 협정적용을 받은 경우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상품임을 입증하지 못하여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되는 이상 청구법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1) 서울행정법원 2014. 11. 14. 선고 2014구합997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7. 23. 선고 2014누72905 판결

[한-아세안] 【2심】원산지증명서에는 원산지결정기준이 'CTH'[Change of Tariff Headings(HS 4단위 세번 변경): 품목분류표상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이 사건 검증 결과 회신에는 위 원산지증명서에 표기된 CTH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나 'RVC[Regional Value Content(역내부가가치): 국내에서 생산활동 등을 통해 창출된 부가가치] 47.08%'는 충족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검증결과 회신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이 수입신고된 물품에 관하여는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한 원고에게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는 1심에서 가산세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다가, 2심에서 가산세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함

2) 조심 2015관316(2016. 10. 28.)

[한-EU] 일부물품의 경우 사전에 수출자에게 인증수출자 인증일자를 확인하거나 인증서 사본을 요구하여 요건 충족여부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영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 기준 불충족으로 회신된 점, 협정관세 적용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수입자인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 부과는 정당

아. 직접운송 입증 필수서류인 통과선하증권 미제출

1) 조심 2015관297·2016관29·2016관30(2016. 6. 29.)

[한-아세안] (가산세) 한·아세안 FTA에서 수입 물품이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통과선하증권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통과선하증권 자체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를 청구법인의 단순 착오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 보기 어려움

2) 조심 2015관298(2016. 6. 30.)

[한-아세안] 수출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의 제출이 협정관세 적용에 필수적임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인니 OO섬에서 통과선하증권을 발급받지 못하였음에도 협정관세 적용신청 시 임의로 협정관세 적용에 필요한 통과선하증권이 아닌 선하증권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어려움

3) 조심 2016관87(2016. 8. 31.)

[한-아세안] 청구법인은 FTA특례고시, FTA적용지침 및 관세청 발간 책자 등에서 통과선하증원에 대하여 규정하거나 설명하고 있는 바가 없고, 수입신고 수리 후에 협정관세를 신청하여 적용받은 사실을 신뢰하였다고 주장하나, 한·아세안 FTA 부속서 3 부록1 제19조는 중간 경유국의 영역을 통하여 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수출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을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FTA특례고시 등은 일반적인 규정 내지 사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그대로 한·아세안 FTA에 관한 이 건에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사후적용신청을 승인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에게 장차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협정관세신청 당시 직접운송원칙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자료 또한 제시하지 않아 직접운송원칙 충족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이 심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처분청의 견해표명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

자. 기타**1) 조심 2017관168(2017. 11. 29.)**

[한-EU] 법률의 부지나 오인은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신고납부제도하에서 협정관세 적용 여부 및 관련 법령 충족 여부는 납세의무자가 확인하여 적정하게 신청하여야 하는 점, 구매물품 전량을 경과기간 이내에 신고할 것인지 분할하여 신고할 것인지는 청구법인의 판단에 따라야 하고, 이에 대한 책임 또한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경과기간 이후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

2) 인천지방법원 2016. 7. 1. 선고 2015구합53286 판결

[한-EU] 원고가 이 사건 계쟁물품에 대한 각 수입신고(2013. 2. 2.부터 2013. 5. 22.까지) 시 협정관세 적용신청이나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내에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을 하지 않았던 이상, 피고가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종전에 신고된 품목번호의 오류가 있다는 관세청의 감사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쟁물품에 대하여 이 사건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은 것에 어떠한 위법 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계쟁물품에 대하여 품목번호의 보정 및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을 할 수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

04 유형화 결과 분석

가.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례(가산세 면제)에 대한 분석

1) FTA 협정관세 적용시 가산세가 쟁점이 사례를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 유무별로 그 내용에 따라 유형화한 결과, 우선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례는 10개 유형으로 나타났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① 원산지검증 요청에 대한 수출국의 회신기한 경과, ② 수출국 기관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 적용, ③ 수출자로부터 제출된 유효한 형식의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 적용, ④ 수출자의 영업비밀인 원산지 정보를 파악 곤란, ⑤ 수출자에게 사전에 원산지기준 충족, 인증수출자 여부 확인, ⑥ 원산지증빙서류의 인정 범위에 대한 양 당사국의 해석 차이, ⑦ 수출국 법령상 서류 보관기관 도과로 원산지검증 실시 불가능, ⑧ 물품에 부착된 원산지 표시를 FTA 원산지로 오인, ⑨ 직접운송 입증 필수서류인 통과선하증권 미제출, ⑩ 기타의 경우로 나뉜다.

2) 위 유형 중 ① 원산지검증 요청에 대한 수출국의 회신기한 경과, ⑥ 원산지증빙서류의 인정 범위에 대한 양 당사국의 해석 차이, ⑦ 수출국 법령상 서류 보관기관 도과로 원산지검증 실시 불가능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과 법원이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위 유형 중 ② 수출국 기관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 적용, ③ 수출자로부터 제출된 유효한 형식의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 적용, ④ 수출자의 영업비밀인 원산지 정보를 파악 곤란, ⑤ 수출자에게 사전에 원산지기준 충족, 인증수출자 여부 확인, ⑧ 물품에 부착된 원산지 표시를 FTA 원산지로 오인, ⑨ 직접운송 입증 필수서류인 통과선하증권 미제출 경우는 해당 유형의 내용을 포함하여 다른 유형과 결합, 수입자의 주의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례(가산세 면제)〉

순번	내용	사건번호
1	원산지검증 요청에 대한 수출국의 회신기한 경과	2015관20, 2015관128 2015관195, 2015관277 2015관296, 2015관316 2015관319, 2015관331 2015관335, 2015관137 2015관144 대법원2015두50399
2	수출국 기관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 적용	2016관172·190·191
3	수출자로부터 제출된 유효한 형식의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 적용	2020관61 서울고법2017누33031
4	수출자의 영업비밀인 원산지 정보를 파악 곤란	2017관110, 2019관93 서울고법2017누33031
5	수출자에게 사전에 원산지기준 충족, 인증수출자 여부 확인	2017관110, 2019관93 2018관84
6	원산지증빙서류의 인정 범위에 대한 양 당사국의 해석 차이	2019관38, 2019관42 2019관43, 2019관52 2019관89
7	수출국 법령상 서류 보관기관 도과로 원산지검증 실시 불가능	2013관60 서울행법2014구합54424
8	물품에 부착된 원산지 표시를 FTA 원산지로 오인	서울고법2017누33031
9	직접운송 입증 필수서류인 통과선하증권 미제출	2015관65, 2016관43
10	기타 - 사실상 원산지기준을 충족 - 선행사건에서 본세 관련 쟁점이 인용	2015관203 2015관23

1)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는 사례는 9개 유형으로 나타났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① 인증수출자 자격(권한) 여부에 대한 확인 의무 소홀, ② 원산지신고서 유효성 확인 소홀, ③ 수출자와 수입자가 특수관계임에도 원산지, 인증수출자 등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④ 수입자가 원산지 확인 주의 의무 소홀, ⑤ 수출자가 제공한 원산지증명서를 만연히 신뢰하고 추가 확인하지 않은 경우, ⑥ 수입자가 스스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했음에도 원산지 입증하지 못함, ⑦ 수출국에서 원산지검증 회신기한을 경과하였고,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⑧ 직접운송 입증 필수서류인 통과선하증권 미제출, ⑨ 기타의 경우로 나뉜다.

2) 위 유형 중 ① 인증수출자 자격(권한) 여부에 대한 확인 의무 소홀, ② 원산지신고서 유효성 확인 소홀, ⑥ 수입자가 스스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했음에도 원산지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세심판원과 법원이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위 유형 중 ③ 수출자와 수입자가 특수관계임에도 원산지, 인증수출자 등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④ 수입자가 원산지 확인 주의 의무 소홀, ⑤ 수출자가 제공한 원산지증명서를 만연히 신뢰하고 추가 확인하지 않은 경우, ⑦ 수출국에서 원산지검증 회신기한을 경과하였고,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⑧ 직접운송 입증 필수서류인 통과선하증권 미제출한 경우는 해당 유형의 내용을 포함하여 다른 유형과의 결합, 수입자의 주의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결정하고 있다.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는 사례(가산세 부과)〉

순번	내용	사건번호
1	인증수출자 자격(권한) 여부에 대한 확인 의무 소홀	2015관183, 2015관316 2015관68, 2016관3 2016관17, 2017관38·172, 2017관151, 2017관206 2018관138, 2018관205 2018관206, 2019관124 대법원2016두41606 대법원2018두61345
2	원산지신고서 유효성 확인 소홀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2016관227, 2019관124
	비당사국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신고서)를 작성	2016관4, 2016관233 2017관1, 2017관57 2018관142
기타	2017관71, 2018관25	
3	수출자와 수입자가 특수관계임에도 원산지, 인증수출자 등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2015관244·2016관64 2015관290·291 2017관142·2018관53
4	수입자가 원산지 확인 주의 의무 소홀	
	원산지 불충족에 의심이 있거나 인지하고 있는 경우	2015관244·2016관64 2017관122, 2017관179 2016관209
	기타	2015관292, 2015관82 2015관257, 2017관142·2018관53 부산지법2016구합23470
5	수출자가 제공한 원산지증명서를 만연히 신뢰하고 추가 확인하지 않은 경우	2016관209 서울행법2017구합67278 대법원2018두62225
6	수입자가 스스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했음에도 원산지 입증하지 못함	2017관42
7	수출국에서 원산지 검증 회신기한을 경과하였고,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서울고법 2014누72905
8	직접운송 입증 필수서류인 통과선하증권 미제출	2015관297·2016관29·30, 2015관298, 2016관87
9	기타	
	- 협정관세 적용 관련 경과규정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 협정관세 사후 신청기간(수리후 1년) 이후 품목분류를 변경하고 협정관세 배제	2017관168 인천지법2015구합53286

PART 03

가산세 유형별 쟁송 사례 소개

01 사례 소개 순서

1. 사례 소개 순서

목차의 PART 02. 가산세 징송 사례 유형화 순번으로 소개

02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례 (가산세 면제)

가. 원산지 검증 요청에 대한 수출국의 회신기한 경과

1) 조심 2015관20(2015. 5. 8.)

[주 문]

세관장이 2014.8.27. 청구인에게 한 관세 〇〇〇원, 부가가치세 〇〇〇원 및 가산세 〇〇〇원 합계 〇〇〇원의 부과처분은 한-EU FTA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배제에 따른 가산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수출자로부터 보조사료(이하 “쟁점물품”)를 수입하면서, 수출자 발행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한-EU FTA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여 이를 수리받았다.

나. 처분청은 수입신고서에 한-EU FTA 할당물량 적용추천번호가 기재되지 않아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서면검증을 진행한 후 원산지신고서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으나 회신 기한을 2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야 쟁점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한다는 결과가 회신됨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한편, 청구인이 미신고한 수량에 대한 추가 과세가 필요한 것으로 보아 2014.8.27. 청구인에게 관세 〇〇〇원, 부가가치세 〇〇〇원 및 가산세 〇〇〇원 합계 〇〇〇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① 한-EU FTA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원산지 검증결과가 기한내 미회신된 것을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②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 수입신고시 WTO 농림축산물 양허관세 추천서를 미제출하였다고 하여 WTO 양허관세 미추천 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③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 (1)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번호 · 품명 및 적용가능한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 (2)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원산지조사 및 검증의뢰에 관한 경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3) 관세청장은 처분청에 ‘한-EU FTA 특혜수입 보조사료 검증결과 회신 통지’라는 제목으로 회신문 사본과 이메일 표지를 첨부하여 아래와 같이 검증결과를 통지한 바 있다.
 - (4)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체약상대국 원산지 확인요청 사실 통지’란 제목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원산지신고서의 진위여부 및 원산지확인을 위하여 수출당사국에 원산지확인을 요청하였음을 통지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도 함께 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 또한, 원산지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10개월 이내에 결과가 회신되지 않은 경우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회신내용에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FTA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4호에 따라 특혜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5) 청구법인의 수입신고서에는 수입사료신고필증만 기재되어 있을 뿐 한-EU FTA 관세율할당물량 적용 추천서 및 WTO 농림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서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 (6) ‘WTO 양허관세 추천 관련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이란 제목으로 청구인이 한-EU FTA 관세율할당물량 적용

추천서를 발급받은 날짜인 2011.11.18. 기준 WTO 농림축산물 양허관세 추천가능물량이 다음과 같음을 확인하여 준바 있다.

(7) 처분청은 서면조사시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출자가 무상으로 제공한 ○○○을 미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경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세액경정고지서를 통하여 확인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은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요청한 날(2013.5.8.)로부터 10개월의 회신기한(2014.3.8.)을 2개월 이상 경과한 2014.5.13.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는 유효하다'는 회신을 한 점, 세관장은 FTA특례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원산지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회신기한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회신기한을 2개월 이상 경과하여 회신이 이루어진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73조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 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양허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양허관세 추천서를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양허관세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WTO 농림축산물 양허관세 미추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건은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원산지 검증결과가 회신기간을 경과하여 도착하였으나 원산지가 수출국임이 확인되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였고,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회신기간 경과를 근거로 하고 있으나 그 회신기간 경과 책임은 청구인의 과실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는 바, 원산지 검증결과 회신지연을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허관세 미추천 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발생한 부족세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의 의무해태를 탓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협정관세 적용배제에 따른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수출자가 무상으로 제공한 물량을 미신고하여 발생한 부족세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의무해태가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그 부족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조심 2015관128(2015. 11. 24.)

[주 문]

세관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가산세 〇〇〇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한·아세안 FTA(또는 “협정”)에 따른 협정세율(0%) 적용을 신청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서면으로 원산지조사를 실시하면서, 한·아세안 FTA 제5조 및 부속서 3, FTA특례법 제13조에 따라계약상대국 관세당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다.

다. 처분청은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회신기한까지 검증결과가 회신되지 않자, 청구법인에게 미회신 상황을 통지하며 원산지 검증결과 회신을 독려하였고, 이와 더불어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에도 검증결과 회신을 독촉하는 이메일(e-mail)을 보내고, 검증결과를 회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이 연장된 회신기한까지 아무런 의사표시도 없이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않자,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하겠다는 과세전통지를 하였다.

라. 처분청의 과세전통지 이후,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은 회신기한이 경과된 처분청에게 검증결과를 이메일(e-mail)로 통보한 후, 우편물로 검증결과와 검증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게 송부하였으나, 처분청은 FTA특례법 제16조 제1항에 근거하여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의 검증결과가 회신기한 이내에 회신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쟁점물품에 대해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관세 〇〇〇원, 부가가치세 〇〇〇원 및 가산세 〇〇〇원 합계 〇〇〇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① 한·아세안 FTA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원산지 검증결과가 회신기한 이내에 회신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② 회신기한은 경과하였으나, 검증결과가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회신된 경우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한·아세안 FTA에 따른 협정세율 적용을 신청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해 원산지조사를 실시하면서, 협정 및 FTA특례법에 근거하여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쟁점물품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등에 대한 국제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고, 이어 청구법인에게 국제원산지 검증 요청사실과 회신기한 이내에 검증결과가 미회신될 경우 협정관세가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을 통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회신기한까지 검증결과가 회신되지 않자, 청구법인에게 검증결과 미회신 상황과 연장된 회신기한까지 검증결과가 미회신될 경우 협정관세가 배제되므로 조속한 회신을 독려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아울러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도 검증결과가 당초 회신기한까지 회신되지 않았다는 점과 ○○○까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여 줄 것을 다시 요청하는 동시에 연장된 회신기한까지 검증결과가 회신되지 않을 경우 협정 부속서 3의 부록 1 제17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배제할 것임을 통지하였으며, 이어 청구법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처분청은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검증결과가 회신되지 않자,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기본관세율(8%)을 적용할 예정임을 과세전통지하였고, 처분청의 과세전통지 이후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은 연장된 회신기한으로부터 21일이 경과하여 이메일로 검증결과 회신문을 처분청에 송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검증결과가 지연 회신된 사실과 <표1>과 같이 회신 내용을 요약하여 통지하였다.

(마)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이 처분청에 우편으로 송부한 원산지 관련 서류는 다음과 같다.

- ① 쟁점물품의 내부 구조도
- ② 쟁점물품 외관 사진과 각 구성물품 명칭
- ③ 쟁점물품 원재료별 가격구성 내역(원가산출내역서)
- ④ 원재료별 거래명세서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송부된 원가산출내역서에는 쟁점물품의 원재료별 가격구성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물품의 RVC는 모두 000 이상으로 계산되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바, 이를 비용항목별로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바)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해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사) 한편, 청구법인은 계약상대국 수출입국 000수출입사무소가 수출자에게 통보한 문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문서는 수출자가 000수출입사무소에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표3>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한 이상, 회신기한 경과를 이유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를 실시하면서 협정 및 FTA특례법에 근거하여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에 쟁점물품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등에 대한 국제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으나,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은 당초 회신기한까지 원산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않았고, 처분청의 독촉공문에 의해 다시 연장된 회신기한까지도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않은 점, 한-아세안 FTA는 간접검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바, 간접검증 방식의 경우에는 수입국 관세당국이 수출국 관세당국의 검증결과 및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자료를 통보받아 원산지 지위 부여의 타당성 여부를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수출국 관세당국의 성실한 검증 및 합리적인 판정, 판정기초 자료의 제공 등이 검증의 실효성을 좌우하게 되기 때문에 수입국 관세당국이 가지는 검증요청일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은 검증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유일한 통제장치가 되는 점, 세관장은 FTA특례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원산지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회신기한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회신기한을 경과하여 검증결과가 회신된 이

건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펴본다.

처분청은 수차례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수출자가 연장된 회신기한이 임박하여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수출자의 서류제출일로부터 ○○○수출입사무소에서 원산지 검증을 수행한 기간이 불과 일주일에 불과하고, 이메일로 송부된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의 회신문에 쟁점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한다는 명백한 표현이 없고, 송부된 검증 관련 자료는 수출자가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전달한 것에 불과하고 원산지 검증 흔적이 없어 실제적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이 곤란하여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수출입사무소가 수출자에게 회신한 문서에는 수출자가 연장된 회신기한 이전에 ○○○수출입사무소에 최종 서류를 제출하였다고 기재된 점이 확인되고,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처분청에 송부된 검증 관련 서류는 회신기한을 경과하여 송부되기는 하였으나 원가산출내역서에 따라 산출한 역내부가가치비율은 ○○○ 이상으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점,

○○○수출입사무소의 회신문서에 따르면 수출자가 '최종' 서류를 제출하였다고 답변하였는바, 이는 수출자가 그 이전부터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오다가 최종적으로 서류를 보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수출자가 '최종' 서류를 제출한 날이 연장된 회신기한 이전인 점, 송부된 수출자의 원가산출내역서상 쟁점물품의 역내부가가치비율이 ○○○ 이상으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고, 처분청이 검증 관련 서류의 진정성을 부인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은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의 원산지 검증결과가 회신기간을 경과하여 도착하였으나 쟁점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의 회신기간 경과를 근거로 하고 있으나 그 회신기간 경과 책임은 청구법인의 과실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는 바, 원산지 검증결과 회신지연을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발생한 부족세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의무해태를 탓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조심 2015관195(2016. 2. 26.)

[주 문]

세관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한·EU FTA에 의한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고, 이를 수리받았다.

나. 처분청은 관세청장을 통하여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고, 원산지 요건을 충족한다는 내용으로 검증결과가 회신되었으나, 회신기한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한·EU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관세 〇〇〇원, 부가가치세 〇〇〇원 및 가산세 〇〇〇원 합계 〇〇〇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수출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 검증결과가 충족하는 것으로 회신되었으나 회신기한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한·EU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회신기한을 경과하였으나 원산지기준을 '충족'한다는 내용으로 회신되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원산지 검증 관련 문서, 심판청구 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한·EU FTA에 의한 협정관세를 신청하여 적용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하여 스스로 그 적정성 여부 및 오류사항을 점검·시정하도록 '원산지 자율점검'을 안내하였고, 쟁점물품의 한·EU FTA 원산지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원산지신고서상 기재된 인증수출자번호가 체약상대국의 인증수출자번호체계와 상이하고, 쟁점물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검증을 요청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서면 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관세청장은 한·EU FTA 의정서 제27조 및 FTA특례법 제13조에 따라 회신기한을 기재하여 우편으로 검증 요청서를 발송하였고, 이는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도달하였으며, 회신기한 경과 전에 두차례에 걸쳐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전자메일로 회신을 독촉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위 독촉사실 및 회신기한 내 미회신시 협정관세를 배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하였다.

(마) 체약상대국에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실제 수행한 기관은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그 결과를 보고하였고,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EU FTA의 원산지 요건을 충족한다는 내용의 검증결과를 회신하였으며, 관세청장은 이를 접수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은 한·EU FTA에서 정하고 있는 회신기한인 10개월을 약 2개월 경과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의 검증결과를 회신한 점, 한·EU FTA는 간접검증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수출국 관세당국의 검증절차는 검증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유일한 통제장치이고, 이는 협정관세 적용의 절차적 요건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FTA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서 수출국 관세당국이 원산지 검증 회신기한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회신기한을 경과하여 검증결과가 회신되었음을 이유로 처분청이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이 회신기한을 경과하여 원산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였
긴 하나, 쟁점물품이 한·EU FTA의 원산지 요건을 충족한다는 내용으로 최종 회신하였고, 회신기한 경과의 책임
을 청구법인에게만 지우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의무해태를 탓하기는 어려워 보이므
로 처분청이 이 건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 조심 2015관277(2016. 5. 17.)

[주 문]

세관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수출자로부터 중고 크레인 및 그 부분품(이하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한-EU FTA에 따른 협정 관세(협정관세율 0%)를 적용받아 수입통관하였다.

나. 처분청은 관세청을 통하여 수출국 관세당국에 쟁점물품의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여 쟁점물품이 원산지물품에 해당하고 수출자가 유효한 인증수출자임을 통보받았으나, 검증결과가 회신기한을 경과하여 회신되었다는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관세 〇〇〇원, 부가가치세 〇〇〇원 및 가산세 〇〇〇원 합계 〇〇〇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수출국 관세당국의 검증 회신 지연이 처분청의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능장 대응’에 기인하였으므로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직권심리)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처분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인 중고 크레인 및 그 부분품을 수입하면서 한-EU FTA 협정관세(협정관세율 0%)를 적용받아 수입통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장기간 EU역내에서 사용된 후 수출된 중고물품이고 수출자가 쟁점물품을 생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한-EU FTA에 따른 원산지 불충족 위험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법인에게 서면조사 통지하고 원산지 검증에 착수한 후, 관세청을 통하여 쟁점물품에 대해 합리적 의심사유와 회신기간(요청일로부터 10개월 이내)을 기재하여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검증)을 요청하였고, 그 사실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회신기간이 임박함에도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회신이 없자 검증독촉공문을 발송하며 미회신시 협정관세적용을 배제할 것임을 통보하였으나,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은 모두 회신기간을 경과하여 쟁점물품이 원산지물품에 해당하고, 수출자가 유효한 인증수출자임을 회신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회신기간 이내에 원산지 확인결과가 미회신되었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에 적용된 협정관세를 배제하여 면제된 관세 등을 추징할 것임을 청구법인에게 과세전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세관장이 청구법인의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관세 〇〇〇원, 부가가치세 〇〇〇원 및 가산세 〇〇〇원 합계 〇〇〇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은 관세청을 통하여 원산지 검증 요청 공문에 수출자, 수입자(청구법인), 인보이스 번호 등을 기재하고, “EU역내에서 제작되어 수년간 사용된 후 수출된 중고물품으로서, 동 중고물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동 수출자가 자격있는 인증수출자인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과 “요청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검증결과를 회신하여 줄 것”을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요청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 등을 수신인으로 하여 체약상대국 원산지확인요청 사실통지서 및 원산지확인요청 수입신고목록을 첨부한 ‘한-EU FTA 협정적용 수입크레인(부분품) 체약상대국 원산지 확인요청 사실 통지’ 공문을 발송하였다.

(4) 처분청(관세청)은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요청한 원산지 검증에 대하여 아무런 결과도 회신받지 못하였으며, 한-EU FTA 의정서 제27조 제7항에 따른 회신기한까지 최대한 신속한 방법(promptest manner)으로 회신하여 줄 것을 바란다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은 회신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쟁점물품은 원산지물품이며 수출자는 유효한 인증수출자

임을 처분청(관세청)에 회신하였다.

(5) 관세청장은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에 한-EU FTA 의정서 제27조 제7항에 따른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신지연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은 이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않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청장의 한-EU FTA에 따른 원산지 검증회신의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한-EU FTA 의정서 제27조 제7항의 예외적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수출자 및 수출국 관세당국의 통제가 불가능한 특정한 상황(force majeure)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한-EU FTA에서 구체적인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수출자와 수출국 관세당국의 귀책사유, 검증대상물품에 대한 검증의 특수성, 회신지연 상황에 대한 중간회신 여부 등 검증사안의 여러 특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구체적인 사안별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하도록 회신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회신기한을 불과 28일 앞두고 회신독촉공문을 발송하는 느장 대응을 함으로써 수출국 관세당국이 회신지연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에 국제 원산지 간접검증을 요청하였고 그 사실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으며, 이후 회신기한이 임박하자 그 사실 등을 알리며 회신을 독촉하는 내용의 서한을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에 보냈을 뿐만 아니라, 계약상대국의 지연 회신 사유에 대하여도 관세당국에 문의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한-EU FTA 및 FTA특례법령에 따라 원산지 검증절차를 충실하게 이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직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최종적으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회신되어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원산지물품인 사실이 확인되는 점, 회신기간 경과에 대한 책임의 상당 부분은 청구법인이 아닌 수출국 관세당국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납세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조심 2015관296(2016. 6. 21.)

[주 문]

세관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〇〇〇원, 부가가치세 〇〇〇원 및 가산세 〇〇〇원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〇〇〇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건설기계 판매 및 임대를 하는 업체로서, 수출자로부터 중고 크레인(이하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한-EU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관세청장을 통하여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검증)을 요청하였고 회신기한이 임박함에도 회신이 없자 검증독촉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회신기한을 경과하여 쟁점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회신함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관세 〇〇〇원, 부가가치세 〇〇〇원 및 가산세 〇〇〇원 합계 〇〇〇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① 원산지 검증결과의 기한내 미회신을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② 원산지 확인요청 사실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이 적법한 처분인지 여부
- ③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건설기계 판매 및 임대를 하는 업체로, 수출자로부터 중고 크레인 수입하면서 한-EU FTA 협정 관세(협정세율 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장기간 EU역내에서 사용된 후 수출된 중고물품이고 수출자가 쟁점물품을 생산한 생산자가 아니므로 한-EU FTA 원산지 불충족 위험이 높을 것이라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서면조사 사실을 통지하고 원산지 검증에 착수하였다.

(다) 처분청은 관세청장을 통하여 쟁점물품에 대해 합리적 의심사유와 회신기간(요청일로부터 10개월 이내)을 기재하여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검증)을 이메일로 요청하였고 그 원본 서류는 국제우편(EMS)으로 발송하였으며, 그 사실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처분청은 회신기간이 임박함에도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회신이 없어 검증 독촉 공문을 발송하며 회신기한 이내에 미회신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할 것임을 통보하였으나 회신기간 이내에 원산지 확인 결과가 회신되지 아니하자, 청구법인에게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 ○○○원을 과세할 예정임을 과세전통지하였다.

(마) 처분청은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쟁점물품 중 5건은 원산지 물품이고 3건은 원산지 물품이 아니라는 검증결과가 회신됨에 따라 그 사실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과세전통지에 대하여 세관장에게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이후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은 원산지 물품이 아니라고 회신한 3건에 대해서 원산지 물품이라고 검증결과를 반복하여 회신하였다.

(바) 처분청은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회신지연 사유가 한-EU FTA 의정서 제27조 제7항에 규정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예외적인 경우로 간주될 수 있는 회신지연 사유를 서면으로 답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은 수출자가 13건의 검증요청 중 일부에 대해 원산지증빙서류를 미제출함에 따라 13건의 검증결과를 한꺼번에 회신하기 위하여 수출자의 서류제출을 기다리다가 회신기한을 경과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사) 세관장은 청구법인의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단,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정 처리 기한을 초과한 결정 지연 기간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의 가산세 계산의 기간에서 제외한다”라는 결정을 하였다.

(아) 처분청은 위 과세전 적부심사 결정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〇〇〇원, 부가가치세 〇〇〇원 및 가산세 〇〇〇원 합계 〇〇〇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서울〇〇우체국이 발급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는 “수취인의 주거 및 성명 : 서울 구로구 〇〇〇 청구법인명 허〇〇, 등기번호 : 〇〇〇, 배달년월일 : 〇〇〇, 적요 : 회사동료 이〇〇 수령”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수취인의 주거는 청구법인이 인터넷등기소에서 출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본점 주소와 일치한다.

(3) 청구법인이 연금공단 통합징수포털에서 출력한 청구법인의 ‘개인별 연금보험 고지 산출내역’에 가입자는 허〇〇, 박〇〇, 허〇〇, 심〇〇, 이〇〇, 홍〇〇 등 6명만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e-mail 사본은, “보낸 사람 : 이〇〇, 보낸 시간 : 〇〇〇, 받는 사람 : 〇〇〇”로 되어 있고, 본문 내용 중에 “청구법인명 이〇〇 입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며, 하단 발신인 기재 부분에는 “이〇〇, 서울 구로구 〇〇〇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이 제목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관련’의 문서에 첨부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사유서에는 “당사에서는 귀 세관에서 시행된 ‘한-EU FTA 협정적용 수입 크레인(부분품) 계약상대국 원산지 확인 요청 사실통지’를 받은바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청장의 한-EU FTA에 따른 원산지 검증회신의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한-EU FTA 의정서 제27조 제7항의 예외적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수출자 및 수출국 관세당국의 통제가 불가능한 특정한 상황(force majeure)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한-EU FTA에서 구체적인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수출자와 수출국 관세당국의 귀책사유, 검증대상물품에 대한 검증의 특수성, 회신지연 상황에 대한 중간회신 여부 등 검증사안의 여러 특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구체적인 사안별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하도록 회신하였다.

(6) 관세청장은 세관장들에게 아래 “국제간접검증 회신기한 경과건 처리방안 안내”를 시달하였다.

〈국제간접검증 회신기한 경과건 처리방안 안내(발췌)〉

(7) 한편,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청장의 또 다른 질의에 대하여 “한-EFTA FTA 협상 당시의 교섭기록 및 그 체결 사정 등을 감안할 때 ○○○ 국내법에 따른 3년의 서류보관기간은 협정 부속서의 수출자의 자료보관기간(최장 5년) 조항에 부합하며, 동 조항의 해석에 관한 한-EFTA FTA 공동위원회의 결정은 국내법적 효력이 인정되므로 종전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취소가 가능함을 알립니다”라고 회신하였고, 위 문서에 첨부되어 있고 채택된 ‘한-EFTA FTA 공동위원회 결정서’에는 아래와 같은 한-EFTA FTA 부속서 I 제24조 제7항의 개정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건대, 청구법인은 한-EFTA FTA의 회신기간이 10개월에서 15개월로 연장되었으므로 회신기간인 10개월을 경과한 후 검증결과가 회신되었다는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한-EU FTA와 한-EFTA FTA는 계약상대국이 다른 독립된 별개의 FTA이므로 한-EFTA FTA의 회신기간을 연장하는 개정내용이 한-EU FTA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세관장은 FTA특례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원산지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회신기한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데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은 처분청의 검증결과 회신독촉에도 불구하고 회신기한 경과를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원산지확인요청 사실 통지’를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에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을 요청하였다는 내용의 통지를 발송한 것으로 보이고, ‘우편물 배달증명서’ 상 위 통지는 청구법인에게 배달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 제출한 사유서에서 통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산지 확인요청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비록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의 원산지 검증결과가 회신기간을 경과하여 도착하긴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원산지가 ○○○임이 확인된 점, 회신기간 경과의 책임이 전적으로 청구법인에 계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납세의무해태를 탓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세관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합계 〇〇〇원, 부가가치세 합계 〇〇〇원 및 가산세 합계 〇〇〇원 총 합계 〇〇〇원의 각 부과처분 중 <별지1> 처분내역 기재 연번 22·23의 각 수입물품에 대한 가산세 합계 〇〇〇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수출자로부터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이하 “쟁점물품”)를 수입하면서 한·EU FTA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수입통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서면조사를 실시한 후,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국제 원산지 간접검증을 요청하였으나, 기한을 경과하여 검증결과가 회신되었고, 일부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자가 한·EU FTA에 의한 인증수출자 자격을 부여받기 전에 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하였다는 내용으로 회신되자, FTA특례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관세 합계 〇〇〇원, 부가가치세 합계 〇〇〇원 및 가산세 합계 〇〇〇원 총 합계 〇〇〇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 중 심판청구대상은 검증결과 ‘불충족’으로 회신된 <별지1> 기재 연번 1~21의 각 수입물품에 대한 가산세 합계 〇〇〇원 및 검증결과 ‘충족’으로 회신된 연번 22·23의 각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합계 〇〇〇원, 부가가치세 합계 〇〇〇원 및 가산세 합계 〇〇〇원 총 합계 〇〇〇원이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수출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 검증결과가 충족하는 것으로 회신되었으나, 회신기한을 경과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한·EU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 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한·EU FTA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수입통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서면조사를 실시하였고, 관세청장은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간접검증을 요청하였으며, 회신기한이 임박함에도 원산지 검증결과가 회신되지 아니하자,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회신을 독촉하였다.

(다)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은 회신기한을 약 2주 경과하여 “수출자는 1999.8.10. 인증수출자 자격을 승인받았으나, 한·EU FTA의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자격은 2013.2.12. 승인받았는바, 검증대상 원산지신고서(23건) 중 대부분은 한·EU FTA를 위한 인증일 전에 발급된 것이고, 2건만 유효하게 발급되었다”라는 내용으로 검증결과를 회신하였다.

(라) 처분청은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회신내용 등을 포함한 원산지조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관세 합계 〇〇〇원, 부가가치세 합계 〇〇〇원 및 가산세 합계 〇〇〇원 총 합계 〇〇〇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수출자와 주고받은 메일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확인되는 주요 사실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이 수출자에게 보낸 메일에는 한국과 EU가 FTA를 체결하였고, 한·EU FTA 적용을 위하여 원산지신고서가 필요하다는 등의 내용이 나타나고, 청구인의 운송업자가 수출자에게 보낸 메일에는 원산지 신고문안 기재 방법 등을 안내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으로부터 원산지 서면조사를 통지받은 후에 4차례에 걸쳐 청구인이 수출자에게 보낸 메일에는 쟁점물

품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 경과 등을 알려주면서, 관련 사실에 대한 확인 및 증빙자료 요구 등 협조를 구한 내용이 나타난다.

3) 수출자의 계약상대국내 대리인은 관세당국의 원산지 검증이 진행되던 중에 “수출자가 한·EU FTA가 체결되기 전부터 ‘인증수출자’ 자격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한·EU FTA 체결과 함께 특혜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에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에 대한 회신 독촉 사실을 통보받은 후, 수출자 등에게 보낸 메일에는 원산지 검증결과가 기한 내에 회신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이 건 심판대상 및 그 심리범위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취지 변경서를 제출하여 인증수출자의 인증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하여는 국제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기 전에 원산지신고서에 대한 보정을 요구하였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별지1> 기재 연번 10~21의 각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합계 〇〇〇원 및 부가가치세 합계 〇〇〇원 총 합계 〇〇〇원에 대하여도 심판청구를 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또는 청구이유를 변경(확장)하였으나, 「관세법」 제120조 제1항 및 「행정심판법」 제29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심판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심판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인데, 본세와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처분에 해당하여 가산세에 대한 종전의 심판청구를 들어 본세에 대한 심판청구를 변경(확장)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 및 심리범위는 당초 심판청구서의 범위(‘1. 처분개요’ 기재 참고)로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원산지 검증 회신기한을 경과하더라도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회신된 물품에 대하여는 협정관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FTA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서 수출국 관세당국이 원산지 검증 회신기한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이 한·EU FTA에서 정하고 있는 회신기한인 10개월을 경과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검증결과를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기한을 경과하여 검증결과가 회신된 <별지1> 기재 연번 22·23의 각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세법상의 의무 이행을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사전에 거래상대방인 수출자에게 인증수출자 인증일자를 확인하거나 인증서 사본을 요구하여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별지1> 기재 연번 1~21의 각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검증결과가 회신된 점, FTA 협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수입자인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별지1> 기재 연번 1~21의 각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쟁점물품 중 <별지1> 기재 연번 22·23의 각 수입물품의 경우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기한을 경과하여 회신하였으나,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회신한 점, 회신기한 경과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청구인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부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7) 조심 2015관319(2016. 6. 21.)

[주 문]

세관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가산세 〇〇〇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중고 크레인(이하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한·EU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 신고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

나. 처분청은 관세청장을 통하여 FTA특례법 제13조에 따라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는데, 회신기한을 경과하여 쟁점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회신되자,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기본관세율(8%)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〇〇〇원, 부가가치세 〇〇〇원 및 가산세 〇〇〇원 합계 〇〇〇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한·EU FTA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원산지 검증결과가 기한내 미회신된 것을 이유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해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였고, 관세청을 통해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국제원산지 간접검증을 요청하였는데, 검증요청서에는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쟁점물품이 EU 지역내에 수출된 후 장기간 사용되어 특혜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하는지와 인증수출자의 지위가 유효한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어 검증요청을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국제 원산지 간접검증 요청사실을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당초 검증요청한 내용과 함께 회신기한 내에 검증결과가 회신되지 않을 경우 특혜관세가 배제된다는 내용이 담긴 독촉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은 회신기한을 경과하여 쟁점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한다고 회신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체약상대국 세관장이 수출자 ○○○에게 발송한 공문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공문에는 번호1의 3건은 "원산지 증명이 진실되며 올바르다는 것이 이 문서와 함께 인정"된다는 내용과 검증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았고, 우리나라 관세청에 통보되었다는 취지의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관련 물품의 상세 내역이나 원산지증명서 번호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처분청은 관세청을 통하여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이 건 지연회신이 불가피한 사유(unavoidable causes) 나 다른 특별한 이유(other specific reasons) 때문에 검증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면, 한·EU FTA 의정서 제 27조 제7항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exceptional circumstances)로서의 미회신을 긍정적으로 재검토할 의향(may re-examine)이 있으므로 '예외적인 경우'로 간주될 수 있는 지연사유를 서면으로 즉시 답변해 주길 바란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은 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마) 처분청은 이 건과 관련하여 관세청을 통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였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청장에게 '예외적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수출자 및 수출국 관세당국의 통제가 불가능한 특정한 상황(force majeure)을 의미하나, 다만, 한·EU FTA 협정에서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해당 질의 건은 수출자와 수출국 관세당국의 귀책사유, 검증대상 물품에 대한 검증의 특수성, 회신지연 상황에 대한 중간회신 여부 등 검증사안의 여러 특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구체적인 사안별로 '예외적인 경우'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하라고 회신하였다.

(바) 이에 관세청장은 산하세관장에게 수출국 관세당국이 ① 중간 통보 없이 회신기한을 경과하여 지연 회신한 경우에는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 ② 구체적인 지연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연기 요청할 경우 이를 검토하여 수용 여부를 상대국에 통지할 것, ③ 구체적인 지연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지 않고 연기 요청할 경우 상대국에 사유와

기한을 명시할 것을 요구한 후 상대국의 재요청 내용을 검토하여 수용 여부를 상대국에 통지, ④ 그 밖의 회신 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수출자 및 수출국 관세당국의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인지 여부, 수출자와 수출국 관세당국의 귀책사유, 검증대상 물품의 특수성, 중간 회신 여부 등 검증 사안의 여러 특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단하여 처리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국제 간접검증 회신기한 경과 건 처리 방안 안내” 지침을 시달하였다.

(사) 한편, 청구법인은 수출자 G○○○가 소속한 체약상대국 세관장의 중간통보 사실과 수출자가 회신기한 만료 전에 자료를 제출하였다는 공문을 제출하였으나 쟁점물품의 수출자는 S○○○이므로 위 공문은 쟁점물품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중간회신에는 검증이 진행 중이며 별도 기한의 명시는 없으나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검증결과를 회신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한·EU FTA 제38조(비밀유지)에 따라 동 중간회신의 상세 내용은 기재하지 않는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한·EU FTA 협정은 간접검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쟁점물품에 대한 국제 원산지 검증을 의뢰하였으나,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은 처분청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회신기간인 10개월이내에 원산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않은 점,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중간통보는 검증이 진행 중이며 가급적 빨리 통보하겠다는 내용의 단순 통지에 불과하며, 달리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답변에 회신지연의 ‘예외적인 사유’로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관세청장의 지침은 그 시기상 이 건에 적용하기는 어렵고, 설혹 그 내용을 참고하더라도 이 건의 경우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중간통보에 구체적인 지연사유와 회신기한이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회신기한을 경과하여 국제 원산지 검증결과가 회신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를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회신기한이 경과하긴 하였지만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은 최종적으로 쟁점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한다고 회신한 점, 회신기간 경과의 책임이 전적으로 청구법인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는 납세의무해태를 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세관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가산세 〇〇〇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중고 크레인(이하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한·EU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

나. 처분청은 관세청장을 통하여 FTA특례법 제13조에 따라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는데, 회신기한을 경과하여 쟁점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회신되자,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기본관세율(8%)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〇〇〇원, 부가가치세 〇〇〇원 및 가산세 〇〇〇원 합계 〇〇〇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한·EU FTA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원산지 검증결과가 기한내 미회신된 것을 이유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해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였고, 관세청을 통해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국제원산지 간접검증을 요청하였는데, 검증요청서에는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쟁점물품이 EU 지역내에 수출된 후 장기간 사용되어 특혜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하는지와 인증수출자의 지위가 유효한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어 검증요청을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국제 원산지 간접검증 요청사실을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당초 검증요청한 내용과 함께 회신기한 내에 검증결과가 회신되지 않을 경우 특혜관세가 배제된다는 내용이 담긴 독촉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은 회신기한을 경과하여 쟁점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한다고 회신하였다.

(다) 처분청은 관세청을 통하여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이 건 지연회신이 불가피한 사유(unavoidable causes) 나 다른 특별한 이유(other specific reasons) 때문에 검증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면, 한·EU FTA 의정서 제 27조 제7항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exceptional circumstances)로서의 미회신을 긍정적으로 재검토할 의향(may re-examine)이 있으므로 '예외적인 경우'로 간주될 수 있는 지연사유를 서면으로 즉시 답변해 주길 바란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은 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라) 처분청은 이 건과 관련하여 관세청을 통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였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청장에게 '예외적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수출자 및 수출국 관세당국의 통제가 불가능한 특정한 상황(force majeure)을 의미하나, 다만, 한·EU FTA 협정에서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해당 질의 건은 수출자와 수출국 관세당국의 귀책사유, 검증대상 물품에 대한 검증의 특수성, 회신지연 상황에 대한 중간회신 여부 등 검증사안의 여러 특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구체적인 사안별로 '예외적인 경우'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하라고 회신하였다.

(마) 이에 관세청장은 산하세관장에게 수출국 관세당국이 ① 중간 통보 없이 회신기한을 경과하여 지연 회신한 경우에는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 ② 구체적인 지연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연기 요청할 경우 이를 검토하여 수용 여부를 상대국에 통지할 것, ③ 구체적인 지연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지 않고 연기 요청할 경우 상대국에 사유와 기한을 명시할 것을 요구한 후 상대국의 재요청 내용을 검토하여 수용 여부를 상대국에 통지, ④ 그 밖의 회신 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수출자 및 수출국 관세당국의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인지 여부, 수출자와 수출국 관세당국의 귀책사유, 검증대상 물품의 특수성, 중간회신 여부 등 검증 사안의 여러 특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단하여 처리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국제 간접검증 회신기한 경과 건 처리 방안 안내" 지침을 시달하였다.

(바) 한편, 청구법인은 수출자 G○○○가 소속한 체약상대국 세관장의 중간통보 사실과 수출자가 회신기한 만료 전에 자료를 제출하였다는 공문을 제출하였으나 쟁점물품의 수출자는 S○○○이므로 위 공문은 쟁점물품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중간회신에는 검증이 진행 중이며 별도 기한의 명시는 없으나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검증결과를 회신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한·EU FTA 제38조(비밀유지)에 따라 동 중간회신의 상세 내용은 기재하지 않는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한·EU FTA 협정은 간접검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쟁점물품에 대한 국제 원산지 검증을 의뢰하였으나,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은 처분청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회신기간인 10개월 이내에 원산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않은 점,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중간통보는 검증이 진행 중이며 가급적 빨리 통보하겠다는 내용의 단순 통지에 불과하며, 달리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답변에 회신지연의 '예외적인 사유'로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관세청장의 지침은 그 시기상 이 건에 적용하기는 어렵고, 설혹 그 내용을 참고하더라도 이 건의 경우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중간통보에 구체적인 지연사유와 회신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회신기한을 경과하여 국제 원산지 검증결과가 회신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를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회신기한이 경과하긴 하였지만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은 최종적으로 쟁점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한다고 회신한 점, 회신기간 경과의 책임이 전적으로 청구법인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는 납세의무해태를 탓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세관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가산세 〇〇〇원의 부과처분 및 〇〇〇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한·아세안 FTA에 따른 협정관세(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4.9.19. 한·아세안 FTA 제5조 및 부속서 3, FTA특례법 제13조에 따라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으나, 회신기한(6개월)까지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않자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관세 〇〇〇원, 부가가치세 〇〇〇원 및 가산세 〇〇〇원 합계 〇〇〇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한편,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〇〇〇원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가산세 부과처분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① 한·아세안 FTA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원산지 검증결과가 기한내 미회신된 것을 이유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물품은 ○○○ 위에 ○○○으로 조립하여 몰딩한 물품으로서, 수출자는 제3국에서 제조·생산된 쟁점 물품을 체약상대국으로 수입하여 테스트 등 추가 작업을 거쳐 청구법인에게 수출한 후, 원산지를 체약상대국으로 하여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청구법인에게 제공하였고, 청구법인은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신고번호○○○(이하 “1차 조사대상”)으로 수입하면서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원산지서면조사를 실시하였고,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수입신고번호○○○과 관련된 원산지증명서에 대하여 국제원산지 검증을 요청(이하 “1차 검증요청”)하였으며,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회신기한 2개월이 경과하여도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않자,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회신기한이 경과한 사실 및 검증결과를 ○○○까지 회신하여 줄 것과 미회신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할 예정임을 통보하였으며, 이 사실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검증 요청일로부터 6개월까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않자,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한·아세안 FTA에서 정한 검증 요청일로부터 6개월의 연장기한이 경과한 사실 및 검증결과를 ○○○까지 회신하여 줄 것과 미회신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할 예정임을 통보하였으며, 이 사실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한편, 처분청은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서 256건으로 수입한 동일물품과 관련된 원산지증명서 80건(이하 “2차 조사대상”)에 대해 국제원산지 검증을 추가 요청(이하 “2차 검증요청”)하였고,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은 처분청의 2차 검증요청에 대해 원산지기준을 충족한다는 점과 수출자의 대리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검증결과를 회신하였다.

(마) 처분청은 아래 <표>와 같이 검증요청한 수입신고번호 ○○○에 대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1차 조사대상 402건 중 검증요청하지 않은 나머지 374건과 2차 검증요청한 257건에 대하여 무혐의 종결한다는 원산지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표〉 쟁점물품 등에 대한 처분내역

(바) 청구법인은 납부고지된 관세 〇〇〇원, 부가가치세 〇〇〇원 및 가산세 〇〇〇원 합계 〇〇〇원을 납부하였으나 납부한 부가가치세 〇〇〇원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자, 처분청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2) 처분청의 원산지 검증 요청 관련 공문,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이전에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쟁점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확인받는 등 성실신고의무를 충분히 준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이 발행한 공문을 제출하였는데, 동 공문은 수출자가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에 한국으로 수출하는 〇〇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를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으로, 질의물품은 수입된 〇〇〇로부터 제조되고 역내부가가치(RVC : Regional Value Contents) 비용은 완제품의 FOB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〇〇%로 원산지기준을 충족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위 공문은 수입된 〇〇〇로부터 〇〇 생산할 경우 RVC가 〇〇%를 초과한다는 내용인 반면, 쟁점물품은 제3국에서 〇〇가 생산되고 수출국에서는 단지 검사만 수행되어 그 사안이 달라 국제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다는 의견이다.

(다) 처분청이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에 국제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는데, 검증대상만 다르고 검증을 요청한 내용은 동일하며,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은 처분청의 검증요청에 대해서는 회신하지 않고, 검증요청에 대해서는 그 이튿날 2페이지 분량의 회신문과 수출자의 대리인이 처분청의 1차 검증요청과 관련하여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에 제출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회신하였다.

(라)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의 회신문에 첨부된 의견서는 수출자의 대리인이 작성한 44페이지 분량의 자료로, 수출자가 청구법인에게 수출한 쟁점물품의 완제품 가격과 수입원재료 비용, 원산지재료(직접비용, 이윤 등) 비용 및 RVC 비율과 계산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이를 증빙하는 각 자료가 첨부되어 있으며, 수출국에서 수행된 수출자의 검사가 단순한 실험 또는 측정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테스트기 등을 구매한 송장(Invoice)이 첨부되어 있다.

〈쟁점물품의 비용구성 및 RVC 계산내역〉

(마) 청구법인은 수출자의 한국법인을 통해 수출자에게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국제원산지 검증과 관련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할 것을 독려한 이메일(e-mail) 5건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우선 쟁점①의 경우,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6개월로 연장된 회신기한까지도 원산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않았긴 하나, 수출자의 대리인이 이 건 회신기한 이전에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쟁점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한다는 의견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이 쟁점물품과 동일 물품에 대해 2차 검증 요청을 하자 그 이튿날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은 앞서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제출된 수출자 대리인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산지 검증결과를 회신한 점, 원산지 검증결과에 첨부된 의견서에는 쟁점물품의 RVC는 ○○%로서 한·아세안 FTA에서 정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처분청이 2차 검증결과 회신에 따라 2차 조사대상 257건분만 아니라 1차 조사대상 402건 중 검증 요청을 하지 않은 374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종결한 점 등에 비추어 원산지 검증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의무해태만을 탓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제3호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로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수출자의 한국법인을 통해 수출자에게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국제원산지 검증과 관련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할 것을 수차례 독려하여 수출자의 대리인이 이 건 원산지 검증 결과 회신기한 이전에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쟁점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한다는 의견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한 점, 수입자인 청구법인으로서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원산지 검증결과 회신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어려워 이 건 검증기한 도과의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만 있다고 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 또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세관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가산세 〇〇〇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수출자로부터 접는 기계(이하 “쟁점물품”)를 수입하면서,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Invoice)를 근거로 한·EU FTA (또는 “협정”)에 따라 협정세율(0%) 적용을 신청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서면으로 원산지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쟁점물품의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어, 2014.3.10. 한·EU FTA 제27조 및 FTA특례법 제13조에 따라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에 원산지 간접검증을 요청하였고,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이 쟁점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특혜적용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원산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자, 이에 근거하여 쟁점물품에 대해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8%)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〇〇〇원, 부가가치세 〇〇〇원, 가산세 〇〇〇원 합계 〇〇〇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은 원산지 검증 회신기한으로부터 5개월이 경과하여 쟁점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한다는 번복서한을 처분청에 재회신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한·EU FTA 협정 상대국의 원산지 결정기준 불충족 검증결과 회신에 따라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중고물품으로서 청구법인은 중고기계 판매업체인 계약상대국의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였으며 적출국은 제3국이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서면으로 원산지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쟁점물품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어,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에 원산지 간접검증을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에게 이 사실과 검증요청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을 통지하였다.

(3)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은 쟁점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특혜적용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원산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였고, 처분청은 동 회신에 근거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다는 원산지조사결과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으며, 쟁점물품에 대해 협정세율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를 하였다.

(4) 이 건 처분 이후,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은 “쟁점물품은 ○○○의 조건을 충족하고 협정의 자격이 있다”는 검증결과를 관세청에 재회신하였는바, 처분청이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에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요청한 날은 2014.3.10.이므로 회신기한 10개월 완료시점은 2015.1.10.이며, ‘원산지기준 불충족’이라는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의 최초 검증결과는 회신기한 이내에 회신되었으나, ‘원산지기준 충족’이라는 재회신 검증결과는 회신기한을 5개월을 경과하여 회신되었다.

(5) 한편, 청구법인은 심판청구시,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이 수출자의 인증번호 지위와 관련하여 수출자에게 회신한 문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문서는 수출자의 인증번호에 대하여 ‘수출국으로부터 수출되는 물품과 제3국 소재의 쟁점물품 판매자로부터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상업서류에 원산지를 기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확인한 문서이고, 청구법인은 수출자가 제3국 소재 판매자로부터 쟁점물품을 구매하여 청구법인에 판매한 물품임을 증명하는 증거로 수출자와 제3국 판매자간 체결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은 원산지 검증결과 회신기한 이내에 쟁점물품이 원산지기준을 불충족한다고 회신한 점,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이 당초 회신을 반복하여 쟁점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한다고 회신한 재회신은 회신기한으로부터 5개월을 경과한 점,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의 반복회신이 회신기한을 경과한 사유를 생산자나 수출자

의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인한 예외적인 경우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당초 회신기한 이내에 회신된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불충족 회신에 따라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그러나,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바,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제3국이나 수출자의 지위가 제3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직접 선적된 물품에 대해서도 특혜관세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점,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원산지기준을 충족한다는 재회신이 회신기한 이내에 송부되었다면 쟁점물품에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점,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회신기간 경과 책임이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발생한 부족세액을 청구법인에게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1) 조심 2015관144(2016. 1. 7.)

[주 문]

세관장이 청구인에게 한 가산세 〇〇〇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수출자로부터 중고인쇄기(이하 “쟁점물품”)를 수입하면서, 수출자 발행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한-EU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0%)을 적용받아 수입통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통지를 하고 서면검증을 진행하였으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어 2014.2.25. 한-EU FTA 제27조 및FTA특례법 제13조에 따라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국제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고,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은 쟁점물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검증결과를 회신하였다.

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다는 원산지조사결과를 통지하고, 〇〇〇 관세 〇〇〇원, 부가가치세 〇〇〇원 및 가산세 〇〇〇원 합계 〇〇〇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〇〇〇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은 회신기한을 약 2개월 경과하여 쟁점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한다는 검증결과를 재회신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과세처분이 부과체척기간을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② 쟁점물품이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대상 물품인지 여부

③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더라도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중고물품으로서, 청구법인은 중고기계 판매업체인 계약상대국의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였으며 적출국은 제3국이었다.

(2) 청구인은 계약상대국의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아 수입통관하였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해 서면검증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쟁점물품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확인이 불가능하여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에 회신기한을 10개월로 하여 원산지 문구를 기재한 상업송장의 진위 여부, 수출자의 인증수출자 여부 및 인증번호의 유효성 여부와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등의 검증을 요청하였고, 동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3) 처분청은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에 대해 회신기간까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여 줄 것을 재차 요청하였고,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은 수출자의 상업송장이 ○○○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쟁점물품은 특혜자격이 없음을 처분청에 회신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의 검증결과에 따라 원산지조사를 종결하고 부족세액 관세 ○○○원 등 합계 ○○○원을 추징할 예정임을 통지하였고,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및 가산세 ○○○원 합계 ○○○원의 세액경정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교부하였다.

(5) 한편,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은 검증회신기한을 약 2개월 경과하여 처분청에 원산지기준 '충족'이라는 결과를 재회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원산지 검증결과를 '충족'으로 통지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이 관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FTA특례법 제3조에서 “이 법은 「관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다만,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협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협정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2013.8.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관세법」 제21조 제2항 제5호에서 “이 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조약·협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허세율의 적용여부 및 세액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이나 그 밖에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게 원산지 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하여 회신을 받은 경우”에는 회신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경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관세부과제척기간 이내에 이루어진 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한-EU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원산지 검증요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쟁점물품은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회신한 점,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이 건 처분 이후 ‘쟁점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한다’는 내용의 재회신을 한 바 있으나, 회신기한을 경과하여 회신된 이상 처분청은 FTA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한-EU FTA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은 회신기간 이내에 쟁점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회신하였다가 회신기간을 2개월여 경과한 후에는 원산지기준을 충족한다고 재회신하여 쟁점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한다는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회신지연에 대한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원산지기준 미충족이라는 당초 회신결과를 근거로 한-EU FTA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부족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한-EU FTA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면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12) 서울행정법원 2014. 11. 4. 선고 2014구합59047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5. 7. 23. 선고 2014누73106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5두50399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 행정법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14구합59047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솔루션
 피 고 세관장
 변 론 종 결 2014. 9. 26.
 판 결 선 고 2014. 11. 4.

주 문

1. 피고가 2013. 6. 5. 원고에 대하여 한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6. 5. 원고에 대하여 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제병업, 유리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엠○○사는 ○○○에 본사를 두고 계약상

대국 공장에서 '유리병 성형기계'를 제조하여 수출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말레이시아 소재 엠○○사로부터 유리병 성형기계(이하 '이 사건물품')를 수입하면서, 체약상대국 국제통상산업부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No. ○○○○○/AK/○○○○20, 이하 '이 사건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한-아세안 FTA협정에 따라 협정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확인 및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체약상대국 국제통상산업부에 이 사건물품의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고, 체약상대국 국제통상산업부는 피고에게 '이 사건물품 원산지증명서는 한-아세안 FTA 협정의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체약상대국 국제통상산업부에서 발급한 진본 서류이나, 체약상대국 국제통상산업부의 오류로 인하여 이 사건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부가가치 기준(RVC 47.08%)으로 표기되어야 함을 양해해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검증결과 회신(이하 '이 사건 검증결과 회신')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체약상대국 국제통상산업부의 이 사건 검증결과 회신은 한-아세안 FTA 협정 부속서 3의 부록 1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증결과 회신기한(2개월), 검증절차 종료기한(6개월) 및 FTA특례법 시행규칙 제24조의 회신기한을 도과한 회신으로서 한-아세안 FTA 협정 부속서 3의 부록 1 제14조, 제17조 및 FTA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특혜관세 배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이 사건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과 협정관세율의 차이에 해당하는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마.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말레이시아 소재 엠○○사로부터 수입한 이 사건물품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 협정 관세 적용의 적정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서면조사를 실시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서면조사만으로는 수입물품의 단위기계 및 주요 구성부품을 확인할 수 없어 실제 현품 실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통지하였다.

(3) 피고는 피고에게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 결과 위반내용은 없으나 원산지 충족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위해 말레이시아 관세당국에 검증을 요청할 것이라는 내용의 원산지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4) 피고는 한-아세안 FTA 협정 부속서 3의 부록 1 제14조 제1항, FTA특례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수출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인 체약상대국 국제통상산업부에 이 사건물품의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고, 위 요청서는 체약상대국 국제통상산업부에 송달되었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아 수입한 이 사건물품의 원산지 요건 충족여부

를 확인하기 위하여 말레이시아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였으며, 원고가 조사대상 물품과 동종·동질의 물품을 추가로 수입신고하는 경우 FTA특례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 협정관세 적용을 보류할 것을 결정하였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6) 피고는 체약상대국 국제통상산업부가 한-아세안 FTA 협정 부속서 3의 부록 1 제14조 제1항 나목에서 정한 회신기한 (요청을 받은 후 2개월 이내)까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않자, 2012. 11. 2. 및 2013. 1. 4. 체약상대국 국제통상산업부에게 ‘검증결과 회신기한이 경과하였고, 한-아세안 FTA 협정 부속서 3의 부록 1 제14조 제1항 라목에서 정한 사후검증절차 종료 기한인 2013. 2. 6.(요청을 받은 후 6개월 이내)까지 검증결과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7) 체약상대국 국제통상산업부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에게 공식적으로 검증결과를 회신하기 이전인 2013. 2. 25. 피고의 담당자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메일을 발송하였다.

체약상대국 국제통상산업부에서 담당자가 인사이동되어 담당할 사람이 없었던 관계로 지금까지 본 건이 지체되었습니다. 모든 서류를 검토한 후 우리는 다음과 같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하여 드립니다.

“(중략)”

2. ○○○과 관련하여

1. 1. CTH ○○○○○/AK/○○○20(2010. 9. ○.)은 RVC 47.08%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씩 서류를 검토하다 보니 우리 직원이 그 당시 못보고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인적 오류를 최소화하고 종이를 사용하지 않기 위하여 체약상대국 국제통상산업부에서는 2013. 1.부터 100% “e-Dagang”(온라인 신청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수정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 늦은 답변 및 우리의 실수를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8) 체약상대국 국제통상산업부는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검증결과 회신을 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검증결과 회신을 수령하였다.

제목 : 엠○○사에게 발급된 원산지증명서 5건에 대한 확인 요청

1. 본인은 상기 사항과 관련된 2012. 7. ○.자 귀청의 문서 참조번호 ○○○○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2. ○○에 소재하고 있는 국제통상산업부 지역사무소가 엠○○사에게 발급한 ○○○○○/AK/○○○60, ○○○○○/AK/○○○96, ○○○○○/AK/○○○80, ○○○○○AK/○○○80 그리고 ○○○○ ○/AK/○○○20의 확인서들이 진짜이며 확실한 것들이라는 점을 통보합니다.

3. 공장을 방문한 결과, 그 공장에서 HS Code 8475.29(유리제품 제조용 기계)로 상품 분류된 상품을 제조하고 있고, 문제의 상품은 한아세안자유무역협정(AKFTA)하의 역내부가가치(RVC) 40% 원산지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4. 본인은 원산지 확인서 5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원산지기준을 확인합니다.

수입자	원산지증명서발급번호 (발급일자)	인보이스 번호	제품명 (HSK)	원산지기준	비고
원고	○○○○○/AK/○○○20	○○○○○○	유리병 제조 (8475.29-2000)	4단위 세번 변경(CTH)	RVC 47.08%이어야 함 (인적 오류에 기인)

5. 두 건의 역내부가가치(RVC) 47.08%의 원산지기준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므로 참조번호 ○○○○○/AK/○○○96과 ○○○○○/AK/○○○20의 확인서들에 대한 수정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에서 국제통상산업부는 2013. 1.부터 100% 온라인 신청을 시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6. 본인은 위의 설명이 귀하의 의혹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특례무역협정 관련 원산지증명을 용이하게 하는데 있어서 귀하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 중 관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원고의 첫 번째 주장과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산지 검증방법은 직접검증 방식과 간접검증 방식으로 구분되는데, 한-아세안 FTA 협정은 우선적으로 수입 당사국이 무작위로 그리고/또는 서류의 진정성 또는 해당상품 또는 그 상품의 특정 부분품의 진정한 원산지에 관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때에는 수출당사국의 발급기관에 사후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간접검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한-아세안 FTA 협정 부속서 3의 부록 1 제14조 제1항 나목과 라목은 '사후검증 요청을 받은 수출당사국의 발급기관은 신속히 그 요청에 응하며, 그 요청을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회신하여야 하고, 그 상품의 원산지 여부의 결정결과를 수출당사국의 발급기관에 통보하는 절차를 포함하는 사후검증의 모든 과정은 6개월 이내에 완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부록 제17조는 '이 부록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품이 부속서 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이 부록의 관련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그 법과 규정에 따라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부인하거나 관세를 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한-아세안 FTA 협정 부속서 3의 부록 1에서 사후검증 요청을 받은 수출당사국의 발급기관의 회신기한을 2개월로 정하고 있고, 사후검증의 모든 과정이 6개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간접검증 방식의 경우 직접검증 방식과 달리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수출당사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검증결과 및 관련 자료를 통

보반아 원산지 지위 부여의 타당성 여부를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회신지연의 사정으로 인하여 수입 당사국 관세당국의 과세권 행사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하도록 한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하의 원산지 증명 및 검증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 간의 상호 행정지원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2010. 11. 15. 외교통상부고시 제2010-732호로 제정된 것, 이하 ‘한-말레이시아 원산지협력 양해각서’라 한다) 제9조 가목은 특혜관세대우의 거부에 대하여 ‘수입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수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연장 기간을 포함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검증결과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국내법 및 규정에 따라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의 부여를 거부할 권한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한-아세안 FTA 협정에서 회신지연의 사정으로 인하여 수입 당사국 관세당국의 과세권 행사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특혜 관세대우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예외적인 상황을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회신기한을 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회신기한을 정한 규정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예외적인 상황’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원산지 검증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수출당사국 관세당국이 검증 내지 회신을 지연하거나 그 내용상의 부실을 정당화할 수 있는, 물품 생산자, 수출자, 수출당사국 관세당국이 통제 불가능한 특정한 상황’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나) 또한 한-아세안 FTA 협정은 수출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는데, 특혜관세 혜택에 무임승차하는 것을 방지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원산지규정을 충족하는 상품이라 하더라도 협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점, 한-아세안 FTA 협정 부속서 3의 부록 1 제17조는 ‘이 부록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품이 부속서 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이 부록의 관련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그 법과 규정에 따라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부인하거나 관세를 추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간접검증 방식의 경우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상대국 수출자 등을 상대로 원산지의 진정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제한되어 있고, 이에 따라 한-아세안 FTA 협정은 원산지증명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면서, 그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특혜관세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원산지증명절차의 불이행에 기인하는 특혜관세 배제라는 불이익은 수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출당사국의 검증결과 수출당사국의 원산지로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속서나 부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피고는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수출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인 계약상대국 국제통상산업부에 이 사건물품의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고, 위 요청서는 2012. 8. 6. 계약상대국 국제통상산업부에 송달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국 국제통상산업부는 한-아세안 FTA 협정 부속서 3의 부록 1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회신기한과 사후검증절차 종료기한을 지나 피고에게 이 사건 검증결과를 회신한 사실, 계약상대국

국제통상산업부의 이 사건 검증결과 회신에 따르면, 이 사건 검증결과 회신이 체약상대국 국제통상산업부의 인사이동으로 인한 담당자가 부재로 인하여 지연되었고, 원고가 수입한 이 사건물품에 대하여 체약상대국 국제통상산업부에서 발급한 이 사건 원산지증명서에는 원산지기준이 'CTH'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체약상대국 국제통상산업부의 인적오류에 의한 것으로 RVC 47.08%가 정확한 것이며, 이는 역내부가가치(RVC) 40% 원산지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검증결과 회신이 체약상대국 국제통상산업부의 인사이동으로 인한 담당자 부재로 인하여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물품 생산자, 수출자, 수출당사국 관세당국이 통제 불가능한 특정한 상황을 의미하는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검증결과 회신이 한-아세안 FTA 협정 부속서 3의 부록 1 제14조에서 정한 검증결과 회신기한과 검증절차 종료기한을 초과함으로써 위 부록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록 제17조가 정한 특혜관세 배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원산지증명서가 잘못 기재되어 있다는 점은 이 사건의 처분사유로 볼 수 없으며, 설령 이 사건물품이 말레이시아의 원산지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나)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한-아세안 FTA 협정 부속서나 부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거부할 수 있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관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관세법 제42조 제1항 단서는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5호는 그 사유로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한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40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검증결과 회신이 한-아세안 FTA 협정 부속서 3의 부록 1 제14조에서 정한 검증결과 회신기한과 검증절차 종료기한을 초과함으로써 위 부록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록 제17조가 정한 특혜관세 배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검증결과 회신이 지연된 것은 체약상대국 국제통상산업부의 인사이동으로 인한 담당자가 부재로 인한 것이었으므로, 원고에게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처분사유가 위와 같은 이상 이 사건 원산지증명서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정은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에

관한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수 있는 요소가 되지 못한다),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관세 〇〇〇원 및 부가가치세 〇〇〇원의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가산세 〇〇〇원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

판 결

사 건 2014누73106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솔루션
피고, 항소인 세관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11. 4. 선고 2014구합59047 판결
변 론 종 결 2015. 6. 11.
판 결 선 고 2015. 7.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6. 5. 원고에 대하여 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가 2013. 6. 5. 원고에 대하여 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및 가산세 ○○○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위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항소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법원이 심판할 범위는 원고 패소부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본세 부분')에 한정되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승소부분(가산세 취소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본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본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 부분에 관하여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5두50399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솔루션
피고, 피상고인 세관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7. 23. 선고 2014누73106 판결
판 결 선 고 2016. 8. 1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가. 구 자유무역협정 관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2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본문은 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거나 세율을 연차적으로 인하하여 부과하여야 할 관세(이하 ‘협정관세’)의 적용제한에 관하여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제13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회신 내용에 제9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를 들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라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결과 회신기간에 대하여 정한 구 자유무역협정 관세법 시행규칙(2012. 12. 14. 기획재정부령 제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호는 아세안회원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의 회신기간을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6개월’로 정하고 있다.

한편 한-아세안 FTA 협정 협정(이하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 제16조 제2호는 “당사국들은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장차 법률문서를 채택할 수 있다. 그러한 문서는 각각 발효하자마자 이 협정의 일부를 구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채택된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 하의 원산지 증명 및 검증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 간의 상호 행정지원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 제9조는 수입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경우 국내법 및 규정에 따라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의 부여를 거부할 권한을 갖는다고 규정하면서 (가)호로 '수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연장 기간을 포함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검증결과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 관세법과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은 협정 당사국들 사이에서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여 유대를 강화하는 동시에 당사국들 간 무역 장벽을 제거하여 무역과 투자 흐름을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생활수준의 향상 및 실질소득의 지속적인 증가를 보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자유무역협정 관세법과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은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의 수입 및 수출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거나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협정관세를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그 적용 요건이 되는 원산지의 검증을 위하여 당사국 사이에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역할을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수출당사국의 발급기관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에 대하여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검증을 요청하면 수출당사국의 발급기관이 사후검증을 수행하는 간접검증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원칙적으로 수출당사국의 발급기관이 수행하여 회신한 검증결과를 존중하되, 6월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협정관세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그리고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432조).

2.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가. 원고는 원심 판시 ○○○ 회사로부터 계약상대국 공장에서 제조하는 유리병 성형기계(이하 '이 사건물품')를 수입하면서, 계약상대국 국제통상산업부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장에 제출하고,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협정세율 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계약상대국 국제통상산업부에 이 사건물품의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고, 그 원산지 검증요청서가 계약상대국 국제통상산업부에 송달되었으므로, 계약상대국 국제통상산업부는 그때부터 6월이 되는 2013. 2. 6.까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다. 그런데 계약상대국 국제통상산업부는 위 회신기간이 지난 2013. 3. 12. 피고에게 이 사건물품의 원산지증명서는 진본이 맞지만 국제통상산업부의 오류로 인하여 이 사건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부가가치 기준으로 표기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검증결과를 회신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검증결과 회신이 자유무역협정 관세법 등에서 정한 회신기간인 6개월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협정관세의 제한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체약상대국 국제통상산업부의 이 사건 검증결과 회신 내용에 따르면 그와 같이 회신이 지연된 이유가 체약상대국 국제통상산업부 내부의 인사이동으로 인한 담당자 부재 때문이었다는 것인데, 이를 체약상대국 국제통상산업부 측에서 통제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체약상대국 국제통상산업부가 이 사건물품에 관한 원산지 검증 요청에 대하여 회신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데에 이 사건 양해각서 제9조에서 정한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상고이유 중 위와 같은 원심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대하여 다투는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원산지 검증요청서에서 수신자를 이 사건 양해각서 제14조에 의한 체약상대국측 연락창구인 체약상대국 국제통상산업부의 '아세안 경제협력과장'이 아닌 체약상대국 국제통상산업부의 '부국장'으로 잘못 기재하였지만, 그 무렵 곧바로 체약상대국 국제통상산업부의 '아세안 경제협력과장'에게도 이메일로 원산지 검증요청 내용을 알렸고 이에 체약상대국 국제통상산업부 측이 검증업무를 처리하겠다고 답장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고가 보낸 원산지 검증요청서상의 수신자 기재 오류가 이 사건 검증결과 회신이 지연된 데에 별다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과 아울러 앞에서 본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법령 등과 간접검증방식에 의한 원산지 검증 제도의 취지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이 사건 양해각서 제9조에서 정한 '예외적인 상황'에 관한 원심의 일부 이유 설시에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이 사건 검증결과 회신에 관하여 위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 '예외적인 상황'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조심 2016관172·190·191(2017. 5. 22.)

[주 문]

세관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1> 기재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휴대폰용 카메라 렌즈를 생산하는 회사로, 해외 임가공을 위해 수출국에 자회사인 수출자를 설립하고, 휴대폰용 카메라 제조에 사용되는 부품(이하 “쟁점원재료”)을 수출자에게 수출하여 이를 조립·가공하여 완성한 카메라 렌즈(이하 “쟁점물품”)를 수입하면서,

쟁점원재료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해외임가공물품 등 감세를 받았고, 임가공 부분에 대해서는 수출국 통상부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한-아세안 FTA에 따른 협정관세(관세율 0%)를 적용받았다.

나. 처분청은 원산지 서면조사 결과, 쟁점원재료와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제9002.11호로 서로 같아 원산지 결정기준인 ‘HS 6단위 세번변경’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수출국 통상부에 원산지 국제검증을 요청하면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쟁점원재료 및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근거를 검증하고 관련 자료를 송부하여 줄 것을 함께 요청하였다.

이에, 수출국 통상부는 쟁점원재료 및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근거 및 관련 자료 없이 수출자가 작성하여 수출국 통상부에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쟁점원재료의 품목번호인 제3926.9099호 및 제3917.4000호와 쟁점물품의 품목번호 제9002.9090호를 그대로 인정하여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회신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원재료와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HS 제9002.11호로 동일하다는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

류회신 등을 근거로 쟁점물품이 HS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협정관세를 배제한다는 내용으로 원산지조사 결과를 통지하고 청구법인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관세 〇〇〇, 부가가치세 〇〇〇 및 가산세 〇〇〇 합계 〇〇〇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① 쟁점물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관련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휴대폰용 카메라 렌즈를 생산하는 회사로, 해외 임가공을 위해 수출국에 자회사인 수출자를 설립하고, Lens, Barrel, Mask, Shield 등의 쟁점원재료를 수출한 뒤 이를 가공하여 쟁점물품인 휴대폰용 카메라 렌즈를 수입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수출자로부터 임가공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출한 쟁점원재료 부분은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해외임가공물품 감세를 받고, 임가공 부분에 대하여는 수입신고수리 후 수출국 통상부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협정관세(0%) 적용을 받았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원재료와 쟁점물품의 세 번이 HS 제9002.11호로 동일하여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기준인 6단위 세번변경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수출국 통상부에 국제검증을 요청하면서 쟁점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 쟁점원재료 및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근거를 검증하고 관련 자료를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수출국 통상부가 한-아세안 FTA 부록1 제14조 제1항 나호의 규정에 의거 검증 요청을 받은 후 2월 이내까지 검증결과를 회신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수출국 통상부에 2015.5.5.까지 회신하여 줄 것을 독촉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수출국 통상부는 2015.5.15.에야 쟁점물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회신하였다.

위 회신에서 수출국 통상부는 쟁점원재료와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의 근거와 이유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단지 수출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쟁점원재료의 세 번을 그대로 인정하여, 6단위 세번이 서로 달라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회신하였다.

처분청은 수출국 통상부의 회신내용에 검증 요청한 쟁점원재료 및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근거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원재료와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HS 제9002.11호로 동일하다는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 사전심사회신 등을 근거로 쟁점물품이 HS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협정관세를 배제한다는 내용으로 원산지조사 결과를 통지하고 청구법인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관세 등 합계 ○○○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해외임가공물품 감세를 받았고, 동 조항에 따른 해외임가공물품 감세를 받기 위해서는 수출물품인 쟁점원재료와 수입물품인 쟁점물품의 HSK 10단위가 동일하여야 하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수출신고필증 및 수입신고필증에 의하면 수출물품과 수입물품의 HSK 10단위는 모두 동일하다.

(3) 쟁점물품은 휴대폰용 카메라렌즈로서 HSK 제9002.11-9090호에 분류되며, 한-아세안 FTA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은 아래 <표1>과 같이 '6단위 세번변경기준'이다.

<표1>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4) 쟁점원재료는 아래 <표2>와 같이 Lens, Barrel, Mask, Shield 등이며 쟁점물품은 쟁점원재료로 조립·가공한 휴대폰용 카메라 렌즈유닛으로, 쟁점원재료 중 렌즈와 완성품인 렌즈유닛은 6단위 세번이 서로 상이하나 Barrel, Mask, Shield 등은 완성품인 렌즈유닛과 6단위 세번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원재료 및 쟁점물품의 HSK

청구법인은 카메라 렌즈유닛에 대하여는 2013.8.20., Barrel 및 Mask에 대하여는 2013.8.28., Shield에 대하여는 2014.2.12., 렌즈에 대하여는 2013.8.28.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2013.8.27.부터 2014.3.4.까지 위와 같은 품목분류 결과를 회신받은 사실이 있다.

(5) 처분청이 수출국 통상부에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면서 ① 쟁점물품과 쟁점원재료는 HS 통칙에 따라 HS 제9002.11호에 분류되고, ② 한-아세안 FTA에 따라 품목분류는 수입국 기준으로 따라야 하므로, ③ 쟁점물품은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④ 추가로 쟁점원재료는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하여 누적기준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기재하여 통보하였다.

(6) 처분청의 검증요청에 대한 수출국 통상부의 2015.5.15.자 회신내용에 ①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를 위해 수출국 통상부가 공식적으로 발행한 것이고, ② 쟁점물품은 한-아세안 FTA의 원산지결정기준(RVC 또는 CTH)을 충족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원재료와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의 근거와 이유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첨부된 RAW MATERIALS DECLARATION FOR EXPORT PRODUCT에 쟁점원재료에 대한 HS Code(39069099, 39174000)가 기재되어 있다.

(7) 청구법인은 해외임가공을 위하여 수출국으로 수출하는 쟁점원재료에 대하여 쟁점원재료가 국내산임을 입증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쟁점물품의 수입 이전에는 쟁점원재료와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하면서 그 품목번호가 HSK 제3002.11-9090호로 기재된 ○○상공회의소 발행 원산지증명서 4매를 제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원재료는 원산지증명서가 없으나 한국산임이 분명하고, 쟁점물품은 수출국 통상부가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였고 추후 원산지 검증시 이를 다시 확인한바 있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원재료가 우리나라에서 수출되었다는 사실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해외임가공 감세가 적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고 하더라도, 원산지증명서가 없어 쟁점원재료가 반드시 한국산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원재료가 한국산임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비원산지재료로 보아야 한다면 쟁점원재료에 대하여 누적기준을 적

용할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은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여야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나, 쟁점 원재료 중 배럴, 마스크, 철드에 대한 품목분류와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가 서로 동일하여 쟁점물품이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이 한-아세안 FTA에서 규정하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9)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령의 부지 또는 오해에 의하여 쟁점물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쟁점원재료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없으나 2008년에는 쟁점원재료와 동일한 원재료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 등 청구법인으로서의 쟁점원재료를 한국산으로 인식할 수도 있어 보이는 점,

수출국 통상부는 수입신고시 쟁점원재료를 HS 제39류로 분류하고 있고, 이를 조립·가공한 쟁점물품을 HS 제90류에 분류하여 쟁점물품이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으며 이후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원산지 검증요청에 대하여 수출국 통상부에서 원산지 부합사실을 다시 확인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함에 있어 청구법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조심2020관61(2020. 6. 30.)

[주 문]

1. 세관장이 2018.12.17. 수입신고번호 ○○○외 2건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가산세 합계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로부터 EU역내 공장에서 생산된 의류(이하 “쟁점물품”)를 수입하면서, 쟁점수출자의 인증번호를 기재하고 원산지신고문안을 작성한 쟁점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한-EU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0%)의 적용을 신청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FTA 관세특례법 제17조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로는 원산지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다고 보아, 쟁점원산지신고서의 진위 여부와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해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27조에 따라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다.

다.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은 “쟁점물품은 ○○에서 보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고, 쟁점원산지신고서 및 인보이스는 ○○에서 발행된 것이 아니며, 수출자가 발행하지 않은 인보이스에 수출자의 세관 인증번호를 불법적으로 사용하였다”고 국제 간접검증결과를 회신하였다.

라. 처분청은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위 회신결과를 근거로 FTA 관세특례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우리 원은 위 심판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요청한 다른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 결과(회신) 등을 포함하여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적용세율 및 세액을 경정하라”고 재조사 결정(조심 2019관46)을 하였다.

바.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은 처분청의 ‘제2차 검증’ 요청에 대하여 “추가 검증 물품은 원산지 상품이지만 추가 원산지신고서는 쟁점수출자가 발행하지 않았고, 불법적으로 발행되었다”고 검증결과를 제2차 검증결과 회신하였고, “추가 원산지신고서는 인증수출자인 쟁점수출자에 의해 작성되지 않았다”고 제2차 검증결과 보충 회신하였다.

사. 처분청은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제2차 검증결과 회신 및 보충회신을 근거로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처분 유지’의 재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① 처분청의 재조사가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심판결정(재결)의 기속력에 위반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② 인증수출자가 아닌 자가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와 계약하고 특수관계자인 EU역내 공장으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였다. 청구법인은 ○○○그룹 본사와의 합자(51:49)회사로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모두 본사의 지배와 통제를 받는다. 쟁점수출자는 ○○○그룹 본사의 자회사이며, EU역내 공장은 A○○○의 100% 자회사로 A○○○ 또한 ○○○그룹 본사의 100% 자회사이다.

(나) 처분청의 검증 요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은 “검증 물품은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고, 더욱이 인보이스 및 원산지신고서는 체약상대국에서 발행되지 않았으며, 쟁점수출자는 인증번호를 사용하는 권한 있는 인증수출자이나, 쟁점수출자가 발행하지 않은 인보이스에 세관 인증번호를 불법적으로 사용하였다”라는 결과를 회신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불법적인 세관 인증번호 사용 여부에 대하여 범칙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원산지신고서가 쟁점수출자의 본사 최고 경영책임자이자 쟁점수출자의 대표의 지시로 인보이스(원산지신고서 포함)를 발행되는 과정에서 쟁점수출자 소속 직원이 아닌 ○○○그룹의 직원이 작성, 발행한 것을 확인하고 무혐의 종결 처리하였다.

(라) 한편, 처분청은 인증수출자가 아닌 자가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게 독일 관세당국에 요청한 다른 원산지증빙서류의 검증결과를 포함하여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재조사하도록 결정하였다.

(마) 처분청의 제2차 검증요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은 “추가검증 물품은 한-EU FTA에 따른 원산지 물품이나, 해당 원산지신고서는 규칙에 맞지 않고 불법적으로 발행되었다”고 회신하였고, 처분청은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실질적인 수출자’, ‘원산지신고서의 실제 작성자’,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내용’ 및 ‘불법적 발행의 의미’ 등에 대하여 추가 정보를 요청하였으나,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은 오직 “해당 원산지신고서는 쟁점수출자가 작성하지 않았다”라고만 회신하였다.

(바) 처분청은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제2차 검증결과 회신을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원처분 유지’의 재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 주문과 이유에 따라 충실하게 조사하지 않았고, 쟁점원산지신고서는 인증수출자인 쟁점수출자의 대표의 지시에 따라 발행되었으며, 추가로 이루어진 국제간접검증결과 해당 물품이 원산지물품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2차 검증결과 회신을 받은 이후에도 실제 수출자, 원산지신고서의 실제 작성자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여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2차 검증결과 보충회신을 받았는바, 그에 따르면 해당 원산지신고서의 작성자가 쟁점수출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는 점, 그런데 한-EU FTA에서는 6,000

유료를 초과하는 수입물품은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하여서만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쟁점원산지신고서의 기재내용 중 일부가 누락되거나 오류 또는 흠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처분청이 별도의 보정요구를 하지 않은 것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나,

다만, 여러 차례의 간접검증 과정을 통하여 쟁점물품이 EU 역내인 공장에서 제조되어 직접 우리나라로 수입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쟁점원산지신고서에 기재된 인증번호는 위 간접검증을 전후로 하여 여전히 쟁점수출자의 유효한 인증번호로 확인되는 점, 비록 쟁점원산지신고서는 ○○○그룹의 직원이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처분청의 조사 결과 이는 본사의 최고 경영책임자이자 쟁점수출자의 대표자 지시에 따라 작성·발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수입자인 청구법인으로서 인증번호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그룹의 직원이 쟁점수출자의 소속 직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과 같이 쟁점원산지신고서의 구체적인 발행 경위까지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는 납세의무의 해태를 닦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결국 이 건 처분 중 일부인 가산세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서울행정법원 2016. 12. 23. 선고 2016구합50389 [관세가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 10. 19. 선고 2017누33031 [관세가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 행정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6구합50389 관세가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 고 ○○그룹 주식회사
피 고 세관장
변 론 종 결 2016. 11. 30.
판 결 선 고 2016. 12. 23.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4. 12. 9. 한 별지 경정내역 중 ‘관세가산세’란 기재 각 관세가산세와 ‘부가세가산세’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의 각 부과처분 및 2015.1. 26. 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류 등의 제조, 무역 및 유통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해외 프리미엄 의류에 대한 국내 및 아시아 독점

총판권을 확보하여 이를 수입,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수출자로부터 청바지(이 사건물품)를 수입하면서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고 한-EU FTA에 따른 협정관세 0% 를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으며, ○○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다. 피고는 FTA 관세특례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원산지 서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원산지 신고서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에 대한 확인을 위해 계약상대국 관세국에 검증을 요청한 결과 관세국은 이 사건 물품 202종 중 57종은 EU 가입국이 원산지임이 확인되나 나머지 145종은 EU 가입국의 원산지 제품이 아니라는 취지의 검증결과를 회신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계약상대국 관세국의 회신을 근거로 이 사건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별지 경정내역 중 '관세'란 기재 각 관세 합계 ○○○원, 별지 경정내역 중 '부가세'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합계 ○○○원, 별지 경정내역 중 '관세가산세'란 기재 각 관세가산세 합계 ○○○원, 별지 경정내역 중 '부가세가산세'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합계 ○○○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5조에 따라 경정된 부가가치세 ○○○원에 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에서 규정한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판단

1)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은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 의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의 해석상 의의(疑義)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5939 판결, 대법원 1997. 5. 16. 선고 95누14602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두2330 판결 등 참조).

갑 제2, 7, 8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한-EU FTA 협정상 '인증수출자'의 지위에 있는 수출자가 발행하고 형식상 유효한 이 사건물품의 '원산지증명서'상 ○○○ 제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믿고 피고에게 한-EU FTA 협정관세를 신청한 점, ② 원고는 또한 이 사건물품을 직접 조사하여 위 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의류 라벨에 'Made In ○○○'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원산지가 ○○○라고 믿고 위 협정관세를 신청한 점, ③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게 된 계기는 한-EU FTA 의류와 그 부속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제조(절단을 포함한다)를 동반하는 직조'임에도 이 사건물품을 판매하고 있는 국내 인터넷쇼핑몰에 이 사건물품이 ○○산 원단으로 제작된 사실이 게시되어 있고 수출자가 개설한 홈페이지에 "데님(denim)은 100% 유기농 면(organic cotton)으로 제작되었고, ○○○와 ○○에 있는 공급자로부터 받은 것입니다."라고 게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인데 이러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은 공신력 있는 방법이 아니고 위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이 원고가 수입한 이 사건 특정 물품에 대한 것인지도 불명확한 점, ④ 수출자의 홈페이지는 신상품 출시, 기존상품의 변경, 이벤트 등 수출자의 영업·홍보 필요성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위 홈페이지에 소개된 제품 혹은 제품 원단의 원산지를 특정 시점의 수입물품의 원산지와 일치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고, 위 홈페이지 게시 내용이 이 사건물품의 수입 당시 게시되었는지도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물품과 관련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부무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은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수입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를, 제2호에서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각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 다목은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2호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은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관세법」등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되었음이 확인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서 ‘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한-EU FTA 및 FTA특례법에 따라 수출자로부터 제출된 유효한 형식의 원산지증명서를 갖추고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점, ② 원고는 스스로 이 사건물품에 대해 협정관세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나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부정한 의도로 협정관세를 신청한 것은 아닌 점, ③ 한-EU FTA에 따른 인증수출자인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법령에 위반되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제출한 사실이 없고 한-EU FTA 및 FTA특례법에서 정한 운송원칙이나 기타 형식적 요건 역시 위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관세법」 등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물품을 수입하여 한-EU FTA 협정관세를 신청하면서 인증수출자의 지위에 있는 수출자가 발행하고 형식적 기재사항이 모두 적법하게 적혀있는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신뢰하는 한편, 이 사건물품의 실물을 검수하고 의류의 안쪽에 부착된 라벨에 “Made In ○○○”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여 이 사건물품의 원산지를 EU 가입국인 ○○○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으므로 이는 원고의 단순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제3에 의하여 역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

판 결

사 건 2017누33031 관세가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피항소인 ○○그룹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세관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12. 23. 선고 2016구합50389 판결
변 론 종 결 2017. 9. 21.
판 결 선 고 2017. 10.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4. 12. 9. 한 별지 경정 내역 중 '관세 가산세'란 기재 각 관세 가산세와 '부가세 가산세'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가산세의 각 부과처분 및 2015. 1. 26. 한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바꾸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4면 제21행의 “갑 제2, 7, 8호증”을 “갑 제2, 7, 8, 10, 11, 25, 26호증”으로 바꾼다.

○ 제5면 제18행의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⑤ 원고는 수출자의 국내 대리점이 아닌 단순 수입자이므로 이 사건물품을 수입하기 전에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신고서 외에 해당 물품에 대한 수출자 측의 영업기밀에 속하는 원산지정보 등을 알 수도 없었다고 보이는 점, ⑥ 원고는 이 사건물품을 수입하기 전 시점이자 한-EU FTA가 발효되기 직전 시점인 2011. 6. 28. 관세사에게 한-EU FTA를 활용하기 위한 설명 및 각종 FTA 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는 등 한-EU FTA를 활용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하였던 점】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1) 조심 2017관110(2018. 1. 4.)

[주 문]

세관장이 2016.12.15. 및 2016.12.18. 청구법인에게 한 가산세 합계 〇〇〇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로부터 배전반(PCB Assembly, 이하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체약상대국 세관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이하 “쟁점C/O”)를 근거로 한-아세안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

나. 처분청은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쟁점물품 중 수입신고번호 〇〇〇호 외 2건에 대하여 국제원산지 간접검증을 의뢰하였고,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은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역내부가가치포함비율(Regional Value Content, 이하 “RVC”)이 41 ~ 43%로서 한-아세안 FTA 원산지기준(RVC 40%)을 충족한다고 간접검증결과를 회신(이하 “쟁점검증회신”)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검증회신에 대한 원산지 소명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자,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을 포함한 수입신고번호 〇〇〇호 외 327건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진행할 예정임을 통지하고, 청구법인 및 쟁점수출자로부터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라. 쟁점수출자는 처분청에 쟁점물품이 한-아세안 FTA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였고, 2016.11.20. 및 2016.11.24. 직접 처분청을 방문하여 처분청에 쟁점물품과 관련된 원산지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하였다.

마. 처분청은 쟁점수출자가 제출한 원산지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쟁점물품이 한-아세안 FTA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자,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8%)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합계 〇〇〇원, 부가가치세 합계 〇〇〇원 및 가산세 합계 〇〇〇원 총합계 〇〇〇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각 가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다국적기업인 쟁점수출자로부터 썬루프 제조용 원재료인 쟁점물품 등을 수입하면서, 계약상대국 세관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원산지 서면조사를 통지하면서 수입신고번호 〇〇〇호 외 2건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조사대상물품의 부가가치기준 충족 여부를 증명할 원재료명세서 및 원재료 수불부 등 원산지증빙자료를 요구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에게 처분청이 요구한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쟁점수출자가 영업기밀을 이유로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에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원산지증명서, 수입신고필증 및 송품장 등 수입신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시한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소명서에 소명대상 물품의 원산지기준은 “RVC 66.03%”로 기재되어 있고, 이를 계산할 수 있는 원재료내역 및 가격정보는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라) 처분청은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에 1차적으로 원산지증명서 3건에 대하여 국제원산지 간접검증을 의뢰하였고,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은 처분청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쟁점수출자가 청구법인에게 수출한 모델별 RVC가 41 ~ 43%로서 한-아세안 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다는 취지의 법률회사 소속 변호사의 검토내용을 첨부하여 간접검증결과를 회신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간접검증을 종료하고, 조사대상 물품을 수입신고번호 〇〇〇호외 327건으로 확장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통지하고, 청구법인 및 쟁점수출자로부터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바) 쟁점수출자는 처분청에 현지조사 대상물품의 RVC 계산에 오류가 있어 청구법인을 통하여 부족세액을 납부하겠다는 서면을 통보하였고, 청구법인에게 현지조사 대상물품 328건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었다고 통지하였다.

(사) 쟁점수출자는 2016.11.22. 및 2016.11.24. 처분청을 직접 방문하여 현지조사 대상물품에 대한 원재료명세서 및 원재료 수불부 등 원산지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아) 처분청은 현지조사 대상물품 328건 중 18건은 원산지기준을 충족하고, 쟁점물품(310건)은 RVC 계산오류 및 자료 등이 불충분하여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관세 합계 〇〇〇원, 부가가치세 합계 〇〇〇원 및 가산세 합계 〇〇〇원 총합계 〇〇〇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는 제〇〇〇호로서 한-아세안 FTA 부속서 3 제4조 제1항에 따라 RVC가 40% 이상이거나 HS 4단위 세번변경(CTH)이 이루어지면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최초로 수입하기 이전인 2011.7.8. 쟁점수출자에게 체약상대국 세관으로부터 원산지 검증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및 모든 부품의 가격을 알려달라는 취지의 이메일(e-mail)을 송부하였다.

(다) 쟁점수출자는 청구법인에게 부품가격은 회사 영업정책상 제공할 수 없고, 체약상대국 세관으로부터 원산지 증명서 승인을 받아 이를 제공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송부하였다.

(라) 체약상대국 세관은 쟁점수출자에게 질의물품(PCB Assembly)이 CTH 및 RVC 기준을 충족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마) 쟁점C/O는 세관당국이 발급한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로서 '8. 원산지기준' 란에는 "RVC 66.03"로, '9. 총중량 또는 기타 수량 및 가격' 란에는 FOB 금액(RVC 기준이 사용된 때에만 기재한다)이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모델·규격은 2011년 및 2012년 2개 품목이었다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7~10개 품목으로 확대되었고, 일부 품목은 FOB 금액이 연도별로 변동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처분청은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쟁점수출자가 2016.11.22. 및 2016.11.24. 처분청에 원산지증빙자료 제출시 청구법인을 비롯한 제3자에게 비밀로 취급해 달라면서 처분청에게만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의견진술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모델·규격이 다양하고 단가가 상이한데도 쟁점C/O의 원산지기준이 모두 “RVC 66.03%”로 동일한 점 등 그 진정성 등이 의심됨에도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에게 공식적으로 확인을 요구하거나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최초로 수입하기 이전에 쟁점수출자에게 원재료의 가격정보와 체약상대국 세관에 쟁점물품의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줄 것을 요구한 점, 당시 체약상대국 세관이 쟁점수출자에게 질의물품이 CTH 및 RVC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회신한 점, 체약상대국 세관의 회신문에 각 역외산 부품의 품목번호와 최종제품의 품목번호가 나열되어 있고, 질의물품의 RVC도 한-아세안 FTA상 RVC 기준(40%)을 26% 초과한 “66.03%”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물품이 충분히 CTH 및 RVC 기준을 충족한다고 신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이 CTH 기준을 충족할 여지가 있음에도 쟁점수출자가 RVC 기준만을 선택하여 쟁점C/O를 발급받음으로 인해 CTH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해서는 원산지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의 요구에도 쟁점수출자가 청구법인에게 영업기밀을 이유로 각 원재료의 가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수출자가 처분청을 직접 방문하여 원산지증빙자료를 제출하면서도 청구법인에게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에 비밀자료로 취급하여 달라고 요구한 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의 영업기밀에 속하는 원산지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여 쟁점물품의 RVC 기준 충족 여부 확인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조심 2019관93(2019. 12. 12.)

[주 문]

세관장이 수입신고번호 〇〇〇호 외 9건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가산세 〇〇〇원(관세분 〇〇〇원 및 부가가치세분 〇〇〇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로부터 휴대용 X선 형광분석기(이하 “쟁점물품”)를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〇〇〇호[엑스선을 사용하는 공업용 기기, 협정관세율 0%]로 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그대로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위 협정관세율의 적용이 적정한지에 대한 자율점검을 요청하여 제출받은 자율점검표와 이후 원산지 서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물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에 간접검증을 요청하였다.

다.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은 쟁점물품이 부속서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원산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였고, 그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원산지조사 결과 및 특혜관세 적용배제에 따른 과세전통지를 하자,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가산세 면제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하였다.

라. 처분청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은 승인하였으나 가산세 면제는 불승인하면서, 청구법인에게 관세 〇〇〇원, 부가가치세 〇〇〇원 및 가산세 〇〇〇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위 가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원산지 미충족으로 인한 가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 등과 국내총판대리점 계약 및 아시아서비스센터로 지정되어 쟁점물품과 그 부분품 등을 수입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의 모델명은 ○○○ 등 이고, 청구법인은 이들의 거래 품명을 ○○○ 등으로 신고하였다.

물질을 구성하는 모든 원자는 고유의 에너지 값을 가지고 있어 물질에 X선이 충돌하면 원자의 특성에 따라 새로운 형광 X선이 발생하는데, 이때 발생한 X선의 에너지 값을 측정하면 해당 물질이 어떤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한 X선 형광분석기는 귀금속/스크랩/합금/광물의 성분을 분석하는 용도로 주로 사용된다.

쟁점물품과 같이 X선을 사용하는 기기 및 그 부분품은 모두 ○○○호에 분류되는데, 구체적으로 완제품은 ○○○호에, 부분품 중 엑스선관은 ○○○호에,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은 ○○○호에 분류된다.

(2) 한-중 FTA 부속서 3-가 제2부에서 쟁점물품과 같이 ○○○호에 속하는 물품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PSR; Product Specific Rules)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인데, 한-중 FTA 제3.8조는 HS 제15류부터 제24류까지 그리고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상품의 경우 부속서 3-가에 규정된 세번변경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본선인도가격의 10%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이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는 최소허용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자율점검을 요청하자, 이메일을 통하여 쟁점수출자에게 BOM 및 제조공정도를 요청하였으나, 관련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자율점검 요청 이전인 2015년 및 2016년에도 아래 <표1> 내지 <표3>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원산지증명서 양식 및 수출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쟁점수출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원산지증명서와 선적서류 간의 불일치사항에 대하여 정정을 요청한 사실이 있으며, 특히 2016.2.15.에는 쟁점수출자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WP가 아닌 PSR임을 서로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참고로 위 <표3>과 관련하여 쟁점수출자가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메일에는 “○○○, the number 10 is different with your example, because our products have 30% imported contents, it must be PSR instead of WP”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율점검 요청 이후에야 실질적인 원산지 확인을 위한 노력을 하였고, 자율점검 요청 이전에 쟁점수출자에게 한 원산지증명서식이나 발급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및 원산지증명서와 선적서류 간 불일치사항의 정정요청은 원산지의 형식적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어서 실질적 요건 확인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의견이나,

자율점검 요청 이전에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와 주고받은 이메일에서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PSR임을 서로 확인하였는데 이는 원산지의 실질적 요건 확인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CTH(4단위세번변경)이므로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재명세 등의 자료가 필수적이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수출자(제조사)가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이러한 자료를 특수관계 없는 수입자가 수출자로부터 제공받는 것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에게 이러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은 자율점검 요청 이전에 여러 차례 이메일 등을 통하여 원산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결과적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되어 부족세액이 발생하였더라도 청구법인에게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3) 서울행정법원 2016. 12. 23. 선고 2016구합50389[관세가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 10. 19. 선고 2017누33031[관세가산세등부과처분취소]

PART 03. 2.다. 2) 참조

1) 조심 2017관110(2018. 1. 4.)

PART 03. 2.라.1) 참조

2) 조심 2019관93(2019. 12. 12.)

PART 03. 2.라. 2) 참조

3) 조심 2018관84(2019. 1. 31.)

[주 문]

1. 세관장이 2017.12.15. 수입신고번호 ○○○ 외 3건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가산세 합계 ○○○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체약상대국 소재 수출자와 계약을 하고, 수출자의 EU역내 공장으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출자가 작성한 쟁점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한-EU FTA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수출자의 인증수출자 자격에 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여 한-EU FTA 의정서 제27조에 따라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는데,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2017.3.17.자 회신은 수출자가 2012.5.17.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인증을 받았으나,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당국의 실수로 인증이 누락되어, 관세당국은 2017.2.9. 위 수출물품에 대한 인증수출자 자격을 인증 당시인 2012.5.17.자로 소급하여 인증서를 발급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다. 처분청은 위 회신내용을 통해 쟁점원산지신고서가 작성될 당시 수출자가 인증수출자가 아니었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관세 ○○○, 부가가치세 ○○○ 및 가산세 ○○○ 합계 ○○○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① 쟁점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한 수출자가 한-EU FTA에서 규정한 인증수출자가 아니라고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수출자와 Purchase order를 통하여 쟁점물품을 수출자의 공장에서 수입하였는데, Purchase order 제16조 제6항에는 “수출자가 6천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을 수출할 때, 공급자는 인증수출자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2) 쟁점원산지신고서는 수출자가 발행한 SHIPPING INVOICE에 원산지 신고문안이 기재되어 있다.

SHIPPING INVOICE 발행일자는 2014.2.3.부터 2014.10.27.까지로 수출국 선적항과 국내 도착항이 기재되어 있고, 원산지 신고문안에는 수출자의 인증수출자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원산지신고서 작성 장소 및 일자’와 ‘수출자의 서명 및 신고서에 서명하는 자의 이름’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3)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2013.2.1. 수출자의 신청으로 수출상품과 수입지역을 추가하여 발행한 수출자의 ‘수정 인증수출자 인증서’에 따르면 수출자는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번호로부터 수출되는 상품에 대하여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았고, 또한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2017.2.9. 발행한 수출자의 인증수출자 인증서에 따르면 수출자는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동일한 인증번호로 체약상대국 공장과 EU 역내 공장으로부터 수출되는 상품에 대하여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은 것이 확인된다.

(가)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은 수출자가 EU역내에서 선적한 물품을 국내 다른 수입업체에 수출하고 작성한 원산지 신고서에 대하여 “해당 제품은 한-EU FTA협정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특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회신한 바 있다.

(나)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은 수출자에게 “관세당국이 2012.5.17. 수출자에게 최초로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 할 당시 공장으로부터의 수출을 인증수출자 인증서에서 누락하였으므로 2012.5.17.자로 소급하여 인증수출자 인증

을 부여하기로 결정하였고, EU역내 공장으로부터 수출이 한-EU 자유무역협정에 명시된 원산지규정을 충족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한국 관세청에 보낼 것"이라고 회신하였다.

(다)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관세청에 보낸 청구법인에 대한 원산지검증 회신문에는 “관세당국이 국내 다른 수입업체와 관련하여 한-EU FTA 협정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다고 회신한 기존 결정은 철회하고, 수출자는 최초 인증수출자 인증신청 당시 관세당국에 공장으로부터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인증수출자 인증을 신청하였으나 관세당국의 실수로 EU역내로부터의 직접 수출을 누락하여 체약상대국에서의 직접 수출만을 허용하였으므로 EU역내 공장으로부터의 수출을 포함하여 수출자의 최초 인증수출자 인증 날짜인 2012.5.17.자로 소급하는 인증수출자 인증서를 발급하였으며, 쟁점물품은 한-EU FTA 협정의 조건을 충족하므로 특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과세전통지에 대하여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관세청장은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한-EU FTA 의정서 제15조는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유럽연합 당사자로 수입될 때, 그리고 유럽연합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대한민국으로 수입될 때, 이후 ‘원산지신고서’라 지칭되는 신고서에 근거하여 이 협정의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의정서 제16조는 위 제15조의 원산지신고서는 제17조의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의정서 제17조는 인증수출자에 대해 “관세당국은 그들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조건에 따라 인증수출자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수출자가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당시에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체약상대국으로부터의 수출뿐만 아니라 EU역내 공장으로부터의 수출에 대하여도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았어야 하는 점, 수출자의 2013.2.1.자 인증수출자 인증서에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의 수출에 대해서만 인증되어 있고, 2017.2.9.자 인증수출자 인증서에는 ‘EU역내 공장’으로부터의 수출을 포함하여 인증이 되어 있어 수출자가 2014년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쟁점물품에 대한 인증수출자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은 국내 다른 수입업체와 관련한 국제 간접검증 회신문에서 수출자의 원산지신고서는 유효하지 않다고 회신하였다가, 청구법인과 관련된 국제 간접검증 2017.3.17.자 회신문에서

2017.2.9. 소급하여 발급한 인증수출자 인증서를 근거로 쟁점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하다고 회신하였고, 수출자가 2017.2.9. 관세당국에 질의하여 받은 회신문에 관세당국이 공장으로부터의 수출을 포함하여 소급하여 인증을 부여하기로 결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및 관련 규정에 인증수출자 지위를 소급적용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특혜관세를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산세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의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도저히 당사자에게 기대할 수 없다고 평가되는 사정이 있을 때와 같이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1.2.10. 선고 2008두 2330 판결) 할 것이다.

청구법인이 수출자와 맺은 Purchase order에 수출자가 반드시 인증수출자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수출자에게 문서로 인증수출자의 지위를 요구한 점,

수출자는 수출물품에 대해서도 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에 인증을 신청하였고, EU역내에서 수출되는 거래가 인증서에서 누락되어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지속적으로 발급하였으며,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이 자신의 실수로 인증서를 잘못 발급하였다는 사실 및 쟁점물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적용할 수 있다고 검증을 통해 회신한 점,

계약상대국은 계약상대국의 수출자가 다른 EU회원국에서 수출한 물품에 대해서도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할 수 있는 포괄인증수출자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계약상대국 외에 허용되는 수출장소를 인증서에 열거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한-EU FTA 중에서도 예외적인 형태로 보여 청구법인이 수출자의 인증수출자 자격뿐 아니라 허용되는 수출장소까지 확인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한-EU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받기 위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조심 2019관38(2019. 10. 16.)

[주 문]

세관장이 2018.12.27. 청구법인에게 한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과 2019.1.31. 청구법인에게 한 수정수입 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T○○○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체약상대국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인 국제통상산업부(체약상대국 발급기관)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Form AK) 42건을 근거로 하여 「관세법」 제73조 및 한-아세안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FTA특례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한-아세안 FTA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체약상대국 발급기관에 원산지 간접검증을 요청하였고, 체약상대국 발급기관은 검증 요청 물품이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회신하였다.

다. 처분청은 체약상대국 발급기관의 회신에도 불구하고 쟁점물품의 RVC(Regional Value Content ; 역내가치 포함비율) 충족여부에 대한 의심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보아 수차례에 걸쳐 체약상대국 발급기관에 원재료를 해당 국가의 원산지 상품이라고 판단한 근거 및 증명자료에 대해 질의하였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자, 쟁점수출자에 대한 현지검증조사를 실시하였다.

라. 한편 대한민국 관세청과 체약상대국 발급기관은 2017.7.27. 및 2018.5.28. 두 차례에 걸쳐 누적기준과 관련하여 역내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원산지 재료로 인정하기 위한 증빙서류로서 한-아세안 FTA 부록1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증명서(Form AK) 외에도 Form D에 따라 발급한 ATIGA(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원산지증명서]와 검량보고서(Surveyor's Report)를 원산지증빙서류로 추가 인정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수출자가 제출한 계약서, 수입신고서, 송품장 등의 서류는 원산지증빙서류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마. 처분청은 위 검증결과를 종합하여 FTA특례법 제17조 제6항에 따라 체약상대국 발급기관, 쟁점수출자, 청구법인에게 위 수입신고한 42건 중 수입신고번호 ○○○호 외 9건으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결정기준을 '불충족'한다는 현지조사 결과를 통보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FTA특례법 제17조 제7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이의제기 불수용 통지와 함께 과세전통지를 하였다.

바.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청구법인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거부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위 가산세 부과처분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①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②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지주회사로 존속하는 주식회사 ○○○홀딩스에서 인적분할된 신설회사로 비철금속산업 부문, 정밀산업 부문과 방위산업부문을 영위하고 있으며, ○○시 ○○지점을 설치하였고, 동 지점은 ○○○ 등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T○○○와 쟁점물품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수입신고번호 ○○○ 외 42건으로 쟁점수출자가 생산한 쟁점물품을 수입하였고, 처분청은 처분개요의 내용과 같이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실시한 결과 아래 <표1>과 같이 수입신고번호 ○○○ 외 9건에 대하여 관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쟁점수출자는 쟁점물품의 원재료가 누적기준에 따른 역내산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 대신 아래 <표2>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 중 검량보고서와 원산지증명서(Form D)는 입증자료로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자료는 거래 및 수입을 위한 것으로 원산지 확인과 관련한 권한있는 기관이 발급한 서류가 아니라는 이유로 입증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4) 한-아세안 FTA에서 공제법에 의한 RVC 값(%)은 해당 수출물품의 FOB 가격에서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을 공제한 것을 FOB 가격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한 값인데, 수출자는 이와 달리 수출물품의 연평균 FOB 가격에서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을 공제한 것을 연평균 FOB 가격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한 방식으로 계산하였고, 이러한 계산방식에 따른 결과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일이 속한 2015.4.20.부터 2016.3.22.까지의 RVC는 47.85%로 동일하다.

(5) 체약상대국 국제통상산업부는 홈페이지에서 한-아세안 FTA 누적규정을 설명하면서 한-아세안 FTA 누적규정이 적용되는 원재료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적절한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어야 한다(Such material is required to have an appropriate CO certifying its origin)”고 자국의 수출업체에 안내하고 있다.

(6)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청장의 ‘한-아세안 FTA 부속서3 원산지기준 제7조(누적)에 따라 원산지 재료로 인정받기 위한 입증서류의 범위’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누적 입증서류의 범위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 상의 원산지 증명서(Form AK) 외에 동 협정상의 원산지기준이 충족됨이 확인되는 신뢰할 수 있는 서류도 원산지증빙서류로 볼 수 있음”이라고 회신하였고, 관세청장은 위 기획재정부장관의 회신과 관련하여 처분에 누적 입증서류의 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달하였다.

한-아세안 FTA 협정 당사국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하고 한-아세안 FTA 적용대상 상품과 동일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아세안 상품무역협정에 근거하여 발행한 원산지증명서(Form D), WTO 협정에 따른 일반특혜관세 원산지증명서(Form A), 비특혜 원산지증명서(Form B) 등이 포함될 수 있음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건대,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LME가격이 변동됨에도 원산지증명서상의 RVC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가질 충분한 사유가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원산지증명서의 확인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적법하게 발급되었고, 처분청이 실시한 원산지 간접검증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인 체약상대국 국제통상산업부는 쟁점물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였다고 회신한 점, 당초 체약상대국 국제통상산업부는 수출자가 제시한 계약서 등도 누적기준에 따라 원산지 재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증빙서류로 보았으나 우리나라 관세당국과의 협의에 따라 최종적으로 Form D의 원산지증명서 및 검량보고서만을 원산지증빙서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로 하여 RVC 계산을 위한 전제로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를 판단함에 그 증빙서류가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차이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을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원산지증명서의 확인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상, 같은 취지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사유 또한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조심 2019관42(2019. 8. 21.)

[주 문]

1. 세관장이 2018.12.4.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원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세관장이 2019.3.4. 청구법인에게 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인 체약상대국 국제통상산업부(이하 '체약상대국 발급기관')가 발급한 쟁점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한-아세안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FTA 관세특례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한-아세안 FTA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기준인 RVC(Regional Value Content, 역내가치포함비율) 40% 이상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체약상대국 발급기관에 원산지 간접검증을 요청하였는데, 체약상대국발급기관은 쟁점물품이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회신하였다.

다. 처분청은 체약상대국 발급기관의 회신에도 불구하고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의 충족여부에 대한 의심이 해소되지 아니하자, 쟁점수출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쟁점수출자가 쟁점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이하 "쟁점원재료")의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Form D와 검량보고서(Surveyor's Report)는 한-아세안 FTA상 원산지증빙서류로 인정하였으나, 쟁점원재료와 관련된 계약서·송품장·수입신고서 등은 원산지증빙서류로 인정하지 아니한 결과, 쟁점물품이 한-아세안 FTA상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체약상대국 발급기관·쟁점수출자·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불충족'한다는 취지의 현지조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2%)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〇〇〇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부가가치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〇〇〇원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각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① 쟁점원재료가 원산지증빙서류에 의해 한-아세안 FTA상 누적 규정에 따른 원산지 재료임이 입증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③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철강·비철·기계·자동차 부품 등을 주로 취급하는 종합상사로 쟁점수출자로부터 쟁점원재료를 수입하면서 쟁점수출자가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쟁점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신청하였는데, 쟁점원산지증명서상 원산지 결정기준은 “RVC 40 ~ 66.49%”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로부터 수입한 쟁점원재료에 대하여 FTA 관세특례법 제17조에 따라 서면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한-아세안 FTA상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자, 계약상대국 발급기관에 원산지 간접검증을 요청하였는데, 계약상대국 발급기관은 처분청에 검증요청 물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회신하였다.

(다) 처분청은 검증요청 물품에 대한 RVC 충족여부에 대한 의심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체약상대국 발급기관에 원 재료를 원산지 상품으로 판단한 근거 및 증명자료를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체약상대국 발급기관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자, 쟁점수출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처분청은 현지조사 과정에서 쟁점수출자가 쟁점원재료를 한-아세안 FTA 비당사자 및 아세안 외 다른 국가에서 수입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쟁점수출자는 처분청에게 쟁점원재료의 원산지증빙자료로 원재료 공급자의 시험성적서 등 아래 <표1>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처분청은 발급기관과 협의한 결과 연번 1 ~ 6까지의 자료는 원산지증빙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연번 7, 8의 “검량보고서” 및 “Form D”만을 한-아세안 FTA상 원산지증빙자료로 인정하였다.

연번	제출서류명	내 용	인정여부
1	공급자의 시험성적서	중량내역 및 성분분석 보고서	X
2	선하증권(B/L)	운송서류	X
3	공급자의 수출신고서	인도네시아에서 원재료 수출	X
4	수입신고서	○○○ 세관 양식	X
5	공급자의 송품장	가격자료	X
6	계약서(원산지 기재)	계약서	X
7	검량보고서(Surveyor's Report)	중량 · 성분 및 원산지 등 기재	O
8	원산지증명서(Form D)	일부에 원재료에 대하여 인도네시아 통상부 발급 원산지 증명서 제출	O

(라) 한편, 한-아세안 FTA에서 공제법에 의한 RVC는 FOB가격에서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을 공제한 것을 FOB 가격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한 값인데, 쟁점수출자는 해당 수출물품의 실제 FOB가격이 아닌 연평균 FOB 가격에서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을 공제한 것을 연평균 FOB 가격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한 방식으로 RVC를 계산하였는 바, 쟁점물품의 경우 아래 <표2>와 같이 매 건별 FOB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RVC는 38 ~ 39%임에도 쟁점수출자가 연평균 FOB가격을 기준으로 RVC를 47.85%로 산정하여 2015.4.20.부터 2016.3.22.까지 발급기관으로부터 쟁점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수출자 및 한-아세안 FTA상 RVC 계산방법 비교

〈한-아세안 FTA상 쟁점물품 RVC 계산방법〉		
RVC	=	$\frac{\text{FOB가격} - \text{VNM(비원산지 재료가격)}}{\text{FOB가격}} \times 100 = 38\sim 39\%$
〈쟁점수출자의 쟁점물품 RVC 계산방법〉		
RVC	=	$\frac{\text{연평균 FOB가격} - \text{VNM(비원산지 재료가격)}}{\text{연평균 FOB가격}} \times 100 = 47.85\%$

(마) 체약상대국 국제통상산업부는 홈페이지에서 한-아세안 FTA 누적 규정을 설명하면서 한-아세안 FTA상 누적규정이 적용되는 원재료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적절한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어야 한다(Such material is required to have an appropriate CO certifying its origin)”고 자국의 수출업체에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청장에게 ‘한-아세안 FTA 부속서3 원산지기준 제7조(누적)에 따라 원산지 재료로 인정받기 위한 입증서류의 범위’와 관련하여 한-아세안 FTA상 원산지증명서(Form AK) 외에 동 협정상의 원산지기준이 충족됨이 확인되는 신뢰할 수 있는 서류도 원산지증빙서류로 볼 수 있다고 회신하였고, 관세청장은 2017.5.19. 처분청에게 누적 규정 입증서류의 범위에 대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시달하였다.

〈표3〉 관세청장의 누적 규정 입증서류 범위 관련 시달내용

한-아세안 FTA 협정 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하고 한-아세안 FTA 적용대상 상품과 동일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아세안 상품무역협정에 근거하여 발행한 원산지증명서(Form D), WTO 협정에 따른 일반특혜관세 원산지증명서(Form A), 비특혜 원산지증명서(Form B) 등이 포함될 수 있음

(사) 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2018.2.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개정시,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고, 관세청장은 2018.3.29. 산하세관장에게 시달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운영 지침」(심사정책과-898호)에서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하는 경우 및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등으로부터 제출된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제출된 사실과 일치하게

협정관세를 적용받았음을 수입자가 증명하는 경우와 수출국 기관 등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상의 원산지와 원산지조사에 따른 원산지가 상이한 경우로서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등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가 제출한 계약서·수출입신고서·송품장·선하증권·시험성적서 등에 의하여 쟁점원재료가 역내산임이 입증되고, 쟁점물품은 CTH기준도 충족한다고 주장하나, 한-아세안 FTA상 누적 규정에 따라 최종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를 원산지 재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Form AK)를 기초로 하여야 하는데, 이를 갖추지 못한 경우 '협정상의 원산지기준이 충족됨이 확인되는 신뢰할 수 있는 원산지증빙서류'에 의하여 해당 원재료가 역내산임을 증명하여야 할 것인 점, 쟁점수출자가 제출한 계약서·송품장·선하증권·시험성적서·수출입신고서 등은 원래 그 목적이 각각 계약체결·대금청구·운송·순도(중량)표시 및 해당 물품의 수출입신고를 위한 것이므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하기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그 작성주체 또한 해당 거래의 당사자나 운송인 등으로 원산지 확인과 관련한 권한 있는 기관이 작성한 서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산지증빙서류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수출자가 제출한 Form D의 원산지증명서와 검량보고서에 의하더라도 쟁점물품의 RCV는 38 ~ 39%에 불과하여 RVC 40% 이상인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혜관세 적용대상 물품의 원산지는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쟁점원산지증명서상 원산지 결정기준은 "RVC"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CTH 기준을 충족한다는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원산지증명서상 RVC 기준이 잘못된 것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하자있는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를 적용받았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원산지증명서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적법하게 발급되었고, 청구법인이 이를 신뢰하여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신청한 점, 처분청이 실시한 원산지 간접검증에서 발급기관이 쟁점물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였다고 회신하였던 점, 당초 발급기관은 쟁점수출자가 제시한 계약서 등도 누적기준에 따라 원산지 재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증빙서류로 보았으나 우리나라 관세당국과의 협의에 따라 최종적으로 Form D의 원산지증명서 및 검량보고서만을 원산지증빙서류로 보기로 한 점, 이는 결국 RVC 계산을 위한 원재료의 원산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증빙서류가 무엇인지에 대한 양 당사국 간 해석의 차이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임

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입자로서 원산지상품 확인의무를 해태하여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은 귀책이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발급기관이 발급한 쟁점원산지증명서상 기재내용과 일치하게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신청하였는데, 현지조사 결과 원산지기준이 상이한 것으로 확인된 점, 위 쟁점②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산지증빙서류에 대한 양 당사국 간 해석의 차이가 있는 등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가산세를 면제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도 발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조심 2019관43(2019. 7. 17.)

[주 문]

1. 세관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수입신고 한 수입물품에 대한 가산세 합계 〇〇〇원의 부과처분 및 청구법인에게 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한-아세안 FTA에 따라 발급한 원산지증명서(Form AK)를 근거로 협정 관세율 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FTA특례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한-아세안 FTA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체약상대국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하 '체약상대국 발급기관')에 원산지 간접검증을 요청하였고, 체약상대국 발급기관은 검증요청 물품이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회신하였다.

다. 처분청은 체약상대국 발급기관의 회신에도 불구하고 위 쟁점물품의 RVC(Regional Value Content ; 역내가치포함비율) 충족여부에 대한 의심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보아 수차례에 걸쳐 체약상대국 발급기관에 원재료를 해당 국가의 원산지 상품이라고 판단한 근거 및 증명자료에 대해 질의하였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자, 수출자에 대한 현지검증조사를 실시하였다.

라. 처분청은 현지검증 과정에서 수출자가 위 쟁점물품의 생산에 사용한 원재료 중 다른 한-아세안 회원국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포함하여 RVC를 산정한 것으로 보아 이들 원재료가 역내산임에 대한 증명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수출자가 제출한 자료 중 Form D와 검량보고서(Surveyor's Report)는 원산지증빙서류로 인정하였으나 계약서, 수입신고서, 송품장 등의 서류는 신빙성 문제로 이를 부인하였다.

마. 처분청은 위 검증결과를 종합하여 FTA특례법 제17조 제6항에 따라 발급기관, 수출자, 청구법인에게 위 수입 신고 7건 중 2015.10.○. 및 2015.12.○.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결정기준을 ‘불충족’한다는 현지조사 결과를 통보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FTA특례법 제17조 제7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이의제기 불수용 통지와 함께 과세전통지를 하였다.

바.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청구법인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거부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① 쟁점물품의 역내산 원재료가 한-아세안 FTA의 누적기준에 따른 원산지 재료임이 입증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② 가산세 부과처분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 (1) 청구법인은 종합사업회사로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반도체 업체 등에 판매하는 업체이다.
- (2) 처분청은 아래 표의 연번 6 및 7의 수입신고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결정기준을 불충족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관세○○○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3) 수출자는 쟁점물품의 원재료가 누적기준에 따른 역내산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 대신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 중 검량보고서와 원산지증명서(Form D)는 입증자료로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자료는 거래 및 수입을 위한 것으로 원산지 확인과 관련한 권한있는 기관이 발급한 서류가 아니라는 이유로 입증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4) 한-아세안 FTA에서 공제법에 의한 RVC 값(%)은 FOB 가격에서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을 공제한 것을 FOB 가격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한 값인데, 수출자는 해당 수출물품의 실제 FOB 가격이 아닌 연평균 FOB 가격에서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을 공제한 것을 연평균 FOB 가격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한 방식으로 계산하였는바, 이러한 계산방식에 따른 결과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일이 속한 2015.4.20.부터 2016.3.22.까지의 RVC는 47.85%로 동일하다.

그런데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실제 FOB 가격을 기초로 산출한 RVC는 38 ~ 39%에 불과하여 원산지 결정기준 40%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체약상대국 국제통상산업부는 홈페이지에서 한-아세안 FTA 누적규정을 설명하면서 한-아세안 FTA 누적규정이 적용되는 원재료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적절한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어야 한다(Such material is required to have an appropriate CO certifying its origin)”고 자국의 수출업체에 안내하고 있다.

(6)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청장의 ‘한-아세안 FTA 부속서3 원산지기준 제7조(누적)에 따라 원산지 재료로 인정받기 위한 입증서류의 범위’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누적 입증서류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관세청장은 위 기획재정부장관의 회신과 관련하여 처분에 누적 입증서류의 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달하였다.

한-아세안 FTA 협정 당사국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하고 한-아세안 FTA 적용대상 상품과 동일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아세안 상품무역협정에 근거하여 발행한 원산지증명서(Form D), WTO 협정에 따른 일반특혜관세 원산지증명서(Form A), 비특혜 원산지증명서(Form B) 등이 포함될 수 있음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가 수출자가 제시한 계약서, 수출·입신고서, 인보이스, 선하증권, 시험성적서 등에 의하여 역내산임이 입증된다고 주장하나,

한-아세안 FTA 누적규정에 따라 최종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를 원산지 재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권한있는 당국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Form AK)를 기초로 하여야 하나, 이를 갖추지 못한 경우 ‘협정상의

원산지기준이 충족됨이 확인되는 신뢰할 수 있는 원산지증빙서류'에 의하여 해당 원재료가 역내산임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므로, 수출자가 제출한 위 계약서 등이 원산지증명서(Form AK)를 대체할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류인지가 관건인데,

수출자가 제출한 계약서, 송품장, 선하증권, 시험성적서, 수출입신고서 등은 원래 그 목적이 각각 계약체결, 대금 청구, 운송, 순도(중량)표시 및 해당 물품의 수출입신고를 위한 것이므로 그것만으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하기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해당 거래의 당사자나 운송인 등이 작성하여 원산지 확인과 관련한 권한 있는 기관이 작성한 서류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이들 서류를 원산지증명서(Form AK)를 대체할 수 있는 원산지증빙서류로 보기 어려운 점, 수출자가 제시한 Form D의 원산지증명서와 검량보고서에 의하더라도 쟁점물품의 RCV는 38 ~ 39%에 불과하여 RVC 40% 이상인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하자있는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것이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고, 수입자로서 원산지상품 확인의무를 해태하였으므로 수정수입세금 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적법하게 발급되었고, 처분청이 실시한 원산지 간접검증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인 국제통상산업부는 쟁점물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였다고 회신한 점, 당초 국제통상산업부는 수출자가 제시한 계약서 등도 누적기준에 따라 원산지 재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증빙서류로 보았으나 우리나라 관세당국과의 협의에 따라 최종적으로 Form D의 원산지증명서 및 검량보고서만을 원산지증빙서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RVC 계산을 위한 전제로 원산지를 판단함에 그 증빙서류가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차이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게다가 최종 RVC 비율 또한 기준점인 40%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결국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같은 취지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사유 또한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 조심 2019관52(2019. 9. 18.)

[주 문]

세관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가산세 〇〇〇원의 부과처분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제3국 소재 T〇〇〇가 체약상대국 소재 쟁점수출자로부터 수입하여 수입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던 〇〇〇를 구매하여 수입하면서, 체약상대국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인 국제통상산업부(체약상대국 국제통상산업부, 이하 “체약상대국 발급기관”)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Form AK, 이하 “쟁점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한-아세안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FTA 특례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한-아세안 FTA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기준(RVC 40% 이상)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체약상대국 발급기관에 원산지 간접검증을 요청하였는데, 체약상대국 발급기관은 검증요청 물품이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회신하였다.

다. 처분청은 체약상대국 발급기관의 원산지 결정기준의 충족여부에 대한 의심이 해소되지 아니하자, 쟁점수출자에 대하여 현지검증조사를 실시하였고, 쟁점수출자가 위 쟁점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Form AK, Form D와 검량보고서(Surveyor's Report)는 원산지증빙서류로 인정하였으나, 계약서·수입신고서·송품장 등은 원산지증빙서류로 인정하지 아니한 결과,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190건 중 수입신고번호 〇〇〇 등 45건(이하 “쟁점물품”)이 한-아세안 FTA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체약상대국 발급기관·쟁점수출자·청구법인에게 원산지 결정기준을 ‘불충족’한 것으로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아세안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2%)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〇〇〇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부가가치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〇〇〇원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위 처분 중 가산세 부과 및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물품의 역내산 원재료가 원산지증빙서류에 의해 한-아세안 FTA상 누적 규정에 따른 원산지 재료임이 입증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쟁점물품에 대한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②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T〇〇〇가 수입하여 수입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던 〇〇〇의 일부를 보세창고도거래방식으로 구매하여 수입하면서 쟁점수출자가 체약상대국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하였는데, 쟁점원산지증명서상 원산지 결정기준은 “RVC 41.52 ~ 66.49%”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로부터 수입한 〇〇〇에 대하여 FTA 관세특례법 제17조에 따라 서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한-아세안 FTA상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자, 체약상대국 발급기관에 원산지 간접검증을 요청하였는데, 체약상대국 발급기관은 처분청에 검증요청 물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회신하였다.

(다) 처분청은 검증요청 물품에 대한 RVC 충족여부에 대한 의심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체약상대국 발급기관에 원재료를 원산지 상품으로 판단한 근거 및 증명자료를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체약상대국 발급기관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자, 쟁점수출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처분청은 현지조사 과정에서 쟁점수출자가 ○○○의 원재료를 한-아세안 FTA 비당사자 및 아세안 외 다른 국가에서 수입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쟁점수출자는 처분청에게 쟁점원재료의 원산지증빙자료로 원재료 공급자의 시험성적서 등 아래 <표2>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처분청은 계약상대국 발급기관과 협의한 결과 연번 1 ~ 6까지의 자료는 원산지증빙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연번 7, 8의 “검량보고서” 및 “Form D”만을 한-아세안 FTA상 원산지증빙자료로 인정하였다.

(라) 한편, 한-아세안 FTA에서 공제법에 의한 RVC는 FOB가격에서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을 공제한 것을 FOB 가격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한 값인데, 쟁점수출자는 해당 수출물품의 실제 FOB가격이 아닌 연평균 FOB 가격에서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을 공제한 것을 연평균 FOB 가격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한 방식으로 RVC를 계산하였는바, 쟁점물품의 경우 아래 <표3>와 같이 매 건별 FOB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RVC는 26 ~ 39%임에도 쟁점수출자가 연평균 FOB가격을 기준으로 RVC를 47.85%로 산정하여 2015.4.6.부터 2015.12.1.까지 계약상대국 발급기관으로부터 쟁점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계약상대국 국제통상산업부는 홈페이지에서 한-아세안 FTA 누적 규정을 설명하면서 한-아세안 FTA상 누적규정이 적용되는 원재료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적절한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어야 한다(Such material is required to have an appropriate CO certifying its origin)”고 자국의 수출업체에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청장에게 ‘한-아세안 FTA 부속서3 원산지기준 제7조(누적)에 따라 원산지 재료로 인정받기 위한 입증서류의 범위’와 관련하여 한-아세안 FTA상 원산지증명서(Form AK) 외에 동 협정상의 원산지 기준이 충족됨이 확인되는 신뢰할 수 있는 서류도 원산지증빙서류로 볼 수 있다고 회신하였고, 관세청장은 처분청에게 누적 규정 입증서류의 범위에 대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시달하였다.

<표4> 관세청장의 누적 규정 입증서류 범위 관련 시달내용

한-아세안 FTA 협정 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하고 한-아세안 FTA 적용대상 상품과 동일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아세안 상품무역협정에 근거하여 발행한 원산지증명서(Form D), WTO 협정에 따른 일반특혜관세 원산지증명서(Form A), 비특혜 원산지증명서(Form B) 등이 포함될 수 있음

(사) 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2018.2.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개정시,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고, 관세청장은 2018.3.29. 산하세관장에게 시달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운영 지침」(심사정책과-898호)에서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하는 경우 및 계약상대국의 수출자 등으로부터 제출된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제출된 사실과 일치하게 협정관세를 적용받았음을 수입자가 증명하는 경우와 수출국 기관 등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상의 원산지와 원산지조사에 따른 원산지가 상이한 경우로서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등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원산지증명서상 RVC 기준이 잘못된 것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하자있는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를 적용받았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원산지증명서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적법하게 발급되었고, 청구법인이 이를 신뢰하여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신청한 점, 처분청이 실시한 원산지 간접검증에서 계약상대국 발급기관이 쟁점물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였다고 회신하였던 점, 당초 계약상대국 발급기관은 쟁점수출자가 제시한 계약서 등도 누적기준에 따라 원산지 재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증빙서류로 보았으나 우리나라 관세당국과의 협의에 따라 최종적으로 Form D의 원산지증명서 및 검량보고서만을 원산지증빙서류로 보기로 한 점, 이는 결국 RVC 계산을 위한 원재료의 원산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증빙서류가 무엇인지에 대한 양 당사국 간 해석의 차이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입자로서 원산지상품 확인의무를 해태하여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은 귀책이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계약상대국 발급기관이 발급한 쟁점원산지증명서상 기재내용과 일치하게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신청하였는데, 현지조사 결과 원산지기준이 상이한 것으로 확인된 점, 위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산지증빙서류에 대한 양 당사국 간 해석의 차이가 있는 등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가산세를 면제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도 발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조심2019관89 (2019.12.19.)

[주 문]

세관장이 2019.4.11.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〇〇〇원, 부가가치세 〇〇〇원 및 가산세 〇〇〇원 합계 〇〇〇원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〇〇〇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로부터 수입신고번호 〇〇〇 외 9건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체약상대국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인 국제통상산업부(이하 “체약상대국 발급기관”)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Form AK, 이하 “쟁점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한-아세안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FTA 관세특례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한-아세안 FTA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기준인 RVC(Regional Value Content, 역내가치포함비율) 40% 이상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체약상대국 발급기관에 원산지 간접검증을 요청하였는데, 체약상대국 발급기관은 쟁점물품이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회신하였다.

다. 처분청은 체약상대국 발급기관의 회신에도 불구하고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의 충족여부에 대한 의심이 해소되지 아니하자, 쟁점수출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쟁점수출자가 쟁점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이하 “쟁점원재료”)의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Form D와 검량보고서(Surveyor's Report)는 원산지증빙서류로 인정하였으나, 쟁점원재료와 관련된 계약서·송품장·수입신고서 등은 원산지증빙서류로 인정하지 아니한 결과, 쟁점물품이 한-아세안 FTA 상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체약상대국 발급기관·쟁점수출자·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불충족’한다는 취지의 현지조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아세안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2%)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〇〇〇원, 부가가치세 〇〇〇원 및 가산세 〇〇〇원 합계 〇〇〇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물품이 한-아세안 FTA상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쟁점수출자가 체약상대국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쟁점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신청하였는데, 쟁점원산지증명서상 원산지 결정기준은 “RVC 40 ~ 66.49%”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FTA 관세특례법 제17조에 따라 서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한-아세안 FTA상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자, 체약상대국 발급기관에게 원산지 간접검증을 요청하였는데, 체약상대국 발급기관은 처분청에게 검증요청 물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회신하였다.

(다) 처분청은 검증요청 물품에 대한 RVC 충족여부에 대한 의심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체약상대국 발급기관에 원재료를 원산지 상품으로 판단한 근거 및 증명자료를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체약상대국 발급기관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자, 쟁점수출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처분청은 현지조사 과정에서 쟁점수출자가 쟁점원재료를 한-아세안 FTA 비당사자 및 아세안 회원국 외 다른 국가에서 수입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쟁점수출자는 처분청에게 쟁점원재료의 원산지증빙자료로 원재료 공급자의 시험성적서 등 아래 <표1>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처분청은 체약상대국 발급기관과 협의한 결과 연번 1~6

까지의 자료는 원산지증빙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연번 7, 8의 “검량보고서” 및 “Form D”만을 한-아세안 FTA상 원산지증빙자료로 인정하였다.

(라) 한편, 한-아세안 FTA에서 공제법에 의한 RVC는 FOB가격에서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을 공제한 값을 FOB 가격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한 값인데, 쟁점수출자는 해당 수출물품의 실제 FOB가격이 아닌 연평균 FOB 가격에서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을 공제한 것을 연평균 FOB 가격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하는 방식으로 RVC를 계산하였는바, 쟁점물품의 경우 아래 <표2>와 같이 매 건별 FOB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RVC는 38 ~ 39%임에도, 쟁점수출자는 연평균 FOB가격을 기준으로 RVC를 47.85%로 산정하여 2015.4.20.부터 2016.3.22.까지 ○○○ 발급기관으로부터 쟁점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체약상대국 발급기관은 홈페이지에서 한-아세안 FTA 누적 규정을 설명하면서 한-아세안 FTA상 누적규정이 적용되는 원재료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적절한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어야 한다(Such material is required to have an appropriate CO certifying its origin)”고 자국의 수출업체에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청장에게 ‘한-아세안 FTA 부속서 3 원산지기준 제7조에 따라 원산지 재료로 인정받기 위한 입증서류의 범위’와 관련하여 한-아세안 FTA상 원산지증명서(Form AK)외에 동 협정상의 원산지기준이 충족됨이 확인되는 신뢰할 수 있는 서류도 원산지증빙서류로 볼 수 있다고 회신하였고, 관세청장은 처분청에게 아래 <표3>과 같이 누적 규정 입증서류의 범위를 시달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한-아세안 FTA상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수출자가 제출한 계약서 · 송품장 · 선하증권 · 시험성적서 · 수출입신고서 등은 원산지증빙서류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수출자가 제출한 Form D와 검량보고서에 의하더라도 쟁점물품의 RCV는 38 ~ 39%에 불과하여 원산지 결정기준(RVC 4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원산지증명서상 RVC 기준이 잘못된 것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하자있는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를 적용받았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원산지증명서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적법하게 발급되었고, 청구

법인이 이를 신뢰하여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신청한 점, 처분청이 실시한 원산지 간접검증에서 계약상대국 발급기관이 쟁점물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였다고 회신하였던 점, 당초 계약상대국 발급기관은 쟁점수출자가 제시한 계약서 등도 누적기준에 따라 원산지 재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증빙서류로 보았으나 우리나라 관세당국과의 협의에 따라 최종적으로 Form D와 검량보고서만을 원산지증빙서류로 보기로 한 점, 이는 결국 RVC 계산을 위한 원재료의 원산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증빙서류가 무엇인지에 대한 양 당사국 간 해석의 차이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9관42, 2019.8.21., 같은 뜻임).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조심 2013관60(2013. 11. 4.)

[주 문]

세관장이 2012.11.28., 2013.1.3.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〇〇〇원, 부가가치세 〇〇〇원, 가산세 〇〇〇원의 부과처분중 가산세는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수출자로부터 의약품을 수입(수입신고번호 〇〇〇호 외 19건, 이하 “쟁점물품”)하면서,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고 한-EFTA FTA협정에 의한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해 원산지 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체약상대국과 제3국에서 동시 생산되는 11개 품목에 대하여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고,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은 “자국법상 원산지 관련서류의 보관기간은 3년이므로, 2008년 12월 이전 발급된 원산지신고서는 검증이 불가하고, 이후 발급된 원산지신고서는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기준을 충족한다.”고 회신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원산지 검증이 불가하다고 회신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〇〇〇원, 부가가치세 〇〇〇원, 가산세 〇〇〇원 등 합계 〇〇〇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수출국내의 법령에 따라 원산지 관련서류의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원산지를 미검증한 쟁점물품에 대해

한-EFTA FTA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인 한국○○에 대한 기획심사 결과 일부 의약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빙서류의 형식적 요건 미비를 이유로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관세 등 ○○○원을 경정 처분하였다. 이후 조심2008관136호(2009.12.2)에 의거 형식적요건만으로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쟁점물품이 실제 ○○○産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으로 결정되자, 청구법인은 원산지 결정자료, 공장별 생산제품 내역, Batch Number 결정정책 등의 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産임이 충족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경정처분한 세액을 전액 환급받았다.

(2) 이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입한 이 건 쟁점물품 중 체약상대국 외 국가에서 생산되거나 체약상대국과 제3국에서 동시에 생산되는 것으로 파악된 17개 품목에 대한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체약상대국에서 제조공정이 수행되는 6개 품목에 대하여는 ○○○産으로 인정하여 원산지조사를 종결하고, 체약상대국과 제3국에서 동시에 생산되거나 제조방법이 불충분하여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11개 품목에 대하여는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은 “2008년 12월 이전에 발급된 원산지신고서는 자국법상 서류보관 기간 3년이 경과되어 검증이 불가하고, 이후 발급된 원산지신고서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회신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원산지 검증이 불가하다고 회신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EFTA FTA협정 부속서」 제28조 및 「FTA특례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 685,997,54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3) 2013.6.4 ~ 6.5. 서울에서 한·○○○ 관세당국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이 건에 대해서 양국간 논의를 한 바 있다. 이 건에 대한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입장을 살펴보면 “수출자와 생산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국법령상 자료보관 의무기간(3년)과 한국의 자료보관 의무기간(5년)이 불일치함으로써 생긴 구조적이고 심각한 문제점으로 3년경과 원산지신고서도 특혜원산지를 위반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회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관세당국이 서류보관기간(3년)을 경과한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한국 관세당국과의 두차례 회의(2013.6.4. ~ 6.5)를 통한 합의결과에 따라, 서류보관기간(3년)을 경과한 이 건 원산지신고서에 대해서도 ‘해당검증의 결과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온 후에는 한국 관세청이 해당 통지를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토대로 한다’라고 한국 관세청에 1차 공문을 송부하였고, 쟁점물품에 대하여 추가로 원산지 검증을 실시하여 ○○○産이 맞다고 검증결과를 한국 관세청에 최종 통보한바 이 건 특혜관세 배제를 철회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한국관세청 입장을 보면 “공동위원회 결정이 발효되기 전까지 자료보관기간과 관련 현재 진행 중인 건에 대해서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체약상대국측 의견에 따를 것을 제안하였으나 동의하지 않았다. 체약상대국측은 자료보관기간이 3년이 지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을 검증 할 것이며, 한국측에 그 결과를 통보할 것을 언급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국측은 이러한 발언이 이전에 전혀 논의되지 않은 사항으로 다소 일방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이 사항이 회의에서 언급되는 것조차 동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 건은 한국 관세청의 원산지 검증요청 후 10개월 이내에 회신되지 못하고 2년 9개월 만에(2011.11.8.검증요청⇒2013.7.26.회신) ○○○産이 맞다고 회신되었으므로 「한·EFTA FTA 협정 부속서 I」 제24조 제7항 및 「FTA관세특례법」 제16조 제1항 2호에 의거 특혜관세를 배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처분청의 의견이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펴건대, 쟁점①의 경우청구법인이 통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안(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서류보관기간 3년 국내입법)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물품이 ○○○産인지 원산지 검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협정관세 적용이 어려워 쟁점물품의 특혜관세를 배제하였다는 점, 2013.6월 서울에서 개최한 한·○○○ 관세당국회의에서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당초의 원산지 검증 회신내용을 수용하여 이 건 특혜관세 배제를 취소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산지가 미검증으로 회신되어 한국 관세청에서는 취소가 불가하다고 의견을 피력한 점, 이후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추가로 원산지 검증을 실시하여 이 건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産임이 확인되었으나 이미 원산지 검증 회신기간 10개월이 경과되어 특혜관세를 배제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의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②의 경우, 쟁점물품 수출국인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은 「한·EFTA FTA 협정」상의 5년간의 서류보관 규정과 달리 3년이라는 원산지신고서류 보관 규정의 국내입법으로 인해 쟁점물품 수출자와 생산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5년간의 수입신고건 중 3년간의 수입신고분에 대해서만 원산지 검증결과를 회신하면서 나머지 3년경과 원산지신고서도 특혜원산지를 위반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회신한 점, 이후 나머지 3년경과 원산지신고서에 대하여 추가로 원산지 검증을 실시하여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産이 맞다고 회신한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협정세율 배제에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한 가산세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서울 행정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14구합54424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산○○○코리아 주식회사
피 고 세관장
변 론 종 결 2014. 7. 24.
판 결 선 고 2014. 9. 25.

주 문

1. 피고가,
가. 2013. 3. 11.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1 순번 1 내지 11 기재 각 처분 중 같은 목록 '정당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한 부분을,
나. 2013. 5. 12.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2 순번 1 내지 56 기재 각 처분 중 같은 목록 '정당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3. 11.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1 기재 관세 등 75,208,410원, 2013. 5. 12.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2 기재 관세 등 547,401,47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물품의 수입

원고는 치과용 합금 및 기공재료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08. 3. ○.경부터 2009. 9. ○.경까지 사이에 ○○○ 국적 회사인 이 사건 수출자로부터 치아용백금 등(별지 목록1, 2 ‘수입신고번호’란 기재 수입신고로 수입된 물품이다, 이하 ‘이 사건물품’)을 수입하면서, 피고에게 위 수출자 발급의 원산지신고서¹⁾를 제출하고, ‘한·유럽 FTA협정’에 의한 특혜 관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다.

나. 피고의 검증요청

피고는 2006. 9. 1. 한·유럽 FTA협정이 발효된 이후 계약상대국로부터 백금 수입이 늘어나고 있어서 전반적인 계약상대국 백금 생산 및 수입통관 실태를 분석한 결과 계약상대국의 백금 생산업체들은 주로 외국에서 구매한 저순도 백금과 스크랩을 정련하여 고순도 백금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저순도 백금을 정련하여 고순도 백금으로 생산하는 경우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서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서면조사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였다. 이에 피고는 한·유럽 FTA협정 부속서 I 제24조에 따라 스위스 관세당국에 이 사건물품을 포함한 원고의 수입물품 전체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다.

다.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의 회신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은 피고에게 ‘계약상대국 국내법상 원산지 관련서류의 보관기간은 3년이므로, 2008. 3. ○.부터 2009. 9. ○.까지 사이에 발급된 원산지증명은 국내법상 서류 보관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스위스 관세당국은 원산지 검증을 수행할 지위에 있지 않다. (다만) 이 사건물품이 ○○○ 원산지가 아니라는 어떠한 증거도 존재하지 아니한 이상, 첨부된 원산지증명은 적법하게 발행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회신하였고(이하 ‘이 사건 회신’), 그 후 피고에게 서류 보관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2009. 9. ○. 이후 수입물품에 대한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의 원산지조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의 처분 및 전심절차

(1) 피고는 이 사건물품에 대한 검증요청에 대하여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의 회신이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로 보고 FTA 관세특례법(2010. 1. 1. 법률 제99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례법’) 제16조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별지 목록1 기재와 같이 수입신고번호 ○○○ 외 10건의 수입물품에 대한 각 관세(합계 ○○○원), 부가가치세(합계 ○○○원) 및 가산세(합계 ○○○원)를 부과고지하였고, 별지 목록2 기재와 같이 수입신고번호 ○○○ 외 55건의 수입물품에 대한 각 관세(합계 ○○○원), 부가가치세(합계 ○○○원) 및 가산세(합계 ○○○원)를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

1) 이 사건 수출자는 ○○○로부터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았으므로, 수출자 서명 없이 송장에 원산지신고 문안 및 인증수출자번호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한·유럽 FTA협정 부속서 I 제16조)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판단

(1) 협정관세 적용배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원산지 검증방법은 직접검증 방식과 간접검증 방식으로 구분되는데, 한·유럽 FTA협정 부속서 I 제24조 제4항에 따르면 한·유럽 FTA협정은 간접검증 방식을 취하고 있고, 같은 부속서 I 제24조 제7항은 “검증요청일로부터 10월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나’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검증요청을 한 관세당국은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간접검증 방식의 경우 직접검증 방식과 달리 수입국 관세당국은 수출국 관세당국으로부터 검증결과 및 관련 자료를 통보받아 원산지 지위 부여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일정 기간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나 회신에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회신기한, 회신에 포함될 정보 및 자료의 내용, 범위는 검증의 실효성 확보와 직결되는 핵심적 내용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한·유럽 FTA협정 부속서 I 제24조 제4항은 “검증은 수출국 관세당국이 수행한다. 이러한 목적상 관세당국은 모든 증거를 요구하고 수출자의 회계장부를 검사하거나 적절한 감독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같은 조 제6항은 “검증을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조사결과와 사실관계를 포함한 검증결과 및 가능한 한 수출자의 모든 증빙서류를 제공 받는다. 검증결과는 서류의 진정성 여부, 해당 상품이 대한민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부속서의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할 때, 대한민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 검증요청을 받은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은 수출자에게 모든 증거(서류에 국한되지 않는다)를 요구할 수 있고, 수출자의 회계장부를 검사하거나 적절한 감독을 수행할 권한을 가지므로, 그와 같은 권한을 바탕으로 원산지 검증을 수행하여야 하고, 그 검증 및 조사 결과와 그와 관련된 수출자의 모든 증빙서류를 대한민국 관세당국에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이 사건 회신의 내용에 따르면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은 국내법상 서류 보관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 사건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수행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회신하여 이 사건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실시하지 않았고, 다만 이 사건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이 적법하게 발행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이고 있을 뿐인바, 위 회신에는 원산지 증명과 관련하여 검증을 하였다든 내용이 없고, 판정에 필요한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회신은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한·유럽 FTA협정 부속서 I 제 24조 제7항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2)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한·유럽 FTA협정 부속서 I 제24조 제7항은 '검증요청일로부터 10월 이내에 회신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도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없는 특정한 상황이라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exceptional circumstances)'에는 특혜관세대우를 유지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에 관한 구체적인 정의규정이 없고, 이를 광범위하게 해석할 경우 간접검증 방식의 실효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바, '예외적인 경우'란 '수출국 관세당국이 검증 내지 회신을 지연하거나 그 내용상의 부실을 정당화할 수 있는, 물품 생산자, 수출자 및 수출국 관세당국이 통제 불가능한 특정한 상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회신은 특혜 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① 한·유럽 FTA협정 체결 이후 체약상대국으로부터 백금 등 수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체약상대국 국외로부터 수입된 저순도 백금을 체약상대국 국내에서 정련하여 고순도 백금으로 생산하는 경우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나아가 피고는 원고에게 서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서면조사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였는바, 피고가 이 사건물품의 원산지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게 검증요청을 한 것은 정당하다.

② 한·유럽 FTA협정 부속서 I 제24조 제2항은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원산지신고서의 진정성, 해당 상품의 원산지 지위 또는 이 부속서의 그 밖의 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원산지신고서 사후검증을 언제든지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고가 체약상대국 국내법상 서류 보관기간 3년을 초과하여 원산지 검증요청을 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협정 및 다른 법령에 반하거나, 정당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

③ 한·유럽 FTA협정 부속서 I 제24조 제4항에 의하면, 검증요청이 있을 경우 수출국 관세당국은 검증을 직접 수행하여야 하고, 이러한 검증을 수행하기 위해 관세당국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모든 증거를 요구하고, 회계장부를 검사하거나 적절한 감독을 수행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바, 스위스 관세당국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실질적인 검증에 필요한 모든 정보 및 자료를 제공받아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럼에도 스위스 관세당국이 단지 자국법상 서류 보관기간 3년이 초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입국 관세당국이 요청한 원산지 검증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위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④ 협정관세 적용배제를 규정하고 있는 한·유럽 FTA협정 부속서 I 제24조 제7항 및 특례법 제16조는 수출국 관세당국이 일정 기간 이내에 회신을 하지 않거나 회신을 하더라도 그 회신에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

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배제에 있어서 수입자의 귀책사유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3)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킬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① 이 사건 각 처분은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회신이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아 한·유럽 FTA협정 부속서 I 및 특례법에서 정한 협정관세 적용배제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것인바, 수출국 관세당국이 원산지 검증요청에 따라 이를 이행할 것인지 나아가 어떠한 방식으로 어느 범위 및 정도까지 검증을 할 것인지의 문제는 원고의 통제범위 밖의 문제라고 할 것인 점, ② 원고로서는 3년이 경과한 물품에 대하여 대한민국 관세당국이 원산지 검증을 요청한 경우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국내법상 서류보관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검증을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쉽게 예상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체약상대국 국내법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수출자로 하여금 5년 동안 원산지 관련서류를 보관하도록 할 어떠한 의무나 책임이 존재하지 않거나, 적어도 원고에게 그와 같은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각 처분을 내리게 된 원인과 관련하여 원고가 달리 한·유럽 FTA협정 및 그 외 대한민국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납세자인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인정할 수 없거나,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4) 정당한 세액에 관하여

(가)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의 심판대상은 과세관청이 부과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의 여부이고, 부과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위법하므로, 그 부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650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과부분은 취소되어야 하므로, 이를 공제한 정당한 세액은 별지 목록1, 2의 각 '정당세액'란 기재와 같다.

(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1, 2 기재 이 사건 각 처분 중 별지 목록 1, 2의 '정당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각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소취하 종결

아. 물품에 부착된 원산지 표시를 FTA 원산지로 오인

- 1) 서울행정법원 2016. 12. 23. 선고 2016구합50389 [관세가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 10. 19. 선고 2017누33031 [관세가산세등부과처분취소]

PART 03. 2.다. 2) 참조

1) 조심 2015관65(2015. 7. 13.)

[주 문]

세관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수출자가 제조한 쟁점물품을 수출국으로부터 제3국 등을 경유하여 국내로 수입하면서, “한-아세안 FTA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이 수출국에서 제3국 등을 경유하여 운송되었음에도 한-아세안 FTA 협정 부속서 3 원산지규정 제9조(직접운송) 및 부록 1 원산지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19조에서 정하는 ‘수출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 등 직접운송원칙 충족을 위한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쟁점물품이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한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수출국으로부터 제3국 등을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된 쟁점물품이 한-아세안 FTA 협정상의 직접운송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②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③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통과선하증권은 제3국 등에서 발행한 것으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3 원산지규정 제9조(직접운송)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2010.3.○○.부터 2011.3.○○.까지 수입신고한 4건에 대해서는 수입신고시 선하증권, 원산지증명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TRUCK MANIFEST(이하 “T/M”)은 제출하지 못하여 협정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관세 등을 납부한 이후 T/M을 보완하여 FTA특례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수입신고수리 후 사후신청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았고,

2010.5.○○. 수입신고한 한 건에 대해서는 수입신고시 선하증권, T/M, 상업송장,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원산지증명서는 제출하지 못하여 협정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관세 등을 납부한 이후 원산지증명서를 보완하여 FTA특례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수입신고수리 후 사후신청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았으며,

2011.05.○○.부터 2013.8.○○.까지 수입신고한 15건에 대해서는 수입신고시 선하증권, 원산지증명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T/M등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FTA특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수리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았다.

(3) 한-아세안 FTA 협정 제5조(원산지규정)에서는 원산지규정 및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를「부속서 3」및 그 부록에 규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동 협정 제16조(부속서 및 장래의 법률문서) 제1호에서는 “부속서 및 부록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속서 3 (원산지규정)」 제9조(직접운송) 제1항에서는 “특혜관세 대우는 이 부속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수출당사국과 수입 당사국의 영역간에 직접 운송된 상품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상품이 수출당사국 및 수입 당사국의 영역이 아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경유하는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되더라도, 다음을 조건으로, 직접 운송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제3국을 경유한 경우 직접운송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충족하여야 하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제3국을 경유하는 이유가 지리적 이유로 또는 오직 운송상의 이유일 것

(나)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하였을 것

(다)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공정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하였을 것

한편, 「부속서 3」의 이행 목적상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원산지 검증 그리고 그 밖의 관련된 행정사항에 관하여 운영절차를 규정한 「부록 1 (원산지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19조에서는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직접운송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반드시 수입국 세관당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① 수출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
- ② 원산지증명서 원본
- ③ 물품의 상업송장 원본의 부분
- ④ 그 밖에 부속서 3 제9조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증거인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

(4) '통과선하증권'은 선하증권의 일종으로서 운송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데 선주가 다른 선박회사의 선박을 이용하거나 해운과 육운을 교대로 이용하여 운송된 경우 최초의 운송업자가 전구간의 운송에 대하여 발행하여 모든 책임을 지는 운송증권으로서 선하증권의 일종이다.

(5) T/M은 수출국에서 제3국 항구까지 수입물품이 변동 없이 그대로 운송되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서 청구법인이 발급받아 통관지세관장에게 제출한 서류이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한-아세안 FTA 협정 부속서3 부록1(원산지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19조에 의하면, 수출당사국과 수입 당사국의 영역이 아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중간 경유국의 영역을 통하여 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수출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선하증권을 살펴보면, 제3국인 T국(1건) 및 V국(19건)에서 발행한 것으로 한-아세안 FTA 협정 부속서 3 원산지규정 제9조(직접운송)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아닌 점, T/M은 수출국에서 제3국 항구까지 수입물품이 변동 없이 그대로 운송되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서 이를 통과선하증권을 대체할 수 있는 서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수출당사국으로부터 제3국 등을 경유하여 국내로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직접운송으로 간주되는 '수출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신고를 수리하는 행위는 일종의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제4항에서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건 처분은 처분청이 수출당사국으로부터 제3국 등을 경유하여 국내로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직접운송으로 간주되는 ‘수출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관세 등을 부과한 것이므로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세율의 적용을 위하여 수출국에서 제3국의 항구까지 쟁점물품이 변동 없이 그대로 운송되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T/M 등을 통관지세관장에게 제출한 점, 통관지세관장은 일부 건에 대하여 협정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가 T/M 등이 제출되자 수입신고수리 후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기납부한 관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였고, 청구법인이 이를 신뢰하여 일부 건은 수입신고수리 전에 T/M 등을 제출하자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수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T/M이 아닌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조심 2016관43(2016. 5. 23.)

[주 문]

세관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가산세의 부과처분 및 청구법인에게 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한-아세안 FTA에 따라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 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S국을 경유하여 수입된 쟁점물품이 한-아세안 FTA의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출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를 제출하지 못하자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요청을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① 통과선하증권 미제출을 이유로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②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 ③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④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S국을 경유하여 수입된 쟁점물품이 한-아세안 FTA의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출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를 제출하지 못하자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경정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과세전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관세청장에게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관세청장은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CCP, B/L, 인보이스 등에 따르면 각 서류의 인보이스 번호,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 등이 서로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S국-부산 구간에서 발급된 B/L의 품명 란 하단에는 “BY BONDED TRUCK FROM ○○○, 수출국 TO S국”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4) 관세청장이 시달한 「한-칠레, 한-EFTA, 한-아세안 FTA 집행지침」의 'I. 배경'과 'III.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기재 및 확인요령' 중 직접운송 규정의 확인요령은 다음과 같다. - 생략 -

(5) 청구법인은 협정문에 대한 해석상 민원인 및 일선세관에 혼란이 있었던 한-아세안 FTA 시행 초기(2007년 6월) ○○세관 담당직원의 권고의견에 따라 원산지국에서 직접 운송되었음을 입증하는 문구가 기재된 B/L, 원산지증명서, S국 세관의 보세구역 반출입 신고서 등을 제출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통

과선하증권이 아닌 B/L에 위 문구를 기재하도록 한 ○○세관의 권고의견이 있었다는 공문 등의 서류는 확인되지 아니하지만 청구법인이 당시 담당직원으로 언급한 “이○○”이 ○○세관에서 근무한 사실은 확인된다는 의견이다.

(6) 이 건 관련 원산지조사가 시작된 이후 2014.10.○○ 발급된 B/L에는 ○○○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이를 쟁점물품이 P○○에서 선적되어 ○○○로 S국에 도착한 후 ○○○호에 환적되어 부산항까지 운송되는 전 구간을 포함하는 사실상 통과선하증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비록 수출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쟁점물품이 수출당사국에서 보세운송 상태로 경유국까지 운송된 후 선적되었음을 나타내는 문구가 기재된 B/L을 제출하였고 이는 사실상 통과선하증권과 같으므로 단지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협정관세 적용물품이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아세안 FTA 부속서3 부록1 제19조에 따라 수출국 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어야 하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선하증권에 “BY BONDED TRUCK FROM ○○○, 수출국 TO S국”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경유국에서 발행되어 수출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으로 보기 어렵고, 이 B/L이 통과선하증권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수출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FTA 특레고시 및 FTA 지침에서 통과선하증권이 반드시 필요한 서류라는 공적인 견해표명 없이 협정관세 적용물품이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단순 환적 또는 일시장치 되었음이 경유국 관세당국의 확인서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고, 처분청이 이 건 처분 이전까지 통과선하증권이 없는 경우에도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수리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반하는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이 신고를 수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일종의 사실행위에 불과한 점, FTA 특레고시 및 FTA 지침의 근거가 되는 FTA 특례법 및 한-아세안 FTA 등에서 협정관세 적용물품이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직접운송으로 간주될 수 있도록 수출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한-아세안 FTA에서 수출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은 직접운송을 증빙하는 필수서류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법령의 부지·착오는 납세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컨테이너 봉인번호 등을 통하여 계약상대국으로부터 운송된 물품과 동일성이 확인되거나, 경유국 관세당국이 발급한 공적인 서류를 통하여 단순경유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통과선하증권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직접운송된 사실이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FTA 지침의 내용상 오해될 소지가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협정문에 대한 해석에 혼란이 있었던 한-아세안 FTA 시행 초기(2007년 6월)에 ○○세관 담당직원의 권고 의견이 있어 이 건 처분이 있기 전까지 쟁점물품이 원산지국에서 직접 운송되었음을 입증하는 문구(예 : BY BONDED TRUCK FROM ○○○, 수출국 TO S국)가 기재된 B/L을 제출하여 정상적으로 협정관세를 적용받아 왔다는 청구주장에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점,

경유국 세관의 단순경유를 입증하는 서류 및 경유국에서 발급된 B/L에 기재된 문구 등을 통하여 쟁점물품이 계약상대국으로부터 운송된 물품과 동일성이 확인되어 실제적으로 원산지가 증명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납세의무해태를 탓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③에 관한 판단과 같은 취지에서 청구법인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제한할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한 처분 또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조심 2015관203(2016. 6. 14.)

[주 문]

세관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한·EU FTA에 의한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서면조사를 실시하였고,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요청한 원산지 검증의 결과가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되자, 쟁점물품에 대한 한·EU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①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D국 제조자가 2004년에 제조한 중고 ○○○로, 모델·규격은 “○○○”이고, 현품에는 원산지가 D국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제조자는 세계 최대의 ○○○ 제조업체 중의 하나로, 쟁점물품과 같은 기계를 D국 공장에서 제조하고 있다.

(2) 쟁점물품이 분류되는 세번의 한·EU FTA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은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역내가치를 부가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부가가치기준’으로,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된다.

(3) 쟁점물품은 제조자가 2004년에 P○○에 판매한 것으로, 수출자는 2013년 P○○로부터 쟁점물품을 구매하였고, 홍콩의 E○○○는 2013년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구매한 후 청구법인에게 판매하였으며, 쟁점물품은 계약상대국에서 부산항으로 직접 운송되었다.

(4) 수출자는 쟁점물품에 대한 포장명세서에 원산지 신고문안을 기재한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하였다.

(5)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서면조사를 실시하였고,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으며,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검증결과를 회신받았다.

<표>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의 원산지 검증결과 회신 내용 <생략>

(6) 청구법인은 과세전통지 이후 “수출자와 제조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어서 추가 증명자료를 직접 제조자로부터 받아 제출하고자 한다”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여기에는 한국 관세당국의 요청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제조자의 의사가 기재된 전자메일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은 D국에 소재하는 제조자의 공장에서 제조하여 계약상대국으로 인도한 것으로, 비원산지재료의 비율이 25.36%이므로 원산지는 D국”이라는 내용의 제조자증명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호에서 세관장 등이 계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일정 기간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원산지와 실제 원산지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회신내용에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

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쟁점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요청한 결과, 체약상대국 과세당국은 쟁점물품의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하여, 위 법률조항에서 규정한 회신내용에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킬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등 참조)할 것인바,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서 처분청의 원산지 검증요청에 대하여 원산지가 다른 것으로 회신한 것이 아니라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고, 이는 기간의 경과(2004년에 제조·신고됨)가 원인이었던 점, 수출자 또한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검증에 대하여 원산지 지위를 증명하기 위해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쟁점물품 가격의 45% 이하인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나, 수출자 및 제조자 간의 경쟁관계로 인해 수출자가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측면 등이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한·EU FTA가 발효되기 전인 2004년에 제조·판매된 쟁점물품의 원산지 증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이 있으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과세전통지 이후 제조자에게 요청하여 쟁점물품이 원산지 요건을 충족한다는 내용의 제조자증명서를 제출하였고, 쟁점물품과 같은 ○○○는 제조자의 D국 공장에서만 제조된 것으로 보여 비록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확인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쟁점물품이 사실상 원산지 지위를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것에 그 의무해태를 탓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어 보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조심 2015관23(2016. 6. 14.)

[주 문]

세관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세관장에게 기본관세율(8%)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이를 수리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선적일 이후에 한·아세안 FTA에 따라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이하 “쟁점C/O”라 한다)를 소급하여 발급받은 다음, FTA특례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수입신고수리 후 협정관세(협정관세율 0%) 적용신청(이하 “사후적용신청”)을 하여 기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았다.

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C/O 발급일부터 유효기간 6월이 경과한 이후에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한 사실을 발견하고,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가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선적일 이후에 쟁점C/O를 소급발급 받은 다음,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관장에게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하였는데, 세관장에게 제출된 수출당사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었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서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처분청의 서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쟁점C/O의 발급일부터 유효기간 6월이 경과한 이후에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한 사실을 인지하고 처분청에 직권경정을 요청하자,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물품 입항일 이후 소급발급된 C/O의 유효성을 인정한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자, 본세를 포함한 관세 등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확장)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이 건의 심판대상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서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만 불복을 제기하였다가, 본세인 관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도 불복을 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확장)하였으나, 「관세법」 제120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29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심판법」 제29조 제1항에서는 청구인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세와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처분에 해당하여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청구취지 변경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범위는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처분에 한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C/O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쟁점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짜의 기간”은 제외하여 C/O의 유효기간을 계산하여야 하는 점(조심 2014관214, 2015.12.31., 같은 뜻임), 그 기간을 제외할 경우 처분청 의견과 달리 쟁점C/O는 유효기간이 연장되어 유효한 C/O로 인정될 수도 있는 점,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인데 쟁점C/O가 유효하다면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이 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03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는 사례 (가산세 부과)

가. 인증수출자 자격(권한) 여부에 대한 확인 의무 소홀

1) 조심 2015관183(2015. 12. 2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① 쟁점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하지 아니한 원산지신고서라는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②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의무를 위반한 처분인지 여부
- ③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④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의 당부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신고서(이하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고 한-EU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원산지신고서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검증을 요청한 결과,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수출자는 2011년도 당시 인증수출자가 아니고, 검증요청번호도 인증수출자번호가 아니다”는 검증결과를 회신함에 따라, 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이하 “원산지의정서”) 제27조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특례법”) 제16조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여,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청하였고, 처분청은 협정관세 적용배제에 대한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음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① 쟁점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하지 아니한 원산지신고서라는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②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의무를 위반한 처분인지 여부
- ③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④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FTA특례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제출자료를 검토한 결과, 쟁점원산지신고서에 기재된 인증수출자번호가 'EU회원국 인증수출자번호체계'와 세관부호, 인증연도 등이 다르고 이는 인증수출자번호가 아니라 EORI 번호인 것을 확인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원산지신고서의 진위여부와 정확성 및 인증수출자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27조 제2항 및 FTA특례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원산지신고서의 검증을 요청한바,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은 쟁점물품이 체약상대국에서 생산된 물품임을 회신하면서, “수출자는 인증수출자번호가 아닌 EORI 번호를 사용하여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쟁점원산지신고서는 공식적으로(형식적으로) 잘못되었고, 수출자는 2011년도 당시 인증수출자가 아니었으며, 2013년도에 인증수출자 자격을 받았다”고 회신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이 신청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에 대하여 협정

관세 적용배제에 대한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음을 이유로 거부하였다.

(3) 수출자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적법한 인증수출자번호가 기재된 원산지신고서를 소급하여 발행하였다.

(4) 청구법인은 계약상대국 소재 거래업체로부터 수입한 물품 등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아 수입통관하였다.

이 중 몇 물품은 수입신고시 송품장에 원산지신고서 문안이 누락되어 기본세율 8%를 적용하여 수입통관하였다가, 수출자가 이를 수정한 후 재발행한 송품장을 근거로 보정신청을 통하여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을 하였고, 나머지 2건은 수입신고시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고 있고 수출 당시 수출자가 착오로 인증수출자번호가 아닌 EORI 번호를 기재한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사후에 보완하여 소급 발행하였으므로 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5조에서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협정관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원산지의정서 제16조에서 원산지신고서는 인증수출자가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협정관세 적용신청 당시 제출한 쟁점원산지신고서는 그 당시 인증수출자가 아닌 수출자가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인증수출자가 아닌 수출자가 발행한 쟁점원산지신고서는 단순히 인증수출자번호를 EORI 번호로 잘못 기재한 형식상 하자뿐만 아니라 발행자격이 없는 자가 발행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원산지신고서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세관장이 쟁점원산지신고서의 형식적 요건을 심사하여 수리한 점, 협정관세 사후신청기한이 지난 후 원산지조사를 함으로써 쟁점원산지신고서의 하자를 보완할 기회를 상실시킨 점 등에 비추어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협정관세 적용신청에 대하여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한 후 협정관세를 적용한 것은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한 점,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은 수입신고수리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수입신고시 이미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후적용신청 자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자신에게 의무해태를 닦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협정관세의 수혜자인 수입자로서 청구법인은 협정관세 적용신청

을 함에 있어 쟁점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한지 여부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유효하지 아니한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한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관세 등의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③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원산지신고서의 확인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조심 2015관316(2016. 10. 28.)

PART 03. 2.가. 6) 참조

3) 조심 2015관68(2015. 7. 27.)

[주 문]

세관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중 부가가치세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 ①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②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③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실행관세율로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 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은 후, 한-EU FTA 협정에 따라 협정관세를 사후적용 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2003년에 D국에서 제작된 것으로서 생산자가 아닌 계약상대국 소재 수출자가 원산지 증빙자료 없이 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하였을 개연성에 착안하여 서면조사를 실시하였고, 서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쟁점물품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어 한-EU FTA 협정 제27조에 따라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에 국제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다.

다.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은 원산지 검증결과 “쟁점물품이 D국에서 직접 한국으로 수출되었고, 이 수출은 인증수출자 권한의 승인조건을 벗어났기 때문에 원산지신고는 무효이고 그 결과, 쟁점물품은 협정 적용 자격이 없다”고 회신하자,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다는 원산지조사결과를 통지하면서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①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②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③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중고물품으로서 중고기계 판매업체인 체약상대국의 수출자로부터 수입하였으며 적출국은 D국이다.

(2) 청구법인은 체약상대국의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하여 한-EU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받았으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해 서면 검증한 결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쟁점물품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등 확인이 불가하여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국제검증을 요청하였고, 2014.3.00. 이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3)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은 처분청에 원산지 검증결과 “쟁점물품이 D국에서 직접 한국으로 수출되었고, 이 수출은 인증수출자 권한의 승인조건을 벗어났기 때문에, 원산지신고는 무효이고 그 결과, 당해 물품은 협정 적용 자격이 없다”고 회신하자, 처분청은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회신 결과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수납한 후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은 원산지 검증결과 “쟁점물품이 D국에서 직접 한국으로 수출되었고, 이 수출은 인증수출자 권한의 승인조건을 벗어났기 때문에 원산지신고는 무효이고 그 결과, 쟁점물품은 협정 적용 자격이 없다”고 회신한 점, 인증수출자 권한은 쟁점물품이 수출자에 의해 만들어지고 체약상대국에서 수출되는 경우에만 유효하므로 쟁점물품은 협정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고, 청구법인은 체약상대국 관세당국

이 쟁점물품과 관련 없는 다른 인증수출자번호에 대해 원산지 검증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단순 오기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 중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부분은 이미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부가가치세 수납한 후 발급)되어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D국에서 제조된 것으로서 판매업체인 체약상대국의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였으나 D국 제조자가 아닌 체약상대국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신청한 점, 원산지가 D국인 쟁점물품이 D국로부터 직접 수출되었고, 쟁점물품을 체약상대국의 수출자가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부여받은 인증수출자번호를 사용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것에 대한 유효성 확인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귀책사유는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 조심 2016관3(2016. 5. 16.)

[주 문]

세관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6,000유로 이하의 수입신고건에 대한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한-EU FTA에 따른 협정관세(세율 0%)를 적용하여 수입 신고를 하였고, 이를 수리받았다.

나. 처분청은 원산지 국제간접조사 결과,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이 수출자에게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하였다고 회신함에 따라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가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6,000유로 이하의 수입신고건에 대해서는 관세 등 ○○○원을 6,000유로 초과 수입신고건에 대해서는 관세 등○○○원(이하 6,000유로 초과 수입신고건에 대한 처분만을 “쟁점처분”이라 한다)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①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직권으로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법」 제119조 제1항은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제출한 세액경정통지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6,000유로 이하 수입신고건에 대한 관세 등의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은 처분청에게 수출자가 한-EU FTA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은 일자를 화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수출자에게 송부한 인증수출자 인증서에는 그 일자가 “2012. 12. ○○”로, 인증수출자 인증번호가 각 기재되어 있고, 수출자가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보낸 편지에는 ‘한국 관세당국이 당사의 인증수출자 인증번호가 2012 12. ○○(인증수출자 인증서의 날짜)부터 유효하다고 잘못 이해하고 있어 당사의 고객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사는 전체 FTA에 대한 인증은 1987년부터 유효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 바, 한-EU FTA 인증수출자 인증번호가 2011. 7. ○○부터 유효하다는 공식적인 문서(letter)를 보내주기 바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인증수출자의 지위는 한-EU FTA 발효로 인하여 수출자에게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이를 부여하는 것인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인증수출자 인증서상 일자가 2012. 12. ○○로 나타나, 청구법인으로서 이 건 수입신고 당시 수출자의 인증수출자 지위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납세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조심 2016관17(2016. 6. 2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한-EU FTA에 따른 협정관세(세율 0%)를 적용하여 수입 신고를 하였고, 이를 수리받았다.

나. 처분청은 원산지조사 결과,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이 수출자에게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하였다고 회신함에 따라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가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①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 여부
- ②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각 6,000유로 이상이고,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에는 세관 인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나) 관세청장은 쟁점물품에 대한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2015. 3. ○○을 회신기한으로 하여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 중 2011. 10. ○○자 원산지신고서의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하였고,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은 수출자는 한-EU FTA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았고, 이후 한국으로의 수출에 대하여 유효하다고 회신하였다.

(다) 처분청도 쟁점물품에 대한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 중 일부[송장번호○○○]의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하였는데,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은 수출자가 위 원산지신고서 발행 당시 한국으로의 수출에 대하여 인증수출자로 인증받지 아니하였다고 회신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5. 10. ○○을 납부일자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 관련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건대, 청구법인은 수출자의 세관 인증번호 허위 기재에 따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수출자가 한-EU FTA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은 날짜를 2014. 5. ○○로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는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물품에 한-EU FTA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건대, 청구법인은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수출자에게 있고 처분청이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상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인증수출자 인증서를 요구하여 수출자의 인증 연도를 확인하는 등의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처분청이 스스로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하여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당연히 부당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체약상대국의 쟁점판매자로부터 체약상대국의 G○○사가 생산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쟁점 판매자의 송품장(Invoice)에 원산지 신고문안과 G○○사의 인증수출자번호가 기재된 원산지신고서(Certificate of Origin, 이하 “쟁점C/O”라 한다)를 근거로 한-EU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0%)의 적용을 신청하여 통관지세 관장으로부터 이를 승인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6.2.○○.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쟁점물품의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고,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은 2016.7.○○. 처분청에 쟁점판매자가 자신의 송품장에 G○○사의 인증수출자번호를 기재하여 쟁점C/O를 발행하였으나 진정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국제간접검증결과를 회신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C/O는 인증수출자가 아닌 쟁점판매자가 작성하였으므로 유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국제협력관세율(15%)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① 판매자의 송품장에 생산자의 인증수출자번호가 기재된 원산지신고서를 유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한-EU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판매자는 2009. 4. 〇〇. G〇〇사와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주문받은 쟁점물품의 병입·포장을 G〇〇사에 의뢰한 후, 병입·포장이 완료된 쟁점물품을 G〇〇사로부터 회수하여 청구법인에게 운송한다.

(나) 쟁점계약은 쟁점판매자가 벌크〇〇 등 원료와 제조지시서를 G〇〇사에게 제공하면, G〇〇사가 제조지시서대로 혼합·병입·포장 및 재포장한 최종제품을 쟁점판매자에게 납품(회수)할 때까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계약으로서 G〇〇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① 벌크〇〇 관리, ② 병입, ③ TBO〇의 포장, ④ 제품 재포장, ⑤ 저장 관리 및 주문 준비 등 5가지로 구분되는데, 벌크〇〇은 병에 담기지 아니한 원료로서 G〇〇사가 쟁점판매자의 배합표에 맞게 혼합 및 병입하여 최종제품으로 납품하고, TBO〇은 이미 병에 담겨진 〇〇로서 G〇〇사가 쟁점판매자의 요구대로 재포장만하여 최종제품으로 납품하며, 쟁점판매자는 자신의 책임으로 벌크〇〇·TBO〇·건조재료 등 원료를 G〇〇사에게 제공(인도)하는 것으로, G〇〇사는 원료 등의 인수 후 생산 책임을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최종적인 배송책임은 쟁점판매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다) 쟁점계약서 서문에 쟁점판매자는 “원료 재배자들에게서 선정한 다양한 지역의 〇〇을 숙성시키고 배합해 병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G〇〇사는 “벌크 〇〇 공급업체들 가운데 선정한 다양한 라벨의 〇〇을 보관하고 숙성시켜 병입한 후 판매하는 〇〇 무역회사”로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계약서 제3-1-3조에서 G〇〇사는 TBO〇의 경우 원산지에 관계없이 재포장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계약서 <참고자료 4.1. 완제품 수령>에서 G〇〇사에 입고되는 완제품 등에 대한 “〇〇의 원산지” 확인은 쟁점판매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계약서 <참고자료 5. 주문품 준비와 발송>에서 수출의 경우 G〇〇사가 EUR.1(EUR.1 movement certificate : EU 국가 내 또는 EU에서 지정한 국가들에 한하여 사용되는 원산지증명서의 일종으로서 우리나라는 사용국가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로 표준화된 서류를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외 쟁점판매자가 G〇〇사에게 쟁점물품 등의 원산지 확인 및 원산지신고서 작성을 의뢰한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쟁점C/O를 근거로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였는데, 쟁점C/O는 쟁점 판매자의 송품장에 원산지 신고문안 및 G○○사의 인증수출자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장소 및 일자”와 수출자의 “서명 및 서명인의 이름”은 생략되어 있다.

(바) 처분청은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쟁점물품의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 및 인증수출자번호 유효성 등에 대하여 간접검증을 요청하였고,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은 처분청에 쟁점물품은 EU 역내에서 완전생산된 물품이므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고, G○○사의 인증수출자번호는 유효하며, 쟁점C/O에 G○○사의 인증수출자번호가 기재된 것을 수출자 사칭으로 볼 수 없으며 한-EU FTA 의정서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르는 진정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와 쟁점판매자는 법적 안정성을 지키기 위하여 2015.5.○○. 자신의 인증수출자번호를 발급받았다는 취지의 간접검증결과를 회신하였다.

(사) “한-EU FTA상 원산지증명서 발행 권한 있는 수출자”에 대한 EU 집행위원회의 회신에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수출자는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입증할 수 있고, 사후검증을 위한 요청에 응할 수 있는 자(수출자 또는 생산자)로서 수출자가 상품의 원산지를 수출자가 소재한 관세당국에 입증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수출자는 소재한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아) 한-EU FTA 의정서 부속서 3 「원산지신고서 문안」에서 “장소 및 일자”는 그 정보가 문서 자체에 포함되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의정서 제16조[원산지신고서 작성 조건] 제5항에서 원산지신고서에는 수출자의 원본 서명이 수기로 작성되나 인증수출자는 자신임이 확인되는 원산지신고서에 대해 본인에 의해 수기로 서명된 것처럼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서면약속을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신고서에 서명하도록 요구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EU FTA에서 원산지신고서 대리 발급을 허용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C/O가 인증수출자인 G○○사에 의해 작성되었으므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한-EU FTA에서 원산지신고서에 “장소 및 일자”는 그 정보가 문서 자체에 포함되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C/O에 “장소 및 일자” 및 수출자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문서 자체(송품장)의 정보를 사용하여야 하는데, 쟁점C/O는 쟁점판매자의 송품장에 작성된 것이므로 쟁점판매자가 작성·발행한

것이 되고, 쟁점C/O 작성 당시 쟁점판매자는 인증수출자가 아닌 점, 한-EU FTA에서 원산지신고서 대리 발급을 허용하는 규정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계약서상 쟁점판매자가 G○○사에게 생산된 ○○의 원산지 확인 및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하도록 위임된 내용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의 간접검증결과는 G○○사의 인증수출자번호가 유효하고 쟁점판매자가 무단으로 G○○사의 인증수출자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진정성이 있다는 내용의 회신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C/O를 유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납세의무를 해태한 사실이 없고, 이 건은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C/O는 쟁점판매자의 송품장에 작성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C/O의 유효성 여부 및 쟁점판매자의 인증수출자 해당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였어야 하는 점, 달리 2001년부터 쟁점판매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온 청구법인이 이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은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도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출자가 작성·발급한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하여 한-EU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5.○○. 청구법인에게 원산지 자율점검을 요청하였으나 자율점검단계에서 수출자의 인증수출자 지위가 확인되지 아니하자, 2016.7.○○. 수출당사국인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수출자에 대한 인증수출자 지위 부여 여부 등에 대한 검증을 요청하여,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쟁점물품 수출시 수출자는 한-EU FTA에 따른 인증수출자가 아니었으므로 쟁점물품은 특혜관세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요지의 회신문을 받았고, 이에 따라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①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것인지 여부
-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③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의 수입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생략>

(2)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원산지 자율점검 단계에서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수출자가 적정한 인증수출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인증수출자번호의 유효성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한다는 요지의 원산지 서면조사 통지를 하였다.

(3) 처분청은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수출자의 인증번호 유효성 여부와 관련하여 ① 검증대상 원산지신고서 발행당시에 인증번호는 유효한지, ② 수출자는 한-EU FTA 하에서 인증수출자 지위를 획득하였는지, 획득하였다면 지위 부여일자는 언제인지, ③ 검증대상 원산지신고서는 인증수출자에 의해 정당하게 발급된 것인지, ④ 해당 물품은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4) 위 (3) 처분청 질의서에 첨부된 원산지신고서(송품장에 기재)는 아래 <표2>와 같다. <생략>

(5)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처분청이 위(2)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확인을 요청한 사실'을 통지하였다.

(6) 처분청은 위 (3)의 질의에 대하여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아래 회신문(발체)과 같이 '인증번호는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서 부여한 것이나 수출 당시 수출자는 한국으로의 수출에 대해 유효한 인증수출자가 아니었고, 결과적으로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은 쟁점물품이 한-EU FTA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특혜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결론짓는다'는 요지의 답변을 받았다.

(7)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위 (6)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회신내용과 '비인증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한-EU FTA 특혜관세를 배제'한다는 취지의 원산지조사결과를 통지하면서 관세 등을 과세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8) 관세청 홈페이지 FTA 포털에 2013.11.7. 게재된 '한-EU FTA 인증수출자번호 확인방법 안내(2013.9.9. 관세청 원산지담당관실 작성)'를 보면, 먼저 인증수출자번호가 각국의 인증번호체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증수출자 인증서(사본)를 요구하여 유효성(인증받은 일자, 특혜대상국가에 한국 포함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체약상대국의 인증수출자번호는 국가(2)/인증번호(5)/연도(2)로 구성(예 : GB 12345/06)되어 있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통관지세관장이 원산지신고서의 형식적 요건을 심사하여 이를 수리하였음에도 수출국의 검증회보서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없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신고납부제도 하에서 통관지세관장이 협정관세를 적용한 청구법인의 수입신고를 수리한 것은 일종의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협정관세의 적용이 적정한 것이라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은 쟁점물품의 수출 당시 수출자가 유효한 인증수출자가 아니므로 특혜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회신한 점,

이 건 처분에 앞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회신내용과 그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할 예정임을 통지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0)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당시 청구법인에게 수출자가 유효한 인증수출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므로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면서 수출자의 인증번호와 인증번호체계의 대조를 통하여 그 인증번호가 한-EU FTA가 발효되기 5년 전에 부여된 것을 알 수 있었던 점, 쟁점물품의 수출 당시 수출자가 유효한 인증수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의하여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은 수출자가 유효한 인증수출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1)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가 비인증수출자에 의하여 작성되었고 이는 수출자의 귀책사유일 뿐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처분청에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수정 수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쟁점수출자가 인증수출자번호를 ○○○(이하 “쟁점인증번호”라 한다)로 기재하여 발급한 원산지신고서(이하 “쟁점C/O”라 한다)를 근거로 한-EU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0%)의 적용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이를 승인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인증번호가 부적정한 것으로 의심되므로 자율점검 하도록 안내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가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지위를 획득하기 이전에 쟁점C/O를 발급하였고, 쟁점인증번호가 유효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자, 처분청에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8%)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수정신고 및 납부하는 한편, 가산세에 대하여 가산세 면제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수입신고 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C/O 및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상 쟁점수출자의 인증수출자번호는 “XX/XXXX/EA/XX42”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인증번호가 부적정한 것으로 의심되므로 자율점검 후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과 협정관세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정신고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다) 쟁점수출자는 청구법인에게 쟁점수출자의 2011년 이전 인증번호는 “XX/XXXX/ZA/XX42”이나 쟁점물품의 송품장(쟁점C/O)에 인증번호를 “XX/XXXX/EA/XX42”로 잘못 기재하여 발급하였고, 한-EU FTA가 체결된 후 인증수출자 자격 취득을 위해 2011.12.00. 계약상대국 세관당국에 인증을 신청하여 2013.10.00.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그 인증수출자번호는 “XX/XXXX/EA/XX19”라는 취지와 함께 계약상대국 세관당국이 2013.10.00. 발급한 인증서를 통보하였다.

(라) 2015.12.29. 법률 제13625호로 개정되기 전 FTA 관세특례법에 가산세 관련 조항이 규정되지 아니하여 종전에는 FTA 협정관세율 적용 오류와 관련된 가산세는 관세법 제42조에 따라 부과되었는데, 관세법 제42조에 원산지증빙서류 오류 통보와 관련된 가산세 면책 조항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2015.12.29. 법률 제13625호로 개 (2016.7.1. 시행)된 FTA 관세특례법 제36조에 가산세 관련 조항이 신설되었으나, 그 부칙 제5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에서 “제36조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관세청장이 산하세관장에게 시달한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운영 지침에서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원산지증명서 등이 사실과 작성, 제출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입자의 귀책사유의 예시로 “협정 또는 법령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위반하여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경우”를, 형식적 요건에 대한 각주에서 “형식적 요건 : 기한 및 원산지증빙서류의 서식, 거래자, 발급권자, 서명, 인장, 기재요령 등”으로 규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관세청 홈페이지에 2013.9.13.자로 등재된 “(한-EU)인증수출자번호 확인 방법 안내”에 EU측 인증수출자번호 체계, EORI(Economic Operators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번호 및 VAT 번호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방법이 게재되어 있고, 인증수출자번호의 유효성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나 수출자로부터 인증서 등을 입수하여 유효성 등을 확인하라는 주의문구는 게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가 쟁점C/O를 잘못 발급한 데에 청구법인의 귀책이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수출자가 쟁점C/O 발급 당시 인증수출자의 지위를 부여받지 못한 점, 특혜관세를 신청하는 경우 인증수출자 여부 및 인증 수출자번호의 유효성은 수입자가 기본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는 형식적인 요건에 해당하는 것인 점, 청구법인이 세관장의 자율점검 안내를 받은 다음 날 쟁점수출자로부터 인증수출자 해당 여부 및 정상적인 인증수출자번호를 확인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쟁점물품 수입신고 당시 이를 즉시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15.12.29. 법률 제13625호로 개정(2016.7.1. 시행)된 FTA 관세 특례법 부칙 제5조에서 개정 법률 제36조는 법률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은 동 법률 시행 이전인 2013.9.○○. 수입신고된 점, 달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가산세 면제 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출자가 송품장에 작성·발급한 원산지신고서(이하 “쟁점 C/O”라 한다)를 근거로 한-EU FTA에 따른 협정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년 7월부터 청구법인에 대하여 원산지 자율점검 및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 물품에 대한 수출자의 인증서를 제출하지 않아 2016.12.00. 쟁점C/O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서면조사 결과와 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이하 “원산지의정서”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에 쟁점물품의 원산지 검증을 요청한 사실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의 원산지 검증결과 회신내용을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수출자는 한-EU FTA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였고, 인증번호는 2011.4.00.까지 유효하며,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다’는 취지의 원산지조사결과 및 과세전 통지를 하였고, 쟁점C/O는 인증수출자 자격이 없는 수출자가 작성한 유효하지 아니한 원산지신고서라고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및 가산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인증수출자 자격 취득 이전에 발급한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 원산지조사 및 처분경과는 다음과 같다.<생략>

(2) 처분청은 2017.12.00.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원산지 검증결과 회신문(발체)을 수령하였다.<생략>

(3) 처분청은 2018.1.00. 위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회신문을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원산지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전통지를 하였다.<생략>

(4) 청구법인은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위 회신문에서 “2011년 당시 수출자가 한-EU FTA 인증수출자로 인증을 갱신하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EU 집행위와 한국 외교부가 2011.7.14. 및 2011.7.15.에 교환한 서한에 따라 소급하여 특혜관세대우를 부여받을 요건을 충족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쟁점C/O도 유효한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언급한 위 서한은 2011년 7월 한-EU FTA 발효 초기의 업무혼란을 예방하고자 양 당사국이 교환한 서한으로 “수출자가 어느 시점에 인증수출자 지위를 획득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원산지의정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산지의정서 제16조 제6항에 따라 수출자가 제품 수출 후에 인증수출자 지위를 획득했다고 하더라도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는 수입 당사국에서 특혜관세대우 혜택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위 합의내용은 수출자가 제품 수출 후 인증수출자 지위를 획득하였을 경우에 원산지의정서 제16조 제6항과 FTA특례법 제9조에 따라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신청이 가능하다는 의미이지, 이 건과 같이 비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쟁점C/O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배제처분한 건을 수출자가 인증수출자 지위를 획득한 후 재신청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의견이다.

(5) 관세청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유권해석(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268, 2014.9.1.)에 따라 2014.11.15. 관세청 관련부서 및 전국세관에 아래와 같은 내용(발체)의 ‘자유무역협정관세 재적용업무 처리방법 시달’ 문서(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2556호)를 송부하였다.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수리 전에 '협정관세 적용신청'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해 동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수입신고수리 후 협정관세의 적용을 재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리청의 질의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협정관세 적용을 재신청할 수 없다고 회신한 바,

3. 붙임과 같이 자유무역협정관세 재적용 업무 처리방법을 시달하오니 각 세관장은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관내 수입자 및 신고인 등에게 홍보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협정관세 재적용 업무 처리방법 1부. 끝.

위 관세청장의 시달 문서에 첨부된 '자유무역협정관세 재적용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 자유무역협정관세가 적용된 수입물품에 대한 세액수정 또는 경정 이후 협정관세 재적용에 대한 처리 방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수리 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 중

- 협정관세 적용오류로 인해 세액보정·수정 또는 경정되어 세액이 정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수입신고수리 후 협정관세의 적용을 다시 신청할 수 없음

• 또한, 같은 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수입신고수리 후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 중

- 협정관세 적용오류로 인해 세액보정·수정 또는 경정되어 세액이 정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사후신청 허용기간(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다시 신청할 수 없음

■ 시행시기 : 2014년 12월 1일

■ 적용기준 : 시행일 이후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시행일 이전에 같은 법 제1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협정관세적용을 신청한 물품은 인정처리 (별도 추징조치 없음)

(6) 관세청장은 2013.9.9. 홈페이지에 원산지지원담당관실에서 작성한 다음과 같은 ‘한-EU FTA 인증수출자번호 확인방법 안내’ 문서(발체)를 게재하였다.

1. 현황 및 배경

- 한-EU FTA 활용 증가에 따라 원산지신고서에 인증수출자번호가 아닌 기타 번호를 기재하여 특혜적용 받는 사례 증가

〈한-EU 인증수출자번호 주요 오류 형태〉

- 인증수출자번호는 공란 및 “/”도 번호체계의 일부이나 누락 또는 오기재
- 인증수출자번호 대신 “EORI NO” 또는 “VAT NO”를 기재
- EORI 번호 또는 VAT 번호를 인증번호체계로 조작하여 기재
- 인증번호체계의 “세관부호”, “지역코드”, “세관관서코드”를 허위로 기재
- 특혜통관 신청시 오류사항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납세자의 자발적인 수정·보완 유도 및 사후검증에 따른 불이익 사전 방지
- 이를 위해 인증수출자번호와 기타번호 구분방법 안내 필요

2. 인증수출자번호 확인 절차

- (1단계) EU에서 통보한 각 국가별 인증번호체계와 일치 여부 확인
- (2단계) EU 집행위 홈페이지를 통해 EORI 번호, VAT 번호 해당 여부 확인
- (3단계) 인증수출자 인증서(사본)을 요구하여 유효성* 확인
- * 인증받은 일자, 특혜대상국가에 한국 포함 여부 등
- (4단계) 위의 단계로 확인 불가 및 인증서 미제출시 우선 협정관세 적용 통관 후 검증부서에 이첩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수출자가 인증수출자 자격 갱신절차를 누락한 상태에서 쟁점C/O를 작성하였으나 2016.9.○○. 다시 인증수출자 자격을 부여받았고, EU 집행위 및 한국 외교부의 합의에 따라 쟁점C/O에 새로 받은 인증수출자 번호를 소급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 쟁점물품에 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출자는 2016.9.00.에야 위 의정서 제17조에 따른 인증수출자 자격을 부여받았는바, 쟁점C/O의 작성 당시 수출자는 비인증수출자인 상태에서 이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EU 집행위 및 한국 외교부의 합의 내용은 수출자가 원산지 물품 수출 후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았더라도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신청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해 보이는 점,

쟁점물품과 같이 수입신고수리 전에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고 협정관세가 적용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되었으나 이후 협정관세 적용오류로 세액이 경정되는 물품은 협정관세 적용을 재신청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C/O가 유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관세청장이 공지한대로 인증수출자번호를 확인하고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등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세청장이 공지한 인증수출자번호 체계에 따르면 쟁점C/O에 기재된 인증수출자번호는 한-EU FTA 발효 이전인 2006년에 부여받은 것으로 보여,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신청 당시 수출자가 유효한 인증수출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0) 조심 2018관205(2019. 1. 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인증수출자번호가 ○○○(이하 “쟁점인증번호”)으로 기재된 원산지신고서(이하 “쟁점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한-EU FTA에 따른 협정관세(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7.○○. 청구법인에게 통지 후 서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유효한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인지 확인이 불가하여, 2018.1.○○.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에 「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이하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27조에 따른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고, 2018.2.○○.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자는 2015.8.27. 한-EU FTA 특혜적용을 받을 수 있는 인증수출자의 지위를 취득하였고, 쟁점원산지신고서와 관련하여 수출자는 한-EU FTA에 따른 인증수출자가 아니었다”라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3.○○. 협정관세를 배제한다는 과세전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불채택 결정을 받았고, 처분청은 2018.7.○○. 청구법인에게 관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위 부과처분 중 수입신고번호 4XXXX-15-XXX515M (2015.10.○○.)로 수입한 물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① 원산지신고서 발급 당시 인증수출자가 아니었으나 선적 당시 인증수출자 지위를 갖춘 경우 해당물품에는 협정 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8.1.○○.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인증수출자 지위 여부)' 등에 대하여 검증을 요청하였고,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은 2018.2.○○. 쟁점인증번호는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인증번호로 그 인증수출자 지위는 2007.12.○○. 효력을 상실하였고, 2015.8.○○. 새로운 인증수출자번호가 부여되었으며, 쟁점원산지신고서 발급 당시 수출자는 한-EU FTA에 따른 인증수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회신내용(발체)은 아래와 같다.<생략>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메일 사본을 보면, 청구법인의 에이전트가 수출자에게 선적서류에 어떠한 'FTA인증'에 관련된 문장이 없으므로 FTA인증을 체크하여 알려달라고 하였고, 같은 날 수출자는 에이전트에게 FTA인증이 포함된 첨부 인보이스를 참조하라는 회신을 한 것으로 보이나, 위 이메일의 내용이 쟁점물품과 관련된 것인지는 불명확해 보인다.

(3) 수출자와 에이전트가 2014.1.○○. 체결한 커미션계약(CONTRACT DETAILS & COMMISSION BASE)을 보면 에이전트는 한국시장에서 제품판매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출자의 커미션 에이전트로서 그 대가로 판매가격의 일정비율(3%)을 지급받는 것으로 보인다.

계약의 주요내용(발체)은 다음과 같다.<생략>

(4) 에이전트의 대표는 2018.5.○○.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다.<생략>

(5) 관세청에서 한-EU FTA 발효 직전인 2011.6.27. 「한-EU FTA 집행에 관한 지침」을 공지하였고, 해당 지침 상 「2.7. EU회원국의 인증수출자번호체계도」에서 “[붙임2] 한-EU FTA 협정 당사자 목록 참조”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해당 “체계도를 참조하여 번호체계가 불명확한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심사” 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바, 쟁점수출자가 속하는 국가의「인증수출자번호체계」는 아래와 같다.<생략>

(6) 수출자는 2017.6.30. 관계사(To whom it may concern)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생략>

(7) 청구법인이 2015.11.〇〇. 수입신고번호 4XXXX-15-XXX123M 호로 수입신고한 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인증수출자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있음에도 협정관세를 적용하였으나, 2015.10.〇〇. 수입신고번호 4XXXX-15-XXX515M는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였는바, 원산지신고서 작성일 등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생략>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4XXXX-15-XXX515M로 수입한 물품이 수출자가 유효한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은 후 수출국에서 선적된 것이므로 협정관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EU FTA 협정관세는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5조에 따라 수출국 관세당국이 인증수출자에게 부여한 세관 인증번호가 기재된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하여 적용받을 수 있고, 그 원산지신고서는 위 원산지의정서 제16조에 따라 수출국 관세당국이 인증한 인증수출자가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수입신고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 작성 당시 인증수출자이어야 하고, 쟁점인증번호 역시 인증수출자 자격을 획득할 당시 부여받은 세관 인증번호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수입신고물품에 대한 원산지신고서는 수출자가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기 전에 작성되어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그 원산지신고서에 기재된 쟁점인증번호는 수출자가 한-EU FTA에 따라 인증수출자 지위를 획득하면서 수출국 관세당국으로부터 부여받은 세관 인증번호가 아닌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원산지신고서는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라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수입신고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 당시 수출자의 판매대리인인 에이전트를 통하여 수출자가 인증수출자인지를 확인하였고, 쟁점인증번호가 관세청이 공지한 인증수출자번호체계에 부합하는지 정도만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쟁점물품의 수출자도 인증수출자라는 에이전트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한 것이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에이전트가 2014년 7월경에 수출자와 주고받은 메일들이 쟁점물품의 수출자가 인증수출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출자가 인증수출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한 것은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실시한 이후인 것으로 보이는 점,

수출자가 인증수출자임을 확인하여 청구법인에게 알려주었다는 에이전트는 수출자로부터 커미션을 지급받는 판매대리인이고, 에이전트 스스로도 수출자가 인증수출자인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수출자가 인증수출자인지의 여부를 미리 확인하지 아니한 책임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세관장이 2018.7.23.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원의 부과처분은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수출자로부터 제재목을 수입하면서, 쟁점인증번호로 기재된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한-EU FTA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9.20. 청구법인에게 통지 후 서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유효한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인지 확인이 불가하여, 2018.1.10.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고, 2018.2.22.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자는 2015.8.27. 한-EU FTA 특혜적용을 받을 수 있는 인증수출자의 지위를 취득하였고, 쟁점원산지신고서와 관련하여 수출자는 한-EU FTA에 따른 인증수출자가 아니었다”라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3.14. 협정관세를 배제한다는 과세전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13.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불채택 결정을 받았고, 처분청은 2018.7.23. 청구법인에게 관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위 가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8.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②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산지신고서 상의 인증수출자번호가 서로 상이함에 따라 2018.1.10.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인증수출자 지위 여부)’ 등에 대하여 검증을 요청하였다.

(2)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은 2018.2.22. 쟁점인증번호는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인증번호로 그 인증수출자 지위는 2007.12.31. 효력을 상실하였고, 2015.8.27. 새로운 인증수출자번호가 부여되었으며, 쟁점원산지신고서 발급 당시 수출자는 한-EU FTA에 따른 인증수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회신내용(발췌)은 아래와 같다.<생략>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메일 사본을 보면, ○○○에게 선적서류에 어떠한 ‘FTA인증’에 관련된 문장이 없으므로 FTA인증을 체크하여 알려달라고 하였고, 같은 날 수출자에게 FTA인증이 포함된 첨부 인보이스를 참조하라는 회신을 한 것으로 보이나, 위 이메일의 내용이 쟁점물품과 관련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아니하다.

(4) 수출자와 2014.1.24. 체결한 커미션계약(CONTRACT DETAILS & COMMISSION BASE)을 보면 ○○○에서 제품판매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출자의 커미션 에이전트로서 그 대가로 판매가격의 일정비율(3%)을 지급받는 것으로 보인다.

(5) ○○○은 2018.10.21.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6) 관세청에서 한-EU FTA 발효 직전인 2011.6.27. 「한-EU FTA 집행에 관한 지침」을 공지하였고, 해당 지침상 「2.7. EU회원국의 인증수출자번호체계도」에서 “[붙임2] 한-EU FTA 협정 당사자 목록 참조”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해당 “체계도를 참조하여 번호체계가 불명확한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심사” 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바, 쟁점수출자가 속하는 국가의 「인증수출자번호체계」는 아래와 같다.<생략>

(7) 수출자는 2017.6.30. 관계사(To whom it may concern)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생략>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 당시 수출자의 ○○○를 통하여 수출자가 인증수출자인지를 확인하였고, 쟁점인증 번호가 관세청이 공지한 인증수출자번호체계에 부합하는지 정도만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쟁점물품의 수출자도 인증수출자라는 ○○○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한 것이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 2014년 7월경에 수출자와 주고받은 메일들이 쟁점물품의 수출자가 인증수출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출자가 인증수출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한 것은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실시한 이후인 것으로 보이는 점,

수출자가 인증수출자임을 확인하여 청구법인에게 알려주었다는 ○○○ 스스로도 수출자가 인증수출자인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수출자가 인증수출자인지의 여부를 미리 확인하지 아니한 책임이 청구법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에 있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도 발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하였거나,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사실이 없어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수출자로부터 주방용품을 수입하면서 기본관세율(8%)을 적용하여 수입통관한 후, 수입신고수리 일부터 1년 이내에 처분청에 쟁점수출자 명의로 작성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고 협정관세율(0%)의 적용을 신청하여, 관세 〇〇〇원 및 부가가치세 〇〇〇원 합계 〇〇〇원을 환급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수출자로부터 주방용품을 수입하면서, 처분청에 수출자 명의로 작성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고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8년 7월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수출자가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8%)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〇〇〇원, 부가가치세 〇〇〇원 및 가산세 〇〇〇원 합계 〇〇〇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작성한 쟁점원산지신고서가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관세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아닌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당초송품장에는 원산지 신고문안 및 쟁점인증수출자번호가 누락된 채 품명·규격이 독일어로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원산지신고서에는 원산지 신고문안 및 쟁점인증수출자번호가 추가되었고, 일부 쟁점원산지신고서는 당초송품장상 품명·규격이 영문으로 수정되거나 세부적인 품명·규격으로 수정된 것도 있다.

(나) 청구법인 대표는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A가 B 또는 청구법인의 직원에게 엑셀파일 형태의 당초송품장과 포장명세서를 이메일로 송부하면, 청구법인의 직원 등이 쟁점물품의 품명 및 세부규격을 수정한 후 원산지 신고문안 및 쟁점인증수출자번호를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A가 2017.2.14. B에게 송부한 이메일에는 쟁점인증수출자번호가 ○社の 인증수출자번호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社は 제조자증명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한국 관세청에서 제조자증명서를 요구하면 제출할 수 없으므로 많이 알아보라는 취지가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A는 2018.9.3. 우리나라 관세청을 수신처로 기재하여 청구법인에게 팩스로 서한을 발송하였는데, 해당 서한에는 A가 쟁점수출자와 ○社の 대표이고, 두 회사는 같은 회사이며, A가 청구법인에게 우리나라 상황에 맞도록 송품장을 수정하여 사용하도록 부탁하였다는 취지 등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은 2018.12.1. 검찰청에 청구법인과 A를 「관세법」 및 FTA 관세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검찰청은 2019.3.18. 참고인 B가 인증수출자이고, 청구법인에게 원산지 신고문안을 대신 기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원산지증명서가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바) 쟁점수출자 및 ○社가 인증수출자인지 여부 및 두 회사가 동일회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별도로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사) 원산지의정서 제15조 제1항에서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하여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도록, 원산지신고는 제

품의 확인이 가능한 상세한 송품장·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수출자에 의해 행해지도록, 제4항에서 원산지신고서는 수출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송품장·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수출자에 의해 작성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 「관세법」 제4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제1호에서 '이중송품장 등 허위증명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수취'를 납세자가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부당한 방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FTA 관세특례법 제36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1호에서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위조·변조'하는 것을 부당한 방법으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의 위임에 따라 청구법인이 직접 작성한 쟁점원산지 신고서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산지신고서는 수출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를 초과하는 물품은 인증수출자가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수출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인증수출자도 아니고, 달리 쟁점수출자가 인증수출자에 해당한다는 입증자료도 확인되지 않은 점, 쟁점원산지신고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의 위임에 따라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부당한 방법으로 이를 작성된 것이 아니고, 따라서 부족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당초송품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원산지 신고문안과 쟁점인증수출자번호를 추가로 기재하고, 품명·규격 등을 수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근거로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으려 한 점, 협정에서는 원산지신고서를 수출자가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권한의 위임에 따라 이를 수입자 등이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원산지신고서가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되지 않았다는 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3) 인천지방법원 2015. 11. 5. 선고 2015구합5134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5. 18. 선고 2015누67924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6두41606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제1 행정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5134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1. 주식회사 ○○바이오
2. 주식회사 ○바이오텍
3. 주식회사 칼○
피 고 ○○세관장
변 론 종 결 2015. 9. 24.
판 결 선 고 2015. 11. 5.

주 문

1. 피고가 2014. 4. 25. 원고 주식회사 ○○바이오에 대하여 한, 2014. 5. 15. 원고 주식회사 ○바이오텍, 원고 주식회사 칼○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처분 중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분의 4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4. 25. 원고 주식회사 ○○바이오에 대하여 한, 2014. 5. 15. 원고 주식회사 ○바이오텍, 원고 주식회사 칼○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바이오는 스페인 수출자로부터 사료용 조제품을 수입하였고, 원고 주식회사 ○바이오텍은 네덜란드 수출자로부터 사료용 조제품을 수입하였으며, 원고 주식회사 칼○는 원고 ○바이오텍이 수입대행하여 네덜란드 수출자로부터 수입한 사료용 조제품을 원고 ○바이오텍으로부터 통관 전에 양도받아 수입신고하였다.

나. 원고들은 위와 같이 수입한 사료용 조제품에 대하여 '한-EU FTA'에 의한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3. 9. 25. 이 사건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수입한 물품에 대한 인증수출자번호가 유효하지 않은 번호인 것을 확인하였고, 2014. 4. 25. 원고들에 대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양허관세 규정에서 정한 양허관세 미추천 세율 50.6%를 적용하여 별지 부과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각 관세, 각 부가가치세, 각 가산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7.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3. 11.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판단

1) WTO 양허관세의 추천세율 5%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

관세법 제50조 제3항 단서에 의하면 관세법 제73조에 따라 국제기구와의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의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포함한다)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의한 대통령령인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6조, 별표1의 나에 의하면 이 사건물품(품목번호 2309.90-2099)에 대한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세율은 5%, 시장접근물량 초과인 세율은 50.6%이다. 그리고 사료관리법 제6조는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사료를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수산부장관이나 그 대행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시행령 제94조는 관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시장접근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중 시장접근물량 이내로서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는 당해 추천서를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료관리법 제6조는 그 문언에서 양허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농림수산부장관이나 그 대행기관의 추천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시행령 제94조는 그 추천서를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수입통관시 해당 물품이 시장접근물량 이내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양허관세 추천서의 제출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위 각 규정은 양허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에 관한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하며,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사무처리를 위한 훈시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의하면 원고 ○○바이오는 2011. 8. 3. 당시 이 사건물품에 대하여 1,951톤의 추천잔량이 남아있었고, 원고 칼○의 수입대행을 겸하고 있던 원고 ○바이오텍은 2011. 9. 5. 당시 8,616톤의 추천잔량이 남아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들이 WTO 양허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관련기관의 추천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점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WTO 양허관세 중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물품에 대한 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에게 WTO 양허관세 중 시장접근물량 초과세율인 50.6%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각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주장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나,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인증수출자번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한-EU FTA에 따른 협정세율(0%)을 적용받을 수는 없었지만, 원고들은 수출자들의 인증수출자번호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이 사건물품에 대하여 위 협정세율(0%)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였고, 만약 원고들이 위 협정세율(0%)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더라면 이 사건물품을 수입할 당시 WTO 양허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시장접근물량은 남아 있었으므로, 원고들이 관련기관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WTO 양허관세의 추천세율(5%)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을 볼 때 원고들이 결과적으로는 고율(50.6%)의 WTO 양허관세 미추천 세율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사전적으로 원고들이 그와 같은 고율의 WTO 양허관세 미추천 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게는 그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각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한-EU FTA에 따른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스페인의 인증수출자번호는 ‘국가(2)/지역코드(2)/인증번호(4)/인증연도(2)’ 형식이며, 네델란드의 인증수출자번호는 ‘국가(2)/세관관서(3)/인증연도(2)/인증일련번호(3~4)’ 형식이다.

② 원고들은 각 수출자에게 송장에 한-EU FTA 적용을 위한 인증수출자번호를 기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각 수출자들은 유효한 인증수출자번호가 아닌 번호를 기재하거나, EORI 번호(Economic Operators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number, 통관 식별번호)를 기재하였고, 원고들은 각 수출자들의 위와 같은 답변을 그대로 믿고 이 사건물품을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다.

③ 이 사건물품에 대한 WTO 양허관세의 시장접근물량의 추천은 한국단미사료협회가 담당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물품을 수입할 당시에는 한국단미사료협회로부터 배정받은 추천물량이 상당부분 남아있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

제5 행정부

판 결

사 건 2015누67924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주식회사 ○○바이오
2. 주식회사 ○바이오텍
3. 주식회사 칼○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세관장
제 1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5. 11. 5. 선고 2015구합51341 판결
변 론 종 결 2016. 4. 27.
판 결 선 고 2016. 5. 18.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4. 25. 원고 주식회사 ○○바이오에 대하여 한, 2014. 5. 15. 원고 주식회사 ○바이오텍, 원고 주식회사 칼○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14. 4. 25. 원고 주식회사 ○○바

이오에 대하여 한, 2014. 5. 15. 원고 주식회사 ○바이오텍, 원고 주식회사 칼○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처분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바이오는 2011. 9. 15.경 스페인 수출자로부터 사료용 조제품을 수입하였고, 원고 주식회사 ○바이오텍은 2011. 9. 5.부터 2012. 11. 22.까지 네덜란드 수출자로부터 8회에 걸쳐 사료용 조제품을 수입하였으며, 원고 주식회사 칼○는 원고 ○바이오텍이 수입대행하여 2012. 11. 21. 네덜란드 수출자로부터 수입한 사료용 조제품을 원고 ○바이오텍으로부터 통관 전에 양도받아 수입신고하였다.

나. 원고들은 위와 같이 수입한 사료용 조제품에 대하여 한-EU FTA에 의한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3. 9. 25. 이 사건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수입한 물품에 대한 인증수출자번호가 유효하지 않은 번호인 것을 확인하였고, 2014. 4. 25. 원고들에 대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법 제50조 및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에서 정한 양허관세 미추천 세율 50.6%를 적용하여 별지 부과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각 관세, 각 부가가치세, 각 가산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7.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3. 11.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판단

1) 한-EU FTA에 의한 협정세율 0%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

한-EU FTA 협정문 제16조 제1항, 제17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에 의하면,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은 수출 당사자의 각 법과 규정의 적절한 조건에 따라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도록 수출자에게 인증할 수 있는데, 그러한 인증을 구하는 수출자는 제품의 원산지 지위, 의정서의 그 밖의 요건의 충족을 검증하는데 필요한 모든 보증을 관세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제공하여야 하고, 관세당국은 그들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조건에 따라 인증수출자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으며, 수입자가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수입자가 요구받은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만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협

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과 인증수출자제도는 관세당국이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권한을 주고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나 첨부서류의 제출을 간이하게 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인증수출자번호는 원산지신고서에 기재되는 항목 중 하나에 불과한 사소한 사항이 아니라,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을 결정하는 주요한 항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들이 원고 ○○바이오가 수입한 물품에 대한 실제 인증수출자번호라고 주장하는 'ES/○○/○○○○/11'이 유효한 것인지도 확인할 수 없고, 달리 원산지신고서의 제출 외에 이 사건물품의 원산지가 증명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물품에 대한 인증수출자번호의 오류가 한-EU FTA 협정문 제 24조의 '원산지 증명에 기재된 내용과 제품을 수입하기 위한 절차를 수행할 목적상 관세당국에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 간 사소한 차이가 발견되더라도, 그 서류가 제출된 제품에 해당된다는 것이 적절히 입증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물품에 대한 인증수출자번호가 유효하지 않은 이상, 이러한 인증수출자번호에 의하여 유효한 원산지 증명이 있었다고 할 수 없어서, 이 사건물품에 대하여 한-EU FTA에 의한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WTO 양허관세의 추천세율 5%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

관세법 제50조 제3항 단서에 의하면 관세법 제73조에 따라 국제기구와의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의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포함한다)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의한 대통령령인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6조, 별표1의 나에 의하면 이 사건물품(품목번호 230990-2099)에 대한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세율은 5%, 시장접근물량 초과인 세율은 50.6%이다. 그리고 사료관리법 제6조는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사료를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수산부장관이나 그 대행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시행령 제94조는 관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가 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시장접근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시장접근물량 이내로서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는 당해 추천서를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료관리법 제6조는 그 문언에서 양허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농림수산부장관이나 그 대행기관의 추천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시행령 제94조는 그 추천서를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수입통관 시 해당 물품이 시장접근물량 이내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양허관세 추천서의 제출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위 각 규정은 양허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에 관한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하며,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사무처리를 위한 훈시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바이오는 2011. 8. 3. 당시 이 사건물품에 대하여 1,951톤의 추천 잔량이 남아 있었고, 원고 칼○의 수입대행을 겸하고 있던 원고 ○바이오텍은 2011. 9. 5. 당시 8,616톤의 추천 잔량이 남아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들이 WTO 양허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관련 기관의 추천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들은 WTO 양허관세 중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물품에 대한 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에게 WTO 양허관세 중 시장접근물량 초과세율인 50.6%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각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주장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나,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스페인의 인증수출자번호는 ‘국가(2)/지역코드(2)/인증번호(4)/인증연도(2)’ 형식이며, 네덜란드의 인증수출자번호는 ‘국가(2)/세관관서(3)/인증연도(2)/인증일련번호(3~4)’ 형식인 사실, ② 원고 ○○바이오가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스페인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의 인증수출자번호는 ‘ES/○○/○○○○/44’이고, 원고 ○바이오텍 및 원고 칼○가 각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네덜란드 수출자들이 발행한 원산지신고서의 인증수출자번호는 ‘NL○○○○72’ 및 ‘NL○○○○09’인데, 이 사건물품의 수입 이후에 위 네덜란드 수출자들은 각 ‘NL○○○○05’ 및 ‘NL○○○○24’의 유효한 인증수출자번호를 부여받은 사실, ③ 원고들이 이 사건물품의 수입 과정에서 수출자들과 주고받았던 이메일의 내용을 보면, 원고 ○○바이오 측은 2011. 8. 22., 2011. 8. 23. 및 2011. 9. 8. 수출자 측에게, 스페인의 인증수출자번호에는 ‘ES’가 포함되고 ‘지역코드(2)/인증번호(4)/인증연도(2)’로 이루어져 있다고 인증수출자번호의 구성체계를 설명하며, 스페인 세관에 문의하여 인증수출자번호를 확인해달라고 하였고, 원고 ○바이오텍 측은 2011. 12. 6. 및 2012. 1. 4. 수출자 측에게, 네덜란드의 인증수출자번호가 ‘국가(2)/세관관서(3)/인증연도(2)/인증일련번호(3~4)’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한-EU FTA에 대한 설명자료를 송부하며 ‘세관 인증번호와 VAT 번호는 다른 것이니, 인증수출자에게 세관이 부여한 번호를 받아달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수출자 측은 2012. 1. 4., 2012. 1. 9. 원고 ○바이오텍 측이 말하는 번호는 ‘NL○○○○09’이고, 이는 EORI 번호라고 답신하였던 사실, ④ 이 사건물품의 수입 이전에, 원고들은 여러 차례 WTO 양허관세 미추천 세율 50.6%를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한 바 있으며, 이 사건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에 대하여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협정세

율 0%를 적용받은 적도 있는 사실, ⑤ 피고가 2013. 9. 25. 원고 ○○바이오에게, 2013. 10. 15. 원고 ○바이오텍에게, 각 수입물품 원산지 검증을 위한 서면조사 실시에 관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통지하자, 원고 ○○바이오는 2013. 10. 21., 원고 ○바이오텍은 2013. 10. 22. 피고에게 각 인증수출자번호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왔고, 원고 ○바이오텍은 '해당 세관을 확인한 결과, 최초 확인 시에는 해당 세관에서 인증수출자번호 시스템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 해당 세관에서 수출자들에게 다른 인증수출자번호가 부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인증서를 보내왔다'고 설명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은 수출자들에게 인증수출자번호의 구성 체계를 설명하며 유효한 인증수출자번호를 요구하는 등 인증수출자번호의 구성 체계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네덜란드 수출자 측은 'NLO○○○○09' 번호가 EORI 번호라고 답신하였으며, 원고들은 이전에 이 사건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에 대하여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협정세율을 적용받은 적도 있었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물품을 수입신고하기 전부터 수출자들이 알려준 인증수출자번호가 구성 체계에 맞지 않는 번호라거나 인증수출자번호가 아닌 EORI 번호라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가 원고들에게 수입물품 원산지 검증을 위한 서면조사 실시를 통지한 후, 원고 ○○바이오는 약 한 달, 원고 ○바이오텍은 약 일주일 만에 각 인증수출자번호에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알려준 것으로 볼 때, 수출국의 세관 등에 연락하여 인증수출자번호가 유효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워 보이지는 않음에도, 원고들은 피고의 서면조사 실시 통지 전까지 그러한 확인을 하지 않고 있었던 점, ③ 관세법은 원칙적으로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관세법 제38조 등 참조), 신고납세방식 아래에서는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납세신고를 함에 있어서 수입신고서에 관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따라 당해 물품의 품목 분류·세율·세액 등을 기재하여 신고함과 아울러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세관장은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비로소 심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물품의 수입 당시 인증수출자번호에 오류가 있음에도 관세 공무원이 그대로 수입신고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피고가 원산지 검증 과정에서 인증수출자번호의 오류를 발견한 이상,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물품에 대한 인증수출자번호의 오류가 관세 공무원조차 알 수 없는 것이어서 원고들에게 그 오류를 파악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들은 이 사건물품에 대한 인증수출자번호가 유효하지 않아 이 사건물품의 수입에 협정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면 WTO 양허관세 미추천 세율 50.6%가 적용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에 따른 수입신고를 함으로써 WTO 양허관세 미추천 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정당시할 수 있다거나 WTO 양허관세 미추천 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는 것을 원고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원고들이 신고, 납세 의무를 해태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각 가산세 부분도 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6두41606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1. 주식회사 ○○바이오
 2. 주식회사 ○바이오텍
 3. 주식회사 칼○
피고, 피상고인 ○○세관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5. 18. 선고 2015누6792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4) 서울행정법원 2018. 5. 31. 선고 2017구합8304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8. 10. 16. 선고 2018누52138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9. 2. 18. 선고 2018두61345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 행정법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7구합8304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제○○○○○
 피 고 ○○세관장
 변 론 종 결 2018. 5. 1.
 판 결 선 고 2018. 5.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별지 [표] '처분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기재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방기구 제조·도소매 및 수출입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스페인 수출자로부터 수입신고를 하면서 한-EU FTA 협정의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수입신고를 하면서 작성한 각 송장에 인증수출자번호를 기재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4. 원고에 대하여 위 번호는 유효한 인증수출자번호가 아니므로 자유무역협정 관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의 계약상대국의 원산지 검증 회신내용 및 결과 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5. 14. 위와 같은 이유로 자유무역협정 관세법 제16조, 제17조, 구 관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3 제4항 등의 규정에 따라 별지 [표]와 같이 관세 합계 〇〇〇원, 부가 가치세 합계 〇〇〇원, 가산세 합계 〇〇〇원 총합계 〇〇〇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7. 13.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물품 수입에 따른 송품장 번호 및 인증수출자번호 등은 다음과 같다. <생략>

2) 피고는 2014. 3. 31. 스페인 관세당국에 이 사건 수출자가 스페인 관세당국으로부터 유효한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았는지 여부 등을 질의하였는데 스페인 관세당국은 2014. 9. 29. 및 2015. 1. 21. 각 다음과 같은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2014. 9. 29.]

제목에 대해 수행된 검증 활동으로부터, 그리고 요구되고 획득된 증거 및 증빙을 적절하게 고려한 결과, 우리는 한-EU FTA의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의 27.4조에 따라 다음의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송품장 신고서 번호에 포함된 해당제품의 원산지 특성에 대한 정보는 정확합니다.

- 인증수출자번호의 세관 인증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상기 결과로부터 상기 송품장에 해당하는 제품은 한-EU FTA의 해당 항목에 따라 관세 특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5. 1. 21.]

2014. 9. 29. 우리측의 실수로 인하여 "한-EU FTA상 해당 조항에 따라 관세 특혜는 이 '송품장 신고서들'에 해당하는 제품들에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언급되어 있는 송품장 신고서의 사후 관리 결과를 송부하였음을 사과드립니다.

2015. 1. 8.자 귀하의 서신과 관련하여, 실수를 발견하고 이 파일들에 대한 추가 확인을 수행하였으며 다음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비록 언급된 제품은 EU 제품으로서 원산지 지위에 대한 송품장 신고서에 주어진 정보가 정확하다고 확인하였으나, 인증수출자번호의 세관 인증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한-EU FTA에서 제공되는 관세 특혜는 이 송품장 신고서에 해당하는 제품에 적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14년 9월 29일자 우리의 연락은 상기 서술된 용어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나. 판단

1) 한-EU FTA 협정서에 포함된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5조 제1항은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유럽연합 당사자로 수입될 때, 그리고 유럽연합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대한민국으로 수입될 때, 이후 원산지신고서라 지칭되는 신고서에 근거하여 이 협정의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는다. 원산지 신고는 해당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의 수출자에 의해 행해진다. 원산지신고서의 문안은 부속서 3에 기술되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조 제1항은 ‘이 의정서의 제15조 제1항에 언급된 원산지신고서는 가. 제17조의 의미상 인증수출자 또는 나. 전체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산지 제품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포장으로 구성되는 탁송화물의 수출자에 의해 작성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7조 제1항은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은 수출 당사자의 각 법과 규정의 적절한 조건에 따라 해당 제품의 가치와 관계없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도록 이 협정에 따라 제품을 수출하는 수출자(인증수출자)에게 인증할 수 있다. 그러한 인증을 구하는 수출자는 제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의정서의 그 밖의 요건의 충족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모든 보증을 관세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수입자는 자유무역협정의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수출당사국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개별 수입자가 각자의 방법으로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이를 개별적으로 확인하는데 행정력이 심각하게 낭비될 것이 자명하므로, 대한민국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특정된 방법으로 원산지를 증명하도록 한 ‘원산지 증명제도’를 필수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원산지 증명제도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주체가 기관인지 아니면 수출자 등 개인인지 여부에 따라 ‘기관 증명제도’와 ‘자율 증명제도’로 구분되는데, 자율 증명제도는 기관 증명제도에 비하여 절차가 간편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우회수입과 원산지 허위증명의 가능성이 있는 단점이 있다.

3) 위와 같은 원산지 증명제도의 취지와 이 사건 의정서의 각 규정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6,000유로 초과 수입물품에 대해서 한-EU FTA 협정의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세당국으로부터 유효한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은 수출자에 의하여 작성된 원산지신고서가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산지신고서에 유효하지 않은 인증수출자번호가 기재된 경우에는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지위를 받은 수출자에 의하여 원산지신고서가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이러한 경우 한-EU

FTA 협정의 협정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의정서 제15조 제1항은 '원산지신고서에 의하여 위 협정의 특혜관세 대우의 혜택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조 제1항은 '인증수출자 또는 전체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산지 제품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포장으로 구성되는 탁송화물의 수출자에 의하여 원산지신고서가 작성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문언상 6,000유로 초과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오직 유효한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하여서만 한-EU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해석된다.

② 위 각 규정에 의하면, 한-EU FTA 협정은 기본적으로 절차가 간편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자율 증명제도를 채택하되, 원산지 허위증명 등 자율 증명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가액이 큰 6,000유로 초과 수입 물품에 한해서 일반적인 자율증명제도보다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는 인증수출자 제도를 채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6,000유로 초과 수입물품에 대해서도 유효한 인증수출자가 아닌 자가 작성한 수입신고서에 의해 한-EU FTA 협정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와 같은 인증수출자 제도 채택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③ 원고는 스페인이 원산지인 물품을 수입하였으므로 유효한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가 필요하다는 사정은 실제적인 원산지 요건을 보충하는 것에 불과하고 자유무역협정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단순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로서 원산지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의정서의 문언과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 신고서를 필요로 하는 6,000유로 초과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유효한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의 존재는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할 것이고, 원산지 요건을 보충하는 데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증수출자는 이 사건 의정서 제17조 제1항에 따라 제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사건 의정서의 그 밖의 요건의 충족을 검증하는데 필요한 모든 보증을 관세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제공해야 하는 등 원산지 결정에 있어서 이를 보증하는 역할을 하므로 유효한 인증수출자라는 점이 원산지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

제1 행정부

판 결

사 건 2018누52138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제○○○○
피고, 피항소인 ○○세관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8. 5. 31. 선고 2017구합83041 판결
변 론 종 결 2018. 9. 18.
판 결 선 고 2018. 10.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제1심 판결 별지 [표] '처분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에게 한 별지 [표] 기재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7쪽 밑에서 3행 '어렵다' 다음에 '[원고가 들고 있는 조세심판원 결정례들(갑4~12호증)은 한-EU FTA 협정에 관한 사안들이 아니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서 7쪽 밑에서 3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적어도 가산세 부과처분은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닦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나,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 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닦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관세법은 원칙적으로 신고 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고(관세법 제38조 등 참조), 신고납세방식 아래에서는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납세신고를 함에 있어서 수입신고서에 관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따라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세율·세액 등을 기재하여 신고함과 아울러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또한, 자유무역협정관세법 제10조 제1항, 제7항에 따르면, 수입자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때에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은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비로소 심사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관련 법령의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인증수출자번호에 오류가 있음에도 관세공무원이 원고의 수입신고를 그대로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유효하지 아니한 인증수출자번호에 의하여 수입신고한 것이 정당시 된다거나 원고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 하는 것이 무리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8두61345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제○○○
피고, 피상고인 ○○세관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10. 16. 선고 2018누521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나-①.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1) 조심 2016관227(2017. 3. 1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A社は 2011.5.4. 및 2012.7.31. 제3국 판매자로부터 수출자가 생산한 고속밀링기를 수입하면서, 한-EFTA에 따른 협정관세율(1~2%)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 부터 수리받았으며, 청구법인은 2013.1.1. A社를 흡수·합병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면서 2015.4.27.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 확인을 위하여 수출국 관세당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고, 수출국 관세당국은 2016.1.6. 수출자는 인도 증서(Delivery Note)에 작성된 원산지신고서만 발행하였고 나머지 상업서류에 의한 원산지신고서는 발행하지 않았다고 회신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 건 인도증서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일 이후에 소급 발행된 것임을 확인하고 쟁점물품에 대해 협정 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8%)을 적용하여 2016.8.1. 청구법인에게 관세 〇〇〇원, 부가가치세 〇〇〇원 및 가산세 〇〇〇원 합계 〇〇〇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① 청구법인이 원산지신고서로 제출한 인도증서가 협정관세 적용신청일 이후에 발행되었다는 이유로 한-EFTA FTA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② 합병 이전에 피합병법인에게 부과한 관세 등의 납세의무 승계의 적법성 여부
- ③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2013.1.1 흡수·합병한 A社は 2011.5.4. 및 2012.7.31. 제3국 판매자로부터 수출자가 생산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제3국 판매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한-EFTA에 따른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신청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면서 2015.4.27. 청구법인이 제출한 상업서류의 유효성 확인을 위하여 수출국 관세당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고, 수출국 관세당국은 수출자는 인도증서(Delivery Note)에 작성된 원산지신고서만 발행하였고 나머지 원산지신고서는 발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회신하였다.

(다) 처분청은 인도증서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일 이후에 재발행되었다는 이유로 유효한 원산지신고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였다.

(2)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인도증서의 발행일자 현황은 아래 <표1>과 같으며, 2014.10.14. 재발행된 인도증서는 협정관세 신청일 이후에 작성되었음이 확인된다.

(나)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의 발행자는 모두 판매자이고, 원산지 신고문안이 기재된 인도증서의 발행자는 수출자임이 확인된다.

(다) 2016.6.20. 처분청은 수출국 관세당국의 회신 결과를 토대로 “Delivery Note상의 원산지신고서는 수출자가 발행하였으나, 나머지 원산지신고서는 수출자가 발행하지 않음”이라는 내용으로 아래 <표2>와 같이 통지하였다. <생략>

(3) 2014.1.1. 「관세법」 제19조 제4항의 개정이유는 “납세의무자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기 위하여 상속 또는 법인 합병 시 관세·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에 대한 납세의무의 승계와 법인 분할 또는 분할합병 시 연대납세의무를 규정”하여 관세 등에 대한 납세의무의 승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신설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FTA특례법 제10조 제1항은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수입자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그 적용을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할 때에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세관장은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류만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EFTA FTA 협정 부속서 제1조 등에 의하면 협정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신청 당시에 인도 증서가 아닌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에 의한 원산지 신고서를 보관하고 있었고 그러한 원산지신고서가 수출자가 아닌 판매자에 의하여 작성된 사실이 수출국 관세당국의 회신 등에 의하여 확인된 점, 처분청이 서면조사를 실시하면서 원산지신고서의 효력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 하자 청구법인이 이 건 인도 증서를 다시 제출하였으나 그 발행일이 2014.10.14.로 모두 수입신고수리 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점, 비록 수출국 관세당국이 검증을 거쳐 동 인도 증서에 의한 수출자의 원산지 증명이 유효하다고 회신하였으나 청구법인이 협정관세 적용신청 당시에 그러한 적법한 원산지신고서를 갖추고 있었는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한-EFTA 협정관세를 배제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관세법」 제19조 제4항은 2014.1.1. 신설되었고, 같은 법 부칙조항에 따라 이 법 시행 후 법인이 합병하거나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청구법인이 흡수·합병하기 이전에 발생한 쟁점물품의 납세의무는 청구법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관세법」에서 2014.1.1. 「국세기본법」을 준용하도록 조항을 신설한 것은 관세 채권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신설한 것이라는 점, 「상법」 제235조에서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흡수·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는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한-EFTA에 규정된 기재요령에 부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재 발행된 인도증서를 제출한 점,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에 의한 원산지신고서를 수출자가 작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법인은 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한지 여부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유효하지 아니한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조심 2019관124(2019. 12. 16.)

PART 03. 3.가. 12) 참조

나-②. 비당사국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신고서)를 작성한 경우

1) 조심 2016관4(2016. 6. 3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수출자로부터 생산자가 생산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한-미 FTA협정관세(관세율할당물량 추천 0% / 미추천 33.6%)를 적용하여 수입통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 결과 제3국의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한-미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관세 〇〇〇원, 부가가치세 〇〇〇원 및 가산세 〇〇〇원 합계 〇〇〇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① 비당사국 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가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②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더라도 관세할당추천물량에 대하여는 추천세율(0%)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③ 가산세 부과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생산자가 생산한 쟁점물품을 수출자로부터 수입하면서,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한-미 FTA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수입통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 결과 비당사국인 소재 수출자가 오류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를 적용하였음을 확인하고, 한-미 FTA 제6.19조 제2항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다는 예비결과를 통지하면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추가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WTO 양허관세(36%)를 적용하여 관세 〇〇〇원, 부가가치세 〇〇〇원 및 가산세 〇〇〇원 합계 〇〇〇원을 과세전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법률상 자료제출 기회로 제공된 추가자료 제출기한을 경과한 과세전통지 이후에야 수출자로부터 생산자의 원산지증명서를 확보한 후, 협정관세 적용배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이를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은 과세전 적부심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관세 〇〇〇원, 부가가치세 〇〇〇원 및 가산세 〇〇〇원, 합계 〇〇〇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는 모두 수출자가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수출자로부터 생산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확보한 후, 처분청에 과세전 적부심사를 제기하면서 이를 제출하였다.

(4) 청구법인은 통관지세관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주체를 수출자에서 생산자로 변경하는 정정신청을 하여 이를 승인받았다.

(5)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고지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생략>

(6) 청구법인은 위 <표1> 경정·고지내역 중 관세 〇〇〇원에 상당하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미 FTA 관세율할당물량 적용추천을 받았고, 그 사실을 입증하는 추천서를 제출하였다.

(7) 처분청은 이 건 수출자가 다른 생산자의 물품을 수출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음을 입증하는 원산지증명서 2건을 제출하였다.

(8) 관세청장은 자유무역협정관세 재적용업무 처리방법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였다.<생략>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건대, 청구법인은 비당사국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였으나 생산자가 소급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유효기간 이내에 다시 제출하였고, 쟁점물품이 최종적으로 원산지기준을 충족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한-미 FTA 제6.15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체약 당사국의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비당사국인 소재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한 점,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추가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시 생산자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입신고시 협정관세를 적용받고협정관세 적용오류로 세액이 정정된 쟁점물품의 경우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건대, 청구법인은 한-미 FTA 관세율할당 적용추천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추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추천세율은 한-미 FTA 협정관세의 적용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비당사국의 수출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된 이상, 비록 한-미 FTA 관세율할당 적용추천을 받은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추천세율을 적용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수출국에서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된 물품으로 최종적으로 원산지기준을 충족한 사실이 확인되고 단순 업무실수로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가산세 면제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기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당사국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점, 추

가자료 제출기한을 경과하여 생산자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납부세액의 부족에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조심 2016관233(2017. 11. 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수출자로부터 생산자가 생산한 니켈합금튜브를 수입하면서 한-EU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0%)을 적용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6.2.1. 원산지 검증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신고서는 인증수출자인 생산자가 발행한 것이 아니라는 원산지 간접검증결과를 근거로 2016.5.20.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전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6.6.16. 처분청에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7.25.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6.8.5. 청구법인에게 관세 〇〇〇원, 부가가치세 〇〇〇원 및 가산세 〇〇〇원 합계 〇〇〇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① 원산지신고서를 비당사국의 판매자가 발급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다른 업체가 수출자·생산자로부터 수입한 동종물품(니켈합금튜브)에 대하여 원산지 검증을 실시하였고, 처분청은 2014.12.10. 수출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와 발행일자만 다를 뿐 발급업체 및 서명자가 모두 동일한 동종물품의 원산지신고서에 대하여 동 원산지신고서들은 모두 인증수출자인 생산자가 발행한 것이 아니라 비당사국인 소재 수출자가 발행한 것이라는 검증결과를 회신 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6.4.8. 청구법인에게 “해당 원산지신고서는 한-EU FTA의 거래당사자가 행한 것이 아니며, 특혜대상이 될 수 없다는 수출국 관세당국의 조사결과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원산지 서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불복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 및 관련 증거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우리 원은 2017.4.20. 청구법인 및 대리인에게 불복의 이유 및 불복에 대한 증거서류를 2017.5.10.까지 보정토록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보정서를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원산지신고서류에 대하여 수출국 관세당국의 검증없이 다른 업체의 조사결과만을 근거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다른 업체가 동일 수출자 및 판매자로부터 수입한 동종물품에 대하여 수출국 관세당국이 회신한 검증결과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는 쟁점물품의 생산자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비당사국 수출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당사국의 판매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의 경우 원산지 검증없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원산지신고서류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작성자 서명까지 문제 삼아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신고서가 비당사국 판매자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조심 2017관1(2017. 4. 5.)

[주 문]

청구법인이 수입한 물품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에 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기본세율(8%)을 적용하였으나, 2014.7.31. 협정관세 사후 적용신청을 통해 한-EU FTA에 따른 협정세율(0%)을 적용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6.2.1. 원산지 검증 서면조사 결과, 쟁점물품과 동일 판매자·수출자·물품에 대하여 생산국 관세당국으로부터 '① 모든 원산지신고서는 인증수출자인 생산자가 발행한 것이 아니고, ② 모든 서류의 서명자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③ 모든 원산지신고서들은 수출자가 발행한 것으로 보이고, 특혜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산지 간접검증결과를 회신받았다는 것을 근거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 〇〇〇원을 과세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6.6.22. 처분청에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7.25.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6.8.5. 청구법인에게 관세 〇〇〇원, 부가가치세 〇〇〇원 및 가산세 〇〇〇원 합계 〇〇〇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① 원산지신고서를 비당사국의 수출자가 발급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②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생산자가 생산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수출자로부터 수입하였으며, 한-EU FTA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은 아래 <표1>과 같이 HS 4단위 변경이다.<생략>

청구법인이 제시한 제조공정도에 따르면, 쟁점물품은 아래 <표2>와 같은 4단위 품목번호에 분류되는 원재료를 용해 및 재용해, 압출, 냉간 인발의 공정을 통하여 생산되는 것으로 보인다.<생략>

(2) 쟁점물품의 거래형태는 청구법인이 수출자에 구매주문을 하면, 수출자가 생산자에 동 주문내용을 전달하고, 생산자는 쟁점물품을 생산하여 청구법인에게 직접 운송하는 방식이며,

청구법인은 생산자가 생산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번호○○○를 부여받은 적법한 인증수출자임을 나타내는 2012.3.2.자 인증서 사본을 제시하였다.

(3)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한-EU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제시한 원산지신고서에 기재된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등이 생산자가 발행한 포장명세서(PACKING LIST)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고 그 서명자는 ○○○로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이 다른 업체가 동일 수출자·생산자로부터 수입한 동종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검증을 할 때, 처분청은 2014.12.10. 생산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와 발행일자만 다를 뿐 발급업체(생산자) 및 서명자가 모두 동일한 동종물품의 원산지신고서에 대하여 동 원산지신고서들은 모두 인증수출자인 생산자가 발행한 것이 아니라 비당사국인 소재 수출자가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는 다음과 같은 내용(발체)의 검증결과를 회신받은 바 있다.

(5) 관세청장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¹⁾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제2호의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관세법」 등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되었음이 확인된 경우」를 「협정 및 법령에 따라, 수입자가 체약 상대국의 수출자 등으로부터 제출된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제출된 사실과 일치하게 특혜관세를 적용받았음을 수입자가 증명하는 경우」라고 규정하면서 협정 또는 법령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기한 및 원산지증빙서류의 서식, 거래자, 발급권자, 서명, 인장, 기재요령 등)을 위반하여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예시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고 생산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자격을 부여받은 생산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였으므로 쟁점물품에 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른 업체가 동일 수출자 및 판매자로부터 수입한 동종물품에 대하여 생산국 관세당국이 회신한 검증결과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가 쟁점물품의 생산자인 생산자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수출국 소재 수출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당사국의 판매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의 경우 원산지 검증없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인증수출자인 생산자로부터 원산지신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한 것에 잘못이 없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수정수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심판청구의 경우,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 제기일까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한 사실이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관세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신고서가 비당사국 수출자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관세청장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에도 원산지신고서의 형식적 요건(발급권자, 서명 등)을 위반하여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예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 조심 2017관57(2017. 7. 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캐나다 소재 생산자가 생산한 쟁점물품을 비당사국 수출자로부터 수입하면서, 한-캐나다 FTA에 의한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5.25. 청구법인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 결과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가 비당사국 수출자에 의해 발급되었으므로 한-캐나다 FTA 협정세율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2016.12.5. 청구법인에게 관세 〇〇〇원 및 가산세 〇〇〇원 합계 〇〇〇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① 비당사국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였다고 보아 한-캐나다 FTA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②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
- ③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처분개요와 같고, 청구법인은 조합원의 의뢰를 받아 캐나다 등으로부터 완두·강낭콩 등을 수입하여 이를 배분하는 협동조합으로, 조합원들은 이를 원료로 하여 양금 등을 제조·가공하여 공급하고 있다.

(2) 과세대상기간의 수입신고번호는 수입신고시 서류제출대상으로 선정되어 청구법인이 비당사국의 수출자가 서명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고 수입신고를 수리하였다.

그러나, 과세대상기간 이후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된 수입신고번호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비당사국의 수출자가 서명한 원산지증명서가 제출된 사실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자 청구법인은 생산자가 서명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한 후 수입신고수리를 받았다. 이후 청구법인은 생산자가 서명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고 있다.

(3) 과세대상기간 중 청구법인이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의 서명자 및 업체명이 수출자로 되어 있고, 서면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다시 제출한 캐나다 생산자의 원산지증명서와 당초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자는 서로 동일한 날짜가 표기되어 있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자 확인’을 이유로 원산지 서면조사를 한다는 통지를 하면서 그 문서에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FTA 관세특례법 제16조, 제22조, 제24조 규정에 의거 협정관세 적용제한, 벌칙 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였고, ‘원산지증명서 발급자 관련서류(있을시) 및 수출입신고필증’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5) 관세청장은 다음과 같은 “자유무역협정관세 재적용업무 처리방법 시달” 문서를 관세청 관련부서 및 전국세관에 발송하였다.

제목 : 자유무역협정관세 재적용업무 처리방법 시달

1. 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호(2013.6.10.) 및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호(2014.9.1.)와 관련입니다.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수리 전에 ‘협정관세 적용신청’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해 동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수입신고수리 후 협정관세의 적용을 재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리청의 질의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협정관세 적용을 재신청할 수 없다고 회신한 바,

3. 붙임과 같이 자유무역협정관세 재적용 업무 처리방법을 시달하오니 각 세관장은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관내 수입자 및 신고인 등에게 홍보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관 납세심사과-○○○호(2013.5.29.)에 대한 답변은 동 문서로 갈음함

붙임 : 협정관세 재적용 업무 처리방법 1부. 끝.

위 문서의 붙임 '협정관세 재적용 업무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자유무역협정관세 재적용 처리 지침

■ 자유무역협정관세가 적용된 수입물품에 대한 세액수정 또는 경정 이후 협정관세 재적용에 대한 처리 지침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 중

- 협정관세 적용오류로 인해 세액보정·수정 또는 경정되어 세액이 정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수입신고수리 후 협정관세의 적용을 다시 신청할 수 없음

■ 또한, 같은 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수입신고수리 후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 중

- 협정관세 적용오류로 인해 세액보정·수정 또는 경정되어 세액이 정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사후신청 허용기간(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다시 신청할 수 없음

■ 시행시기 : 2014년 12월 1일

■ 적용기준 : 시행일 이후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시행일 이전에 같은 법 제1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협정관세적용을 신청한 물품은 인정처리
(별도 추징조치 없음)

관세청장은 2014.11.10. 위 문서의 붙임 내용을 그대로 관세청 FTA포탈 사이트의 공지사항에 등재하였다.

(6) 청구법인의 대리인이자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인이 2017년 4월에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에서 “수입신고전에 미리 2015.1.7. 처분청의 통관부서 FTA 상담창구직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제시하면서 문제점이 있는지를 직접 문의한바, 그 직원이 서류를 한참 검토하고 나서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런 이틀 후 2015.1.9. 협정관세적용신청을 수리를 받아 통관되었으며 그 후로 아무런 문제없이 계속 통관되었다가 1년 6월이 경과한 2016년 5월경에 처분청의 원산지 검증에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자가 오류라는 지적과 함께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7) 기획재정부장관은 2008.4.25. 양자관세협력과-○○○호로 다음과 같은 “한-EFTA FTA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여부 질의회신” 문서를 관세청장에게 발송하였다.

제목 : 한-EFTA FTA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여부 질의회신

1. 귀청 원산지심사과-○○○(2008.4.2.)호와 관련입니다.

2. 수입신고수리후 사후심사과정에서 수입자가 새롭게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를 기초로 한-EFTA 자유무역협정 및 FTA관세특례법령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귀청의 질의에 대해 우리부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보내드립니다.

- 아 래 -

가. 유효하지 아니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를 적용신청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협정관세를 적용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 한-EFTA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I 제17조 제2항, FTA 관세특례법 제10조 제2항, 제16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6호 등 규정에 따르면 유효하지 아니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를 신청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당연히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으며,

■ 수입자가 사후심사과정에서 새로운 원산지증명서를 보완 제출한 경우 FTA 관세특례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조사를 요청하고 그 회신내용을 바탕으로 동법 제16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배제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할 것임

나. 수입신고수리이후 새롭게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 수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과부족세액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동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 수정신고절차 또는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 따른 제출미비서류를 보정절차에 따라 새로운 원산지증명서를 보완 제출할 수 있을 것임

■ 일반 백지에 작성된 원산지증명서라 하더라도 필수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호 가목에 따라 인정될 수 있을 것임. 끝.

(8) 관세청장이 2014년 12월 한-캐나다 FTA 발효대비 설명회 자료로 작성한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 관세행정 주요내용” 제14페이지의 “원산지 증명 방식(제4.1조)” 중 발급방식과 발급주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⑤ 원산지증명 방식(제4.1조)

■ 발급방식 : 자율발급

■ 발급주체 : 수출자, 생산자

• 수출자가 상품의 생산자가 아닌 경우 아래에 근거하여 원산지증명서 작성·서명

- ①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수출자의 인지
- ② 생산자의 서면 진술서에 대한 수출자의 합리적인 신뢰
- ③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한, 그 상품을 위하여 작성하고 서명한 원산지증명서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제3국의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도 유효하고, 설령 유효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후심사과정에서 당사국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보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한-캐나다 FTA 제4.1조 제3항 가호에 당사국 영역의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FTA 제4.21조에 수출자란 당사국 영역 내에 있는 수출자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협정관세 적용신청시 제출 또는 소지한 원산지증명서는 유효하지 아니한 비당사국인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유효하지 아니한 비당사국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기초로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였는바, 이는 한-캐나다 FTA 제4.2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비당사국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는 FTA 관세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된 단순한 착오에 해당하거나,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5항의 보정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가 비당사국 수출자가 발급한 것이라는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0)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관세청의 협정에 관한 해석 발행 책자와 처분청 소속 공무원의 답변을 신뢰하여 비당사국 수출자 발행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협정세율 적용하였으며, 수입신고가 수리가 된 이후 원산지조사 결과에 따라 협정세율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관세청장의 한-캐나다 FTA 발효대비 설명회 자료는 설명회를 효율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작성된 내부 요약서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설명회 자료에 원산지증명서 발급권자를 수출자·생산자로만 기재하고 있을 뿐 비당사국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주체라는 어떠한 내용도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의 질의에 대한 처분청 직원의 구두답변 또한 단순한 민원회시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세관청이 비당사국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기초로 협정관세 적용신청이 가능하다는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1)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비당사국 수출자 발행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협정세율을 적용받은 것은 관세청의 교육 및 배포 책자의 내용 미비, 처분청 소속 공무원의 잘못된 답변에 따른 것으로 청구법인에게 이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한-캐나다 FTA 제4.1조 및 제4.21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는 당사국 수출

자가 발급한 것이어야 함에도 비당사국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도 유효한 것으로 오인한 것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조심 2018관142(2018. 11. 1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과 0000는, C000가 포획·냉동한 새우(이하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수입신고번호 000 외 3건으로 수입하면서, 한-캐나다 FTA 협정관세율(16% 또는 12%) 적용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 및 수출자에 대한 국제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판매자가 작성·서명한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이하 “쟁점원산지증명서”)는 한-캐나다 FTA 제4.1조에 따른 유효한 원산지증명서가 아니라고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판매자가 작성·서명한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가 유효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한-캐나다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① 청구법인은 2015.8.22.부터 2016.2.5.까지 아래 <표1>과 같이 수입신고번호 ○○○ 외 3건으로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였다.

② 처분청은 2016.5.25. 자유무역협정과-1329호로 청구법인에게 2015.8.1. ~ 2016.2.29. 수입통관분을 대상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자 오류 확인 등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할 것임을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원산지 검증 표준 질의안에 대한 답변서, 원산지소명서, 수입신고필증, C○○○ 보유 선박의 국적 증빙자료, 포괄원산지증명서, 선적서류(B/L,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제조공정도, ○○○ 발행 원산지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③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자료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자료 보정을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수입신고필증,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수입신고시 포괄원산지증명서, 선적서류(B/L,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제조공정도, 원산지증명서 등을 다시 제출하였다.

④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산자에 대한 조사 착수를 통지하였고, 청구법인에게 C○○○를 대상으로 국제 서면조사를 실시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였다.

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비당사국 판매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는 한-캐나다 FTA 제4.1조 및 제4.21조를 위반하므로 제4.7조에 따라 특혜 배제”라는 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⑥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전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이 건 수입 거래는 청구법인이 ○○○○와 수입 계약(○○○○의 국내 대리인인 씨○○○㈜를 통한 수입 대행 계약)하여 C○○○가 소속 선박으로 포획하여 체약상대국에서 한국으로 직접 운송하여 수입한 제3국 거래의 형태이다.

(3) C○○○가 2017.9.29. 청구법인에 발송한 문서에, C○○○의 D○○○와 P○○○가 원산지증명서 작

성·명권자이고, C○○○는 최초의 원산지증명서가 잘못 작성·서명되었다는 사실을 한국 관세청의 원산지 검증과정에서 알게 되었다는 내용과, 서명권자인 D○○○와 P○○○의 실제 서명이 표기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6.1.1. 발급한 최초의 원산지증명서에 수출자는 O○○○, 생산자는 C○○○, 생산자 여부 표시란에 NO, 작성업체명은 C○○○, 서명자 이름은 P○○○로 기재되어 있고, 이를 보정하여 다시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에 수출자는 O○○○, 생산자 여부 표시가 YES로 기재된 점 이외에 나머지는 모두 최초의 원산지 증명서 기재 내용과 같으며, 두 원산지증명서의 서명은 동일하나 위 (3)의 문서에 표기된 P○○○의 것과 다르다.

(5) 처분청이 2017.7.21. 받은 C○○○의 2017.6.29.자 이메일을 보면, 최초의 원산지증명서는 O○○○가 C○○○를 대신하여 완성·발급하였고(The initial incorrect Certificates of Origin were completed and issued on behalf of Clearwater Ocean Prawns Venture by our agent, Ocean Seafoods), 서명권자인 P○○○는 C○○○ Finance Manager임이 확인된다.

(6) ○○○는 2017.10.31. 관세청에 발송한 이메일에서 ‘○○○에게 수출자인 ○○○를 위하여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으로 지정하였으므로 쟁점원산지증명서의 작성자는 ○○○이고, ○○○을 고용하였으며, 그녀는 ○○○를 대신하여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하였다’고 주장한다.

(7) C○○○가 2015.12.11. 발행한 쟁점물품의 인보이스(인보이스 번호 ○○○) 하단에 “Sold by Ocean Seafood A/S, on behalf of Clearwater Ocean Prawns Venture”라는 문구가 표기되어 있다.

(8) 원산지증명서에 ‘송하인은 ○○○○, 수하인은 청구법인, 해당 물품은 ○○○ 제품이라는 사실을 증명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판매자인 O○○○가 정당하게 위임받은 권한에 따라 수출자·생산자인 C○○○를 대리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서명하였으므로 쟁점원산지증명서는 C○○○가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협정관세 적용배제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캐나다 FTA 제4.1조에 원산지증명서는 수출당사국의 수출자가 작성하고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원산지증명서의 작성자란에 기재된 서명은 P○○○의 것이 아니고, 수출자인 C○○○의 원산지증명서 작성·서명권자의 이름이지만, 쟁점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서명은 P○○○의 것이 아니고, 쟁점원산지증명서는 비당사국 소재 O○○○의 직원인 H○○○이 작성하고 서명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O○○○가 P○○○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작성·서명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작성·서명한 것이라면, 작성자란에 대리인 자신의 이름(H○○○)을 기재하고 서명하였어야 함에도 쟁점원산지증명서에 C○○○의 원산지증명서 작성·서명권자인 P○○○의 이름을 기재하고 대리인이 서명하였으므로 쟁점원산지증명서를 적법한 대리인에 의해 작성된 문서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원산지증명서가 유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산임을 인지하고 있었고, ○○○ 소재 수출자가 작성한 쟁점원산지증명서를 기초로 유효기간 내에 적법하게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물품의 거래는 제3국 송장방식 거래이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로 인지하게 된 원산지증명서에도 송하인이 ○○○○로 기재되어 있으며, 한-캐나다 FTA에 원산지증명서는 수출당사국의 수출자가 작성하고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출자가 비당사국의 판매자로 기재된 쟁점원산지증명서의 작성자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임에도 청구법인에게 쟁점원산지증명서가 비당사국 판매자에 의해 발급되었음을 사전에 확인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나-③. 기타 원산지신고서 유효성 확인 소홀

1) 조심 2017관기(2017. 6. 30.)

[주 문]

세관장이 2016.10.24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〇〇〇원, 부가 가치세 〇〇〇원 및 가산세 〇〇〇원 합계 〇〇〇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중 수정수입계산서 발급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AG〇〇〇가 생산한 방전가공기와 M〇〇〇(생산자)가 생산한 고속밀링기(이하 “쟁점물품”)를 제3국에 소재한(제3국 판매자, 이하 “A〇〇”이라 한다)로부터 수입하면서 한-EFTA FTA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 받았다.

나. 처분청은 위 수입신고 건에 대하여 원산지 자율점검, 원산지 서면조사, 국제 원산지 검증을 수행한 결과, 협정관세 적용신청 당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수입신고번호 〇〇〇〇〇호외 5건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의 원산지조사결과 통지 및 관세 등 합계 〇〇〇원 외 과세전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의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과 함께 청구법인에게 관세 〇〇〇원, 부가가치세 〇〇〇원 및 가산세 〇〇〇원 합계 〇〇〇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③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1.1.14.부터 2013.7.29.까지 제3국 소재 AOO 으로부터 방전가공기 및 고속밀링기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번호 OOOOO호 등 16건으로 한-EFTA FTA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였고, 세관장 등은 이를 수리하였다. 방전가공기는 AGOOO, 쟁점물품은 MOOOO이 생산한 물품으로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직접운송되어 수입되었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원산지 서면조사 전 청구법인 외 통관대리인(관세법인 OOO)에게 원산지 등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고, 동관대리인은 원산지 신고문안이 기재되어 있는 상업송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를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AEO 업체에 대한 원산지 자율점검 운영지침” 따라 OO세관장에게 청구법인에 대한 자율점검 의뢰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OO세관장의 자율점검 안내에 따라 자율점검을 실시한 후 “이상이 없다”고 OO세관장에게 보고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원산지 서면조사를 통지하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위 (다)의 자율점검 시 OO세관장에게 제출한 것과 동일한 상업송장 등의 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여기에 원산지증명서는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 중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인도 증서에는 각각의 원산지 신고문안이 기재되어 있었고, 처분청은 어느 것이 한-EFTA FTA에 따라 발행된 원산지신고서인지 알 수 없어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원산지 검증을 의뢰하였다.

(바) 처분청은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검증대상물품은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며, 인도증서에 작성된 원산지신고서만 수출국 수출자가 발행하였고 나머지 상업송장, 포장명세서는 수출국 수출자가 발행한 서류가 아

니다”라는 내용의 검증결과를 회신받았다.

(사) 처분청은 수출자가 발행한 인도증서상 원산지신고서는 협정세율 적용신청일 이후에 소급 발행된 것임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의 원산지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전 통지를 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과 함께 청구법인에게 관세 〇〇〇원, 부가가치세 〇〇〇원 및 가산세 〇〇〇원 합계 〇〇〇원 결정·고지하였다.

(2) 〇〇세관장의 자율점검 안내에 따라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자율점검 결과를 〇〇세관장에게 보고하였다.

■ 주요 점검 내용

1) EFTA 원산지증명서 유효 여부

원산지신고서에는 제15조에 규정된 원산지신고서의 문안 규정과 일치하는 원산지 문안이 표기되어 있음
-당사는 상기 규정에 따라 유효한 원산지증명 문구가 기재된 상업서류를 수출자로부터 전달받은 후 협정 관세적용을 신청하고 있음
-원산지 표시 문구가 표시된 상업서류 :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인도 증서 (Delivery Note) 등

2) 직접운송 원칙

- 수출국은 바다와 인접해 있지 않은 내륙국가로서 선박을 이용해서 운송 하고자 하는 경우 트럭을 통한 내륙운송 후 인접국가의 항구에서 하역 및 재선적 후 한국으로 운송이 되고 있음
- Through B/L을 통해서 수출국에서 적출이 되고 선적을 위해 인접국으로 이동 후 재선적되어 수입국인 부산항에 도착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생산 후 Wood Packing을 하였으며, 정밀가공기기로서 품목특성상 경유국가에서는 선적을 위한 하역 및 재선적 작업 이외 추가가공공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의 “12. 발급·작성번호”란에 상업송장번호를 기재하였으므로 상업송장의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였다는 의견이고, 협정관세 적용신청에 사용된 원산지신고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4)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및 인도증서의 원산지신고서외 정확성 및 진위성과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에 대하여 검증을 요청하였고 그 검증대상사유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5)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은 처분청의 위 원산지 검증요청에 대하여 “Delivery Note상의 원산지신고서는 체약상대국 수출자가 발행하였으나 나머지 원산지신고서는 체약상대국 수출자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물품은 한-E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회신하였다.

(6) 쟁점물품 외 상업송장 및 C/O외 발행일자과 해당 서류의 원산지신고서 작성일자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바, 처분청은 수입신고번호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의 경우 상업송장 발행일은 2012.11.23.인 반면 원산지신고서는 2011.10.30. 내지 2011.11.2.로 기재되어 있어, 체약상대국의 수출자가 1년 후에 제3국에 의해 발행된 상업송장의 번호를 미리 알고 기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는 제3국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원산지신고서 작성일자는 연도가 잘못 표기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해당 물품 중 한 품목의 발주내역을 캡처하여 제출한 자료를 보면 발주일자, 인보이스 발행일자보다 원산지신고서 작성일자가 더 앞선 것으로 나타난다.

(7) 쟁점물품 관련 상업송장·포장명세서 C/O의 원산지신고서 작성일자와 협정관세 적용신청일 및 인도증서 발행일은 다음과 같은 바,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검증결과 체약상대국의 수출자가 작성한 유일한 원산지신고서는 인도증서 상의 것이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협정관세 적용신청 당시 적법한 원산지증빙서류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다.

(8) 수입신고번호 〇〇〇의 경우 제3국 판매자가 작성한 상업송장의 서명과 체약상대국 수출자가 작성한 포장명세서 및 C/O외 서명은 다르지만 포장명세서와 C/O의 지명은 서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9) 처분청은 2013.1.7. 수입신고한 아래 3건의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신고서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일 현재 작성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10) 청구법인은 이 건 심리일 현재 처분청에 대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11)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의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사) 최종적으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원산지 자율점검을 부여하여 원산지증명서 4종류에 대한 발급일지·발급자의 서명·유효기간 등 오류 사항을 수정할 기회를 제공한 점, 처분청이 상대국에 검증을 요청하기 전에 충분한 서류 검토가 이루어진 점, 국제 원산지 검증결과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신청 당시에는 유효한 원산지신고서가 존재하지 않은 점 등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및 원산지 서류의 진위 여부와 정확성에 대한 검증절차를 하자 없이 수행한 점이 확인되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적용 배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 그리고 처분청은 과세전통지 내용에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과 관련하여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에 관한 부분은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여 지며, 청구인은 협정관세 적용신청 전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 여부에 기본적인 확인사항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함에 있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가산세 부과 처부 또한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원산지증명서는 한-EFTA FTA에 따른 당사국의 수출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발급된 점, 협정관세 적용신청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가 존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한-EFTA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전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체약상대국 수출자가 작성한 인도증서의 원산지신고서가 협정관세 적용신청일 이후에 발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물품이 원산지 물품임이 입증 되었으므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것은 잘못이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C/O외 진위여부에 대하여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한-EFTA 부속서 I 제17조 및 FTA 관세특례법 제10조의 따라 수입자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시 협정에서 정하는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를 소지하거나 최소한 발급된 상태에서 그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검증결과 체약상대국 수출자가 작성한 것이라고 회신한 인증서상의 원산지신고서는 쟁점물품 외 협정관세 적용신청일(2011.11.14.-2013.7.29.) 이후인 2014.10.1. 발급된 것으로 보이고, 협정관세 적용신청 당시 이미 발급된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상의 원산지신고서는 체약상대국 수출자가 발급한 것이 아니라고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확인하여 회신한 바 있어, 청구법인은 적법한 원산지신고서가 발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 중 하나라고 하면서 제출한 6건의 C/O 중 2013.1.7. 수입신고건과 관련한 3건은 그 작성일자가 C/O 또는 상업송장 발행일자보다 그 이전이고, 작성일자 또는 국내 입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12월)이 만료된 것으로 보이며, 6건의 C/O 모두 원산지신고서 작성자 서명 방식이 계약상대국 수출자가 작성한 인도증서의 서명과 달리 작성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채 서명만 되어 있어 C/O상의 원산지신고서를 유효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이 계약상대국 수출자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확인하여 준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와 같이 6건의 C/O 모두 그 하단에 홍콩 판매자의 상호 및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어 이를 중복하여 검증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처분청이 별도로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에 검증을 요청하지 아니한 것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제3국 판매 물품임을 감안하여 직접 운송원칙 준수 여부 및 협정 당사국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수입자로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협정관세 적용신청시 소지한 원산지신고서는 수입신고 건별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에 복수로 작성되었고 각 원산지신고서 하단에는 홍콩 판매자의 상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며 유효 기간이 경과된 원산지신고서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정확한 확인 없이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종합 인증우수업체로서 원산지 서면조사 이전 자율점검에서 이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확인을 소홀히 한 것은 청구법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4)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협정관세 적용배제에 따른 부족세액의 발생에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수정 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처분청에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이 건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발급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관세법 제119조 제1항의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조심 2018관25(2018. 4. 1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자로부터 쟁점생산자가 생산한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한-인도 CEPA에 따른 협정관세율(2012년 3.1%, 2013년 2.5%)의 적용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승인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 자율점검 안내를 통지받고 자체 점검을 실시한 결과, 협정관세율 적용신청 시 처분청에 제출하였던 원산지증명서(이하 “쟁점C/O”)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고,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5%)을 적용하여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2015.12.29. 법률 제13625호로 개정된 FTA 관세특례법 제3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에 따라 가산세 ○○○원의 면제를 신청하였다.

라. 처분청은 FTA 관세특례법 부칙 제5조에서 같은 법 제36조는 개정된 FTA 관세특례법 시행일 이후에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은 그 이전에 수입신고되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가산세 면제신청을 불승인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세관장은 청구법인에게 인도 수출검사위원회 원산지증명서 정보제공 사이트(www.eicindia.net)에서 조회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자와 협정관세적용신청서상 원산지증명서 발급일자가 상이하므로 제출된 쟁점C/O의 적정 여부를 자율점검하도록 안내(자유무역협정1과-2608호)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중개상인 ○○통상은 쟁점판매자에게 쟁점C/O의 수출자 및 생산자 명의를 불일치하는 이유에 대하여 소명을 요청하였고, 쟁점판매자는 같은 날 ○○통상에게 내부 목적으로 발급하였던 가(假) 원산지증명서가 전달되었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송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협정관세 적용신청시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C/O의 “1. 수출자” 및 “2. 생산자” 란에 쟁점판매자가 아닌 G○○○로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기재내용 및 발급사항은 원본C/O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계약상대국 수출검사위원회에서는 해당 발급기관에서 발행한 C/O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검색사이트(www.eicindia.net/public/COOstatus.aspx)를 운영하고 있다.

(마) 관세청장은 2011.11.24. 관세청 FTA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인도 수출검사위원회의 C/O 조회 사이트 운영 사실과 조회 가능한 정보 및 C/O 정보가 동일한 경우라도 위조 C/O의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C/O 발급 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로만 활용하라는 취지의 주의사항을 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2015.12.29. 법률 제13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FTA 관세특례법에 가산세 관련 조항이 규정되지 아니하여 FTA 협정관세 적용 오류 등과 관련하여 관세 등을 징수할 경우 「관세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가산세를 징수하거나 면제하였다가, 2015.12.29. 법률 제13625호로 FTA 관세특례법 전부 개정시 제36조 [가산세]가 신설되었다. 개정된 FTA 관세특례법은 2016.7.1.부터 시행되었는데, 개정 부칙 제5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에서 “제36조 가산세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C/O의 오류 발급에 대한 귀책사유는 쟁점판매자에게 있으므로 개정된 FTA 관세특례법 제36조에 따라 이 건 가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협정관세 적용신청시 유효하지 아니한 쟁점C/O를 제출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점, 쟁점C/O의 발급일자 및 수출자 등의 오기는 청구법인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인 점, 계약상대국 수출검사위원회 홈페이지 검색을 통해 쟁점C/O의 진위여부 및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은 개정된 FTA특례법 시행일(2016.7.1.) 전인 2012년 및 2013년에 수입 신고되었으므로 개정된 FTA 관세특례법 제36조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적용대상인 점, 달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가산세 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조심 2015관224·2016관64(2016. 12. 19.)

[주 문]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과 관련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수출자와 산업용 특수장갑 위탁가공계약을 체결한 다음, 제3국으로부터 원사(原絲)를 구매하여 수출자에게 제공하였고, 수출자는 청구법인이 제공한 원사와 자체 조달한 부재료를 사용하여 쟁점물품을 제조하여 수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계약상대국 통상부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이하 “쟁점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한·아세안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

다. 처분청은 FTA특례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해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은 한·아세안 FTA상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관세 합계 〇〇〇원, 부가가치세 합계 〇〇〇원 및 가산세 합계 〇〇〇원 총 합계 〇〇〇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① 원산지조사절차를 위반한 처분인지 여부
- ② “재단 및 봉제”공정이 수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③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④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각종 장갑의 제조와 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마○○○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다가, 상호를 현재의 안○○○ 주식회사로 변경(대표이사는 최○○로 변경)되었고, 계약상대국 현지에 수출자인 M○○○을 설립(상호명을 A○○○으로 변경)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수출자와 쟁점물품의 위탁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제3국으로부터 원사를 구매하여 수출자에게 제공한 다음, 수출자가 제조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쟁점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한·아세안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0%)을 적용받았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를 통지하고 원산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이 한·아세안 FTA에서 규정한 “재단 및 봉제공정”이 수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입신고번호 ○○○외 19건으로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 청구법인에게 관세 합계 ○○○원, 부가가치세 합계 ○○○원 및 가산세 합계 ○○○원 총 합계 ○○○원을 경정·고지(이하 “1차 처분”)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1차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와 함께 청구법인이 자진 수정신고납부한 수입신고번호 ○○○외 3건 및 1차 처분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 합계 ○○○원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심판청구(이하 “1차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위 1차 심판청구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청구한 수입신고번호 ○○○외 23건에 대하여

처분청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바) 처분청은 위 (다)항과 같은 이유로 수입신고번호 〇〇〇외 75건으로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〇〇〇원, 부가가치세 〇〇〇원 및 가산세 〇〇〇원 합계 〇〇〇원을 경정·고지(이하 “2차 처분”)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2차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와 함께 2차 처분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 〇〇〇원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심판청구(이하 “2차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수출자와 체결한 위탁가공계약서 제1조에서 청구법인이 원사를 수출자에게 제공하고, 수출자는 편성과 코팅작업 등을 통해 장갑을 제조하여 청구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수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2조에서 수출자는 원사를 청구법인이 지정한 제3자로부터 구매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한·아세안 FTA 부속서 3 부록 2 품목별 원산지기준 연번 390번 품목번호 제61.16호에서 정한 원산지 부여기준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61.1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정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물품의 수출자가 계약상대국 통상부로부터 발급받은 쟁점원산지증명서상 원산지기준은 “CC” + “SP”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비원산지 재료 확인 건”에서 쟁점물품 제조에 사용된 원사는 비원산지 재료이고, 쟁점물품의 가격 대비 비원산지 재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〇〇〇라고 밝히고 있으며, 쟁점물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RVC)은 아래 <표1>과 같이 “RVC 40% 이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기획재정부에 한·아세안 FTA에서 재단 및 봉제공정 대신 원사로 직물 및 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이 수행된 당사국을 원산지국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민원질의하였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청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민원질의 내용의 검토를 요청하였는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한·아세안 FTA상 품목별 원산지기준은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음이 명확하고,

통상 FTA 협상시 재단(cut) 및 봉제(sew)를 편성(knit to shape)과 별도의 공정으로 간주하고 협상을 하고 있으며, 편성(knit to shape)을 협정에 반영할시 별도로 명문화하고 있다는 검토의견을 통보하였다. 청구법인은 민원 질의를 취하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외 1건으로 수입한 동일 물품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통해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수정신고납부한 후, 감액경정을 청구하였다가, 감액경정청구를 취하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FTA특례법 제13조 제2항에서 수입자를 대상으로 원산지조사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러한 조사결과 수입자로부터 원산지기준을 불충족한다는 명확한 정보가 확인된다면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한·아세안 FTA에서 원산지기준 및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사후검증 의무를 규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같은 FTA 부록 1 제17조에서 부속서 3 및 부록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특혜세율을 부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원산지조사절차를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협정 및 관련 법령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한·아세안 FTA에서 쟁점물품의 원산지기준은 “재단 및 봉제공정”으로 규정하고 있고, “편성공정”은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 쟁점물품은 재단 및 봉제공정을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기준은 “재단 및 봉제공정으로 한정하고 있음이 명백”하다고 회신한 점, 쟁점물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RVC)도 쟁점물품 가격 대비 현저히 낮아 “RVC 40% 이상”의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수출자는 특수관계자이고, 청구법인이 수출자를 통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원산지 재료를 청구법인이 구매하여 수출자에게 제공하고 있어, 쟁점물품이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청구법인이 이미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의 통제를 받는 수출자가 쟁점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쟁점물품의 원산지기준을 부가가치기준이 아닌 “CC + SP”로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협정관세 적용물품의 원산지 증빙의 의무는 원칙적으로 수입자에게 있는 점, 청구법인이 일부 수입신고 건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감액경정청구를 취하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을 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경우라면, 그와 같은 처분청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행위를 처분으로 보아 심판청구가 가능하나, 이 건 심판청구의 경우 심판청구 전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을 한 사실이 없이 제기되었으므로 「관세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거나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로부터 화장품(이하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한·EU FTA (또는 “협정”)에 따라 협정관세율(0% ~ 6%)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

나. 처분청은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국제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는데,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은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상 인증수출자번호가 유효하지 않아 원산지요건을 불충족한다고 회신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〇〇〇외 233건에 대해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6.5%)을 적용하여 관세 〇〇〇원, 개별소비세 〇〇〇원, 교육세 〇〇〇원, 농어촌특별세 〇〇〇원, 부가가치세 〇〇〇원 및 가산세 〇〇〇원 합계 〇〇〇원을 수정신고하였다가, 처분청에 다시 이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 〇〇〇외 32건에 대하여는 관세 등을 수정신고하지 않자,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6.5%)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〇〇〇원, 개별소비세 〇〇〇원, 교육세 〇〇〇원, 농어촌특별세 〇〇〇원, 부가가치세 〇〇〇원 및 가산세 〇〇〇원 합계 〇〇〇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한·EU FTA 발효 후 쟁점수출자가 우리나라를 수출대상국으로 지정하지 않아 인증수출자번호가 유효하지 않다는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의 회신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한·EU FTA가 발효되자, 수입신고번호 ○○○외 266건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쟁점수출자가 인증수출자번호 XXXXX/04를 사용하여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협정관세율(0% ~ 6%)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해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던 중, 2014.3.○○.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에 쟁점수출자가 발행한 두 종류 형식의 송장(이하 “인보이스”)에 원산지 신고문안이 기재되어 있고 두 개의 다른 서명이 포함되어 있어 쟁점물품의 원산지 지위와 인증수출자의 지위가 유효한지 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국제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다.

(다)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은 처분청에 쟁점수출자가 한·EU FTA 제17조 규정에 따라 인증수출자 지위를 갱신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이 건 인증수출자번호는 유효하지 않고, 한·EU FTA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특혜대우를 적용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검증결과를 회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계약상대국 세관의 간접검증결과 쟁점수출자는 한·EU FTA 발효 후 우리나라를 수출대상국가로 추가하지 않아 유효한 인증수출자가 아니며 쟁점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는 무효(협정관세 적용대상이 아님)라는 취지의 검증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외 233건에 대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6.5%)을 적용하여 관세 등 합계 ○○○원을 수정신고하였다가, 처분청에 다시 이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 ○○○외 32건에 대하여는 관세 등을 수정신고하지 않자, 청구법인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6.5%)을 적용하여 과세할 예정임을 과세전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이 당일 처분청에 조기 경정을 신청하자,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합계 ○○○원을 경정·고지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바) 최종적인 각 처분 및 심판청구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2)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수출자는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았고, 청구법인의 지분 〇〇%를 소유하여 쟁점수출자와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다.

(나) 청구법인은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의 신규 인증수출자 지정은 복잡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반면, 기존 인증수출자가 한·EU FTA에 따른 수출대상국 지정은 단순한 행정절차에 불과하다는 증거로 계약상대국 관세청이 공고한 관세정보지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정보지는 한·EU FTA에 따라 수출물품의 원산지에 필요한 증명을 발행할 수 있는 인증수출자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아직 인증을 받지 못한 수출자는 요구되는 증빙서류와 함께 반드시 서명된 신청서 원본을 제출하도록, 이미 인증을 받은 수출자는 해당 인증에 우리나라가 포함되도록 확장을 신청할 수 있는데 현재의 인증번호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관세청 한·EU FTA 담당자는 대부분의 EU국가는 계약상대국과 같이 FTA별로 인증을 받거나 별도의 절차를 거쳐 해당 국가를 인증번호에 추가하여야만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FTA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다) 쟁점수출자는 한·EU FTA 발효 이후 쟁점수출자의 인증번호에 우리나라를 수출대상국으로 추가하지 않고 있다가, 이 건 국제 원산지 검증 요청일 이후인 2014.10.〇〇.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에 우리나라를 수출대상국으로 추가 지정 신청을 하였는데, 2014.11.〇〇. 쟁점수출자의 인증서에는 수출물품 목적국으로 우리나라가 추가되었고, 수출물품에 대하여 물품과 관련된 상업송장 또는 서류에 물품의 원산지증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승인번호는 종전과 같이 “XXXXX/04”로, 상업송장의 원산지신고서는 여타 다른 특혜국에 수출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펴건대, 한·EU FTA 의정서 제16조에 원산지신고서는 같은 의정서 제17조에 따라 수출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 받은 인증수출자가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수출자는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번호에 우리나라를 수출상대국으로 추가 지정하지 않아 인증수출자번호는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건 인증수출자번호를 사용하여 발행한 이 건 원산지신고서는 유효한 것으로 보기 어

려운 점,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이 쟁점수출자의 인증수출자번호가 유효하지 않고, 한·EU FTA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특혜적용의 자격이 없다고 검증결과를 회신한 점, 청구법인은 FTA특례법상 인증수출자번호 오류로 인하여 협정관세를 배제하도록 규정한 근거조항이 없다고 주장하나 애당초 협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이 한·EU FTA가 발효된 이후 계약상대국내 수출자들에게 우리나라를 수출상대국으로 추가하도록 안내하였음에도 쟁점수출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는 특수관계에 있어 청구법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수출자의 인증자격에 대해 쉽게 파악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세법상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세관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쟁점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한-아세안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 ○○○ 외 2건으로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0%)을 적용받았던 물품 등(이하 “1차 검증 물품”)에 대하여 국제원산지 간접검증(이하 “1차 간접검증”)을 의뢰하였는데,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은 처분청에 1차 검증 물품이 한-아세안 FTA 원산지 결정기준 중 4단위 세번 변경기준(Change To Heading, 이하 “CTH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다는 검증결과를 회신(이하 “1차 검증 회신”)하자, 1차 검증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허관세율(6.5%)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쟁점물품에 대하여 추가로 간접검증을 요청하였고,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은 처분청에 쟁점물품이 CTH기준을 충족한다고 회신(이하 “2차 검증회신”)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수출자 및 생산자를 대상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국제원산지 현지검증(이하 “현지조사”)을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이 CTH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자, 「관세법」 제21조 제2항 제5호의 검증회신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이하 “쟁점특례제척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수입신고번호 ○○○ 외 2건(이하 “쟁점①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허관세율(6.5%)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원 및 가산세 ○○○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①처분”)하였고,

제척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수입신고번호 ○○○ 외 7건(이하 “쟁점②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허관세율(6.5%)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원 및 가산세 ○○○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②처분”, 쟁점①처분과 합하여 “쟁점부과처분”)하는 한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쟁점②물품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거부(이하 “쟁점거부처분”)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별지1>과 같이 쟁점부과처분 및 쟁점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7.5.2. 및 2018.2.14.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① 간접검증결과 “충족”으로 회신된 경우 「관세법」 제21조 제2항 제5호의 특례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③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물품의 원산지와 관련한 답변서에서 쟁점물품의 성분을 ○○○·분산제·유화제·안정제·계면활성제·보조제 등으로 기재하였고, 수입제품의 원산지는 제품별로 FTA 특혜관세 여부 등을 관리하며 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를 통하여서만 한-아세안 FTA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쟁점수출자는 2011년경부터 매년 ○○세관으로부터 쟁점물품이 CTH기준을 충족한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세관의 해당 확인서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1차 검증회신문에 1차 검증대상물품은 CTH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은 쟁점수출자의 설명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원재료가 최종 제품과 동일한 제3808호로 품목분류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2차 검증회신문에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은 쟁점원재료에 대하여 발표된 품목분류 기준은 없고, 1차 검증회신은 쟁점수출자가 제공한 예비정보에 근거한 것이며, 그 후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은 ○○이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의 HS위원회에 제출한 ○○○(쟁점원재료의 원재료 중 하나이다)과 관련된 자료에 근거하여 쟁점원재료의 품목번호를 제2932호로 판단하였으며, 쟁점물품이 원산지규정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동종업체의 ○○○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2932.20-9091호로 품목분류한 사례를 제시하였는데(품목분류2과-7005호), 해당 사전심사 대상물품의 성분 및 제조공정 등이 기재되지 아니하여 쟁점원재료와 성분 등이 동일한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바) 기획재정부장관이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가 수출기업이 원하지 않을 경우 원산지 증명서에 제조자명과 가격정보(FOB)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역내부가가치(RVC, Regional Value Contents)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가격정보(FOB) 기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법제처는 2013.1.1. 법률 제11602호로 「관세법」 개정이유에서 쟁점특례제척기간 신설 이유를 원산지조사 결과의 회신이 지체될 경우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경정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산지조사 결과 회신을 특례제척기간 사유로 인정한다고 밝히고 있고, 검증결과 불충족으로 회신된 경우에만 쟁점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아) FTA 관세특례법 제35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서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 결과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의 회신 내용에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관세법」 제21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하는 각각의 기간 내에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 관세청장이 2016.8.22. 산하세관장에게 개정·시달한 관세청 운영지침 “「발급제한 예외」 세부 운영지침”에서 협정 및 법령에 따라 수입자가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등으로부터 제출된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제출된 사실과 일치하게 특혜관세를 적용받았음을 수입자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원산지증명서 등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되었음이 확인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특례제척기간은 수출국 관세당국으로부터 간접검증결과 원산지기준 “불충족”으로 회신된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하고,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이 간접검증결과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으므로 쟁점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세법」 제21조 제2항 본문 및 제5호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간접검증을 요청하여 “회신”받은 경우 회신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경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검증결과 “회신”을 “불충족 회신”으로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FTA 관세특례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서 수출국 관세당국의 회신이 있더라도 회신내용에 충분한 자료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2차 검증결과 회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쟁점①처분을 한 점, 한-아세안 FTA에서 수출국 관세당국의 검증결과 회신이 있더라도 수입국 관세당국이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지조사 유/무에 따라 쟁점특례제척기간이 달리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①물품에 대하여 쟁점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쟁점①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 책임은 쟁점수출자에게 있고, 쟁점물품의 원재료와 관련된 원산지 정보는 쟁점수출자의 영업비밀에 속하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검증이 수출자의 행위에 영향을 받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FTA에 따른 협정관세는 수입자 자신의 책임 하에 적용받는 것이어서 수입자가 원산지의 유효성 확인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것인 점(조심 2015관82, 2016.6.7. 같은 취지),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는 특수관계에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원재료에 대한 자료를 쉽게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초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이 쟁점수출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라 쟁점물품이 CTH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1차 검증회신하였던 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및 쟁점원재료에 대하여 사전심사 등을 신청하여 정확한 품목번호를 확인하였다거나 쟁점물품의 CTH기준 충족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확인하려고 노력하였다는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2016.8.22.자 관세청 운영지침에서 협정 및 법령에 따라 수입자가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등으로부터 제출된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제출된 사실과 일치하게 특혜관세를 적용받았음을 수입자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원산지증명서 등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되었음이 확인된 경우로 보도록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상 원산지기준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②물품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라. 수입자가 원산지 확인 주의 의무 소홀

라-①. 원산지 불충족에 의심이 있거나 인지하고 있는 경우

1) 조심 2015관224·2016관64(2016. 12. 19.)

PART 03. 3.다.1) 참조

2) 조심 2017관122(2017. 11. 1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수출자로부터 수입신고번호 〇〇〇호 외 3건으로 방한용 외투(이하 “쟁점물품”)를 수입하면서, 한-캐나다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0%)를 사전 또는 사후 적용하였다.

나. 세관장은 청구법인에게 한-캐나다 FTA 협정관세 적용 적정 여부에 대하여 자율점검을 하도록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은 수출자로부터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회신을 받은 후 처분청에 일반세율(13%)로 수정 신고하고 관세 〇〇〇원, 부가가치세 〇〇〇원 및 가산세 〇〇〇원 합계 〇〇〇원을 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위 수정신고시 납부한 가산세에 대하여 그 면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산세 면제 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수출자로부터 수입신고번호 〇〇〇호 외 3건으로 방한용 외투를 수입하면서, 한-캐나다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

(나) 세관장은 청구법인에게 한-캐나다 FTA 협정관세 적용 적정 여부에 대하여 자율점검을 하도록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은 수출자로부터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회신을 받은 후 처분청에 일반세율(13%)로 수정 신고하고 관세 〇〇〇원, 부가가치세 〇〇〇원 및 가산세 〇〇〇원 합계 〇〇〇원을 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위 수정신고시 납부한 가산세에 대하여 그 면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수입신고번호별 쟁점원산지증명서 발행 현황을 아래 <표1>과 같으며, 연번 1의 수입신고건은 2015.8.〇〇. 수입신고시 기본세율(13%)로 신고하였다가 수입신고수리 후에 한-캐나다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하였고, 2015.11.〇〇. 처분청은 관세 등을 환급해 준 것으로 확인된다.

(나) 한-캐나다 FTA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규정에서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으로 해당 물품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되고 봉재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결합된 경우에 한정한다”고 아래 <표2>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다)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2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서식과 작성방법이 안내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원산지증명서 제7란(원산지 결정기준)에 수기로 수출국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경우인 ‘A’로 기재된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〇〇세관장으로부터 자율점검 안내를 받고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며, 수출자는 쟁점물품은 한-캐나다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미충족한다는 사실을 아래 <표3>과 같이 회신하면서 쟁점물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 아니한다.

(마) 청구법인은 FTA 관세특례법 사무처리고시에는 제출서류를 심사하여 협정관세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를 결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에서도 위 <표1> 연번 1의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한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이 한-캐나다 FTA 협정세율 적용대상 물품이 아니라는 것을 의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형식적인 요건만을 심사하여 협정관세의 적용 및 세액의 경정을 통보한 것이고, 원산지 결정기준 등 실체요건은 FTA검증부서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원산지 결정기준을 타당한 것으로 인정하여 사후적용신청에 따른 경정청구를 승인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바) 관세청장은 2011.8.30.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 심사업무운영지침”을 시달하여 1차기관(납세심사부서)에서는 형식요건을 확인하고, 2차기관(FTA검증부서)은 실체요건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아래 <표4>와 같이 세관장에게 제출한 “원산지 검증 자율 점검표”에서 ‘자율점검표 작성 중 완성도 기준 A는 의무에 해당이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최소한의 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수출자가 발행한 쟁점원산지증명서를 신뢰하여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신청하였고,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한 건에 대하여 처분청도 협정관세 적용이 타당하다고 보아 관세 등을 환급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원산지증명서에서 원산지 결정기준이 완전생산기준인 ‘A’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제조에 사용된 직물의 원산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임에도, 수출자에게 확인을 요구하거나 문제 제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산지 검증 자율 점검표’에서 청구법인 스스로도 완전생산기준은 쟁점물품인 의류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협정관세 적용물품에 대한 원산지 입증책임은 협정관세율 적용신청자인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하고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가 발급한다고 하여 그러한 책임이 모두 면책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조심 2017관179(2017. 12. 1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수출자로부터 마테차 추출물(Green Mate Extract)을 수입신고번호 〇〇〇호 외 20건으로 수입하면서 한-EFTA FTA에 따른 협정세율(FEF1: 24%)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수입신고 21건에 대하여 수입자 서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수입신고번호 〇〇〇호 외 3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수출자 소재국가 관세당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한 결과, 위 수입신고번호의 물품 등 3건(이하 “쟁점물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FTA 관세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관세 〇〇〇원, 부가가치세 〇〇〇원 및 가산세 〇〇〇원 합계 〇〇〇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원산지 미상으로 간주되어 원산지신고서가 잘못 발행되었다는 계약상대국 세관당국의 회신에 따라 한-E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더라도 원산지재료 비원산지재료를 함께 사용하여 제조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재료의 혼합비율만큼 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과 관련하여, 한-EFTA FTA 부속서 I 제5조 제1항에 “완전하게 획득되지 아니한 상품은 부록 2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록 2에 제2101호에 분류되는 제조된 상품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기 위하여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되도록 요구되는 작업 또는 공정을 아래 <표1>과 같이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사용된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CTH+MC 45% 이하)” 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2) 쟁점물품의 인보이스, 인도증서 등에 기재된 원산지신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한-EFTA FTA는 원산지 검증방식과 관련하여, 한-EFTA FTA 부속서 I 제24조 제4항에 ‘검증은 수출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수행한다. 이러한 목적상 관세당국은 모든 증거를 요구하고 수출자의 회계장부를 검사하거나 적절한 감독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간접검증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바,

FTA 관세특례법 제1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수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호는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에서 수입된 물품은 계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조사를 요청’하도록 원산지에 관한 조사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4) 처분청은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에 수입신고번호 ○○○호 외 3건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및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정보를 회신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원산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였다.

처분청은 아래 회신문의 내용을 “① 검증대상 원산지신고서에 사용된 인증 수출자번호는 유효하고, 원산지신고서는 진본이며, ② 총 4건의 검증대상 물품 중 1건은 원산지기준을 충족하고 정확하게 발급되었으나 ③ 나머지 3건은 원산지 확인실패로 원산지 미상으로 간주되고, 원산지신고서는 잘못 발행되었으며, ④ 비원산지 원재료의 가격입증 서류는 무역비밀로 간주되어 제공할 수 없음”으로 해석하고,

그 회신내역을 아래 <표2>와 같이 정리한 원산지조사결과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5) 수출자, 청구법인, 중개인(Agent)인 삼〇〇〇가 체결한 “〇〇〇 Agreement 2014” 제4조에 보면 쟁점물품의 원산지는 〇〇〇 또는 〇〇〇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이 제출한 마테차 추출물의 공정도 및 생산제품 LOT 번호별 혼합비를 보면, 쟁점물품은 ‘〇〇〇산 원재료(마태잎, HS 제0903호)을 〇〇〇에서 수입하여 추출공정을 거친 후 보존제를 혼합’한 원산지물품과 ‘〇〇〇에서 수입한 추출물에 보존제를 혼합’한 비원산지물품을 약 64% 대 36% 비율로 혼합하여 Spray dry 공정을 거쳐 수분을 날려 보내고 완제품을 생산(혼합비는 LOT별로 상이)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7)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메일[2016.3.〇〇. 쟁점물품의 중개인(Agent)인 삼〇〇〇와 수출자간의 이메일]과 전문(2016.12.〇〇. 수출자가 청구법인에게 보낸 전문)에는 수출자가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마테차 추출물의 원산지는 ‘〇〇〇’라고 기재되어 있다.

(8) 청구법인은 수출자로부터 계약 위반에 대한 대가로 미화 〇〇〇달러를 보냈다는 입금증을 받고, 〇〇〇은행을 통하여 이를 수령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수출자 측에서 제출한 자료로 〇〇〇산과 〇〇〇산의 혼합비율 및 해당 자료의 진위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들 자료를 검토·확인한 후 〇〇〇산 재료를 제외한 〇〇〇산 재료의 혼합비율에 따라 한-EFTA FTA 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한-EFTA FTA에서 원산지조사와 관련한 원산지 검증방식은 한-EFTA FTA 부속서 I 제24조 제4항, FTA 관세특례법 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간접검증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점,

처분청의 검증요청에 따라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이 회신한 원산지 검증결과 회신내용을 보면,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은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 당시 수출자가 제출한 자료를 통하여 쟁점물품이 〇〇〇산과 〇〇〇산이 혼합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은 원산지 입증에 실패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미상으로 간주되어야 하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신고서는 잘못 발행되었다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EFTA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수출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잘못 발급한 원산지신고서를 신뢰하고 이를 근거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수출자, 중개상이 체결한 계약서 ○○○ Agreement 2014 제4조에 원산지는 ○○○ 또는 ○○○이 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은 협정관세 적용신청에 앞서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어디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원산지 검증이 실시된 이후 메일 또는 전문을 통하여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한 사실 이외에 쟁점 물품이 한-EFTA 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 조심 2016관209(2017. 7. 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로부터 수입신고번호 ○○○호 외 18건으로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한-아세안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관세율 : 0%)의 적용을 신청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FTA특례법 제17조에 따라 서면조사를 실시하던 중, 체약상대국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하 “체약상대국 국제통상산업부”)에 쟁점물품의 원산지 간접검증을 의뢰하였고, 체약상대국 국제통상 산업부는 처분청에 검증대상물품들은 한-아세안 FTA 원산지 결정기준(CTH or RVC 40% 이상)을 충족할 수 없다고 검증결과를 회신하였다가, 종전의 검증결과를 번복하여 검증대상물품 중 1건이 RVC 40%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회신하였다.

다. 이에 처분청은 한-아세안 FTA 부속서 3 부록 1 제15조에 따라 쟁점수출자에 대하여 현지검증을 실시한 결과, 쟁점수출자가 RVC 산출시 사용한 자료에 오류가 있고, 쟁점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자,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5%)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및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가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체약상대국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신청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한-아세안 FTA에 따른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CTH(HS 4단위 변경) 또는 RVC 40% 이상이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신청하면서 처분청에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이하 “쟁점 원산지증명서”)에 원산지기준이 “CTH”, “WO”(Wholly Obtained, 완전생산기준), “WO-AK 100%”(역내 완전 생산물품), “RVC 100%” 등으로 표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체약상대국 국제통상산업부에 쟁점원산지증명서 7건에 대하여 간접검증을 의뢰하였는데, 체약상대국 국제통상산업부는 아세안 지역에서는 해바라기가 생산되지 않아 쟁점원산지증명서 7건 모두 역외산 원료를 수입·정제한 것으로서 원산지기준(CTH or RVC 40%)을 불충족한다고 회신하였다가, 2016.1.14. 원산지증명서 발급번호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2014년 6월에 수출된 물품의 RVC가 45.69%으로서 원산지기준(RVC 40% 이상)을 충족한다고 재회신하였다.

(라) 처분청은 체약상대국 국제통상산업부에 재검증대상인 2014년 6월에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는 체약상대국 국제통상산업부가 2014.6.00.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밖에 없는데, 2014.6.00.자 원산지증명서상 단가는 톤당 000으로서 재검증대상물품의 RVC 계산시 사용한 FOB 금액과 차이가 있고, 쟁점수출자의 2014년 연결손익계산서상 매출총이익률은 6.76%에 불과함에도 첨부된 원가계산서상 재검증대상물품의 매출총이익률이 39.51%에 달하며, UN에서 제공하는 국제무역통계사이트(UNCOMTRADE)의 해바라기씨 오일의 무역통계를 기초로 계산한 해바라기씨 Crude Oil의 RVC는 최대 22.3%로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점 등의 의심 사유를 기재하여 추가 질문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체약상대국 국제통상산업부는 원산지증명서 3건을 적시하여 RVC 40% 기준을 충족한다고 다시 회신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6.5.25.부터 2016.5.27.까지 쟁점수출자를 방문하여 체약상대국 국제통상산업부 직원 1명 및 세관직원 1명과 함께 현지검증을 실시하였다.

(바) 처분청은 현지검증 결과, 쟁점물품의 원재료인 해바라기씨 조유(HS 제1512.11호)는 주로 000 및 000에서 수입되어 체약상대국에서 중화(Neutralization), 왁스제거(Winterization), 여과공정(Physical Refine)을 거쳐 최종 완제품(HS 제1512.19호)이 생산되므로 CTH 원산지기준을 불충족하고, 쟁점수출자의 RVC 계산

방식에 오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검증대상 중 1건을 제외한 나머지 건은 RVC 비율이 8.7 ~ 29.7%(평균 16.9%)로서 RVC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자, 쟁점판매자에게 위와 같은 사유로 쟁점물품은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할 예정임을 통보하였고, 청구법인에게 같은 취지로 예비 통지하였다.

(사) 쟁점수출자는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RVC는 특정 수출일을 전후한 6개월 동안의 대표적인 비용과 가격(prevaling cost and prices)을 기초로 계산되어 한-아세안 FTA 부록 1 제14조 제1항 규정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아) 처분청은 체약상대국 국제통상산업부에 최종적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통지하였고, 체약상대국 국제통상산업부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자)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일 이후인 2017.1.8. 체약상대국 국제통상산업부가 동일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였는데, 동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기준은 “RVC 100%”로 기재되어 있다.

(차)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 〇〇〇원(가산세 〇〇〇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고, 부가가치세 〇〇〇원에 대하여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카) 「관세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청장이 2013.7.26. 산하세관장에게 시달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 지침」(이하 “관세청지침”)에서 협정 및 법령에 따라 수입자가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등으로부터 제출된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제출된 사실과 일치하게 특혜관세를 적용받았음을 수입자가 증명하는 경우 및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등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가, 2016.8.23. 불복 및 소송 등의 결과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 면제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요건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포함하는 것으로 지침을 개정·시달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체약상대국 국제통상산업부가 발급한 쟁점원산지증명서를 신뢰하여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의 현지검증결과 통보 이후에도 체약상대

국 국제통상산업부가 종전 기준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아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장기간에 걸쳐 계약상대국 및 다른 국가로부터 쟁점물품 및 동일물품을 수입하고 있어 아세안지역에서 해바라기씨가 수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쟁점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CTH, WO, WO-AK 100%, RVC 100% 원산지기준이 달성될 수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원산지증명서상 원산지기준이 수시로 변경되어 그 진위여부 및 진정성이 의심됨에도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에게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을 요구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의 현지검증결과 쟁점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 점, 처분청의 현지검증결과 통보 이후 계약상대국 국제통상산업부가 동일물품에 대하여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기준이 “RVC 100%”로 기재되어 있어 그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점, 협정관세 적용물품에 대한 원산지의 입증책임은 협정관세율 적용신청자인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하고 원산지증명서를 수출국 관세당국이 발급한다고 하여 그러한 책임이 모두 면책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납세의무자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하면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라-②. 기타 수입자가 원산지 확인 주의 의무 소홀

1) 조심 2015관292(2016. 6. 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수출자로부터 원료의약품인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양허세율(6.5%)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고 이를 수리받았다가, 수출자가 한·EU FTA에 따른 인증수출자 자격을 획득하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하여 이를 적용받았고,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수입통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를 실시하였고,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원산지 검증결과가 회신되자, FTA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관세 〇〇〇원 및 부가가치세 〇〇〇원 합계 〇〇〇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한편, 청구법인은 위 관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처분청으로부터 원산지조사결과를 통지받았고, 처분청에 가산세의 면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한 후,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〇〇〇원을 부과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 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원료의약품 수출입 및 국내판매 사업을 영위하면서,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였다.

(나)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은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수행한 후, “수출자에게 부여된 인증수출자 지위는 유효하나, 이 건 송품장신고서 관련 물품은 EU 원산지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검증되었다”는 내용의 검증결과를 회신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원산지 검증 표준질 의서’ 답변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원산지증명서 관리대장이나 원산지관리 매뉴얼 또는 별도의 원산지관리 시스템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원산지조사를 실시하기 전후로 수출자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결과가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된 점, 인증수출자 자격은 수입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점, 청구법인은 사전에 수출자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하였다고 하나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달리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관리에 대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조심 2015관82(2016. 6. 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판매자를 통하여 수출자가 생산한 증기터빈 부분품인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기본관세율(8%)로 수입신고하고 이를 수리받았다가, 한·아세안 FTA에 의한 협정관세(협정관세율 0%)의 사후적용을 신청하여 이를 적용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를 실시하였고,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에 간접검증을 요청하여 그 결과를 회신 받은 후 쟁점물품은 한·아세안 FTA의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관세 〇〇〇원, 부가가치세 〇〇〇원 및 가산세 〇〇〇원 합계 〇〇〇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〇〇〇원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같은 날 이를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추가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①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③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 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증기터빈은 압력에 따라 고압부, 중압부, 저압부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각 부위 별로 로터, 날개 및 이를 감싸고 있는 실린더 구성되어 있고, 실린더는 케이싱으로 불리기도 한다.

(나) 쟁점물품은 Inner Casing을 제작하기 위한 부분품들로서, 통일부호체계(이하 'HS') 제8406.90호로 수입신고되었고, 해당 품목번호에 대한 한·아세안 FTA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은 '세번변경(HS 4단위) 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40%이상) 기준'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 건 원산지증명서에 의하면, 역내가치포함비율(67.08%)에 근거하여 발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물품의 수입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를 건설하기 위하여 판매자와 관련 설비 일체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일부 물품에 대하여는 판매자의 하청계약에 따라 수출자가 생산한 물품을 인도받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모델·규격을 '○○○', 과세가격을 ○○○로, 관세율을 기본세율인 ○○○로 하여 수입신고하고 수리받았다가, 판매자가 송품장을 잘못 작성하여 수입신고에 오류가 있었다는 사유로 과세가격을 ○○○로 보정 신청하여 승인받았다.

3) 청구법인은 FTA특례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한·아세안 FTA에 의한 협정관세(협정관세율 0%)의 사후적용을 신청하여 적용받았다.

(라) 이 건 처분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서면조사를 실시하였다.

2) 처분청은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에 원산지 간접검증을 요청하였고, "원산지증명서는 진실하게 발행되었고, 권한

있는 자 및 기관에 의하여 서명 및 발행되었으며, 수출자가 제시한 문서를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검증결과를 통보 받았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회신내용을 통보하였고,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기재 사항에 오류가 있어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다른 조사대상물품에 대하여는 수출국 현지조사 후에 처리할 예정”이라는 원산지조사 결과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관세 〇〇〇원, 부가가치세 〇〇〇원 및 가산세 〇〇〇원 합계 〇〇〇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쟁점물품의 품명 및 가격은 원산지증명서 등에 아래 <표>와 같이 기재되어 있고, 공급계약에 따른 세부가격표(Price Breakdown)에 구분·기재되어 있는 ‘〇〇〇’는 4회에 걸쳐 수입되었으며, 쟁점물품은 그 중 일부에 해당한다.

(바)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검증결과 회신문에 포함된 수출자의 문서에는, “원산지증명서는 〇〇〇에 대한 것으로 유효하고,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물품은 ‘〇〇〇’가 아니며, 역내 부가가치는 67.08%(수입 원재료 〇〇〇, 수출가격 〇〇〇)이므로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원재료 내역 및 그 가격 등이 기재된 원재료명세서(Bill of Material)를 포함하고 있다.

(사) 처분청은 다른 조사대상물품인 ‘〇〇〇’의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출국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쟁점물품 및 ‘〇〇〇’을 제조·생산하는데 소요된 현지 공급재료의 원산지 지위에 관한 증빙자료로 수출자의 원재료 구매주문서, 시험성적서(Mill Test Certificate), 물품명세서(List of Material Certificate) 등을 제시받았다.

간접검증에서 수출자가 제시한 원재료명세서와 현지검증에서 제시받은 물품명세서에 의하면, 원재료 내역이 다르게 나타나고, 일부는 원재료명세서에는 원산지 재료로, 물품명세서에는 비원산지 재료로 기재된 사실이 나타나며, 현지 원재료 공급업체가 발행한 시험성적서는 해당물품의 성분에 대하여는 기재하고 있으나, 원산지 정보는 기재하고 있지 아니하다.

처분청은 수출자 및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게 “원산지증명서 및 간접검증결과 회신문의 수출금액이 서로 다르고, 그 차액에 대한 소명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수출자가 현지에서 공급받는 원재료에 대한 증빙자료에는 원산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현지 공급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 관리가 적정하지 않아 현지 공급 원재료를 원산지 재료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현지조사대상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의 현지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건대, 이 건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생산하지 않는 ‘○○○’가 포함된 포괄품명으로 발행되어 실제 물품과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점,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의 검증에서 확인된 쟁점물품의 금액이 수출자의 수출가격이라고 하나, 그 금액이 판매자의 수출가격(송품장금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쟁점물품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도 불분명한 점(수출국 현지조사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충분한 소명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수출자의 원재료명세서 및 물품명세서 등 원산지증빙서류 상호간에도 일부 다른 점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건대,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검증이 수출자의 행위에 영향을 받는 측면이 있긴 하나, FTA에 따른 협정관세는 수입자 자신의 책임하에 적용받는 것이므로 수입자는 원산지의 유효성 확인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점, 청구법인에게 달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건대,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은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하면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는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의 유효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조심 2015관257(2016. 6. 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판매자를 통하여 수출자가 생산한 증기터빈 부분품인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기본관세율(8%)로 수입신고하고 이를 수리받았다가, 한·아세안 FTA에 의한 협정관세(협정관세율 0%)의 사후적용을 신청하여 이를 적용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를 실시하였고,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 간접검증결과를 회신 받은 후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수출자를 대상으로 한 직접검증을 요청하여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쟁점물품은 한·아세안 FTA의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관세 〇〇〇원, 부가가치세 〇〇〇원 및 가산세 〇〇〇원 합계 〇〇〇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한편,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〇〇〇원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①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③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 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증기터빈은 압력에 따라 고압부, 중압부, 저압부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각 부위 별로 로터, 날개 및 이를 감싸고 있는 실린더 구성되어 있고, 실린더는 케이싱으로 불리기도 한다.

(나) 쟁점물품은 Inner Casing을 제작하기 위한 부분품들로서, 통일부호체계(이하 'HS') 제8406.90호로 수입신고되었고, 해당 품목번호에 대한 한·아세안 FTA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은 '세번변경(HS 4단위) 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40%이상) 기준'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 건 원산지증명서에 의하면, 역내가치포함비율 83.04%에 근거하여 발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물품의 수입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를 건설하기 위하여 판매자와 관련 설비 일체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일부 물품에 대하여는 판매자의 하청계약에 따라 수출자가 생산한 물품을 인도받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모델·규격을 '○○○'로, 과세가격을 ○○○로, 관세율을 기본세율인 8%로 하여 수입신고하고 수리받았다가, 판매자가 송품장을 잘못 작성하여 수입신고에 오류가 있었다는 사유로 과세가격을 ○○○로, 모델·규격을 '○○○'으로 보정 신청하여 승인받았다.

3) 청구법인은 FTA특례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한·아세안 FTA에 의한 협정관세(협정관세율 0%)의 사후적용을 신청하여 적용받았다.

(라) 이 건 처분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서면조사를 실시하였다.

2) 처분청은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에 원산지 간접검증을 요청하였고, "원산지증명서는 진실하게 발행되었고, 권한

있는 자 및 기관에 의하여 서명 및 발행되었으며, 수출자가 제시한 문서를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검증결과를 통보 받았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회신내용을 통보하였고,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출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원산지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4) 처분청은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수출국 현지조사를 요청하여 직접검증을 실시하고, 수출자 및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게 현지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5) 처분청은 위와 같은 취지로 청구법인에게 현지조사결과를 통보한 후, 관세 〇〇〇원, 부가가치세 〇〇〇원 및 가산세 〇〇〇원 합계 〇〇〇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검증결과 회신문에 포함된 수출자의 문서〇〇〇는,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것으로 유효하고,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물품은 ‘〇〇〇’가 아니며, 역내 부가가치는 83.04%(수입 원재료 〇〇〇, 수출가격 〇〇〇)이므로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원산지 결정기준(RVC)을 충족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원재료 내역 및 그 가격 등이 기재된 원재료명세서(Bill of Material)를 포함하고 있다.

(바) 처분청은 수출자에 대한 현지조사 과정에서 쟁점물품을 제조·생산하는데 소요된 현지 공급재료의 원산지 지위에 관한 증빙자료로 수출자의 원재료 구매주문서, 시험성적서(Mill Test Certificate), 물품명세서(List of Material Certificate) 등을 제시받았다.

간접검증에서 수출자가 제시한 원재료명세서와 현지검증에서 제시받은 물품명세서에 의하면, 원재료 내역이 다르게 나타나고, 일부는 원재료명세서에는 원산지 재료로, 물품명세서에는 비원산지 재료로 기재된 사실이 나타나며, 현지 원재료 공급업체가 발행한 시험성적서는 해당물품의 성분에 대하여는 기재하고 있으나, 원산지 정보는 기재하고 있지 아니하다.

처분청은 수출자 및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게 “원산지증명서 및 간접검증결과 회신문의 수출금액이 서로 다르고, 그 차액에 대한 소명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수출자가 현지에서 공급받는 원재료에 대한 증빙자료에는 원산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현지 공급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 관리가 적정하지 않아 현지 공급 원재료를 원산지 재료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의 현지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건대,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의 검증에서 확인된 쟁점물품의 금액이 수출자의 수출 가격이라고 하나, 그 금액이 판매자의 수출가격(송품장금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쟁점물품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가 불분명한 점(수출국 현지조사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충분한 소명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수출자의 원재료명세서 및 물품명세서 등 원산지증빙서류 상호간에도 일부 다른 점이 나타나는 점 등 비추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건대,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검증이 수출자의 행위에 영향을 받는 측면이 있긴 하나, FTA에 따른 협정관세는 수입자 자신의 책임하에 적용받는 것이므로 수입자는 원산지의 유효성 확인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점, 청구법인에게 달리 그 의무해태를 닦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건대,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은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하면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는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 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의 유효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 조심 2017관142·2018관53(2018. 7. 9.)

PART 03. 3.다.3) 참조

부 산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6구합23470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포○○○○
피 고 세관장
변 론 종 결 2017. 10. 26.
판 결 선 고 2017. 12.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1 피고의 부과처분 목록의 ‘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한 같은 목록 ‘세목’란과 ‘세액’란 기재 각 관세(가산세 포함),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각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미국 소재 S○○○ Inc.(이하 ‘판매자’)와 LNG 복합발전소 발전시설 건설에 필요한 물품에 관한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0. ○. 판매자를 통하여 인도네시아 소재 P○○○(이하 '생산자')로부터 'L○○○'(이하 '제1물품')를 수입신고번호 ○○○호로, 'L○○○'(이하 '제2물품')를 수입신고번호 ○○○호로 수입하면서 기본관세율 8%로 수입신고를 하였다(이하 제1, 2물품을 통틀어 '이 사건물품').

다. 원고는 2010. 2. ○. 피고에게, 판매자가 송품장을 잘못 작성하여 수입신고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제1물품의 과세가격을 ○○○유로에서 ○○○유로로, 제2물품의 과세가격을 ○○○유로에서 ○○○유로로, 제2물품의 모델·규격을 'L○○○'에서 'L○○○ C○○○'으로 정정하였고, 2010. 9. ○. 이 사건물품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에 의한 원산지증명서(047/XXX/XXX, 048/XXX/XXX)를 제출하여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0%)의 사후 적용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3. 8. ○. 이 사건물품의 원산지에 대한 서면조사를 하였으나, 원고는 생산자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이 사건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였다. 피고는 2014. 3. ○.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에 이 사건물품 원산지증명서에 대해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에 관하여 검증을 요청하였고,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은 2014. 8. ○.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검증결과를 회신하였다(이하 '간접검증 회신문').

「AK 서식 원산지증명서 제047/XXX/XXX호, 제048/XXX/XXX호는 세관 시청에서 진정하게 발급한 증서이다. 위 진정한 증서는 본 청사에서 발행하여 권한 있는 사람 H○○○가 서명하였다. P○○○가 발행한 진술서(제○○호)는 확인 및 검증되었다.」

마. 피고는 2014. 11. ○.부터 2014. 11. ○.까지 현지조사를 실시하면서 생산자로부터 제2물품을 제조·생산 하는데 소요된 현지 공급재료의 원산지 지위에 관한 증빙자료로 생산자의 원재료 구매주문서, 시험성적서, 물품 명세서 등을 제시받았고, 확인하였다.

바. 피고는 2015. 1. ○. 수출자 및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에 '원산지증명서 및 간접검증 회신문의 상품금액이 서로 다르고, 그 차액에 대한 소명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수출자가 현지에서 공급받는 원재료에 대한 증빙자료에는 원산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현지 공급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 관리가 적정하지 않아 현지 공급 원재료를 원산지 재료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물품에 대한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의 현지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사. 피고는 이 사건물품이 한·아세안 FTA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2014. 11. ○. 제1물품에 대하여 관세 ○○○원 및 가산세 ○○○원, 부가가치세 ○○○원 및 가산세 ○○○원을, 2015. 5. ○. 제2물품에 대하여 관세 ○○○원 및 가산세 ○○○원, 부가가치세 ○○○원 및 가산세 ○○○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

아. 원고는 피고에게, 2015. 4. ○. 경정된 부가가치세 ○○○원에 대하여, 2015. 5. ○. 경정된 부가가치세 ○○○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5. 4. ○., 2015. 5.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이 정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

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부과처분 및 거부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6. ○. 이를 모두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판단

1)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적용 여부

한·아세안 FTA 부속서3 부록1 원산지 증명 운영 절차 제4조는 ‘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의 매 신청마다, 그 권한과 능력의 최선을 다하여, 당사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적절한 검사를 수행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장한다’고 규정하면서 다음 각 호로 ‘원산지증명서가 서명권자에 의하여 정당하게 작성되고 서명될 것’, ‘상품의 원산지가 부속서3에 합치할 것’, ‘원산지증명서에 있는 그 밖의 기재 내용은 제출된 증빙서류에 상응할 것’, ‘상품명, 수량 및 중량, 포장의 표장 및 번호, 포장의 수량 및 종류는 명시된 바와 같이 수출상품과 일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아세안 FTA 부속서3 부록1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17조는 ‘이 부록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품이 부속서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이 부록의 관련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그 법과 규정에 따라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부인하거나 관세를 추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4, 5, 9, 10, 13, 27호증, 을 제2, 4, 5, 7,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원산지증명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물품이 한·아세안 FTA 부속서3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부족하므로, 협정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이 사건 원산지증명서와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의 간접검증 회신 문의 내용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차이가 있다.

나)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이 피고에게 보낸 간접검증 회신문에는 ‘P○○○ Factory는 이로써 이 사건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상품이 ○○○가 아님을 진술한다. 본 진술서 발행일 현재 P○○○ Factory는 이로써 당 공장에서 ○○○를 제조하거나 조립한 적이 없음을 진술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관세당국은 피고에게 생산자가 품명, 금액 기재오류에 대한 사유를 규명한 서신을 송부하였고, 그 서신에는 ‘생산자는 원고와 판매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제품들과 이 사건 원산지증명서에 품명을 일치시키기 위해 제1물품의 품명을 ‘L○○○’, 제2물품의 품명을 ‘L○○○’으로 기재한 것이다.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에 제1물품의 품명을 ‘L○○○’으로, 제2물품의 품명을 ‘L○○○’으로 기재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왜냐하면 이러한 표기사항은 판매자를 수익자로 원고를 대리하여 ○○은행이 개설한신용장의 표기사항을 따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고, 원고 주장처럼 CYLINDER는 넓은 의미로 터빈 ROTOR, CASING을 통칭하는 의미로 실제 같은 물품이라고 설명하지 않았다.

다) 한·아세안 FTA 부속서3 부록1 원산지증명 운영절차 등 관련 규정들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산지증명서에 상품명(품명)을 기재하는 이유는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상품과 수출상품이 동일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함이고, 세관공무원이 그 상품을 식별 가능하도록 상세하게 품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원산지증명서의 품명에는 실제 생산자가 생산하여 수출한 물건과 다른 품명이 기재되었고, 이는 원고 주장처럼 단순한 기재 오류가 아닌 원고와 판매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 및 그에 따라 발행한 신용장과 품명을 일치시키기 위한 의도로 다르게 기재한 것이다.

라) 한·아세안 FTA는 역내에서 일정한 수준의 부가가치가 창출된 경우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는 역내부가가치율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그중에서 원산지 국가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일정비율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LC(Local Contents)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한국과 이 사건 계약상대국 사이에서는 LC법 중 직접법(Build-up method)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물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역내가치포함비율(RVC)이 40% 이상이어야 하고, 한·아세안 FTA 부속서3 제4조에 따라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FOB(생산자로부터 해외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의 운송비를 포함한 상품의 본선 인도 가격을 말한다) 및 VOM(원산지 재료의 가격을 말하며, 원산지 재료, 직접 노동비용, 직접 경상비용, 운송비용과 이윤을 포함한다)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상품가격(판매자 가격)과 간접검증 회신문에 기재된 상품가격(생산자 가격)이 약 10배 상당 차이가 나고, 원고는 이러한 차이를 설명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의 간접검증 회신문에는 제2물품의 계약상대국 원산지 재료 90% 이상이 철강판(Steel plate)으로 이는 ○○산 철강판과 모델규격이 유사하지만, 피고의 현지조사 시 수출자는 원산지 재료 입증자료로 원산지 기재사항이 누락된 시험성적서 및 구매주문서만 제출하고, 그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수출자가 사용한 철강판이 실제 ○○산인지 계약상대국산인지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원재료 명세서와 물품 명세서를 비교해 보면 철강판 규격 ○○○5의 경우 원재료 명세서상 원산지 재료로 기재되어 있으나, 물품명세서에는 비원산지 재료로 기재되는 등 철강판의 원산지 기재사항이나 규격이 일치하지 않는바,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비원산지 재료와 원산지 재료 기재나 그를 바탕으로 산출한 VOM이 정확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결국 이 사건 제품의 정확한 역내가치포함비율을 산정할 수 없다.

2)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은 수입자의 책임 하에 적용받은 것으로 수입자가 원산지의 유효성 확인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수출자가 품명을 실제 품명과 다르게 기재하게 된 것은 단순 착오가 아닌 판매자 내지 원고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며, 원고로서는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품명과 실제 수입하는 물품이 다른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한·아세안 FTA에 따른 협정세율은 수입자의 책임 하에 적용받은 것으로 수입자가 원산지의 유효성 확인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수출자가 품명을 실제 품명과 다르게 기재하게 된 것은 단순 착오가 아닌 판매자 내지 원고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며, 원고로서는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품명과 실제 수입하는 물품이 다른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마. 수출자가 제공한 원산지증명서를 만연히 신뢰하고 추가 확인하지 않은 경우

1) 조심 2016관209(2017. 7. 3.)

PART 03. 3. 라-①. 4) 참조

서울 행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 건 2017구합67278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제○○○
피 고 세관장
변 론 종 결 2018. 3. 9.
판 결 선 고 2018. 3.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3. ○. S○○○(이하 '판매자')와 석유코크스(Petroleum Coke)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2. 6. ○. 수입신고번호 ○○○호로, 2012. 6. ○. 수입신고번호 ○○○호로 각 석유코크스(이하 '이 사건물품')를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이하 '미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에 따라 미국 소재 회사인 H○○○ (이하 'H○○○')가 발급하고 원산지가 미국으로 기재된 원산지증명서(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증명서)에 근거하여 울산세관장에게 협정관세(세율 0%)의 적용을 신청하였고, 울산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부터 2015. 9. ○.까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증명서의 진정성 및 이 사건물품의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한 후, 2015. 9. ○.부터 2015. 12. ○.까지 H○○○에 대하여 이 사건물품의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면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물품이 이 사건 협정 제6.1조에 따른 원산지(미국) 상품임이 소명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6. 1. ○. 이 사건 협정 제6.18조 및 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3. 1. 1. 법률 제116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FTA 관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서면조사 결과를 통지하고, 2016. 8. ○. 이 사건물품에 대하여 기본관세율 5%를 적용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1.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3. ○. 기각 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 사실

1)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품목분류상 제2713호인 석유코크스는 제2709호인 원유(Crude Oil)를 원재료로 하여 증류 등 가공을 거쳐 생산된다.

2) 이 사건물품은 원고와 판매자, 판매자와 미국 소재 S○○○(이하 'S○○○'), S○○○와 ○○○국 소재 H사(이하 'H사'라 한다) 사이에서 이루어진 각 매매계약에 따라 미국 ○○○주의 항구에서 운송선박인 M○○○에 선적된 후 국내에 수입되었다.

3) 원고와 H○○○(H사의 미국 내 자회사)는 이 사건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위한 위 조사 과정에서 피고에게, 원고와 판매자, 판매자와 S○○○, S○○○와 H사 사이의 각 구매계약서(갑 제6호증의 2 내지 4) 외에 H사와 M사 사이의 공급계약서(갑 제6호증의 1), M사의 직원이 2016. 1. ○. H○○○의 직원에게 보낸 이메일(갑 제8호증), 이 사건물품을 운송한 MV. ○○○에 적재된 화물의 운송자료(갑 제9, 10호증) 등을 제출하였으나, 피고가 H○○○에 대한 서면조사에서 요청한 이 사건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 구입 정보 및 그에 대한 증빙서류 등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4) H사와 M사 사이의 위 공급계약서는 H사가 미국 소재 정유회사인 M사로부터 석유코크스 제품을 공급받는다는 계약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2012. 1. ○.부터 2012. 12. ○.까지 루○○○에 있는 M사의 정유소에서 선적된 석유코크스 제품을 다○○○의 항구 등으로 운송한다는 것이다. M사의 직원이 작성한 위 이메일에는 '2012년 계약번호 ○○○에 따라 M사가 H사에 판매한 석유코크스는 M사의 미국 루이지애나 개○○○ 정유소에서 생산

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한편 H○○○는 운송주선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직원 1명 규모의 미국 소재 회사인데, H○○○가 2012. 5. 1. 발급한 이 사건 증명서에는 판매자가 수출자로, H○○○가 생산자로, 원고가 수입자로 각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증명서는 피고가 이 사건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로 권고한 서식을 따르고 있는데, 피고의 권고서식은 원산지 결정기준(Preference Criterion)에 이 사건 협정 제6.1조 가호의 경우 “WO”, 나호의 경우 “PSR”, 다호의 경우 “PE”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증명서의 원산지 결정기준에는 위의 3가지와 무관한 “B”라는 기재가 되어 있다.

나. 판단

1) 협정관세 적용배제의 적법 여부

가) 협정관세의 적용 여부에 관한 이 사건 협정 및 FTA 관세법의 규정

이 사건 협정은 협정관세의 적용 및 그 배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수입자는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서면 또는 전자 증명이나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수입자가 보유한 정보에 대한 수입자의 합리적인 신뢰를 포함하여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수입자의 인지²⁾ 중 하나에 기초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고(제6.15조 제1항), 각 당사국은 위 신청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무효라고 서면 결정을 내리지 아니하는 한 모든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수락한다(제6.19조 제1항).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록을 그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최소 5년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그 유지 대상 기록에는 ① 수출된 상품의 구매·비용·가치와 그에 대한 지불, ② 수출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간접재료를 포함한 모든 재료의 구매·비용·가치와 그에 대한 지불, ③ 수출되었던 형태로의 상품의 생산 등에 관한 기록이 포함된다(제6.17조 제1항). 수입 당사국은 원산지 상품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정보요청 또는 질의를 하거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 방문 등에 의하여 검증을 수행할 수 있고(제6.18조 제1항), 당사국이 서면으로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요청하였음에도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이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있다(제6.18조 제3항 가호, 제6.19조 제2항).

이와 같이 이 사건 협정은 협정관세의 적용 요건인 원산지 증명에 관하여 그 신청 단계에서는 자율증명 제도를 채택함으로써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만으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이화하는 대신,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검증에 대비한 엄격한 기록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그들에 대한 직접검증 방식의 사후검증 제도를 채택하여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자율증명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

²⁾ the importer's knowledge that the good is an originating good, including reasonable reliance on information in the importer's possession that the good is an originating good.

FTA 관세법 및 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 252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FTA 관세법 시행령'이라 한다)도, 수출자 및 생산자로 하여금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대장 등을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FTA 관세법 제12조 제1항, FTA 관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항),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조사 결과 수입자나 계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출한 자료에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FTA 관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제13조 제2항).

나) 이 사건의 협정관세 적용 여부

(1) 이 사건물품이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 제2709호에 해당하는 원유를 제2713호에 해당하는 석유코크스로 가공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협정 제6.1조 나항은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고,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각각의 비원산지 재료가 부속서 6-가에 명시된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을 거친 경우 해당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협정 부속서 6-가는 '광물성 연료, 광물유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및 광물성 왁스(제27류)로서 제2712호에서 제2716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물품이 이 사건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유를 석유코크스로 가공하는 공정(이하 '이 사건 공정'이라 한다)이 미국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원고는 H○○○가 발급한 이 사건 증명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명서를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로 보더라도 H○○○는 이 사건 협정 및 FTA 관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수출자로서 이 사건물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록을 보관할 의무를 부담하고, 피고는 H○○○에 대하여 이 사건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구매에 관한 자료 등 이 사건 협정 및 FTA 관세법이 유지·보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사건물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이러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그런데 H○○○가 피고로부터 요청받은 이 사건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 구입 정보 및 그에 대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협정 및 FTA 관세법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엄격한 기록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H사와 M사 사이의 공급계약서(갑 제6호증의1), 피고의 서면조사 결과 통지 후에 M사 직원이 작성한 이메일(갑 제8호증), 이 사건물품을 운송한 선박의 운송자료(갑 제9, 10호증) 등 원고와 H○○○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공정이 M사의 미국 내 정유소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한편 이 사건 협정은 수입 당사국이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서면 정보요청이나 서면 질의, 기록 검토나 생산시설 시찰을 위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 방문의 방식으로 원산지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6.18조 제1항 가 내지 다호), FTA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도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 하여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FTA 관세법 제13조 제2항), 이때 원산지조사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서면조사 및 수입자에 대한 조사만으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FTA 관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항),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수입 당사국의 현지조사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다. 즉 이 사건 협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당사국 원산지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협정관세)의 혜택을 규정하면서 그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혜택을 받는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부과하고 수입 당사국은 적절한 방식으로 이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FTA 관세법 및 그 시행령은 세관장이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현지조사를 보충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출자가 서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협정 및 FTA 관세법이 유지·보관의무를 규정한 원산지증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이 사건에서 피고가 현지조사를 통한 추가확인 없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4) 따라서 피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수출자 등으로부터 이 사건물품의 원산지가 미국임을 증명하는 정보가 제출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수입자로서의 자료보관 및 제출의무(FTA 관세법 제12조), 주선의무(이 사건 협정 제6.19조) 등을 이행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피고가 이 사건 협정 제6.18조 제3항 가호, FTA 관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킬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두810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증명서에는 H○○○가 이 사건물품의 생산자이자 발급자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물품은 호 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여야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증명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생산자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과정을 거쳤다면 정유회사가 아닌 H○○○는 이 사건물품의 생산자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고, 이 사건 협정은 원산지에 대한 자율증명 제도를 채택하면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그 요건에 대한 증명책

임을 부과하고 사후검증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H○○○에 대한 피고의 검증절차에서 원산지 증명이 문제될 것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더욱이 이 사건 증명서는 이 사건 협정에 따른 권고서식을 따르면서도 원산지협정기준에는 권고서식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의미도 불분명한 표기가 되어 있었고, 이를 FTA 관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단순 착오기재라 하기도 어려워 보여 기재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하여 의심을 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원고는 피고가 원산지조사를 개시할 때까지 이 사건 증명서만을 만연히 신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기본세율을 적용한 관세 등의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도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3) 인천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구합50113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8. 10. 16. 선고 2018누38705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9. 2. 18. 선고 2018두62225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제1 행정부

판 결

사 건 2017구합50113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오○○
피 고 세관장
변 론 종 결 2018. 1. 18.
판 결 선 고 2018. 2.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9. 7. 원고에 대하여 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 중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과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산업'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무역업에 종사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이 사건 수출자로부터

별지1 수입내역 기재와 같이 poly○○○○ ○○○○○○(이하 '이 사건물품')을 수입하면서 이 사건 수출자의 원산지신고서 [한-EU FTA 의정서(이하 '이 사건 의정서')와 달리 구 FTA 관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에서는 '원산지증명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통일하여 '원산지증명서'라 지칭]을 근거로 한-EU FTA에서 정한 협정관세(관세율 0%)를 적용하여 수입통관을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수출자의 인증수출자번호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및 권한 부여 일자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물품에 관한 2011. 7. ○.부터 2013. 4. ○.까지의 거래 기간을 대상으로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후 피고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 사건 의정서 제27조에 따라 수출국에 간접검증을 요청(회신기한: 2015. 4. 18.)하였고, 원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관세청은 피고에게 '이 사건 수출자가 2013. 2. ○. 한-EU FTA 에 의한 인증수출자 자격을 부여받았으므로 별지1 수입내역 중 위 인증수출자 자격부여일 이후에 발급된 연번 22, 23번(이하 '이 사건 제2 물품'이라 한다)만이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고, 나머지 21건(이하 '이 사건 제1 물품'이라 한다)은 인증수출자 자격부여일 전에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것이어서 특혜관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간접검증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을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물품에 대하여는 위 다.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2 물품에 대하여는 간접검증 기한(10개월)을 초과하여 이 사건 회신이 도달하였다는 이유로 별지1 수입내역 기재와 같이 각각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제1, 2 물품에 관한 가산세와 이 사건 제2 물품에 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제2 물품에 관한 가산세 경정고지만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물품에 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를 '이 사건 제1 처분', 이 사건 제1 물품에 관한 가산세 경정고지를 '이 사건 제2 처분').

2. 이 사건 제1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판단

이 사건 의정서 제27조는 '이 의정서의 적절한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원산지 증명의 진정성 및 이 서류에 기재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을 관세당국을 통하여 서로 지원하고, 원산지 증명의 사후 검증은 무작위로 또는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그 서류의 진정성,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 또는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의 충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갖는 경우 언제든지 수행된다. 검증을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조사결과 및 사실관계를 포함한 검증결과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통보받고, 이러한 결과는 서류의 진정성 여부, 그리고 해당 제품이 당사자가 원산지인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와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분명히 적시

해야 하며,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검증 요청일부터 10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거나, 그 회신이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제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 하지 아니하는 경우,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자격 부여를 거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자유무역협정관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5항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원산지증명서가 영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를, 제2호에서는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오류 또는 흠이 있는 경우'를 각각 들고 있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1 내지 14, 1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물품에 관한 간접심사 요청에 앞서 원고에게 원산지증명서에 대하여 보정명령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거나 보정명령 누락의 하자가 이 사건 제1 처분의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구 자유무역협정관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5항의 보정명령은 원산지증명서가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않았거나, 그 기재사항의 일부에 누락, 오류 등이 있을 경우에 비로소 적용된다. 그런데 피고가 관세청에 간접심사를 요청한 이유는, 이 사건 수출자의 인증수출자번호가 한-EU FTA 발효일(2011. 7. 1.) 이후인 2013. 2. 〇. 갱신되었음이 확인되자, 관세청을 통하여 이 사건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적절한 권한이 있는지 및 권한 부여 일자 등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함이었을 뿐이고, 이 사건물품에 관한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 자체에는 어떠한 누락이나 오류 등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간접심사 요청에 앞서 원산지 증명서 등에 대한 서면조사를 하였다든 이유만으로 그에 후속하여 원고에게 당연히 보정명령을 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구 자유무역협정관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5항 단서는 원산지증명서 기재사항의 누락이나 오류 등이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정명령을 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자유무역협정관세법 제9조에 따르면 '원산지 결정'이란 수출입물품에 관한 협정관세의 적용, 통관 등을 위하여 해당 물품의 생산, 가공 또는 제조국 등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물품에 관하여 이 사건 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 보유 여부 및 그에 따른 한-EU FTA 협정관세의 적용 여부만을 문제 삼았을 뿐, 이 사건물품의 원산지 자체에 대하여 의혹을 가지고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간접심사를 요청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가)항 기재와 달리 이 사건물품에 관한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에 누락이나 오류 등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에게는 보정명령 의무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구 자유무역협정관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5항은 2008. 7. 15. 기획재정부령 제30호로 위 시행규칙이 개정

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 수입자가 협정관세 신청을 위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한 원산지증명서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일부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등 오류가 있어도 이를 보정할 수 있는 절차가 명확하지 못하여 민원이 야기되는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는바,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보정명령에 관한 규정은 기본적으로 수입자에 의하여 시정될 수 있는 업무착오 내지 오류신고 등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물품에 관한 원산지증명서에 대하여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이 사건 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 보유 여부 및 갱신 전 인증수출자번호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에 대하여도 한-EU FTA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인바, 이는 이 사건 수출자에 대한 조사,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중립기관인 관세청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할 사항이지 원고에 의하여 시정, 보충될 만한 성질의 것이 아니고, 설령 원고에게 보정 명령을 하였더라도 사인인 원고가 계약상대국 관세청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측면에 서도 피고가 간접심사를 요청한 내용은 보정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많다.

(4) 피고는 이 사건물품에 관한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면서 원고에게 문제사항이 무엇인지를 통지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간접검증 요청에 앞서 피고에게 이 사건 수출자의 갱신된 인증수출자번호를 제출하였는바,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하여 나름의 방식으로 시정 및 보완을 시도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원, 피고 사이에 보정명령에 준하는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다(한편 원고는 피고가 위 갱신된 인증수출자번호를 통하여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 대상 물품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불필요하게 간접심사 요청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의정서 제27조 및 구 FTA 관세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나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정보의 정확성 등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가 제출한 문서의 진위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에서도 간접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제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1 내지 29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제2 처분은 당초 한-EU FTA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이 아닌 이 사건 제1 물품에 관

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 납부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것이지, 체약상대국 관세청의 이 사건 화신이 지연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제1 물품에 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과소하게 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만을 판단하면 족하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관세 및 부가가치세는 납세자의 신고를 전제로 하는 세목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제1 물품에 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받고자 하였다면 사전에 한-EU FTA 및 이 사건 의정서, 구 자유무역협정관세법 등 관계 법령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협정관세율 적용에 필요한 제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스스로 검토하였어야 하는 점, ③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수출자에게 한-EU FTA가 발효된 사실 및 인증수출자번호의 기재 방법 등을 단편적으로 고지하였을 뿐, 이 사건 수출자의 기존 인증수출자번호가 한-EU FTA 발효 이전에 부여된 것이어서 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협정관세율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거나 새로운 인증수출자번호로 갱신하여야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않은 점(이에 대하여 원고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실조차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④ 갱신 전 인증수출자 인증서에는 인증수출자번호 부여일(1999. 8. 10.)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이를 알기 어려웠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수출자가 제공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만연히 신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위 원산지증명서만으로도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리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인 사유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물품에 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의 이행 해태를 다텈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

제1 행정부

판 결

사 건 2018누38705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오○○
피고, 피항소인 세관장
제 1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구합50113판결
변 론 종 결 2018. 9. 18.
판 결 선 고 2018. 10. 1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7. 원고에 대하여 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 중 수입신고일 2013. 2. 26.자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및 수입신고일 2013. 3. 11.자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7. 원고에 대하여 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 중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과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별지1 표를 이 판결 별지 표와 같이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행 “poly○○○”을 “poly○○○”으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 “전의 것” 다음에 “이하 ‘구 FTA 관세법’이라고 한다.”를 추가함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행 “2016.”을 “2014.”로, 제5행 “발급된”을 “수입신고된”으로 각 고침

2. 판단

가. 이 사건 제1, 2 처분에 대한 절차적 위법의 존부

구 FTA 관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5항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원산지증명서가 영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를, 제2호에서는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오류 또는 흠이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위에서 든 증거들에 갑11 내지 14, 17호증, 을6, 7호증, 을9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물품에 관한 간접심사 요청에 앞서 원고에게 원산지증명서에 대하여 보정요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거나 보정요구 누락의 하자가 이 사건 제1 처분의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제1, 2 처분에 대한 절차적 위법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우선 이 사건 물품에 관한 각 원산지증명서(을6, 7호증, 을9호증의 1, 2) 자체에는 그 기재요건이나 기재사항의 누락, 오류 등의 흠이 없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이 사건 수출자가 인증수출자 자격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여부인데, 이 사건 수출자가 인증수출자 자격을 갱신받기 전후의 인증수출자번호는 동일하고 위 각 원산지증명서에는 위 인증수출자번호가 올바르게 기재되어 있으며, 그 외 수출자, 원산지신고문구 및 원산지 기재 역시 모두 사실과 부합하므로, 원산지증명서 자체만으로는 구 자유무역협정관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5항의 보정요구를 하여야 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구 자유무역협정관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5항 단서는 원산지증명서 기재사항의 누락이나 오류 등이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정명령을 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자유무역협정관세법 제9조에 따르면 ‘원산지 결정’이란 ‘수출입물품에 관한 협정관세의 적용, 통관 등을 위하여 해당 물품의 생산·가공 또는 제조국 등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 사건 물품의 원산지 자체에는 별다른 의혹이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물품에 관하여 구 자유무역협정관세법 시행규

칙 제16조 제5항의 보정요구가 반드시 필요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②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인증수출자 인증서(갑4호증의1)에 기재된 인증서 발급일자가 한-EU FTA 발효일(2011. 7. 1.) 전인 1999. 8. ○로 되어 있고 인증수출 상대국에 우리나라에 대한 기재가 없는 등 이 사건 수출자가 적법한 인증수출자인지를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되자 2013. 6. ○. 원고에게 이 사건물품에 관한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면서 원고에게 조사내용을 통지하고 원산지증명서 등 자료제출을 요청하였고(을2호증),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2. ○. 피고에게 이 사건 수출자가 2014. 2. ○.자로 인증수출자 자격을 갱신받았다는 인증서(갑4호증의 2)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원·피고 사이에 보정 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피고는 2014. 6. ○. 이 사건 수출자의 인증수출자 자격 확인을 위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사건 의정서 제27조에 기하여 체약상대국 관세청에 간접심사를 요청하였는데, 이 사건 수출자에 대한 조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체약상대국 관세청은 이 사건 인증수출자의 자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간접심사 요청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 제출의 위 갱신인증서로 충분히 인증수출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위 간접심사 요청이 불필요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의정서 제27조 및 구 자유무역협정관세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나 원산지 증명서에 기재된 정보의 정확성 등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심사를 요청할 수 있고, 위 갱신 인증서의 진위 확인 등을 위한 목적에서도 간접심사 요청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④ 구 FTA 관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5항은 2008. 7. 15. 신설된 규정으로, 수입자가 협정관세 신청을 위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한 원산지증명서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일부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등 오류가 있어도 이를 보정할 수 있는 절차가 명확하지 못하여 민원이 야기되는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보정요구에 관한 위 규정은 기본적으로 수입자에 의하여 시정될 수 있는 업무착오 내지 오류신고 등의 경우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수출자의 인증수출자 자격 보유 여부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출자에 대한 조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중립기관인 체약상대국 관세청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고, 사인인 원고에 의한 보정을 통하여는 근본적인 확인이 어려우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간접심사를 요청한 피고의 조치는 타당하다.

⑤ 더구나 이 사건 제1 물품의 경우 위 갱신된 인증서나 위 간접심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수출자가 인증수출자 자격을 갱신 받지 못한 상태에서 수입신고가 이루어졌음이 확인될 뿐이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보정요구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보정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보정요구 미비로 인한 절차적 위법을 탓하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제1 처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의정서 제27조는 '이 의정서의 적절한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원산지 증명의 진정성 및 이

서류에 기재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을 관세당국을 통하여 서로 지원하고, 원산지 증명 사후 검증은 무작위로 또는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그 서류의 진정성,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 또는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의 충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갖는 경우 언제든지 수행된다. 검증을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조사결과 및 사실관계를 포함한 검증결과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통보받고, 이러한 결과는 서류의 진정성 여부, 그리고 해당 제품이 당사자가 원산지인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와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분명히 적시해야 하며,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검증 요청일부터 10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거나, 그 회신이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제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자격 부여를 거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FTA 관세법과 한-EU FTA는 협정 당사국들 사이에서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여 유대를 강화하는 동시에 당사국들 간 무역 장벽을 제거하여 무역과 투자흐름을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생활수준의 향상 및 실질소득의 지속적인 증가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FTA 관세법과 한-EU FTA는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의 수입과 수출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거나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협정관세를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그 적용 요건이 되는 원산지의 검증을 위하여 당사국 사이에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역할을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당사국의 수출자나 생산자가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에 대하여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검증을 요청하면 수출당사국의 관세당국이 검증을 수행하는 간접검증방식을 채택하여,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원칙적으로 수출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수행하여 회신한 검증결과를 존중하되, 10개월 내에 회신이 없거나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회신인 경우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정관세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체약 상대국 관세당국이 회신기간 내에 회신을 하지 아니한 데에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와 같이 간접검증방식에 의한 원산지의 검증은 수출당사국의 발급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며 그 검증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사정과 아울러 FTA 관세법과 한-EU FTA에서 간접검증방식에 의한 원산지 증명 검증 제도를 둔 취지를 종합하여 그 회신지연을 정당화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4두5644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갑27호증, 을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신이 회신기한을 초과하여 송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2 물품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 처분은 위법하다.

① 이 사건 제2 물품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수출자가 인증수출자 자격을 부여받은 후에 수입신고를 하였고, 체약상대국 관세청도 이와 같은 이유로 2015. 5. 6. 이 사건 제2물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회신하였는데(갑43호증, 을3, 8호증), 수입품이 실질적으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여 협정관세 적용 대상이 되는지 한-EU FTA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3. 6. 20. 피고로부터 원산지 서면조사 통지와 자료제출 요청을 받고 이 사건 수

출자로부터 갱신된 인증수출자 인증서를 송부받아 2014. 2. 28. 피고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그 내용은 추 후 송부된 이 사건 회신과 일치하는바, 피고로서는 이 사건 회신이 송부되어 오기 전에 이미 이 사건 제2 물품에 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자료를 원고의 협조에 따라 어느 정도 제공받을 수 있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2014. 6. 18.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에 간접검증을 요청한 후 그 회신의 지연을 염려하여 2015. 3. 3. 이 사건 수출자에게 회신기한 내에 검증결과가 회신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내는 등 원고의 입장에서 회신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

③ 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갱신된 인증수출자 인증서 자체에서는 별다른 위조혐의 등을 발견하지는 못한 가운데 일반적인 진위확인 차원에서 간접검증절차를 취하기로 하면서도 이를 제출받은 후 약 4개월이 지난 2014. 6. 18.에 이르러서야 간접검증 요청을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에 송부한 후, 회신이 상당 기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그 이유를 알아보거나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에 회신기한을 준수해달라는 요청 내지 독촉 등의 조치를 한 바 없다.

④ 계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은 회신기한인 2015. 4. 18.부터 약 2주 도과한 2015. 5. 6. 간접검증요청에 대하여 회신하였는바, 그 도과기간은 전체 회신기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은 이 사건 회신에 ‘약간의 지연이 있었음을 사과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기도 하였다.

다. 이 사건 제2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8면 제8행부터 제9면 아래에서 제4행까지)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 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이 사건 제1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8두62225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오○○
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세관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10. 16. 선고 2018누38705 판결

주 문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대상고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와 부대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와 부대상고인의 부대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조심 2017관42(2017. 9. 1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수출자로부터 전동식 심폐인공소생기 및 저출력 심장충격기(이하 “쟁점물품”)를 수입하면서 한-미 FTA에 따라 청구법인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FTA 관세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수입자 발행 C/O)·선하증권·송품장·물품설명자료 등으로는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정도의 원산지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관세 〇〇〇원, 부가가치세 〇〇〇원 및 가산세 〇〇〇원 합계 〇〇〇원을 과세전통지하였다.

다. 세관장이 청구법인의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불채택 결정을 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관세 〇〇〇원, 부가가치세 〇〇〇원 및 가산세 〇〇〇원 합계 〇〇〇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원산지 증빙자료 제출 미비를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② 쟁점물품 중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이 개정되기 전인 2014.2.21. 이전 수입신고분에 대하여 제출 서류 미비를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③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 ① 청구법인은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한-미 FTA에 따라 청구법인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②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FTA 관세특례법 제12조에 따라 서면조사를 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이 원산지상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수입자 발행 C/O), 선하증권, 송품장, 물품설명자료 등을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 ③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특혜관세 적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결과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정도의 충분한 원산지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관세 〇〇〇원, 부가가치세 〇〇〇원 및 가산세 〇〇〇원 합계 〇〇〇원을 과세전통지하였다.
- ④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세관장에게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세관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라는 결정을 하였다.
- ⑤ 처분청은 세관장의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불채택 결정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관세 〇〇〇원, 부가가치세 〇〇〇원 및 가산세 〇〇〇원 합계 〇〇〇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중 2014.2.〇. 이전 수입신고한 것은 수입신고번호 〇〇〇(2012.10.〇.) 외 45건으로, 해당 건들에 대한 고지세액은 다음과 같다.

(3) 청구법인이 입증자료의 하나로 제출한 수입신고필상의 주요 수입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쟁점물품이 품목분류되는 HS 제○○○소호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5)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의료기기 수입허가증 4부,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인정서 2부, 의료기기 수입허가의 경미한 변경사항 보고서 1부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였다.

제출한 의료기기 수입허가증에 첨부된 기술문서의 원재료 항목을 보면, 저출력 심장충격기 중 X○○○의 기술 문서 2면에 원재료는 ① 외장 부분의 케이스, ② 입력부의 다기능케이블·단일케이블, ③ 전원부의 보조 파워 어댑터·배터리, ④ 제어부의 제세동 변압기·체외형 패들, ⑤ 환자 장착부의 심전도 리드(3Lead)·심전도 리드(5Lead)·심전도 리드(12Lead), ⑥ 출력부의 LCD 모니터, ⑦ 소프트웨어라고 기재되어 있고,

M○○○의 기술문서 12면에 원재료는 ① 모니터○○○, ② 다기능 케이블, ③ 심장외부 충격용 패들, ④ 심장내 충격용 핸들, ⑤ 심장 내 충격용 스펀, ⑥ 산소포화도측정 센서, ⑦ 심전도 케이블, ⑧ ETCO2 아답타, ⑨ 혈압측정용 커프, ⑩ 충전용 밧데리라고 기재되어 있고,

R○○○의 기술문서 18면에 원재료는 ① 심장충격기, ② 패들 케이블, ③ 심전도·패들 케이블, ④ 기록지, ⑤ 심장외부충격용 패들, ⑥ 전극, ⑦ 배터리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전동식 심폐인공소생기에 대한 의료기기 수입허가증에 제품명(품목명 및 형명)은 ○○○로 기재되어 있고, 기술 문서 9면에 원재료는 ① 본체, ② 밧데리, ③ 밧데리 충전기, ④ 흉부압박 밴드가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저출력 심장충격기에 대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인정서에 제조소명은 “Z○○○ M○○○ C○○○”, 제조소 소재지는 “○○○”라고 기재되어 있고,

전동식 심폐인공소생기에 대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인정서에 제조자는 “Z○○○ M○○○”, 제조소 소재지는 “○○○”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은 위 기술문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저출력 심장충격기의 경우, 각 원재료 항목에 기재된 부분품 중 본체 역할을 하는 제어부의 제세동 변압기, 모니터, 심장충격기를 제외한 나머지 센서·배터리·케이블·패들 등 부분품은 그 명칭을 보더라도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본체를 구성하는 부분품의 명세가 제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저출력 심장충격기는 심장에 변압기의 원리를 위하여 발생시킨 높은 전압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방 또는 심실의 세동을 제거하기 위한 기계장치인 점, X○○○의 기술문서에서 본체를 ‘변

압기의 일종으로 표현하고 있는 점, M○○○와 R○○○의 기술문서상 본체의 핵심적인 구성품은 “세동제거부” 인바 이를 “두 개의 전극판은 강한 고압이 발생하는 고압발전기에 연결되어 있으며 고압의 강도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조절스위치가 있어 적절한 고압을 조절하면 화면에 현재의 고압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나타난다. 조정 가능한 스위치가 양쪽에 있고 그것을 누르면 강한 고압의 자극을 환자에게 줄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본체의 본질은 전기기기인 변압기로 보이므로 본체를 기타 의료기기로 보거나 본체를 구성하는 부분품에 기타 의료기기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위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전동식 인공심폐소생기의 경우에도 본체를 제외한 배터리, 배터리 충전기, 흉부압박 밴드는 그 명칭을 보더라도 기타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본체를 구성하는 부분품의 명세가 제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형상 구조 및 치수 항목에는 본체가 “플랫폼”이라는 명칭으로 “흉부압박을 실행하는데 소요되는 힘을 만들고 조절하는 기계적 장치”로 기술되어 있는 점, 위 항목에 삽입된 블록다이어그램(기계 장치에서 처리되는 데이터의 흐름을 단계적으로 체계화하여 하나의 그림으로 나타낸 것)상으로도 본체는 원동기(Motor) 및 이를 제어하는 제반 장치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볼 때 본체의 본질은 전기기기인 원동기로 보이므로, 본체를 기타 의료기기로 보거나 이를 구성하는 부분품에 기타 의료기기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인정서에 쟁점물품의 제조자가 미국 소재이고 제조소 소재지가 ○○○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모두 ○○○에서 생산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기술문서의 내용만으로 쟁점물품이 한-미 FTA가 정하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였음이 입증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술문서의 내용만으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7) 저출력 심장충격기의 부분품 중 하나인 ‘체외형의료용 전극’은 환자의 피부에 부착하여 인체신호를 감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한 제품표준서에 제조회사는 ‘B○○○’ 제조국은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제출된 기술문서는 국가기관의 엄격한 심사를 거친 문서로 신빙성이 있고 이를 통하여 쟁점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충분히 입증하였으므로 원산지증빙서류 제출미비를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이 원산지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생산되어야 하고,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가 쟁점물품이 속한 제○○○호 이외의 다른 소호에 해당(6단위 세번변경기준)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기술문서는 의료기기인 쟁점물품의 수입허가와 관련된 자료로서 원재료와 제조자 등을 일부 확인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쟁점물품의 국내규격 적합성 여부와 인체의 안정성 여부 등을 심사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서, 원재료내역서·원재료(제품)수불부·생산일지 등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제출 없이 기술문서의 제출만으로 쟁점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수입자인 청구법인이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한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기 위하여 처분청이 요구하는 원산지증명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9)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4.2.21. 이전 수입신고분의 경우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명서 이외에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할 의무가 없으므로 제출서류 미비를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한-미 FTA 제6장에 수입자에 대해 제6.17조의 기록유지요건 이외에도 제6.18조의 검증, 제6.19조의 수입관련 의무에 수입자의 원산지 증빙자료 제출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바, 한-미 FTA에서 수입자가 스스로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여 특혜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수입자는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개정 여부 및 보관 대상 자료로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포함한 원산지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원산지 증빙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어 보이는 점,

수입자는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근거로 물품의 원산지지위를 판단하고 특혜관세를 적용받아야 하며, 원산지 판단의 기초가 된 자료를 보관한 후 원산지에 대한 사후검증시 제출하여야 하고,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처분청은 특혜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2014.2.21. 이전 수입신고분에 대하여도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0)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국가기관이 쟁점물품의 원재료 및 제조시설 등을 확인

한 후 수입을 허가하는 의료기기 수입절차의 특수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미국임을 인정받은 것으로 믿는 것이 무리가 아니고, 2014.2.21.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원산지증명서 이외에 그 수입 물품이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한-미 FTA 제6.19조에 수입자의 증명이 협정적용신청의 기초를 이루고 있을 때에는 수입자가 원산지상품임을 증명할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FTA 관세특례법 제8조 및 제10조에 협정적용신청시 수입자의 원산지 증명 의무를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상품임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여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되는 이상 청구법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서울행정법원 2014. 11. 14. 선고 2014구합9974 판결[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5. 7. 23. 선고 2014누72905 판결[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 행정법원

제 11 부

판 결

사 건 2014구합9974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퍼○○○○○
피 고 세관장
변 론 종 결 2014. 10. 31.
판 결 선 고 2014. 11.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6. 5. 원고에게 한 별지 '경정 후 내역' 기재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4. ○. 설립되어 초차용기, 합성수지 및 동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1) 원고는 2008. 12. ○.부터 2012. 3. ○.까지 별지 '과세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수출자로부터 유리병 성형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를 수입하였다.

(2) 원고는 세관장에게 체약상대국 국제통상산업부 로부터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고, 한-아세안 FTA 협정에서 정한 협정세율 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2. 3. ○.부터 2012. 6. ○.까지 이 사건 기계에 관한 원산지 확인 및 협정관세 적용 여부에 대한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2012. 7. ○. 체약상대국 국제통상산업부에 이 사건 기계에 대한 협정세율 적용 여부 심사를 위한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다. 피고는 2013. 3. ○. 체약상대국 국제통상산업부로부터 "이 사건 원산지증명서는 한-아세안 FTA 협정의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체약상대국 국제통상산업부에서 발급한 진본 서류이다."는 취지의 검증결과회신(이하 '이 사건 검증결과 회신')을 받았다.

라. 이후 피고는 2013. 6. ○. 원고에게 "한-아세안 FTA 협정 부속서 3의 부록 1(이하 '부록')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증결과 회신기한(2개월), 검증절차 종료기한(6개월) 및 FTA특례법(2013. 1. 1. 법률 제116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규칙 제24조의 회신기한을 초과한 회신으로서, 부록 제14조, 제17조 및 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특혜관세 배제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별지 '과세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8. ○. 심판청구를 하였고, 2014. 3. ○.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의 2건으로 수입신고된 기계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받았다(이하 취소되고 남은 별지 '경정 후 내역' 기재의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의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2. 3. ○.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에 관한 한-아세안 FTA 협정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2012. 3. ○.부터 2012. 5. 24.까지 서면조사를 실시한다."고 통지하였다. 피고는 2012. 7. ○. 원고에게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 결과 위반내용은 없으나, 원산지 충족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하기위해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검증을 요청할 것이다."는 원산지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2) 피고는 2012. 7. ○.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이 사건 기계에 관한 원산지증명서의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수신자를 "Mr. Ab○○○, 부국장, 체약상대국 국제통상산업부"로 기재하였다. 위 공문은 2012. 8. ○. 체약상대국 국제통상산업부에 송달되었다. 한편 Mr. Ab○○○는 현재 체약상대국 국제통상산업부 지부의 책임자로 근무하고 있다.

(3) 체약상대국 국제통상산업부가 부록 제14조 제1항 나목에서 정한 회신기한인 2012. 10. ○.(요청을 받은 후

2개월 이내)까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않자, 피고는 2012. 11. ○. '체약상대국 국제통상산업부 아세안경제협력과장'을 수신자로 하여 이 사건 기계에 관한 원산지증명서 검증을 독촉하면서, 2012. 11. ○.까지 회신할 것을 요청하였고, 위 공문은 2012. 11. ○. 체약상대국 국제통상산업부에 송달되었다. 피고는 2013. 1. ○. 다시 '체약상대국 국제통상산업부 아세안경제협력과장'을 수신자로 하여 이 사건기계에 관한 원산지증명서 검증을 독촉하면서, 2013. 2. ○.까지 회신할 것을 요청하였고, 위 공문은 2013. 1. ○. 체약상대국 국제통상산업부에 송달되었다.

(4) 체약상대국 국제통상산업부는 피고에게 공식적으로 검증결과를 회신하기 전인 2013. 2. ○. 피고 담당공무원에게 “체약상대국 국제통상산업부의 승인 책임자가 자리를 옮기고, 이를 처리할 사람이 없어 일 처리가 지연되었다. 이 사건 기계에 관한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기준은 정확하다.”고 이메일로 회신하였다.

(5) 한-아세안 FTA 협정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한-아세안 관세·원산지소위원회’(The Asean-Korean Sub-committee on Tariffs and Rules Of Origin, Akstr○○)가 2011. 3. 11. 개최되었는데, 당시 대한민국과 아세안 국가들이 상호 교환한 연락창구내역에는 아래와 같이 체약상대국의 연락창구가 기재되어 있다.

(6) 피고는 체약상대국 관세당국과 이 사건 기계의 원산지 검증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7) 체약상대국 국제통상산업부는 체약상대국 내 풀○○○ 주(州), 조○○○ 주(州), 클○○○ 주(州), 페○○○ 주(州), 사○○○ 주(州), 사○○○ 주(州), 파○○○ 주(州)에 지역분부를 두고 있다. 조○○○는 체약상대국 남단에 위치한 조○○○ 주(州)의 주도(州都)이다.

(8) FTA별 원산지 검증방법은 아래와 같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원산지 검증방법은 직접검증 방식과 간접검증 방식으로 구분되는데, 한-아세안 FTA 협정은 우선적으로 수입 당사국이 무작위로 그리고/또는 서류의 진정성 또는 해당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특정 부분품의 진정한 원산지에 관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때에는 수출당사국의 발급기관에 사후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간접검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부록 제14조 제1항 나목과 라목은 “사후검증 요청을 받은 수출당사국의 발급기관은 신속히 그 요청에 응하며, 그 요청을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회신하여야 하고, 그 상품의 원산지 여부의 결정결과를 수출당사국의 발급기관에 통보하는 절차를 포함하는 사후검증의 모든 과정은 6개월 이내에 완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7조는 “이 부록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품이 부속서 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이 부록의 관련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그 법과 규정에 따라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부인하거나 관세를 추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부록에서 사후검증 요청을 받은 수출당사국 발급기관의 회신기한을 2개월로 정하고 있고, 사후검증의 모든 과정이 6개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규정한 것은 간접검증 방식의 경우 직접검증 방식과 달리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수출당사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검증결과 및 관련 자료

를 통보받아 원산지 지위부여의 타당성 여부를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회신지연의 사정으로 인하여 수입 당사국 관세당국의 과세권 행사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된다.

한편,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하의 원산지 증명 및 검증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 간의 상호 행정지원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2010. 11. 15. 외교통상부고시 제2010-732호로 제정된 것, 이하 ‘양해각서’) 제9조 가목은 특혜관세대우의 거부에 관하여 “수입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수출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연장 기간을 포함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검증결과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국내법 및 규정에 따라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의 부여를 거부할 권한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한-아세안 FTA 협정에서 회신지연의 사정으로 인하여 수입 당사국 관세당국의 과세권 행사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예외적인 상황을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회신기한을 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회신기한을 정한 규정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예외적인 상황’은 ‘원산지 검증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수출당사국 관세당국이 검증 내지 회신을 지연하거나 그 내용상의 부실을 정당화할 수 있는, 물품 생산자, 수출자, 수출당사국 관세당국이 통제 불가능한 특정한 상황’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

또한 한-아세안 FTA 협정은 수출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는데, 특혜관세 혜택에 무임승차하는 것을 방지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원산지규정을 충족하는 상품이라 하더라도 협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하는 점, 부록 제17조는 “이 부록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품이 부속서 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이 부록의 관련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그 법과 규정에 따라 특혜관세대우신청을 부인하거나 관세를 추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간접검증 방식의 경우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상대국 수출자등을 상대로 원산지의 진정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고, 이에 따라 한-아세안 FTA 협정은 원산지증명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면서 그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특혜관세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원산지증명절차의 불이행에 기인하는 특혜관세 배제라는 불이익은 수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출당사국의 검증결과 수출당사국의 원산지로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속서 나 부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피고는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기한 내 회신에 관하여 아래 사정을 고려할 때,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은 검증기한 내에 회신하지 않았고,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협정세율(0%) 적용이 배제된다.

① 적법한 연락창구: 부록 제1조에 의하면, ‘발급기관’이란 ‘이 부록에 따라 수출당사국의 정부에 의하여 지정되고 다른 모든 당사국에 통보된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권한 있는 당국’을 의미한다. 양해각서 제1조에 의하면, ‘권한 있는 당국’이란 대한민국정부의 경우에는 관세청을, 체약상대국 정부의 경우에는 체약상대국 국제통상산업부를 말

하고, 제14조에 의하면 체약상대국의 연락창구로 체약상대국 국제통상산업부의 아세안경제협력과장이 지정되어 있다. 한편 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2항 제5호는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서 하는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을 체약상대국 국제통상산업부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피고가 한-아세안 FTA 협정 이행위원회 산하 소위원회인 '한-아세안 관세·원산지소위원회'에서 체약상대국 정부로부터 받은 연락처에는 체약상대국 국제통상산업부 소속 직원의 이름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었다. 따라서 한-아세안 FTA 협정에 따른 체약상대국 정부의 공식적인 연락창구는 체약상대국 국제통상산업부라고 보아야 한다.

② 검증회신기한: 피고 담당공무원과 체약상대국 국제통상산업부 담당직원이 주고받은 이메일 내역에 비추어, 체약상대국 국제통상산업부가 원산지 검증에 관한 공식적인 연락창구로 기능하고 있었던 점, “체약상대국 조○○○주(州)에 위치한 체약상대국 국제통상산업부가 이 사건 기계에 관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였고, 원산지증명서의 진위 여부 확인업무를 수행한다.”는 사정만으로, 체약상대국 국제통상산업부의 지역본부 중의 하나인 체약상대국 국제통상산업부를 한-아세안 FTA 협정상 원산지 검증을 위한 연락 창구로서 권한 있는 발급기관으로 볼 수 없고, 체약상대국 국제통상산업부와 체약상대국 국제통상산업부의 업무분장은 체약상대국 관세당국 내부의 권한 분배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체약상대국 국제통상산업부에 이 사건 기계의 원산지 검증요청을 한 것은 한-아세안 FTA 협정에 따른 적법한 검증요청에 해당하므로, 검증회신기한은 2012. 7. ○.자 최초 검증요청이 체약상대국 국제통상산업부에 도달한 2012. 8. ○.로부터 2개월 내인 2012. 10. ○.이다.

③ 예외적 사유의 존재: 피고가 2013. 2. ○. 체약상대국 국제통상산업부로부터 받은 이메일에 의하면, 체약상대국 국제통상산업부 내 인사이동으로 인한 담당자 부재로 검증결과 회신이 지연되었다는 것인바, 이는 체약상대국 국제통상산업부 내부사정으로,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통제불가능할 정도의 불가피한 사유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산지 검증요청을 위한 연락창구는 체약상대국 국제통상산업부이므로,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발급한 체약상대국 국제통상산업부에 원산지 검증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 역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④ 검증회신기한의 연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체약상대국 국제통상산업부를 권한 있는 발급기관으로 보더라도, 체약상대국 국제통상산업부는 2012. 11. ○.자 피고의 검증회신 독촉을 수령한 2012. 11. ○.으로부터 4개월 이상 지난 2013. 3. ○.에서야 이 사건 검증결과 회신을 하였으므로, 기한 내 회신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양해각서 제6조에 의하면, 수출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예외적인 경우에 검증 요청을 수령한 날부터 4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검증결과 통지를 연기할 수 있으나, 이러한 기간 연장은 최초 통지 기한일 전에 연기사유 및 통지 예정일자와 함께 수입 당사자의 요청 당국에 통지되어야 하는데, 체약상대국 국제통상산업부는 최초 기한을 도과한 2013. 3. ○. 이메일로 기한 연장을 요청하였을 뿐, 연기사유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적법하게 기한이 연기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하여 아래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한-아세안 FTA 협정은 수출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특혜 관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특혜 관세 혜택에 무임승차하는 것을 방지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원산지규정을 충족하는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협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점, 부록 제17조는 “부속서 30이나 부록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부인하거나 관세를 추징할 수 있다.”고, 양해각서 제9조는 “수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검증결과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국내법 및 규정에 따라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의 부여를 거부할 권한을 갖는다.”고 규정하여, 수출국이 원산지로 확인된 경우에도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는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협정세율(0%) 적용을 배제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② 원고는 피고의 검증요청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수출자를 통해 전달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계약상대국 정부의 공식적인 연락창구는 계약상대국 국제통상산업부이고, 피고가 원산지 검증기관으로 계약상대국 국제통상산업부로 보아 행한 원산지 검증요청에 아무런 과실이 없는 점, 기한 내 회신 지연에 대하여 협정세율(0%)의 적용배제는 수입 당사국 관세당국의 과세권 행사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 점, 원산지증명절차의 불이행에 기인하는 특혜관세 배제라는 불이익은 수입자가 부담하고, 원고도 이 사건 기계를 수입함에 있어 한-아세안 FTA 협정의 협정세율(0%) 배제 조항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개별 사정에 따라 협정세율(0%) 적용 여부를 인정할 경우 과세관청에 의한 임의적 판단에 따라 관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적용배제를 할 수밖에 없는 점, 한-아세안 FTA 협정상 특혜관세대우는 국가 간 상호 호혜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는 점, 원산지증명절차의 불이행에 따른 특혜관세 배제의 직접적인 불이익은 수입자가 부담하게 되나, 결국 수출당사국 소재 기업의 가격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수출당사국에 대한 제재적 의미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한 내 회신 지연만으로 협정세율(0%)을 배제한 것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직접검증은 검증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수출당사국 업체 등에 대한 정보입수에 어려움이 있는 점, 제한된 시간 내에 검증이 이루어져야 하고, 수출자나 생산자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적절한 대응이 쉽지 않은 점, 한-아세안 FTA 협정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원산지 검증에 관하여 원칙적 간접검증, 예외적 직접검증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데, 기한 내 회신이 도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직접검증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한 내 회신 지연이 있으면 직접검증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4) 관세법 제21조 제2항 등에 관하여

관세법 제21조는 관세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점, 관세 부과제척기간의 진행은 중단되거나 정지되지 아니하므로,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심사청구, 심판청구, 소송 등이 종결되지 아니하면 관세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 점, 관세법 제21조 제2항 제1 내지 5호는 “심사청구결정, 판결, 압수물품의 반환결정, 특례법 및 조약·협정 등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회신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해당 결정, 판결, 회신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결정, 판결, 회신 등이 부과제척기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관세청의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는 점(납세의무자의 권리는 관세법 제38조의3에 의한 경정청구, 제38조의4에 의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에 의하여 보호된다), 관세법 제21조 제2항 제6, 7호는 경정청구나 조정신청에 대한 결정통지가 있는 경우 관세청도 부과제척기간 연장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관세법 제21조는 원산지 검증회신이 기간을 초과하여 도착하여 부과제척기간 초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없는 관세청으로 하여금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관세법 제21조에 의하여 기한 내 회신 지연된 이 사건 검증결과 회신을 근거로 협정세율(0%)을 적용할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는 특례법 제16조 제2항 후문의 “관세법 제21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하는 각각의 기간 내에는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은 2013. 1. 1. 법률 제11612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되었으므로, 개정 전에 수입신고된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점, 개정 전 제16조 제2항 후단은 “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23조에 관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만 규정하고 있는 점, 개정된 특례법도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이므로, 관세법 제21조에 관한 위 해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특례법 제16조 제2항 후문에 의하여 기한 내 회신 지연된 이 사건 검증결과 회신을 근거로 협정세율(0%)을 적용할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

판 결

사 건 2014누72905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퍼○○○○○
피고, 피항소인 세관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11. 14. 선고 2014구합9974 판결
변 론 종 결 2015. 6. 18.
판 결 선 고 2015. 7.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6. 5. 원고에게 한 별지 '경정 후 내역' 기재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4쪽 제13행의 “배제하한 것은”을 “배제한 것은”으로 고친다.
- 제5쪽 제11행의 “○○○kwa○”를 “○○○kaw○”로 고친다.

○ 제7쪽 「표」 제2항 “내용” 제1행의 “받지 못했다.”를 “받지 못했습니다.”로 고친다.

○ 제9쪽 제6행의 “추징할 수 있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 제11쪽 제9행의 “정보의”를 “정부의”로 고친다.

○ 제14쪽 제14행부터 제15쪽 제9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에 같이 고친다.

【 관세법 제21조 제1항은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하여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 제5호에서 ‘다만 이 법과 FTA특례법 및 조약·협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허세율의 적용 여부 및 세액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이나 그 밖에 발급권이 있는 기관에게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하여 회신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신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회신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 제21조 제2항 제5호의 문언(‘조약·협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 회신을 받은 경우’)에 의하면, 위 규정은 원산지 검증회신을 한-아세안 FTA 협정에 정해진 검증회신 기한(검증요청일부터 2개월) 내에 받은 것을 전제로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피고가 위 기한이 경과한 후 이 사건 검증결과 회신을 받은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검증결과회신을 근거로 협정세율을 적용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판단

갑 제3, 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결정 후 내역’ 제2항 기재 수입신고와 관련한 원산지증명서에는 원산지 결정기준이 ‘CTH’[Change of Tariff Headings(HS 4단위 세번 변경): 품목분류표상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이 사건 검증결과 회신에는 위 원산지증명서에 표기된 CTH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나 ‘RVC[Regional Value Content(역내부가가치): 국내에서 생산활동 등을 통해 창출된 부가가치] 47.08%’는 충족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검증결과 회신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이 수입신고된 물품에 관하여는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수입 신고한 원고에게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2) 조심 2015관316(2016. 10. 28.)

PART 03. 2.가. 6) 참조

1) 조심 2015관297·2016관29·2016관30(2016. 6. 2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수출자로부터 산화방지제의 원료 등으로 사용되는 쟁점물품을 ○○○ 경유하여 수입하면서, 한·아세안 FTA에 따라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에 대해 한·아세안 FTA 부속서3 부록1 제19조에 따른 수출당사국에서 발행된 통과선하증권(Through B/L)이 제출되지 않아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5.5%)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합계 ○○○ 원, 부가가치세 합계 ○○○원 및 가산세 합계 ○○○원 총 세액 합계 ○○○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①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다 하여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쟁점물품이 직접운송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 ②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③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④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출국에서 선적하여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하면서, 수입신고시 통관지세관장에게 제3국로부터 우리나라까지 운송된 2차 B/L만을 제시하고한·아세안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해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법인은 조사과정에서 1차 B/L을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은 각 B/L들을 통과선하증권으로 인정하지 않고 쟁점물품이 직접운송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합계 〇〇〇원을 과세하겠다는 원산지 서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원산지 서면조사 결과통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기각하는 한편, 같은 날 청구법인에게 과세전통지를, 3개월 이내 제척기간이 도래하는 수입신고 건에 대하여는 관세 〇〇〇원, 부가가치세 〇〇〇원 및 가산세 〇〇〇원 합계 〇〇〇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과세전통지에 대해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과세전 적부심사 진행 중에 3개월 이내 제척기간이 도래하는 건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〇〇〇원, 부가가치세 〇〇〇원 및 가산세 〇〇〇원 합계 〇〇〇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처분청은 관세청 관세심사위원회에서 청구법인의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불채택하자, 청구법인에게 관세 〇〇〇원, 부가가치세 〇〇〇원 및 가산세 〇〇〇원 합계 〇〇〇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〇〇〇원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사) 위 각 처분과 심판청구 제기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운송회사 컨테이너[액체의 식품이나 화학제품, 특히 위험물을 수송하기 위해서 국제해사기관(IMO)과 국제표준화기구(ISO) 등이 정한 규격으로 제작된 액상용 컨테이너]에 담겨 수출국으로부터 제3국까지 운송된 다음, 제3국에서 환적된 후 우리나라까지 운송되었다.

(나) 쟁점물품을 운송한 B○○○가 발행한 1차 B/L에는 양륙항(Port of Discharge)은 제3국, 도착지는 부산항, 그 외 컨테이너번호 및 봉인번호, 제3국에서 연결되는 선박명 등이 기재되어 있고, 제3국으로부터 우리나라까지 쟁점물품을 운송한 대○○○ 발행한 2차 B/L에는 양륙항 및 도착지가 부산항으로, 그 외 컨테이너번호 및 봉인번호, 제3국에서 환적된 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각 B/L의 컨테이너번호 및 봉인번호, 품명, 중량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수출자는 처분청에 수출국 ○○항에서 부산까지 직접 운송을 책임질 포워드나 선사 지점도 없어 ○○항에서 제3국까지 지선 운송(Feeder Service : 컨테이너선이 기항하는 항과 기항하지 않는 항 사이의 트럭, 화차 또는 내륙선에 의한 수송, 즉, 간선항로와 여기에서 떨어져 있는 국내 또는 외국항 사이의 컨테이너 지선 서비스) 회사로 B○○○ 등을 이용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대○○○은 처분청에 제3국으로부터 부산항까지 쟁점물품의 운송을 책임졌고, 운송계약은 수출자와 이메일(e-mail)로 일정기간별로 체결하였으며, 운송조건은 CIF 조건으로, 운임은 수출자가 전액 지불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소의 수출자로부터 수입한 동일물품은 수출국에서 선적되어 제3국을 경유하여 부산항으로 운송되었는데, 선사가 발행한 B/L 상단에는 COMBINED TRANSPORT BILL OF LADING가 표시되어 있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해당 물품에 대하여는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았다.

(마) 청구법인이 제시한 2002년 7월의 발간된 관세청 '상담사례'의 "(23) 한·EU 물품을 제3국에서 환적한 경우 직접운송 인정 여부"는 수출당사국에서 발행된 B/L에 수출국의 출발항구와 도착지인 한국의 부산항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제3국에서 단순 환적된 입증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는 상담사례로서, 해당 B/L이 통과선하증권에 해당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한편, 관세청장은 2013.6.2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가 개정되자, 2013.7.26. 전국세관장에게 「수

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이하 “관세청 운영지침”)을 시달하였는데, 해당 지침에는 세관장이 관세조사 등을 통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시 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단순 착오로 확인되는 경우’는 수입신고시 제출한 부속서류(Invoice, B/L 등)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수입신고서를 착오로 잘못 작성한 것이 확인된 경우로, 다만, 첨부서류 자체를 잘못 제출한 경우는 ‘단순 착오로 확인되는 경우’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수입자 귀책사유의 예시’로서 협정 또는 법령에서 정한 운송원칙을 위반하여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경우를 예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한·아세안 FTA 운영절차 제9조에서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경우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은 운송구간별로 2개의 B/L이 각각 발행되었고, D○○○은 최초 운송업자인 B○○○ 아니라 수출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제3국에서 우리나라까지 쟁점물품을 운송하였으며, 최초 운송업자인 B○○○가 전운송구간에 대한 운송책임を負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아세안 FTA에서 규정한 직접운송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통관지세관장이 유사한 형태로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을 적용한 수입신고서를 수리하였다고 하여, 통과선하증권이 미제출된 경우에도 협정관세를 적용하겠다는 취지의 견해 표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FTA특례고시 제37조는 FTA와 관련된 일반적 규정으로 보이고, 이를 그대로 한·아세안 FTA에 관한 이 건에 적용하기 어려우며, 관세청의 상담사례 또한 한·EU FTA에 대한 일반사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해 살피건대, 한·아세안 FTA에서 수입물품이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을 위해 통과선하증권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시 통과선하증권 자체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를 청구법인의 단순 착오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출국로부터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하면서, 한-아세안 FTA에 따라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 부속서3 부록 1 제19조에 따른 수출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아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및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① 통과선하증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설명하는 쟁점물품의 운송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제3국 소재 E○○○가 포워더에게 선복 예약 요청
- ② 포워더는 제3국에서 한국까지 Mother Vessel 선복예약 및 빈 ISO Tank Container를 피더(Feeder)가 픽업할 수 있도록 제3국 현지 지사에 연락
- ③ 포워더로부터 선복예약 확인을 받은 E○○○은 수출국 피더에게 Mother Vessel이 확보되었으므로 빈 ISO Tank Container를 픽업하도록 요청
- ④ 피더는 제3국에서 빈ISO Tank Container를 픽업하여 수출국 E○○○ 공장까지 운송(해상-육상운송)
- ⑤ 수출자는 쟁점물품을 빈ISO Tank Container에 Full로 적입·봉인·라벨링 후 수출통관 완료
- ⑥ 피더는 ISO Tank Container를 수출국 공장에서 항구까지 육상운송 후 피더의 Barge선에 선적하여 제3국으로 해상운송. 이 때 피더는 적출국은 수출국, 목적국은 우리나라가 기재된 B/L 발행
- ⑦ 제3국 항만당국에 해당 ISO Tank Container의 환적신고를 하고 제3국 항만당국의 통제 및 포워더 확인 하에 예약된 Mother Vessel에 ISO Tank Container를 그대로 선적
- ⑧ 포워더는 ISO Tank Container 환적이 완료된 것을 확인하고 B/L을 발행하여 E○○○ 교부
- ⑨ E○○○는 피더 B/L과 포워더 B/L을 청구법인에게 송부

(2) 청구법인이 예시로 제시한 피더 B/L에 표기된 운송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또한, 청구법인이 예시로 제시한 포워더 B/L에 표기된 운송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피더 B/L 및 포워더 B/L에 기재된 컨테이너번호, 봉인번호, 컨테이너 종류 및 개수, 순중량 및 Shipper's Ref. 등이 모두 일치한다.

(3) 쟁점물품의 수출자가 쟁점물품의 운송과 관련한 작성·제출한 경위서의 내용(발체)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포워더가 쟁점물품의 운송과 관련하여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처분청은 위 경위서 및 확인서에 의해 각 운송구간별 운송사와 책임소재는 아래 <표1>과 같다는 의견이다.

<표1> 운송구간별 운송사 및 책임소재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직항노선이 없는 지리적·운송상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할 수밖에 없었고, 운송 전 구간에 걸쳐 물품 정보가 확인되고, 제3국에서 거래·소비된 사실이 없는 등 실체적으로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였음이 입증되므로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한-아세안 FTA 부속서3 부록1 운영절차 제19조에 물품이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출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통과선하증권은 최초의 운송업자가 하나의 B/L로 전구간의 운송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하고 발행하는 선하증권의 일종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운송과 관련하여 제출한 B/L은 제3국을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운송될 때까지 수출국에서 제3국, 제3국에서 우리나라까지 각 운송구간별로 2개의 B/L이 각각 발행되고, 실제 운송과정, 운송거리 및 운송업자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최초 운송업자가 전 운송구간에 대한 책임을 담보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를 협정관세 적용에 필요한 통과선하증권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생산지에 대형 선사나 포워더가 없어 통과선하증권을 발급받을 수 없어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출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의 제출이 협정관세 적용에 필수적임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수출국에서 통과선하증권을 발급받지 못하였음에도 협정관세 적용신청시 임의로 협정관세 적용에 필요한 통과선하증권이 아닌 선하증권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조심 2016관87(2016. 8. 3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출자로부터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하면서, 수입신고수리 전 또는 수리 후에 한·아세안 FTA에 의한 협정관세를 신청하여 적용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적용업체 자율점검 안내”를 통보받은 후,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출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사유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관세 〇〇〇원, 부가가치세 〇〇〇원 및 가산세 〇〇〇원 합계 〇〇〇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가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통과선하증권을 갖추지 아니하고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 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수출국은 내륙국가인데, 쟁점물품은 중량이 무거워 제3국까지 육상운송한 후, 우리나라로 해상운송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아래 <표1> 연번 1·2 기재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 하는 때에 기본 관세율(3%)을 적용하여 수입통관하였다가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하여 적용받았고, 그 후로 연번 3 내지 8 기재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하는 때에 협정관세를 신청하여 적용받았다.

<표1>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및 협정관세 신청 내역

(다)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주요 증빙 및 근거는 아래와 같다.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FTA특례고시”)는 제 37조에서 환적 또는 일시장치물품에 대하여 통과선하증권에 대한 별도의 규정 없이,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의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보세구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 장치 되었음을 해당 국가의 세관 등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증명서를 제출받아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관세청장의 「FTA 원산지증명서 확인 및 특혜관세 적용지침(2007.11.1.)」(이하 “FTA적용지침”)은 해당물품이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운송서류에 최초 출항지 및 최종 목적국이 체약상대국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물품의 동일성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관세청에서 발간한 ‘FTA 원산지 검증 매뉴얼’(2010년 12월), ‘상담사례로 알아보는 FTA’(2012년 9월)에 의하면, 해당물품이 비당사국을 경유하더라도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요구에 따라 경유하고, 상품이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하역·재선적, 상품의 보존을 위한 공정 이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아래 <표2>와 같이 물품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때에 처분청에 제시하지는 아니하였다.

<표2> 청구법인이 구비하고 있었다고 하는 운송 증빙서류

(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하여 적용받았으므로 쟁점물품이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협정관세 사후적용에 대하여 신청 당시 형식적인 요건 등만을 심사할 뿐, 직접운송요건 등과 같은 원산지규정의 충족여부는 사후에 심사가 원칙이므로, 사후적용 사실만으로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한다는 세관장의 의견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마) 청구법인은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하는 때에 처분청에 협정관세적용신청서, 경정청구서, 수입신고필증, 원산지증명서, 선하증권(수출국→우리나라), 송품장,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FTA특례고시, FTA적용지침 및 관세청 발간 책자 등에서 통과선하증권에 대하여 규정하거나 설명하고 있는 바가 없고, 수입신고수리 후에 협정관세를 신청하여 적용받은 사실을 신뢰하였다고 주장하나, 한·아세안 FTA 부속서 3 부록 1(원산지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19조는 중간 경유국의 영역을 통하여 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수출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을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FTA특례고시, FTA적용지침 및 책자 등은 일반적인 규정 내지 사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그대로 한·아세안 FTA에 관한 이 건에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을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에게 장차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협정관세 신청 당시 직접운송원칙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자료 또한 제시하지 않아 직접운송원칙의 충족 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이 심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처분청의 구체적인 견해표명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조심 2017관168(2017. 11. 2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로부터 한-EU FTA 발효일(2011.7.1., 이하 “협정 발효일”) 이전에 보드카, 위스키, 와인 등(이하 “구매물품”)을 구매하여 국내 보세창고에 반입하였다.

나. 쟁점수출자는 한-EU FTA가 발효되자 구매물품 전량에 대하여 협정 발효일인 2011.7.1.자로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이하 “쟁점C/O”)를 소급 발급하여 청구법인에게 송부하였고, 청구법인은 2011.7.5.부터 2013.10.2.까지 총 20회에 걸쳐 구매물품의 B/L(Bill of Lading, 선하증권)을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면서, 한-EU FTA 의정서 제34조(이하 “쟁점경과규정”)에 따라 쟁점C/O를 근거로 협정관세율(0 ~ 13.3%)의 적용을 신청하여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이를 승인받았다.

다. 처분청은 협정 발효일부터 1년 이후에 수입신고된 보드카, 위스키, 와인 등(이하 “쟁점물품”)은 쟁점경과규정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2016.7.25.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쟁점경과규정 충족 여부 등에 대하여 자율점검 안내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국제협력관세율(15 ~ 20%)을 적용하여 2017.3.22. 청구법인에게 관세 〇〇〇원, 주세 〇〇〇원, 교육세 〇〇〇원, 부가가치세 〇〇〇원 및 가산세 〇〇〇원 합계 〇〇〇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① 쟁점물품이 한-EU FTA 경과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②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및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③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을 포함한 구매물품은 한-EU FTA 발효일(2011.7.1.) 이전인 2010.10.30.부터 2011.5.26.까지 수출국에서 선적되어 협정 발효일을 전후하여 우리나라에 입항 및 보세창고에 반입되었다.

(나) 각 쟁점수출자는 2011.7.1. 한-EU FTA가 발효되자 구매물품 전량이 기재된 각 송품장(5건)에 원산지신고 문안을 기재하여 협정 발효일인 2011.7.1.자로 쟁점C/O를 소급하여 발행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C/O를 근거로 先수입신고건에 대하여 경과기간 이내인 2011.7.5.부터 2012.6.5.까지 수입신고 및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여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았으며, 쟁점물품은 경과기간 이후인 2012.7.25.부터 2013.10.2.까지 수입신고 및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여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先수입신고건의 수입신고 및 협정관세 적용신청은 모두 첨부서류 제출 없이 P/L(Paperless)로 이루어졌고, 청구법인이 경과기간 이내에 쟁점C/O를 세관장에게 제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이 건 처분시까지 쟁점C/O 중 3건은 세관장에게 제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C/O 중 2건은 경과기간 이후인 2013.2.19. 서류제출 대상으로 선별됨에 따라 세관장에게 최초로 제출되었으며, 쟁점C/O가 최초로 세관장에게 제출된 이후 쟁점물품이 수입신고된 건은 1건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이 先수입신고시 세관장에게 제출한 협정관세적용신청서에 쟁점C/O 발급번호·총순중량·협정적용 순중량·분할수입 여부 및 분할차수가 기재되어 있고,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수량단위는 “리터(L)”이나 협정관

세적용신청서에는 수량단위 리터(L)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서 쟁점C/O 발급번호별로 분할차수 및 분할신고 중량 및 수량을 관리하는 절차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바) 쟁점C/O 중에는 총중량만 기재되고 순중량이 기재되지 아니한 건이 확인되고, 先수입신고물품 및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서상 순중량은 정상적으로 기재되었으나 쟁점C/O상 중량과 협정관세적용신청서상 “총순중량”이 일치하지 않는 건과 협정관세적용신청서상 “협정적용 순중량”의 합계가 “총순중량”을 초과하는 건이 다수 확인된다.

(사) 통관지세관장은 先수입신고건 및 쟁점물품 모두 수입신고 당일 이를 수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각 수입신고수리필증의 세관 기재란에 “사후심사결과에 따라 적용세율이 변동될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쟁점경과규정과 별도로 한-EU FTA 의정서 제18조에서 원산지증명서는 발급된 날부터 12개월 동안 유효하고 특혜관세대우는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그 기간 내에 요청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제9조의2에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10조 제5항에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에는 유효기간 산정시 수입항 도착일의 다음 날부터 협정관세 적용신청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 FTA 관세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FTA 관세특례법은 「관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FTA 관세특례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0조 제1항에서 협정관세 사전적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어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7항에서 협정관세 사전적용 물품은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협정관세적용신청서에 쟁점C/O 발급번호와 총중량, 분할차수 및 분할 수입중량을 기재하였으므로 先수입신고시 쟁점C/O가 제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한-EU FTA 발효일로부터 12개월을 경과하여 수입신고 및 협정관세 적용이 신청된 점, 협정관세는 수입신고 및 협정관세 적용신청 건별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 점, 경과기간 이내에 쟁점C/O가 세관장에게 제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한-EU FTA에서 경과규정과 유효기간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경과규정이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기산일을 발급일이 아닌 협정 발효일로 본

다는 규정이나 유권해석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이 쟁점경과규정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세관장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이를 수리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 및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하였다고 주장하나, 경과기간 이내에 쟁점C/O가 세관장에 제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先수입신고건에 대하여 세관장이 수입신고수리 행위 이외에 쟁점물품 및 先수입신고물품이 경과규정을 충족하였다는 견해 표명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세관장의 수입신고수리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FTA 관세특례법에서 협정관세율 적용의 적정성 등은 수입신고수리 후에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C/O 중 일부를 세관장에게 제출한 시점은 경과기간 이후인 2013.2.19.이고 그 이후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은 1건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및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이 분할수입신고와 관련하여 쟁점경과규정 적용 기준이나 지침을 마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의무해태를 닦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법률의 부지나 오인은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신고납부제도 하에서 협정관세 적용 여부 및 관련 법령 충족 여부는 납세의무자가 확인하여 적정하게 신청하여야 하는 점, 구매물품 전량을 경과기간 이내에 신고할 것인지 분할하여 신고할 것인지는 청구법인의 판단에 따라야 하고 이에 대한 책임 또한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경과기간 이후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인천지방법원 2016. 7. 1. 선고 2015구합53286 [관세부과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제2 행정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53286 관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스○○
피 고 세관장
변 론 종 결 2016. 5. 27.
판 결 선 고 2016. 7.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미국 법인 수출자로부터 가속도계 집적회로(이하 '이 사건 수입물품')를 수입하면서(구체적인 번호는 별지 1 수입신고번호란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쟁점물품'), 관세율표 품목번호(이하 '품목번호')를 구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2013. 12. 31. 대통령령 제250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관세율 0%인 'HSK 제8542.39-1000호'로 수입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신고를 수리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수입물품의 품목번호가 관세율 8%인 'HSK 제9031.80-9099호'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관세청 감사결과에 따라, 2014. 7. 8.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물품의 품목번호를 변경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경정·고지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 사건 계쟁물품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수입신고번호별로 각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판단

1) FTA 관세법 제10조는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하고(제1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FTA 관세법 시행령은 그 방식에 관하여, FTA 관세법 제10조 제1항 전단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일정한 사항이 기재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제10조 제1항 본문), FTA 관세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수입신고의 수리 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10조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 원산지증빙서류, 관세법 시행령에 따른 보정신청에 필요한 서류 또는 경정청구서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11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령의 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각각의 수입신고를 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수입신고수리 후 1년 내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고, 수입자가 동일한 물품을 반복하여 수입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해당 세관장에게 수입자가 개별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지 않은 수입신고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계쟁물품에 대한 각 수입신고 당시 이 사건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않았고,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내에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또한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쟁물품 외에도 동일한 물품을 여러 차례 수입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이 사건 계쟁물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같이 'HSK 제8542.39-1000호'로 수입신고를 하여 왔는데, 원고가 그 중 2012. 6. 20. 수입신고 건에 대해 2013. 6. 17., 2013. 4. 25. 수입신고

건에 대해 2013. 7. 4 그 품목번호를 'HSK 제9031.80-9099호'로 수정 또는 보정하는 신고를 하여 정정조치가 이루어진 사실, 이와 같은 품목번호의 수정으로 원고에게 관세가 부과되자 원고가 위 각 물품에 대하여는 2013. 6. 18.과 2014. 4. 22. FTA 관세법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을 함으로써 2013. 6. 27.과 2014. 5. 8. 각 협정관세 사후적용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계쟁물품에 대한 각 수입신고(2013. 2. 2.부터 2013. 5. 22.까지) 시 협정관세 적용신청이나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내에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을 하지 않았던 이상, 피고가 수입 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종전에 신고된 품목번호의 오류가 있다는 관세청의 감사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쟁물품에 대하여 이 사건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은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계쟁물품에 대하여 품목번호의 보정 및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을 할 수도 있었다고 할 것 이므로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닦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쟁물품에 대하여 관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록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에 관한 지침

FTA 협정관세 적용물품에 대한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에 관한 지침

01. 목적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한 가산세 또는 보정이자의 징수와 면제에 대한 통일된 집행으로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높여 성실한 납세자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02. 관련 규정

-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하여 미납부세액을 징수하거나 부족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법에 따라 가산세 징수(법 §36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함(법 §36②)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함(「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FTA관세법시행령’ §47③))

1. 수입자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다만,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3.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등으로서 부족세액의 징수와 관련하여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가산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세법」제42조제4항부터 제7항, 제42조의2 및 「관세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

-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부족(過不足)이 있을 때에는 세액정정·세액보정 신청,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며, 세액정정, 세액보정, 수정신고 또는 경정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을 준용(법 § 14③,④)
-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하여 보정신청에 따라 세액을 보정한 결과 부족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보정이자를 징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정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함(관세법 §38조의2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
2.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03. 적용 대상

- FTA관세법시행령 제47조제3항 제1호 및 제3호, 관세법 제38조의2제5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 협정관세 적용받은 물품에 대한 부족세액의 징수와 관련하여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가산세 또는 보정이자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04.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 여부 적용 기준

- **수입자 귀책사유 적용 기준** (FTA관세법시행령 제47조제3항 제1호 관련)
 - 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를 면제한다.
 - 이 때 수입자는 '계약상대국의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 자나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 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이메일, 서한문 등)를 제시하여야 하며,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입자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수입자의 정당한 사유 적용 기준**(관세법 제38조의2제5항 제2호 및 FTA관세법시행령 제47조제3항 제3호 관련)

부록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에 관한 지침

- (부과) 세관장은 부적정한 협정관세 적용의 원인 또는 협정관세의 적용제한 사유가 별표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가산세 또는 보정이자를 부과·징수한다.

- (원칙적 면제) 세관장은 부적정한 협정적용 또는 협정관세 적용제한 사유가 가산세 또는 보정이자 부과·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별표 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또는 보정이자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면제대상으로 심사한다.
 - 수입자와 계약상대국 수출자 등이 「관세법」상의 특수관계인 경우
 - 「한-미 FTA」와 같이 협정에 협정관세 적용과 관련한 수입자의 의무사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 (조건부 면제) 세관장은 부적정한 협정적용 또는 협정관세 적용제한 사유가 별표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입자의 의무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여 가산세 또는 보정이자를 면제할 수 있다.
 - 계약상대국 수출자 등의 유효한 인증수출자 해당 여부 또는 적법한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한 원산지증명서(신고서) 발행 여부 등 거래당사자와 관련된 사항 확인 여부
 - 협정관세 적용물품의 품목분류 적정성 등 협정별 양허품목 해당여부와 관련된 사항 확인 여부
 - 원산지증명서(신고서)의 FOB 가격과 원산지(기준) 오류 여부, 수입자가 확인 가능한 계약서류, 상업서류 등 무역서류의 특이사항 여부 및 계약상대국 수출자 등을 대상으로 협정관세 적용물품의 원산지기준 충족 확인 등 원산지 기준과 관련된 사항 확인 여부
 - 협정 및 법령에 따른 적법한 기재 또는 유효기간 경과 여부 등 원산지증명서(신고서)의 형식적 요건과 관련된 사항 확인 여부
 - 제3국 경유 등 직접운송 의심 물품에 대한 경유지 세관 또는 선사 등을 통한 확인 및 협정 또는 법령이 정하는 증빙서류의 적정 제출 여부 확인 등 직접운송과 관련된 사항 확인 여부
 - 기타 협정 또는 법령에 기재된 수입자 의무와 관련된 사항 이행

■ 면제신청 기한

- 가산세 또는 보정이자의 면제신청은 법 제35조제2항의 협정관세 적용제한에 따른 관세부와 제척기간 이내에 신청 가능하다. 다만,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경정통지하는 가산세 등에 대해서는 해당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가산세 등의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 면제신청 방법

- 가산세 또는 보정이자의 면제신청은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2호 서식(가산세(보정이자) 면제 신청서)을 자율점검 안내 또는 경정처분하였거나 경정하고자 하는 원산지조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면제신청서에는 면제 코드 및 정당한 사유 등을 입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관세행정 정보시스템에 전송 또는 서면)

※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 코드

구분	면제사유	면제 코드
보정이자	정당한 사유(관세법 제38조의2⑤ 제2호)	A3
가산세	원산지조사 통지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FTA특례법 시행령 제47조③ 제1호)	B7
	상대국이 기한 내 검증결과를 미회신(FTA특례법 시행령 제47조③ 제2호)	B8
	FTA 부속세액 징수 관련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FTA특례법 시행령 제47조③ 제3호)	B9

* FTA관세법 시행령 제47조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면제신청 없이 세액정정신청서에 면제 대상 표시 및 면제사유코드(산설) 입력 가능

■ 면제여부 심사 기준

- 수입자의 의무는 원칙적으로 협정적용 신청시까지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협정 및 법령에 협정적용 이후에도 수입자의 의무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동일 계약상대국의 수출자 등에게 동일 수입업체가 반복 수입하는 동일 물품과 관련된 수입자 의무는 최초 협정적용 신청시까지 이행하여야 한다.
- 수입자는 조건부 가산세 또는 보정이자 면제 심사사항 모두를 이행할 필요는 없으나, 협정관세 적용 제한사유와 직접 관련된 의무사항 등은 이행하여야 한다.
- 2개 이상 사유로 협정관세 적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제한 사유별로 가산세 또는 보정이자 면제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 수입자의 의무이행 여부는 수입자가 계약상대국 수출자 등에게 송부한 전산메일 또는 수출자 등의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 면제여부 심사 절차

- 가산세 또는 보정이자 면제신청을 접수한 세관장은 수입자 귀책사유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신청인에게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가산세 또는 보정이자 면제신청을 접수한 세관장은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면제신청의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가산세 또는 보정이자 면제신청을 접수한 세관장은 면제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라 원산지조사 처분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산지조사 처분심의회에 안건을 제출한 날로부터 그 결정을 통보받는 날까지의 기간은 면제신청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가산세 또는 보정이자 면제신청을 접수한 세관장은 면제신청의 승인 여부를 수정신고 또는 보정신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기타사항

- 면제 신청기한, 신청시기, 신청방법, 면제여부 심사 및 결과통지, 징수 및 환급절차 등

에 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에 관한 지침(심사정책과-170, '20.1.16.)」을 준용한다.

06. 시행일

- 본 지침은 2020. 4. 13일 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후 보정신청, 수정신고하거나 경정하는 수입신고 건부터 적용한다.
- 「FTA관세특례법령상 가산세 면제에 관한 지침」(17.7.5.), 「FTA관세법령상 “정당한 사유”적용 기준에 관한 운영지침(2018.9)」은 본 지침 시행에 따라 폐지한다.

1. 협정관세를 신청하는 물품에 대한 '양허대상', '양허세율', '품목분류' 등 품목요건과 관련된 사항의 오류
2. 원산지증빙서류의 '유효기간', '자의적인 수정' 등 원산지증명서 등의 기본적인 형식적 요건과 관련된 사항의 오류
3. 원산지증빙서류 발급자의 '발급국가', '인증수출자 번호체계' 등 발급자요건과 관련된 사항의 오류
4. 수입자가 보유한 운송서류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5. 수출입자간의 특수한 관계에 기반하여 수입자가 원산지결정기준과 관련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원산지결정기준과 관련한 오류
6. 기타 무역거래 계약서, 거래형태, 제시된 자료 등을 통해 수입자가 오류 확인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부적정한 협정관세 적용 또는 협정관세 적용제한 사유가 수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경우
2. 부적정한 협정관세 적용 또는 협정관세 적용제한 사유가 수입자의 법령에 대한 무지 또는 착오에 의한 경우
3. 부적정한 협정관세 적용 또는 협정관세 적용제한 사유가 수입자의 사실관계에 대한 착오 또는 오인에 의한 경우
4. 부적정한 협정관세 적용 또는 협정관세 적용제한 사유와 관련하여 수입자가 가산세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체약 상대국 수출자 또는 생산자 등과 공모한 경우
5. 수입자가 협정관세 적용신청 이전 또는 이후에 협정관세 적용 제한 사유나 오류 등을 인지하고도 수정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6. 수입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확인서)인 경우
7. 법 제35조제1항제1호와 관련하여 수입자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16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여 협정관세 적용이 제한된 경우
8. 법 제35조제1항제4호와 관련하여 제17조에 따라 수입자에 대한 서면 또는 현지조사 결과 제출한 자료에 제7조에 따른 원산지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하여 협정관세 적용이 제한된 경우
9. 법 제35조제1항제6호와 관련하여 제31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를 신청한 수입자가 사전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를 고의로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또는 사전심사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협정관세 적용이 제한된 경우
10. 법 제35조제1항제8호 및 FTA관세법시행령 제44조제2항제1호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는 수입자의 부도·폐업·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원산지 조사가 불가능하여 원산지 정확성을 확인할 수 없어 협정관세 적용이 제한된 경우
11. 법 제35조제1항제8호 및 FTA관세법시행령 제44조제2항제2호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는 수입자가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 원산지 정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협정관세 적용이 제한된 경우
12.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여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1. 법 제35조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체약상대국 수출자 또는 생산자(이하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가 제17조제1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에 기획재정부령에 정하는 기간 내에 회신하지 아니하여 협정관세 적용이 제한된 경우
2. 법 제35조제1항제4호와 관련하여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이 제17조에 따른 서면 또는 현지조사 결과 제출한 자료에 원산지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하여 협정관세 적용이 제한된 경우
3. 법 제35조제1항제5호와 관련하여 제19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회신 내용에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하여 협정관세 적용이 제한된 경우
4. 법 제35조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에 대한 현지조사 동의 요청에 대해 제17조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동의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여 협정관세 적용이 제한된 경우
5. 법 제35조제1항제3호와 관련하여 제17조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시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산지증빙서류의 확인에 필요한 장부 또는 관련 자료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접근 거부 또는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하여 협정관세 적용이 제한된 경우
6. 법 제35조제1항제1호와 관련하여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16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협정관세 적용이 제한된 경우
7. 법 제35조제1항제8호 및 FTA관세법시행령 제44조제2항제1호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는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의 부도·폐업·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원산지 조사가 불가능하여 원산지 정확성을 확인할 수 없어 협정관세 적용이 제한된 경우
8. 법 제35조제1항제8호 및 FTA관세법시행령 제44조제2항제2호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는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이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 원산지 정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협정관세 적용이 제한된 경우
9.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여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1. 법 제35조제1항제4호와 관련하여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에 대해 제17조에 따른 서면 또는 현지조사 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어 협정관세 적용이 제한된 경우
2. 법 제35조제1항제5호와 관련하여 제19조제1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어 협정관세 적용이 제한된 경우
3. 법 제35조제1항제1호와 관련하여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등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여 협정관세 적용이 제한된 경우
4. 법 제35조제1항제4호와 관련하여 제17조에 따라 수입자에 대한 서면 또는 현지조사 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어 협정관세 적용이 제한된 경우
5. 법 제35조제1항제7호와 관련하여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의 거부·제한 사유로 인해 협정관세 적용이 제한된 경우
6.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여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FTA 가산세 쟁송 사례집

발행일 : 2020년 12월

발행처 : 서울세관 심사총괄과 T. 02-510-1233

총괄 : 서울본부세관장 김광호

주관 : 서울세관 심사국장 장웅요

집필 : 서울세관 심사총괄과장 최천식

서울세관 심사총괄과 권종열, 장승철, 오창진, 이지영, 김연진, 옥은수, 변지아, 허지원

감수 : 관세청

디자인 및 인쇄 : design 3mm (02.6263.0200)

※ 관세청 서울세관의 승인없이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